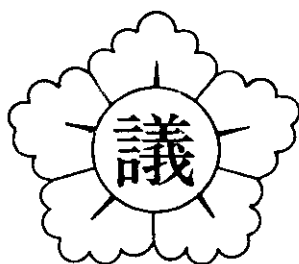


政 議 '92



目次

第1篇 會議

■ 第8回 臨時會	23
○ 本會議	25
○ 條例審查特別委員會	31
■ 第9回 臨時會	47
○ 本會議	49
■ 第10回 臨時會	59
○ 本會議	61
○ 常任委員會	64
■ 第11回 臨時會	69
○ 本會議	72
○ 常任委員會	110
○ 條例審查特別委員會	137
■ 第12回 臨時會	139
○ 本會議	141
○ 常任委員會	144
○ 豫算決算特別委員會('92 第1回 追更)	156
■ 第13回 臨時會	161
○ 本會議	163
○ 常任委員會	167
■ 第14回 臨時會	183

○ 本會議	185
○ 常任委員會	189
■ 第15回 臨時會	203
○ 本會議	206
○ 常任委員會	210
○ 豫算決算特別委員會('92 第2回 追更)	221
○ 條例審查特別委員會	225
■ 第16回 定期會	233
○ 本會議	236
○ 常任委員會	295
○ 豫算決算特別委員會('93 本豫算)	335

第2篇 議政活動 및 行事

■ 1992年度 新年交禮會	349
■ 區議會 開院 1週年 紀念 行事	349
■ 巨濟郡議會 姊妹結緣	350
■ 巨濟郡議會 議員 親善 訪問	351
■ 韓國電力公社 招請 淸平 楊水發電所 視察	352
■ 議員 세미나	352
■ 1992年度 送年會	353
■ 1992年度 終務式	353

第3篇 現況 및 統計

■ 集會 및 會期	357
○ 集會狀況	357
○ 會期別 開議日數와 會議時間	357

○ 會期別 集會要求 一覽	359
---------------------	-----

○ 集會 要求者別 統計	359
--------------------	-----

■ '92 議案處理狀況	360
--------------------	-----

○ 種類別 議案處理 統計	360
---------------------	-----

○ 會期別 議案處理 統計	360
---------------------	-----

○ 議案處理一覽	361
----------------	-----

■ 請願處理	366
--------------	-----

■ 陳情書處理	367
---------------	-----

第4編 附錄

■ 歷代 地方自治法 改正 要旨	371
------------------------	-----

■ 法令上 地方議會의 權限事項	375
------------------------	-----

第 1 篇

會 議

7

- 17
- 1 第 8 回 臨時會 ①
- 18 第 9 回 臨時會 ③
- 19 第 10 回 臨時會 ③
- 20 第 11 回 臨時會 ⑤
- 21 第 12 回 臨時會 ③
- 22 第 13 回 臨時會 ⑤
- 23 第 14 回 臨時會 ⑤ 28-21 24
- 第 15 回 臨時會 ⑤
- 第 16 回 定期會 ⑩

11-2331

第 8 回 臨 時 會

■ 本 會 議

■ 條例審查特別委員會

第8回 臨時會

- 會 期：1992年 2月 13日(1日間)
- 集會要求者：金廷炫 議員外 20人

概 況

第8回 臨時會는 1992年度 最初로 開會되는 會期로서 開會式에서 議長과 區廳長의 新年人事가 있었으며 1次 本會議를 開會하여 金柄沆 總務局長으로부터 區政與件과 '92年度 業務計劃을 報告받음으로써 區政現況과 方向을 把握하였으며 國會議員, 市議員, 西大門區의 各級機關長과 區廳의 局長들을 招請, 交禮會를 開催함으로써 議會와 行政機關과의 有機的인 關係를 圖謀하였으며 忌憚없는 意見開陳을 통하여 區民의 福祉增進을 爲한 議會의 機能과 役割遂行에 盡力을 다하였다.

條例審查特別委員會는 臨時會 閉會期間中 委員會를 開會하여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改正條例案 7件과 地方自治法의 改正에 따라 議員發議된 議會條例案 6件, 規則案 2件等 總 15件의 議案을 審査하여 效果的이고 能率的인 委員會活動에 臨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區政報告

第1次 本會議는 金柄沆 總務局長으로부터 區政與件과 1992年度 業務計劃을 聽取하였으며 全般的인 區政現況과 事業計劃을 把握하여 向後 議政活動의 方向을 定立하였다.

나. 新年交禮會

第1次 本會議 閉會後에 開催된 新年交禮會에는 林春元, 姜聖模 國會議員과 市議員, 區廳長, 管內 機關長 및 區廳 局長들이 參席하여 西大門區의 發展과 議會와의 有機的인 關係圖謀, '91年度 議政活動에 對한 評價 및 바람직한 '92年度 議政活動의 方向等 많은 對話와 意見交換이 있었다.

【議長新年人事】

尊敬하는 議員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해 주신 都明正 區廳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희망찬 壬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集會된 第8回 臨時會는 40萬 西大門區民의 살림살이를 위한 600億 규모의 豫算事業과 各 分野別 非豫算事業의 실질적인 推進計劃을 報告받는 자리로써 어느 臨時會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報告內容대로 效率적이고 內實있는 業務推進이 되도록 우리 議會가 衆智를 모아 각별한 보살핌과 支援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議員여러분!

지난 해에는 議員여러분의 活潑한 議政活動으로 풀뿌리 民主主義의 뿌리를 내렸으므로 앞으로는 이의 定着을 위하여 區民들과의 對話와 유대 관계를 더 한층 鞏固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區民이 信賴하는 대변자로서의 役割과 所任을 遂行하기 위해서 區民을 위한 奉仕와 區民과 함께 하는 議員이 되도록 언제 어디서나 獻身的인 努力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議員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健康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祈願하면서 開會辭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 區廳長 新年人事 】

尊敬하는 鄭田村 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오늘 新年들어 처음 開會되는 臨時會에서 여러 議員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에는 議員님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 區廳이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年에는 지난 해의 經驗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난해 議員여러분께서 審議해서 통과시켜 준 豫算案에 따라서 區政을 住民福祉 增進을 위해서 착실하게 꾸려나가겠습니다.

今年에는 우리區가 가진 特性을 살려서 快適하고 品位있는 生活環境을 造成하고 住民福祉와 便益을 增進시키고 또 지난해부터 推進해 오던 새생활 새질서實踐運動을 통해서 住民 意識을 涵養하고 그리고 우리區의 歷史性を 살리고 地域에 대한 住民들의 鄉土意識과 文化意識을 高揚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住民들에 대한 奉仕行政을 더욱 내실화 해서 명실공히 住民을 主人으로 섬기고 또 住民福祉를 위해서 全 區職員이 합심해서 努力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事業計劃은 나중에 별도 報告가 있겠습니다만 이와같은 區政方向아래 議員님 여러분께서 審議, 통과 시켜주신 豫算을 效率的으로 執行해서 今年 한해 살기좋은 西大門을 建設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이 事業이 效率的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指導와 激勵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今年 한해는 우리 行政史上에도 그렇고 國家的으로도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 우리區職員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시한번 격려를,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議員님 여러분들 모두 健康하시고 또 個人的으로 큰 發展이 있으시고 家庭에 萬福이 가득하시기를 祈願드리면서 人事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區政報告要旨〕

區 政 與 件

〈 地 域 特 性 〉

- 都 心 地 域 과 連 接 — 都 心 과 外 廓 地 域 連 結 機 能
- 鞍 山 等 山 岳 과 丘 陵 地 帶 — 住 居 環 境 및 基 盤 施 設 老 朽
- 不 良 住 宅 및 市 民 아 파 트 密 集 — 再 開 發 및 撤 去 對 象
- 學 校 施 設 集 中 — 教 育 의 中 心 地

○ 面 積 ——— 17.7km²(市 605.4km²의 2.9%)

住 居 地 域	商 業 地 域	綠 地 地 域
15.8km ²	0.2	1.7
(89.3%)	(1.1)	(9.6)

○ 人 口 ——— 127,136家口 392,586名(市의 3.9%)

* '91 : 380,827名(增 3%)

○ 住 宅 ——— 62,219戶(普及率 : 48.9%)

單 獨	아 파 트	聯 立	無 許 可
37,554棟	1,287棟 10,151戶	211棟 9,476戶	5,038棟
(61%)	(16%)	(15%)	(8%)

* 市 民 아 파 트 : 86棟(市 222棟의 39%)

○ 行 政 區 域 ——— 22洞 589統 4,696班

○ 機 構 및 人 力

• 機 構 ——— 5局 1所 3室 27課 86係

• 人 力 ——— 1,354名(區679, 保健所77, 洞598)

○ 主要施設

- ・ 公共機關 ——— 69個機關(警察廳, 프랑스大使館等)
- ・ 教育機關 ——— 57個校 (大學 8, 初・中・高 49)
- ・ 醫療機關 ——— 278個所 (綜合病院 2, 病・醫院 276)
- ・ 文化財 ——— 12個所 (史蹟 6, 有・無形文化財 6)
- ・ 福祉施設 ——— 77個所

圖書館	讀書室	工夫房	老人亭	어린이집	社會福祉施設
1	1	3	47	2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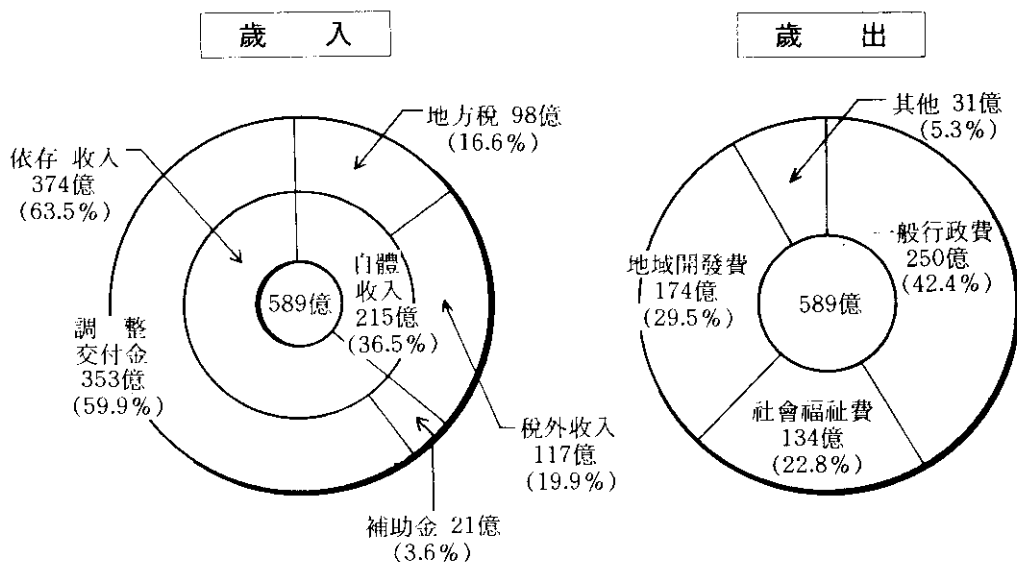
○ 都市基盤施設

- ・ 道路 ——— 284.1km(道路率 16.8%)
- ・ 道路鋪裝 ——— 2.1km(鋪裝率 92.6%)
- ・ 上水道普及 ——— 393千名(普及率 100%)
- ・ 下水道普及 ——— 391km(普及率 100%)
- ・ 地下鐵 ——— 2・3號線 7.3km

財 政

〈 總規模 601億 〉

- 一般會計 ——— 589億('91對比 16%增加)
- 特別會計 ——— 12億('91對比 12%減少)



〔財政運用〕

- 稅 收 —— 公平課稅・脫漏防止・徵收率提高
- 投 資 —— 區民福祉增進・低所得層生活安定
- 執 行 —— 適 期 執 行・緊 縮 運 用

區 政 方 向

—〈 40萬의 和合, 내고향 西大門가꾸기 〉—

- 快 適 한 都 市 環 境 造 成
- 區 民 福 祉 및 生 活 便 益 增 進
- 鄉 土 ・ 文 化 意 識 의 高 揚
- 새 질 서 ・ 새 생 활 運 動 實 踐
- 和 合 參 與 와 奉 仕 行 政 具 現

條例審查特別委員會

1992年 3月 31日 第8回 臨時會 閉會期間中 開會된 條例審查特別委員會는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7件의 條例案 審査와 改正된 地方自治法 및 施行令의 規定에 依하여 整備되어야 할 議會條例 6件, 規則 2件의 改正案을 議員發議하여 總 15件의 議案을 審査하여 第9回 臨時會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1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全文改正案으로 第1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雇傭職의 技能職轉換에 따른 關聯規定의 改正과 一部 不合理한 條文을 整備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① 雇傭職公務員은 區廳長이 任命한다.
- ② 雇傭職公務員의 新規任用 年齡은 14歲 以上 20歲 까지로 한다.
- ③ 防犯員을 警察署 또는 派出所에 派遣勤務케 할 수 있다.
- ④ 勤務上限年齡: 防犯員-53歲, 輕勞務使喚-23歲
- ⑤ 條例의 施行을 위한 施行規則 制定
- ⑥ 附則中 經過措置 2,3項 新設

2) 審査 結果

總務課長の 提案説明을 듣고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主要 質問 및 答辯 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22個 洞에 雇傭職 人員이 全部採用 되어 있는지, 防犯員의 總現況과 缺員補充을 하지 않는 理由	○ 洞에 勤務하고 있는 雇傭職 使喚은 全員採用되어 있으며 防犯員은 西大門, 西部警察署, 管內 派出所에 158名 勤務하고 있으며 國家事務인 警察業務를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는 矛盾을 改善하기 위함.
○ 防犯員의 缺員時는 新規採用을 않도록 되어 있는데 缺員에 對한 對策은 무엇인지	○ 政府方針上 防犯員은 義警으로 代替하기 委하여 新規採用은 않고 있음.
○ 防犯員은 어느 機關所屬 公務員으로 보며, 이들의 統率과 位階秩序上의 蹉跎等 問題點에 對한 意見은	○ 防犯員의 身分은 西大門區의 雇傭職 公務員이며 職務의 特性上 警察署 및 派出所派遣勤務를 條例로 定한 바 있어 警察廳에서 指揮 監督을 받고 있음.
○ 洞使喚의 報酬規定은 級數에 依하여 差等이 생기는지, 人事管理條例에 報酬規定이 따로 있는지, 備品 및 高價 裝備의 紛失等 防止對策은	○ 洞使喚은 雇傭職經勞務員으로 報酬規定이 別途로 있으며 清掃 및 區廳 文書 私送等 심부름 程度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責任問題가 될 業務는 取扱치 않고 있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2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制定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制定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西大門區 地方財政計劃의 樹立에 關한 地方自治團體長의 諮問에 應하고 地方財政計劃의 實効性を 確保하기 爲하여 地方財政法 第16條의 2 規定에 依하여 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① 地方財政을 計劃性있게 運用하기 爲하여 綜合的인 中·長期計劃을 樹立

- －地方財政의 運營 方案 및 財源調達에 關한 事項
- －投資事業 樹立에 關한 事項
- －其他 區廳長이 附議하는 事項

② 委員會의 構成 및 會議

- －委員：15人以內(區廳 局長級, 區議會議員, 經驗이 豊富한 專門家 및 地域代表)
- －會議：定期會와 臨時會로 區分(會議時 會議錄 作成)

2) 審查 結果

企劃豫算課長의 提案說明을 듣고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查한 結果 第3條의 審議委員에서 區議員은 除外토록 하는 修正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으며 修正案과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修 正 案】

가) 修正理由

- － 地方財政의 計劃性있는 運營을 爲하여 構成되는 財政計劃審議委員會에 財政計劃을 審議承認하는 區議員의 參與보다는 專門性を 가진 地域 住民

代表가 參與케 하는 것이 效率的이므로 區議員은 審議委員에서 除外
나) 主要骨子

－ 條例案 第3條(構成) 第3項中 區議員을 削除 修正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地方財政의 運營, 調達, 投資事業의 具體的인 事例는	○ 5個年計劃 目標에 따라 中期財政計劃을 樹立, 人口 및 開發趨勢와 產業體現況等 모든 與件을 網羅하여 開發財源의 所要와 充當을 把握하는 것으로 具體的인 事項은 5月中 議會에 別途 報告할 것임.
○ 財政計劃審議委員會는 區全體의 財源을 論議하는 것외 區廳長이 附議하는 事項을 論議토록 되어 있고 15名의 委員中 區廳公務員들이 7名으로 되어 있어 區廳長이 附議한 案件에 部下들로 構成된 委員會가 얼마나 客觀的인 審議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局長은 區政의 各分野에 實質的인 最高頂點이며 區廳長은 이를 總括하는 立場으로 區의 財政基本計劃을 審議하는 委員會에 實務者 次元에서 包含되어야 한 것으로 生覺하며 同條例案 第2條에 다음 各號를 審議한다고 되어 있어 議決은 아니기 때문에 區廳長을 拘束하는 것도 아니고 審議效力上 區政에 絶對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님.
○ 財政計劃은 議會에 提出되어 別途로 審議檢討할 事項으로 알고 있는데 區議員을 委員으로 委囑하는 것은 此後 審議와 重複되는 矛盾이 있다고 보는데 區議員을 委囑코자 하는 理由는 무엇인지	○ 地方財政計劃은 區廳에서 樹立하여 自體審議를 거쳐 區議會 및 內務部에 提出토록하는 節次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區議員의 委囑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審議委員中 一般委員의 要件에서 經驗이 豊富한 專門家 및 地域代表라 하였는데 公認會計士 및 會計士資格者라는 但書條項을 明示하는 方案講究	○ 公認會計士를 委員으로 委囑할 수 있도록 하자는 意見에 全的으로 同感하며 條例에서는 包括적으로 各分野의 專門家を 委囑할 수 있도록 하고 施行規則에서 公認會計士를 明示하여 包含시키도록 할 것임.

【討論要旨】

- － 區議員은 此後 議會의 財政計劃審議時 參與하게 됨으로 委員委囑에서 除外하고 財政分野의 專門家を 代身 委囑할 수 있도록 條例案을 修正함이 合理的이라고 判斷됨.
- － 委員會의 運營의 妙는 區廳長에게 委任하고 運營에 必要한 專門家の 概念等은 施行規則에서 定하도록 함이 合理的임.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1月 22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0年 11月 6日字로 改正된 地方財政法施行令에 의거 共有財産의 貸付料等を 算定함에 있어 公示地價를 利用하여 財産價額을 算定함에 따라 一部地域의 貸付料等の 算出額이 急増하지 아니하도록 貸付料 等を 調整하기 爲한 서울特別市共有財産管理條例가 改正됨에 따라 自治區의 條例를 改正, 整備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區有財産을 繼續해서 2個年度 以上 占有하거나 使用, 收益하는 境遇에 前年度

年間貸付料보다 10%以上 増加한 境遇에는 負擔이 急増하지 않도록 下向調整함.

2) 審査 結果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듣고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 一致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主要質問答辯 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國有地 長期占有時는 拂下받을 수 있는 大法院 判例가 있는데 同條例를 改正하여 占用料를 輕減코자 하는 것은 2年 以上 長期占有者에게 惠澤을 주자는 趣旨가 아닌지	○ 惠澤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賦課 基準의 變更으로 占用料가 一時에 큰 폭으로 引上되는 問題點을 解消하기 爲한 方案으로 思料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家有功者團體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1月 25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制定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1991年 12月 14日 改正公布된 地方稅法 第107條, 第184條, 第234條의 12 規定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收益事業에 使用하는 境遇에 課稅免除를 排除하고 있어 國家有功者團體의 境遇에는 存立을 爲한 建物賃貸事業이나 其他 收益事業用 不動產도 모두 課稅對象으로 轉換된 바 特別法으로 團體構成을 支援하는 趣旨로 볼 때 地方稅法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減免條例를 制定하여 稅制支援을 하기 爲한.

나) 主要骨子

- ① 國家有功團體가 賃貸業 및 其他 收益事業에 活用하기 爲하여 取得 또는 所有하는 不動產에 對하여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 免除

② 同條例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

2) 審査 結果

稅務1課長의 提案說明을 듣고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主要 質問答辯 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西大門區 管內 國家有功團體 및 所有建物은 없는 것인지 鄉軍會館도 該當되는 團體인지 與否	○ 管內 課稅免除되는 國家有功者團體는 없으며 鄉軍會館은 對象이 되지 않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家畜飼育制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1月 13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그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家畜飼育制限條例의 根據法인 廢棄物管理法 第35條 第1項이 1991年 3月 8日 制定公布된 污水·糞尿및畜產廢水의處理에關한法 第34條 第1項으로 變更됨으로써 現行 條例의 該當事項을 改正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條例의 根據法을 廢棄物管理法 第35條 第1項에서 污水·糞尿및畜產廢水의處理에 관한法 第34條 第1項으로 改正

2) 審査 結果

産業課長의 提案說明을 듣고 審査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2月 27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都市가스의 普及擴大을 爲하여 制定된 現行 條例는 “基金은 區廳長이 管理”토록 包括的으로 明示하고 있으나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의 規定에서 基金을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爲하여 基金種類別로 基金運營官을 指定토록 하고 있어 都市가스設置基金의 運營官을 두는 條項을 新設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區廳長은 基金의 收入, 支出에 關한 事務를 行하기 爲하여 基金出納 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둔다.

【基金出納命令官 - 産業課長, 基金出納公務員 - 燃料係長】

2) 審査 結果

産業課長의 提案說明을 듣고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 一致로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會計關聯 規定을 보면 財務課 所管에 支出官이나 出納官이 있는데 都市가스 基金管理는 産業課長이나 係長이 支出官 또는 事業命令官으로 되어 있어 모든 權限을 가짐에 따라 非理 또는 業者와의 담합등 問題素地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分離改善	○ 基金의 效率的인 運營을 爲하여 基金의 主管部署에서 管理토록 하고 있으며 基金은 銀行에서 管理하고 있고 都市가스施設의 竣工根據에 依하여 支出토록 하고 있어 非理의 素地는 없음. 産業課에서 主管하는 業務에 對한 事項을 다른 部署에서 處理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할 用意와 融資金의 未償還등에 대한 問題處理는	하기는 어려운 事項이며 融資金의 償還은 銀行에서 貸出時 保證과 後續節次에 따른 事項으로 銀行에서 責任질 問題임.

【討論要旨】

- 基金도 區民의 税金으로 造成된 것으로 未償還에 따른 基金缺損이 發生하지 않도록 管理에 萬全을 기하여야 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家族計劃事業은 1960年代부터 政府가 推進해 오면서 多様な 社會支援施策 等으로 括目할 만한 成果를 올려 왔으나 언제나 無料로 할 수 있다는 認識이 깊어져 있고 國民의 避妊自費實踐率이 77% 以上인 現在, 一部 經濟的 負擔을 줄으로써 公衆意識을 排除함과 同時에 政府에서 普及하고 있는 家族計劃物品의 不必要한 浪費를 防止하기 위하여 먹는 避妊藥의 普及價格을 30원 引上하고 子宮內裝置 手數料를 新設하여 그 收入額을 家族計劃事業에 再活用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普及手數料 改正

品 名	現 行	改 正(新設)
1. 먹는 避妊藥(1個月分)	200원	230원
2. 子宮內 裝置(1件當)	—	2,000원

○ 子宮內 裝置手數料 收入 再活用

- ┌ 避妊施術 副作用 事後管理費：1,000 원
- └ 家族計劃事業 再活用：1,000 원

2) 審査 結果

保健行政課長の 提案説明을 듣고 審査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31日 崔容完 議員外 7人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1年 12月 31日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의 規定에 依據 自治區議會에도 常任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게 됨에 따라 常任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관한 事項을 條例로 定하기 爲한.

나) 主要骨子

① 常任委員會 設置와 委員의 定數

- ┌ 議會運營委員會：委員 7名
- └ 總務委員會：委員 14名
- └ 都市建設委員會：委員 13名

② 常任委員長과 委員의 任期 및 選任方法

- ┌ 任 期：2年
- └ 選任方法：委員長－本會議 選舉, 委員－議長の 推薦事項을
本會議에서 議決

③ 常任委員會의 小委員會 構成機能

2) 審查 結果

崔容完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討論을 거쳐 審查한 結果 滿場一致로 崔容完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運營委員會는 議會運營 全般에 關한 事項을 決定하기 때문에 多數의 意見이 좋은 結果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아 委員數를 9名으로 함이 合理的임.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公印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31日 朴老鉉 議員外 7人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1年 6月 19日 大統領令 第13390號로 制定된 事務管理規定과 1991年 9月 30日 總理令 第395號로 同 施行規則이 制定됨에 따라 公印의 管理와 官守의 忠實을 期하기 爲하여 現行規定을 廢止하고 이를 條例로써 定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① 公印의 區分：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長，各 常任委員長，事務局長의 公印 制定

② 公印의 規格

公印名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서울特別市西大門 區議會議長	常任委員長	事務局長
規格	3.6cm × 3.6cm	2.4cm × 2.4cm	1.8cm × 1.8cm	1.8cm × 1.8cm

③ 常任委員長의 公印은 議會內 發信公文에 使用(議長承認時 對外使用 可能)

④ 交付 및 登錄：事務局長이 새겨 交付하고 登錄臺帳에 登載

⑤ 管理 및 保管責任：議政係長

2) 審査 結果

朴老鉉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 一致로 朴老鉉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31日 金平洛 議員外 7人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2年 2月 15日 大統領令 第13586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 規定에 依據 現行 條例의 關聯事項을 改正 整備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①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監査를 實施한다.
- ② 行政事務의 調査는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거나 所管 常任委員會를 確定하여 回附한다.
- ③ 監査計劃書는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委員會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作成한다.

2) 審査 結果

金平洛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討論을 거쳐 審査한 滿場一致로 金平洛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 日費와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31日 郭載滿 議員外 7人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1年 12月 31日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施行令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正된 地方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支給에 關한 事項을 整備 改正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도 旅費를 支給토록 함.

2) 審査 結果

郭載滿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一致로 郭載滿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
關係公務員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31日 鄭炳八 議員外 7人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1年 12月 31日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常任委員會에도 關係公務員이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도록 關聯規定을 改正整備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常任委員會에도 關係公務員이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도록 함.

2) 審査 結果

鄭炳八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一致로 鄭炳八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3月 31日 趙敏行 議員外 7人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1年 12月 31日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82條 및 第84條의 規定에 依하여 議會事務機構와 幹事의 名稱이 變更되었기 關聯事項을 整備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議會事務機構”를 “議會事務局”으로, “幹事”를 “事務局長”으로 한다.

2) 審查 結果

趙敏行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討論을 거쳐 審查한 結果 滿場一致로 趙敏行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나. 規則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 提 案

이 規則案은 1992年 3月 31日 李鳳洙 議員外 7人이 發議한 改正規則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1年 12月 31日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와 同法 第82條 및 第84條의 規定에 依據 常任委員會 設置 및 運營, 事務機構의 名稱變更

事項等 現行 會議規則과 關聯된 事項을 整備 改正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① 西大門區議會事務機構를 西大門區議會事務局으로 하며 幹事を 事務局長으로 한다.
- ② 議員의 議席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決定한다.
- ③ 議事日程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을 境遇 議長이 決定한다.
- ④ 提出된 議案은 本會議에 報告한 後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 審査하고 審査結果를 本會議에 上程한다.
- ⑤ 委員會에서 提出한 議案은 그 委員會에 回附하지 아니한다.
- ⑥ 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連席會議를 열 수 있으나 表決은 할 수 없다.
- ⑦ 豫算과 決算의 審査는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豫備審査를 하고 그 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하며 議長은 이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審査回附한다.

2) 審査 結果

李鳳洙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9名中 5名の 贊成으로 李鳳洙 議員 發議 原案을 可決하였으며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議長이 급히 必要한 境遇 單獨으로 事態가 解決될 때까지 警察官의 派遣을 即時 要請할 수 있다는 規定은 議長의 獨斷을 防止하기 위하여 事後 運營委員會의 動議를 얻도록 함이 바람직함.
- 緊急한 事態時 議長의 權限으로 이를 防止할 수 있는 迅速한 措置를 취하는 것은 當然한 事項으로 事後 運營委員會의 動議를 求하는 것은 不合理한 節次이며 效果性이 없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請願審査規則案

1) 提 案

이 規則案은 1992年 3月 31日 具滋億 議員外 7人이 發議한 改正規則案으로서 第1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3. 31)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1991年 12月 31日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委員會設置)에 常任委員會를 設置토록 規定되어 있어 區議會에 接受되는 請願을 深度있게 審査하기 위하여 既存規定을 廢止하고 規則으로 制定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① 請願書에는 請願의 趣旨와 理由를 具體적으로 明示하여야 하며 議員의 紹介가 있어야 한다.
- ② 議長은 請願法 第5條, 第8條 및 地方自治法 第66條에 該當되어 受理하지 아니할 境遇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 紹介議員과 請願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③ 請願은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査하되 特히 必要할 境遇 本會議의 議決로 請願審査特別委員會를 構成, 審査回附할 수 있음.
- ④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치 않기로 한 請願에 대하여 在籍議員 1/3以上 要求가 있을시는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2) 審査 結果

具滋億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具滋億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第 9 回 臨 時 會

 本 會 議

第9回 臨時會

- 會 期：1992年 4月 7日 ~ 4月 9日(3日間)
- 集會要求者：崔容完 議員外 11人

概 況

第9回 臨時會는 1992年 4月 7日 開會되어 3日間の 會期로 條例審査特別委員會에서 審査後 上程된 區廳長 提出 條例案 7件과 地方自治法の 改正에 따라 議員發議된 議會條例案 6件, 規則案 2件의 審議를 爲하여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成明濟委員長의 審査結果 報告와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深度있는 審議를 爲하여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하였으며 本會議에서 發議된 修正案을 審議 處理함으로써 最高議決機構인 本會議의 慎重한 審議處理를 爲하여 萬全을 기하였다.

아울러 地方議會間 情報交流와 相互補完을 通한 議政活動의 活性化에 寄與하기 爲하여 朴老鉉, 金鍾彩 議員外 6人이 發議한 西大門區議會와 巨濟郡議會間 姉妹結緣決議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이를 推進토록 하였으며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6條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되는 1991年度 西大門區歲入歲出決算書의 檢查를 爲하여 議長이 推薦한 3名の 議員을 滿場一致 議決로 決算檢查委員에 選任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決算檢查委員 選任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및實費辨償條例 第2條및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되는 1991年度 西大門區歲入歲出決算書에 對한 檢查를 遂行할

委員은 3名 全員을 區議員으로 하며 檢査委員은 議長이 推薦하는 議員으로 選任하여 주기 바라는 議長의 提案을 받아들여 滿場一致로 다음과 같이 決算檢査委員을 選任하였다.

【決算檢査委員 名單】

李鳳洙 委員(峴底洞). 朴正來 議員(南加佐1洞). 鄭炳八 議員(弘恩2洞)

2. 議案處理

가. 條例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地方公務員任用令 改正에 따라 雇傭職公務員이 機能職公務員으로 轉換되었으므로 이와 關聯된 規定을 整備하기 爲하여 1992年 3月 1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의 審查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總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이 條例案은 地方財政法의 改正에 따라 自治區에 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하고 運營하기 위한 規定을 마련하기 爲하여 1992年 3月 2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의 審查結果 修正案을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企劃豫算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修正한대로 區廳長 提出案을 修正하여 可決하였으며 本會議에서 條例案을 修正한 要旨는 다음과 같다.

【 修 正 要 旨 】

條例案 第3條 第3項의 委員 構成中 區議員은 委員에서 除外한다.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0年 11月 6日 改正公布되어 1992年 1月 1일부터 施行되는 國有財産法施行令에 依하여 區有財産의 占用料를 算定함에 있어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財産價額을 算定토록 함으로써 急激히 占用料가 引上된 바 이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기 爲한 서울市의 條例改正을 根據로 1992年 1月 22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의 審查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家有功者團體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國家有功者團體에서 賃貸業및 收益事業用에 活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不動産에 對하여 區稅課稅를 免除하기 爲하여 1992年 1月 25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의 審查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稅務1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家畜飼育制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家畜飼育制限條例의 根據法인 廢棄物管理法 規定이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處理에 關한 法律 規定으로 變更된 바 있어 이를 改正하기 爲하여 1992年 1月 13일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查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産業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基金의 運營을 區廳長이 管理토록 包括적으로 規定한 現行條例의 規定을 補完, 別途 基金運營官을 規定하기 爲하여 1992年 2月 27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查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産業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먹는 避妊藥의 供給價額을 現實적으로 引上하며 家族計劃事業의 一環으로 政府가 無料로 施術하던 避妊裝置 施術費를 徵收하여 公衆意識의 排除를 爲하여 1992年 3月 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查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保健行政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을 거쳐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主要 質問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條例를 改正하여 그동안 받지 않은 避妊裝置費를 2,000원씩 徵收하여 不妊施術協會와 家族計劃協會에 各 1,000원을 支援하는 理由는 무엇이며 合當한 措置인지 與否	○避妊의 副作用을 治療하기 爲하여 費用은 國家負擔으로, 避妊裝置費用 2,000원중 1,000원은 大韓不妊施術協會에 支援 積立하여 施術費用으로 쓰도록하고 있으며 家族計劃事業을 委任받아 推進하고 있는 家族計劃協會에 1,000원을 補助하여 再活用하고 있음.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地方自治法이 自治區議會에도 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改正됨에 따라 常任委員會 設置및 運營에 關한 規定을 新設하기 爲하여 1992年 3月 31日 崔容完 議員外 7人의 發議로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崔容完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崔容完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委員會에서 可決된 改正條例案에 對한 金源珠 議員外 7人의 修正案이 發議되어 滿場一致로 可決함에 따라 改正條例案을 修正可決하였으며 그 修正案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修正案要旨】

提案理由:議會運營에 關한 事項의 深度있는 審査를 爲하여 委員數를
增員하기 爲함.

主要骨子:議會運營委員 定數를 7名에서 9名으로 調整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地方自治法 改正에 따라 設置되는 常任委員會에서 行政事務
監査및 調査를 實施할 수 있도록 關係規定을 改正하기 爲하여 1992年 3月 31日
金平洛 議員外 7人이 發議하여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査特別委員會에 回附, 委
員會 審査結果 金平洛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
(1992. 4.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金平洛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金平洛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32條및 同施行令 第15條의 規定에 依하
여 議員의 旅費를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에도 支給토록 改正하기 爲하
여 1992年 3月 31日 郭載滿 議員外 7人의 發議로 제출되어 1992年 3月31日 條
例審査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郭載滿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郭載滿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郭載滿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
다.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82條및 第84條의 規定에 依하여 議會事

務機構와 幹事의 名稱을 事務局과 事務局長으로 改正하기 爲하여 1992年 3月 31日 趙敏行 議員外 7人의 發議로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查結果 趙敏行 議員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趙敏行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趙敏行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50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되는 常任委員會에도 關係公務員이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1992年 3月 31日 鄭炳八 議員外 7人의 發議로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查結果 鄭炳八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鄭炳八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鄭炳八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公印條例案

이 制定條例案은 大統領令 第13390號로 制定된 事務管理規定과 總理令에 依하여 公印의 官守와 管理를 忠實히 하기 爲하여 現行 議會公印規定을 廢止하고 이를 條例로 定하기 爲하여 1992年 3月 31日 朴老鉉 議員外 7人의 發議로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查結果 朴老鉉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朴老鉉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朴老鉉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1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이 改正規則案은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50條, 第82條, 第84條의 規定에 依하여 常任 委員會設置, 事務機構와 幹事의 名稱變更等 會議規則과 關聯된 事項의 整備을 爲하여 1992年 3月 31日 李鳳洙 議員外 7人의 發議로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李鳳洙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李鳳洙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李鳳洙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1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請願審查規則案

이 制定規則案은 地方自治法 改正에 따른 常任委員會 設置로 常任委員會에서 請願을 審査할 수 있도록 하고 現行 規定을 廢止하고 規則을 制定하여 效果的인 請願處理와 內實을 기하기 爲하여 1992年 3月 31日 具滋億 議員外 7人의 發議로 提出되어 1992年 3月 31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具滋億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7)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具滋億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具滋億 議員 發議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나. 決議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와慶南巨濟郡議會間姉妹結緣에關한決議案

가) 提 案

이 決議案은 1992年 4月 3日 朴老鉉, 金鍾彩 議員外 5人이 發議한 決議案으로서 主文과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 主 文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와 慶尙南道 巨濟郡議會는 姉妹結緣을 締結하여 定期的인 交流와 議政發展을 爲한 相互協力을 바탕으로 共同的 利益을 推進한다.
- 議政發展, 地方行政, 文化藝術等 地域發展을 爲한 共同關心事の 推進과 交流의 活性化를 爲한 方案을 講究한다.
- 姉妹結緣의 締結을 爲한 約定書를 作成하여 署名後 交換한다.

○ 提案理由

- 30年만에 復活된 地方自治制 實施로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天惠의 資源과 歷史的인 名所가 많고 産業化의 過程에 있는 慶尙南道 巨濟郡議會와 姉妹結緣을 締結함으로써 두 議會間의 交流를 通한 友誼增進과 議政活動의 比較研究等 地方自治의 發展과 地域間 和合에 寄與코자 함.

나) 審議經過 및 結果

提案者인 金鍾彩 議員으로부터 提案說明과 그동안 實務推進을 爲하여 朴老鉉 議員과 함께 巨濟郡議會를 訪問하여 協議한 結果및 推進經過報告가 있었으며 議員들의 質問에 對한 答辯과 議長의 補充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決議文을 採擇하여 巨濟郡議會와의 姉妹結緣案을 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와 採擇된 決議文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姉妹結緣 調印의 形式은 相互 訪問하여 1次 假調印, 2次 正調印하는 것이 議會間의 相互尊重을 爲하여 合理的임.
- 農漁村地域과 姉妹結緣을 함으로써 都農間의 理解增進을 圖謀하며 地域開發에 對한 都市의 經驗을 傳達함으로써 姉妹結緣의 效果가 더욱 增大될 것임.

— 【 決議文 】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와 慶尙南道 巨濟郡議會는 아래와 같은 內容으로 姉妹結緣을 締結한다.

1. 定期的인 相互 訪問과 交流를 圖謀한다.
2. 議政活動, 地方行政, 文化藝術, 地域發展을 爲한 交流의 活性化를 爲하여 努力한다.
3. 相互 努力을 通하여 共同의 利益을 圖謀하는 事業을 推進한다.
4. 相互 訪問時 親善에 立脚하여 最大限 便宜를 提供한다.
5. 結緣內容은 相互 協議에 依하여 修正할 수 있다.
6. 姉妹結緣은 두 議會 議長이 參席한 가운데 姉妹結緣 約定書에 署名함으로써 締結되고 그때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第 10 回 臨 時 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第10回 臨時會

- 會 期 : 1992年 4月 27日 ~ 4月 29日(3日間)
- 集會要求者 : 鄭赫柱 議員外 9人

概 況

第10回 臨時會는 鄭赫柱 議員外 9人의 集會要求로 1992年 4月 27日 開會되어 4月 29日 閉會되었다. 會期는 3日間으로 1次 本會議에서는 議長이 議員들의 意見を 反映하여 提案한 常任委員會別 委員選任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常任委員會를 構成하였으며,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의 議決로 改正된 委員會條例中 改善의 餘地가 있다고 認定되는 常任委員長과 委員의 任期에 關한 規定을 改正하기 爲한 金平洛 議員外 7人이 發議한 西大門區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最初 選出되는 常任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現任 議長團의 任期와 같게 함으로써 向後 議長團과 常任委員長의 選舉를 同時에 할 수 있도록 하여 議會運營의 連續性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2次 本會議에서는 選舉를 通하여 3個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을 選出하였으며 第9回 臨時會 本會議에서 選任된 決算檢査委員中 常任委員長으로 選出된 鄭炳八, 李鳳洙 議員을 鄭日出 議員과 金廷炫 議員으로 改選할 것을 議長이 提案하여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本會議 散會後 各 常任委員會別로 最初常任委員會를 開議하여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하고 口頭呼薦 또는 投票를 通하여 幹事を 選任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常任委員 選任

第10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4. 27)는 西大門區議會 委員會條例의 規定에 依하여 常任委員會 委員選任의 件을 上程, 議員들이 提出한 意見을 參考하여 議長이 配定한 事項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常任委員會別 委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 常任委員會 委員 名單

議會運營委員會	總務委員會	都市·建設委員會
鄭炳八 議員 鄭日出 議員 具滋億 議員 宋榮于 議員 朴老鉉 議員 李文馥 議員 金鍾彩 議員 成明濟 議員 崔容完 議員	全聖章 議員 姜碩宗 議員 鄭日出 議員 金源珠 議員 金永一 議員 宋榮于 議員 全在煥 議員 趙敏行 議員 尹益洙 議員 朴老鉉 議員 李文馥 議員 林在鮮 議員 金鍾彩 議員 鄭赫柱 議員	金平洛 議員 具滋億 議員 鄭日洙 議員 李鳳洙 議員 左斗行 議員 金廷炫 議員 丁和鎭 議員 曹甲鉉 議員 崔容完 議員 郭載滿 議員 朴正來 議員 成明濟 議員

나. 常任委員長 選舉

常任委員長の 選舉는 第2次 本會議(1992. 4. 29)에서 議長選舉에 準하여 無記名 投票로 實施되었으며 出席議員 28名의 投票結果 議會運營委員長은 鄭炳八 議員, 總務委員長은 林在鮮 議員, 都市建設委員長은 李鳳洙 議員이 各各 選出되었으며 投票結果는 다음과 같다.

【議會運營委員長 選舉】

— 投票議員數 28名 — 監票議員：李文馥 議員

— 投票 結果

鄭炳八 議員：21票, 朴老鉉 議員：2票, 成明濟 議員：1票, 宋榮于 議員：1票

金鍾彩 議員：1票

——【總務委員長 選舉】——

- － 投票議員數 28名 － 監票議員：金源珠 議員
- － 投票 結果
林在鮮 議員：23票, 趙敏行 議員：2票, 全聖章 議員：1票, 宋榮于 議員：1票
金永一 議員：1票

——【都市建設委員長 選舉】——

- － 投票議員數 28名 － 監票議員：金廷炫, 鄭日洙 議員
- － 投票 結果
李鳳洙 議員：23票, 丁和鎮 議員：2票, 金平洛 議員：1票, 具滋億 議員：1票
金廷炫 議員：1票

다. 決算檢查委員 改選

第9回 臨時會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된 決算檢查委員 鄭炳八 議員과 李鳳洙 議員이 健康과 一身上의 理由로 辭意를 表明한 바 있어 議長이 이를 受理하고 第10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 報告하였으며 決算檢查委員 改選에 關한 件을 上程하여 議長이 推薦한 鄭日出 議員과 金廷炫 議員을 決算檢查委員으로 改選할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 決算檢查委員會 改選現況

改選前	改選後
鄭炳八 議員, 李鳳洙 議員, 朴正來 議員	鄭日出 議員, 金廷炫 議員, 朴正來 議員

2. 議案處理

가. 條例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가)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4月 27日 金平洛 議員外 17人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으로서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 提案理由

第9回 臨時會 本會議에서 議決되어 改正된 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의 常任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規定되어 있어 現任 議長團의 任期와 一致하지 않아 議會運營에 不合理한 點이 있어 最初 構成된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를 1993年 4月 15日까지로 改正하여 向後 議長, 副議長, 常任委員長 選出과 委員選任을 同時에 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함.

○ 主要骨子

一 最初 構成된 常任委員會의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1993年 4月 15日까지로 한다.

나) 審議經過 및 結果

이 條例案은 1992年 4月 27日 第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 上程되어 提案者인 金平洛 議員의 提案說明이 있었으며 滿場一致로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概 況

第10回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4. 29)는 常任委員會 構成 以後 最初로 開議된 會議로서 鄭炳八 委員長의 能率의 議會運營을 다짐하는 人事後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 崔容完 委員의 口頭呼薦대로 朴老鉉 委員을 滿場一致로 幹事로 選任하였다.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는 第10回 臨時會가 閉會中인 1992年 6月 15日 開議하여 專門委員으로부터 第10回 臨時會 以後 議會에 提出된 議案과 請願現況 및 議會

運營에 관한 主要現案을 報告받은 후 第11回 臨時會 議事日程과 其他 案件을 上程하여 審査議決하였다.

1. 案件處理經過 및 結果

가. 第11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에關한件

이 案件은 第11回 臨時會 會期와 議事日程에 對한 議長의 協議事項을 處理하기 爲한 事項으로 委員會 審査結果 第11回 臨時會의 會期는 1992年 6月 22일부터 6月 26일까지 5日間으로 하며 議會運營의 活性化와 區政에 對한 研究檢討를 爲하여 區政質問을 實施할 것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와 審査結果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議會活動의 活性化와 區政에 對한 研究檢討를 爲하여 第11回 臨時會에서는 區政質問이 實施되어야 함.
- 常任委員會의 議案審査는 第11回 本會議 開會 以前에 委員會를 開會하여 審査를 完了함으로써 本會議의 會期를 能率의으로 活用할 수 있음.

【審査結果】

第 11 回 臨 時 會 會 期	議 事 日 程			
	6.22	6.23—6.24	6.25	6.26
1992. 6. 22~6. 26 (5日間)	1次 本會議 1次 委員會	2,3次本會議 區政質問實施	休會	4次 本會議 議案및請願處理

나. 條例審査特別委員會運營에關한件

이 案件은 第6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의 議決로 設置 運營되고 있는 條例審査特別委員會가 地方自治法の 改正에 따라 設置된 常任委員會機能의 活性化를 爲하여 繼續 存續되어 運營될 必要性이 있는가를 檢討하기 爲한 案으로 全萬鎮 事務局長의 他區議會 條例審査特委 運營事例와 專門委員의 法規的인 側面과 現實的인 運營方案에 對한 檢討報告를 聽取한 後 審議, 討論結果 條例審査特別委員會

는任期까지存續시키되委員改選等具體的인事項은本會議에上程하여全體議員의意見을收斂處理하기로議決하였다.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西大門區民의 便益을 爲하여 不合理한 條例를 改正整備하기 爲한 條例審査特別委員會는 條例整備라는 特殊性을 勘案 專門性을 堅持하기 爲하여 繼續 存續되어야 하네 問題點이 있다면 常任委員會와 折衝하여 推進되어야 함.
- 條例審査特別委員會는 常任委員會構成 以前에 設置되었기 때문에 委員構成이 一部 常任委員會에 偏重된 感이 있어 效果的인 條例整備를 爲하여 各 常任委員會의 委員이 高루 參與할 수 있도록 改選의 餘地가 있음.

다. 常任委員會會議場使用에關한事項

이 案件은 常任委員會의 會議室이 別途로 設置되어 있지 않아 同時에 總務, 都市建設委員會가 開會될 境遇 問題點이 있어 이를 補完하기 爲한 方案으로 하나의 委員會가 開會될 境遇는 小會議室을 會議場으로, 同時에 開會될 境遇 總務委員會는 小會議室, 都市建設委員會는 4層 本會議場을 活用하기로 議決하였다.

라. 本會議議事進行에關한事項

이 案件은 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 第24條의 但書規定에 依據 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本會議에 上程된 案件에 對하여는 常任委員會에서 充分한 提案說明이 있었던 것으로 看做하여 本會議 提案說明은 省略하고 委員長의 審査 報告와 討論 및 表決로 處理함으로써 議事進行의 圓滑을 기하자는 趣旨의 案으로 審査結果 本會議의 審議를 忠實히 하기 爲하여 全體議員이 提案說明을 다시 들을 必要가 있다는 多數意見이 있어 表決結果 在席委員 9名中 5名の 贊成으로 否決되어 現行대로 本會議에서도 提案說明을하기로 議決되었다. 主要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本會議는 全體議員이 參與하는 審議機構로서 비록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充分한 審査가 있었다 하여도 全體議員의 意見이 反映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關係公務員의 提案說明을 다시 聽取함으로써 他 常任委員會 委員의 理解를 도울 수 있음.

- 所管 常任委員會의 審査機能은 專門性을 바탕으로 充分히 發揮되었다고 보아 本會議의 提案說明은 省略하고 關係公務員이 出席하여 常任委員長의 審査報告가 未洽하거나 疑問點에 對한 確實한 答辯을 할 수 있도록 함이 能率的인 會議 運營임.

마. 常任委員長室增築에關한件

이 案件은 常任委員會 設置에 따른 常任委員長室의 確保를 爲하여 議事堂 4層을 增築하기 위한 案으로 議政係長의 增築計劃에 대한 報告를 聽取한 後 推進經過와 向後 議事堂 建築問題 등에 대한 質問答辯이 있었으며 增築計劃案 中 2案인 共同委員長室과 會議室을 增築하자는 動議와 增築을 反對하는 動議가 있어 表決한 結果 增築案 2案이 在席委員 7名 中 4名の 贊成으로 議決되어 第11回 臨時會 本會議에 上程토록 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議會의 增築問題는 本會議에서 議決을 거쳐서 檢討되어야 할 事項이며 議會新築의 根本적인 解決方案이 講究된 後 檢討되도록 延期하는 問題가 討論되어야 할 것임.	區議會新築은 敷地確保等 問題點이 많아 어려운 實情으로 常任委員會의 圓滑한 運營을 爲하여 4層 增築이 不可避하며 議長團과, 常任委員長, 委員會幹事를 모시고 說明會를 開催하였으며, 本會議에 上程될 것임.

【討論要旨】

- 議會의 增築問題는 本會議에서 1次 增築與否를 決定하여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 充分한 檢討와 討論을 通하여 增築案을 樹立, 本會議에 上程하여야 함.
- 議會新築 與否가 充分히 檢討되어야 하나 常任委員會 運營을 爲하여 確保가 切實히 必要한 實情을 勘案할 때 增築을 하여 活用하고 向後 議會가 新築移轉될 경우 增築施設은 區廳의 事務室로 活用할 수 있는 價値가 있음.

第 11 回 臨 時 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 條例審查特別委員會

— 第11回 臨時會 —

- 會 期：1992年 6月 22日～6月 26日(5日間)
- 集會要求者：朴老鉉 議員外 9人

概 況

第11回 臨時會는 朴老鉉 議員外 9人의 集會要求로 1992年 6月 22日 開會되어 1992年 6月 26日 閉會되었다. 開會式에서는 都明正 區廳長의 主要業務 推進實績 報告가 있었으며, 第1次 本會議에서는 1992年 5月 1日字로 赴任한 鄭 喆 總務局長, 李厚稷 財務局長, 宋鍾權 都市整備局長의 赴任人事가 있었으며 專門委員로부터 議會에 提出되어 常任委員會에 審査回附된 議案의 現況과 陳情書 處理現況, 各 常任委員會 幹事選任 現況, 1992年度 歲入歲出決算檢査에 對한 經過報告를 들은 後 第11回 臨時會 會期決定에 關한 件을 上程하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한 議事日程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第2次 本會議는 6月 23日 開會되어 金平洛 議員이 提出한 區廳長 및 副區廳長의 出席要求에 關한 件을 上程하여 表決한 結果 贊成과 反對 모두 在席議員 過半數 未達로 否決되었으며 區政質問의 件을 上程하여 質問順序는 事務局에 接受된 質問要旨書 順序대로 하며 質問件數가 많은 關係로 質問時間은 15分內로 制限하는 議長의 提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으며 總 19名의 議員이 第3次 本會議인 6月 24日까지 2日間に 걸쳐 區政全般에 關한 質問答辯을 實施하였으며 第4次 本會議는 6月 26日 開會되어 常任委員會에서 審査되어 上程된 條例案 5件과 承

認案 2件, 建議案 1件, 請願 1件, 其他案 2件 總 10件的 案件을 審議處理하였다.

常任委員會는 第1次 本會議 散會後 總務委員會와 都市建設委員會가 第1次 會議을 開會하여 本會議에서 回附된 9件的 案件을 審査하여 第4次 本會議에 上程하였으며 閉會中 第2,3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常任委員會 所管 區政에 對한 業務報告를 聽取하고 區政質問을 實施하였으며 議會運營委員會는 第12回 臨時會 議事日程과 其他 議會運營에 關한 案件을 審査하였다.

條例審查特別委員會는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效果的인 條例審査를 爲한 運營方案을 討論, 이를 議決로 採擇함으로써 能率的인 委員會 活動計劃을 樹立하였다.

本 會 議

1. 議 會 活 動

가. 區政質問

1992年 6月 23日 第2次 本會議부터 6月 24日 第3次 本會議까지 區廳의 局, 室, 課長이 出席한 가운데 實施된 區政質問에서는 19名の 議員이 質問에 나서 그동안 地域活動에서 收斂된 民願과 議政活動에서 把握된 區政에 對한 問題點等を 바탕으로 一線 洞行政을 包含한 全行政分野에 對한 深度있는 質問答辯을 實施하였다. 質問答辯中 導出된 問題點은 是正토록 建議하였고, 改善方案等を 樹立하여 區政에 反映토록 하였으며 未洽한 答辯에 對하여는 書面으로 提出토록 하여 區政을 牽制하고 指導하는 議會의 役割遂行에 盡力을 다하였다. 主要 區政質問 및 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 및 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李文馥 議員〉 ○地方自治를 爲한 自治行政의 求心點과 區廳長의 腹案은 무엇인지 ○民願行政의 刷新을 爲한 推進計劃 및 成果에 대하여 ○公務員의 不滿解消를 爲한 人事行政 刷新方案은 무엇인지 ○物價安定을 爲한 商去來秩序確立 및 領收證 주고받기 管理監督 實態	○地方自治의 必要性은 民主主義政治制度의 具體化와 國民의 地方政治參與에 있으며 代議機構인 地方議會는 地方自治의 求心點임. 區廳長의 腹案은 議會와의 協力關係構築과 區民의 區政參與에 力點을 둘 것임.(總務局長) ○民願行政의 刷新을 爲한 推進計劃은 91.10月以後 3段階 새秩序 새生活實踐運動의 一環으로 不合理와 非能率을 追放하기 爲한 各種 制度의 運營實態, 區民의 不便事項, 不條理誘發要因에 대한 改善을 推進하고 있으며 副區廳長을 班長, 各 課長을 班員으로 對策班을 運營하고 있고 31件의 課題에 對하여 改善方案을 研究중에 있음.(總務局長) ○人事行政은 公務員 個個人的 能力發展과 業務能率向上을 기할 수 있도록 運營되고 있으며 昇進所要年數가 줄고 있는 關係로 不滿要因은 漸次 解消되고 있는 實情임.(總務局長) ○物價指導監督 및 商去來秩序 確立을 爲하여 總 7,722個 業所中 515個 業所를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環境保存과 水質汚染 防止를 爲한 收去式便所 改良實績 ○쓰레기 分離收去 弘報實績과 活性化 方案은 무엇인지	特別管理對象業所로 指定管理하고 있으며 監視班은 分野別로 5個班을 編成하여 週2回 以上 點檢을 實施하고 家庭主婦로 모니터 要員을 構成, 月2回 物價動向을 把握하고 있음. (市民局長) ○在來式 便所の 現況은 總 8,836個所이며 92年 5月 現在 改良實績은 268個所임. 改良對象은 주로 高地帶 庶民層이며 그동안 市費로 1個所當 20萬圓의 補助金을 支援하였으나 91年 12月31日까지로 期間이 滿了되어 改良實績이 不振한 狀態임. 向後 高地帶 老朽建物改良 및 再開發을 促進하면 많은 改良이 이루어질 것으로 豫想되며 改良을 積極的으로 勸獎하여 推進할 것임.(市民局長) ○分離收去 確行을 爲하여 共同住宅地域과 多衆 集合場所, 地下鐵驛舍, 公共機關및 公園等에 再活用品 保管容器를 設置하고 있으며 92.7.1부터 每週 水曜日は 一般쓰레기를 除外한 再活用品만을 收去하는 날로 指定, 運營할 計劃이며 TV자막 放映과 美化員 敎育을 強化하고 住民弘報를 積極實施할 計劃임.(市民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92年度 上半期 公開行政 其現實績 및 成果	○區政과 地域事業의 폭넓은 住民 參與 를 爲하여 公開行政을 推進하고 있으 며 區政을 昭詳히 알리는데 最善의 努力을 다할것임. — 區政報告會:47回 — 工事說明會: 3回 — 名譽監督官任命:36名 — 調整委員會: 2回 — 行政豫告制:288回 — 班常會會報發刊:69萬部 — 區政모니터運營:110名 — 豫算相談窓口 運營 (總務局長)
〈成明濟 議員〉 ○ 弘恩2洞 8-398, 429, 430, 431號 一 帶 都市計劃道路 開設 計劃과 時期	○ 弘恩洞 8-429 一帶는 서울시 告示 第 159號(83. 3. 19)로 都市計劃施設 決 定地域으로 地方中期財政計劃에 依據 94년부터 事業을 施行하여 96年度에 完了할 豫定임. — 工事概要: B=6m, L=150m — 事業費: 885,000千원 (書面答辯)
○弘濟3洞(옥천암入口)의 再開發工事 場(유원建設施工)附近에 約 90°의 급 커브길이 있어 交通事故가 多發함으 로 이 區間을 圓滑한 角度로 整備할 計劃은	○北部幹線高速化道路로 決定된 部分을 利用하여 道路線形을 變更時는 北部 幹線道路의 橋脚이 設置되는 地點이 며 都市計劃施設이 重複됨으로 道路 線 變更이 不可能함.(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弘恩2洞事務所앞 河川을 覆蓋하여 駐車場으로 活用, 이 一帶 地域의 駐車難을 解消할 用意는 없는지	○서울市河川管理委員會에서 弘濟川은 全區間이 分流下水管이 設置되어 있으므로 覆蓋가 不必要하며 現 狀態로 管理維持함이 妥當하다는 技術的 判斷이 있으나 北部幹線道路建設 竣工時 綜合整備計劃을 樹立, 綜合整備할 豫定임.(書面答辯)
〈趙敏行 議員〉 ○廣告物使用의 等級基準은 무엇이며 罰課金이 1年 使用料보다 비싼 理由와 使用料및 罰課金 徵收額의 使用處와 內譯을 밝혀주기 바람. ○駐車違反車輛에 附着하는 스티카의 接着力이 強하여 除去하는데 많은 不便을 주고 있으며 스티카 附着時는 過怠料가 賦課되는데 이런 不便을 주는 것은 改善되어야 함.	○廣告物道路(空間)占用料와 不法廣告物에 對한 不當利得金의 算出基準은 土地等級의 地價에 廣告物規格, 料率, 占用期間을 곱하여 算出하며, 徵收額은 20m 道路를 基準으로 하여 區收入과 市收入으로 區分되고 徵收額은 雜收入으로 一般會計 歲入에 計上되어 豫算으로 執行되고 있음. ○徵收實績은 道路(空間)占用料 778件 91,000千원, 不當利得金 2,657件 130,000千원임. (都市整備局長) ○現在 使用하는 不法駐車警告用스티카는 冬,夏節期用으로 製作되어 使用되고 있으며 冬節期에는 問題가 없으나 夏節期는 車輛유리창이 뜨거워 接着力이 倍加되는 傾向이 있음. 接着力이 弱化되는 方法을 檢討하여 冬,夏節期用을 區分製作하여 使用토록 方案을 講究할 것임. (都市整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뒷골목에 放置되어 있는 廢車에 대한 追跡調査를 確行하여 徹底한 依法處理를 할 用意는	○ 放置廢車에 對한 民願과 洞事務所의 報告가 있을 境遇 車籍照會를 거쳐 所有者에게 6日間の 期間을 두어 移轉토록하고 期間經過時 強制廢車하고 있으나 所有者에 對한 法的處罰 根據가 없는 實情으로 現在 法을 改正하고 있어 改正後 強力한 處罰과 團束이 可能할 것으로 豫想됨. (都市整備局長)
○ L.P.G가스販賣業所가 日曜日 同時休務를 하여 市民生活에 不便을 주는데 交代로 休務를 하는 方案을 講究할 用意는 없는지	○ 가스販賣業의 日曜日 同時休務는 서울市 全域이 同一한 實情으로 販賣業者는 休務없이 營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配達員들이 이를 忌避하고 있음. 이를 解消할 方案으로 盛需期와 非需期를 區分하여 非需期에는 月 2回 隔週休務, 盛需期에는 休務없이 正常營業토록 指導하고 있으며 需用家에게는 複數가스容器 活用을 勸獎하고 있음.(市民局長)
○ 쓰레기 收去用 비닐을 검은색에서 透明하게 바꾸어 分離收去到 效率性을 期할 用意는	○ 92年7月1日부터 一般住宅街에도 再活用品保管容器가 設置되어 指定收去制가 實施됨으로 쓰레기 비닐봉지 利用은 分離收去와 關聯이 없어지며 透明비닐은 製作費用이 더들어 利用者 負擔이 늘어남으로 慎重히 檢討되어야 할 事項임.(市民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住民登錄證은 寫眞接着式인 反面 運轉免許證은 寫眞複寫式으로 變造가 不可能하여 犯罪豫防에 도움이 될텐데 이를 建議, 改善할 用意는 ○病·醫院의 輪番制 休務日을 制度的으로 施行하여 市民醫療保護에 萬全을 기할 수 있는 方案講究	○內務部에서 法令을 改正하여 檢討할 事項이며 現在 住民登錄證 問題點을 補完할 수 있는 方案을 檢討中임. 免許證製作方式을 內務部에 建議할 것임.(總務局長) ○病·醫院의 休務는 自律的으로 運營하도록 되어 있어 輪番制 休務를 強制로 實施케 할 根據가 없는 實情이며 診療科目이 각기 다른 特性에 의하여 隔週休務는 實效性이 未洽함. 政府施策의 一環으로 休務中에도 緊急患者의 處理와 偶發事故를 對備, 機動運營班을 編成하여 運營하고 있으며 病·醫院 自體로 輪番制勤務를 實施, 隣近病院間 後送支援이 可能토록 되어 있음.(保健所長)
〈金平洛 議員〉 ○北加佐1洞廳舍가 老朽하고 비좁아 業務環境이 극히 劣惡하다고 보는데 增築 또는 移轉新築方案은 있는지	○北加佐1洞 廳舍는 1973.11.28 新築되어 老朽하며 業務量 및 人口增加로 廳舍가 비좁은 實情이나 現在 1層 68.4坪, 2層 50坪으로 建蔽率을 70% 超過하고 있어 3層 增築은 어려우며 隣接土地를 確保하여 再建築할 境遇 대략 垠地購入費 1億9千萬원, 建築費 4億원이 所要豫想되며 北加佐1洞廳舍를 包含한 5-6個洞廳舍를 長期計劃에 依하여 年次的으로 建立을 推進하고 있음.(總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清掃車輛과 컨테이너 管理實態와 現況 ○淨化槽清掃및 糞尿收去手受料 徵收에 따른 問題點 해소를 위한 代行業體 公開選定으로 獨占의 防止對策 講究	○쓰레기의 能率的 收去를 爲하여 固定式 9個, 道路邊移動式 24個로 總 33個가 收集積換作業을 하고 있으며 92.11.1 埋立地移動에 따라 大型壓縮車輛이 10月 경 購入增車됨으로 路邊 配置된 컨테이너 박스는 부득이한 地域을 除外하고는 最少化할 計劃임. 清掃車輛은 總 76臺이며 車輛稼動率 提高와 事故豫防을 爲한 日, 週, 月間 點檢을 實施하고 있으며 機能職을 確保, 車輛의 入・出庫時 故障與否를 點檢, 整備機能向上에 萬全을 기하고 있음.(市民局長) ○우리區의 代行業體는 新星淨化로 人力 40名, 車輛 14臺로 年55,000리터를 收去하고 있으며 代行業體의 指導團 束으로는 迅速收去履行을 爲하여 24時間內 또는 即時收去를 督勵하고 있고 從事員教育強化, 收去料金の 豫告制運營, 分期1回 以上 指導 點檢을 實施하고 있으며 市民輿論調査를 實施하여 問題點을 把握, 改善하고 있음. 代行業體公開選定은 이 業所가 保有하고 있는 人力과 裝備가 充分하며 西大門區의 人口趨勢가 減少하고 있는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北加佐洞 348-350番地上 水色路道路擴張工事區間の 1車線を 積換場으로 放置하고 있는 理由 ○南加佐1洞事務所앞과 梨花藥局間 건널목에 信號燈을 設置하여 交通事故防止對策을 세워줄 用意는 ○542番 路線버스의 區廳經由 運行方案 樹立과 不可能할 境遇 마을버스를 北加佐1洞事務所 앞 삼거리-50番終點-홍남교에서 合流할 수 있도록 對策樹立	實情으로 1個業所를 追加 選定할 境遇 限定된 物量으로 채산성이 惡化되어 裝備의 零細化 憂慮가 있어 결국 住民負擔의 加重이 豫想되며 追加指定與否는 向後 能力을 勘案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許可與否는 서울市の 承認事項임.(市民局長) ○北加佐1洞地域 一帶에는 積換場이 佛光川邊에 1個所, 移動式 컨테이너가 4個所로 그 一帶의 쓰레기를 收去하고 있음. 小型車및 大型壓縮車輛의 增車와 삼표연탄옆의 500坪規模 中間集荷場이 建設되면 道路邊設置 移動 컨테이너 박스는 不必要함으로 市民不便이 解消될 것임.(市民局長) ○西部警察署와 業務協助를 通하여 信號燈이 設置될 수 있도록 努力을 傾注할 것임.(都市整備局長) ○91.10.7 서울시에 市內버스路線調整案을 進達한 바 92.4.21자로 區路線調整委員會를 設置運營토록 示達되어 委員會를 構成하고 92.5.21 區路線調整委員會에 回附한 바 區廳앞 弘濟川邊 道路는 러시아워 時間에 大混雜을 이루고 있기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長期 未竣工建物の 現況과 陽性化를 爲한 對策 ○大峴1地區 再開發區域內的 貰入者 231世帶中 救濟되지 못한 貰入者에 대한 對策은 무엇인지	때문에 回車에 많은 支障을 招來하며 停留場이 區廳앞에서 150m 距離로 混雜이 加重될 것으로 보아 路線調整은 否決되었음. 가좌마을버스의 一部路線 北加佐삼거리 50番 버스終點 通過는 區路線 調整委員會에 回附, 反映되도록 積極 推進할 것임.(都市整備局長) ○長期 未竣工建築物은 總 55件으로 違法建築이 43件, 節次不履行이 12件이며 措置事項은 建築主告發 34件, 過怠料賦課 24件이며 關聯部署인 稅務1課에 通報하여 課稅措置하였으며 行政措置를 通하여 適法한 竣工節次를 밟을 수 있도록 推進할 것임. (都市整備局長) ○大峴1地區 再開發組合內的 貰入者 總 254世帶 中 貰入者資格 要件에 適合한 118世帶는 방1칸의 入住權을 支給하였으며 34世帶는 住居對策費를 支給하였고 나머지 102世帶는 貰入者對策을 해 줄 수 없는 86.11.28以前 退去者 81世帶, 再開發區域 外 3世帶, 事業計劃決定 告示日以後轉入者 18世帶로 關聯規定에 別度の 補償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都市整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區廳內 設置된 駐車타워의 機能이 제대로 維持되고 있지 않은 理由와 瑕疵措置與否	○當初 設計時는 小, 中型車輛의 駐車를 基準으로 設計하였으나 國民車인 티코가 나오기전이라 設計에 參考치 못하였기 티코는 駐車가 不可能하며 故障에 대하여는 92.6.24까지 瑕疵補修가 完了되도록 措置하였으며 完全補修가 되지 않을 境遇 瑕疵保證金으로 完全修理措置할 것임.(都市整備局長)
○常習的인 道路上 商品積置및 路上作業 行爲에 對한 事前弘報및 團束計劃	○市民生活不便解消와 거리秩序確立을 爲하여 20m이상 主要道路는 車輛을 動員 1日 2回以上 巡察團束을 하고 있고 이때 團束된 無斷占用者는 卽時 整備後 不當利得金 賦課와 告發措置를 並行하여 施行하고 있음 常習으로 占有하고 있는 業體에 對해서는 別途로 管理카드를 作成 管理하고 있으며 巡察時 弘報를 通하여 自律整備토록 하고 班常會報, 地域新聞, 弘報案內文等を 活用 持續的인 弘報를 施行하고 業種別淨化委員會를 構成, 自律整備토록 誘導할 것임.(建設局長)
○北加佐洞418番地 성가病院앞 陸橋는 交通事故의 原因이 되고 있는데 移轉對策과 信號燈設置計劃講究	○當初 北加佐國民學校 學生의 利用便宜를 爲하여 設置된 바 있으나 學校正門의 位置가 變更되어 陸橋移轉의 必要性이 있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北加佐洞117-2, 119-23 間 道路擴張 工事後 瑕疵發生에 對한 對策과 措置內 容 ○北加佐1洞地域에 小公園및 어린이공원을 確保하기 爲한 對策은 ○92年度 1/4分期中 行政監查指摘事項과 이에 對한 措置結果	地域住民의 意見을 收斂하여 '92追更豫算으로 所要豫算을 確保, 移轉을 推進할 것임.(建設局長) ○年末 冬節期 施工으로 因하여 一部區間 鋪裝에 瑕疵가 發生되어 92.4.7 施工者에게 補修指示하였으나 充分한 補修措置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完全히 補修토록 再指示하였으며 強力한 行政措置를 通하여 短時日內에 整備되도록 할 것임.(建設局長) ○어린이 公園은 都市計劃施設로 決定된 곳에 公園을 造成管理하도록 되어 있고 小公園은 法規에 依하지 않고 設置하는 것으로 支障物이 없는 小規模 國公有地를 活用하고 있으나 北加佐1洞의 145-101와 2筆地의 市有地는 既存無許可 建物 4棟이 占有하고 있고 都市計劃上 住居地域으로 強制撤去에 依한 小公園造成은 現在 法規上 困難한 實情임.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樹立時 어린이 公園이 없는 8個洞에 公園用地를 確保하여 公園을 造成토록 積極 努力할 것임.(建設局長) ○行政事務監查結果 金品收受 1件, 無事安逸및 職務怠慢 15件, 違法不當事例 8件, 其他 6件 總 30件이며, 監查結果에 따른 措置內譯은 解任 1件, 停職 1件, 譴責 1件, 訓誡 27件임.(監查室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崔容完 議員〉 ○날로 惡化되는 環境狀況에 對備하기 爲하여 能動的으로 對處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區廳의 環境課 職員은 7名으로 22個區中 가장 적은데 이 人員으로 環境團束에 充分한지, 公務員의 增員對策은 있는지, 自動車煤煙測定裝置의 購入現況과 92年度 自動車煤煙團束, 廢水排出業所團束, 大氣汚染業所團束및 摘發現況과 行政措置 內容 ○弘恩2洞 覆蓋區間부터 유진商街에 이르는 區間의 分流下水管이 管理疏忽로 제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補修對策을 要함	○環境業務 推進을 爲하여 新規發令者 配定時 最優先 充員할 方針이며 煤煙團束을 爲한 裝備擴充을 爲하여 비디오 監視 카메라를 常時運營하고 있으며 煤煙自動測定裝置 購入을 推進하고 있고 93年度 豫算에 反映, 排出가스 測定器 騒音測定器및 記錄機를 購入 確保할 計劃임. 92年度 公害團束實績은 自動車 煤煙團束 30回 276臺를 摘發, 43臺를 告發하고 233臺를 整備命令하였으며 50個 廢水 排出 對象業所를 定期, 隨時團束하여 9個 業所를 摘發, 防止施設改善命令 및 排出賦課金 420萬원을 賦課하고 冬節期 大氣汚染排出業所 23個所를 團束한 結果 3個所를 摘發 防止施設改善命令과 排出賦課金 210萬원을 賦課 措置 (市民局長) ○弘濟川內 分流下水管中 施設 瑕疵內容은 連結管 破損과 雨水土室 未設置等 16個所이며 北部幹線道路 施工廳인 綜合建設本部에서 補修토록 繼續 建議하고 있고 家庭下水管에 對하여는 北部幹線道路 竣工時點에 가서 河川整備計劃을 樹立, 豫算을 確保하여 漸進的으로 整備해 나갈것임. (建設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弘恩1洞 弘恩橋 近處의 積置物및 假設物設置經緯와 耕作地에 대한 對策 및 占用料賦課 內譯	○積置物은 上水道工事 區間인 弘恩洞75브릭 工事所要資材로서 6月25日까지 自進撤去토록 督勵하고 있으며 不履行時는 依法措置할 豫定이며 弘濟川 周邊에 栽培되고 있는 菜蔬類는 即時 原狀 復舊하고 巡察強化, 住民弘報等を 通하여 再發되지 않도록 하여 河川維持管理에 萬全을 기할 것임. (建設局長)
○自然綠地內의 綠地毀損에 대한 團束및 措置實績과 豫防對策	○山地毀損事例는 樹木이 없는 無許可建物撤去地에 老人들이 耕作行爲를 하는 事例로서 告發等 行政措置를 취하고 있으나 根絶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며 表示板設置와 山林監視員巡察強化를 推進하고 있음. 根本的인 對策으로 耕作地에 나무를 심어 山林으로 復元하고 있고 92年度에 32,600株를 植栽하여 完了할 豫定임.(建設局長)
○弘恩1洞 5-8 再開發地域解除民願의 審議過程과 解除豫定時期	○1992.3.20 再開發地域 解除民願이 接受된 바 檢討結果 住民同意率이 未達되어 이를 補完指示한 結果 1992.6.12 再接受되어 檢討中이며 7月初에 서울市에 進達하면 서울市 議決과 建設部 議決까지 約 6個月이 所要豫想됨. (都市整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具滋億 議員〉 ○形式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班常會가 區政 全般的인 弘報次元에서 效率的으로 運營될 수 있도록 方案講究 ○區民會館의 施設一部를 議事堂으로 活用하는 方案과 敷地를 確保하여 新築하는 方案의 檢討 ○컨테이너 박스를 改造, 假建物로 活用하는 事例에 대한 行政節次 ○區廳뒤 延禧골프 練習場 敷地는 綠地 空間으로 確保할 必要가 있다고 보며 綠地毀損이 심하여 集中豪雨時 山沙汰가 憂慮됨. ○北部幹線道路 橋脚設置에 따른 弘濟川의 流水에 影響을 주어 低地帶 浸水가 憂慮되는데 이에 對한 檢討結果 및 對策은 있는지	○班常會가 效果的으로 育成될 수 있는 方案을 檢討하여 地域與件에 맞는 實質的인 班常會가 되도록 最善을 다할것임. ○文化會館 敷地는 公園用地로 全體住民의 綜合的인 利用施設만 設置할 수 있어 區議會나 事務室은 設置할 수 없고 別途 議事堂 建立은 어려운 實情이나 充分히 檢討하여 對策을 講究할 것임.(總務局長) ○컨테이너도 相當期間 住居用, 事務室用, 倉庫等 其他 類似的인 用度로 使用할 境遇는 建築法上 建築物로 보며 2年以上 固定配置時는 許可, 2年以內 移動時는 申告節次를 밟도록 되어 있고 團束件數는 5件임. 向後 市民不便을 解消하는 次元에서 許可, 또는 申告를 得하도록 措置할것임.(都市整備局長) ○地質檢査를 爲한 試錐에 依한 골프장 잔디 毀損狀態는 經微하여 山沙汰 憂慮는 없는 것으로 判斷되나 所有主에게 通報하여 原狀復舊및 災害防止 對策을 樹立토록 措置할 것임.(建設局長) ○서울市 綜合建設本部 檢討報告書에 依하면 河川高水敷地 內流水 疏通支障物 및 병목現象 除去로 洪水時 水位보다 0.46m 低下되며 河床掘鑿및 整理로 水位上昇에는 支障이 없을 것으로 豫想됨. (建設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의주로 步道工事が 3월에 施工을 하 었는데 竣工이 遲延되는 理由와 工事 部分도 凹凸이 심하여 不實工事が 憂 慮됨으로 工事監督의 徹底要望	○의주로 步道工事は 3월에 着工하여 9월 에 竣工토록 되어 있고 工程은 現在 90% 程度이며 地域住民의 不便解消를 爲하여 雨期前인 6月末까지 完工措置 豫定임. 境界石의 높이가 一部 작은것 은 周邊與件을 勘案 設計한 것이며 모 래가 不足하게 토설되어 凹凸이 생기는 部分은 竣工檢査時 徹底한 調査를 通하 여 措置를 취할것임. (建設局長)
〈丁和鎮 議員〉 ○ 能率的인 住宅業務 遂行을 爲하여 住宅課를 住宅課와 住宅改良課로 機 構變更을 建議할 用意는 ○市內버스 交叉停留場 未停車에 對한 措置方案은 ○母岳齋의 煤煙團束結果와 西大門區의 大氣汚染測定結果	○所管 局長의 意見도 全적으로 同感하 고 있는 事項이나 組織改編에 關한 事 項은 大統領令으로 規定되어 있고 서 울特別市 區事務分掌規則中 職制를 改 編해야 될 事項으로 總務課와 協議 市 에 建議토록 할것임.(都市整備局長)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隨時團束을 하고 該當 運輸業體에 通報, 만드시 停車될 수 있도록 할것임.(都市整備 局長) ○母岳齋는 地域特性上 丘陵地域으로 都心進入車輛의 排出가스와 騒音이 심한 곳임. 車輛煤煙團束은 總 12,800臺를 團束 한 結果 275臺를 摘發하여 告發및 改善命令을 하였으며 騒音測定値는 74db로 許容値 60db를 超過하고 있 어 通行車輛의 警笛및 排氣 團束을 推進할 計劃임. 大氣汚染 測定은 南加佐1洞 屋上에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防犯員の機能職 要求示威에 對한 對策과 繼續 存續與否 ○弘濟4洞 3,4地區再開發地區指定時 高度에 依한 圖上分割로 不合理한 바이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洞廳舍, 工夫房, 老人亭等 施設確保方案 檢討 要望	測定器를 設置 運營하고 있으며 大氣汚染 水準은 粉塵이 91年度 平均 105mg/m³으로 環境基準値인 150mg/m³, 서울시 平均基準値 121mg/m³에 는 못미치나 暖房이 利用되는 冬節期 에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實情임 管内 環境有害業所에 對한 持續的인 團束과 指導를 通하여 公害防止에 最善을 다할 것임.(市民局長) ○防犯員은 區廳所屬 僱傭職 公務員이나 警察廳의 業務指示를 받고 있고 管理되는 實情으로 機能職 轉換은 內務部에서 檢討되어야 할 사항이며 現行規定上 防犯員の 缺員은 充員할 수 없으며 漸進的으로 警察人力으로 代替될 豫定임.(總務局長) ○92.3.17 公園解除에 對한 建議를 서울시에 進達하였으나 條件附로 否決된 바 있으며 그 理由는 事業施行中인 現段階에서 特別한 事由없이 事業計劃을 變更決定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林狀이 良好하고 傾斜가 심하며 不良住宅이 없는 公園用地를 解除함은 不合理하다고 判斷되어 이미 決定된 面積範位內에서 檢討하라는 內容임. 우리區에서는 弘濟3,4區域住民의 便宜를 爲하여 다시 檢討, 서울시에 建議할 豫定이나 서울시에서 通過되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도 建設部 中央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通過되어야 할 事項이라고 思料됨. (都市整備局長)
〈全聖章 議員〉 ○煙草小賣人指定 民願이 區廳과 專賣廳간 二元化되어 所要期間도 오래 걸리고 不便한바 改善 必要있음. ○低所得層의 學生들에 대한 工夫房 利用時間을 익일 登校時까지 할수 있도록 方案 講究 ○北阿峴3洞 地域中 70年代 現地改良한 14個統 地域이 都市計劃確認圖 原簿의 整理未洽으로 現實에 符合되지 않는바 整備對策은	○91.11月頃 改善案을 財務部에 建議하였으나 小賣商增加에 따른 指導限界上 不可하다고 回信된 바 있음. 改善案을 補完하여 再建議 할것임.(市民局長) ○平常時 午後10時 以後는 利用者가 극히 적은 形便임. 試驗中이나 特히 必要한 때는 館長이 自律運營토록 檢討할 것임.(市民局長) ○再開發地區 解除에 따라 發生한 事項으로 同地域의 道路를 都市計劃決定後 買入하고 地籍을 整理하는 計劃을 樹立할 것임.(都市整備局長)
〈宋榮于 議員〉 ○地方自治에 맞는 公務員의 勤務姿勢 確立을 爲하여 豫算을 確保하여 外部講師를 招請, 分期別로 親切教育을 實施할 수 있는 方案講究 ○沐浴料를 無斷引上한 業所의 現況과 團束結果, 衛生및 水質檢査現況	○親切奉仕綜合計劃을 樹立하여 實踐하고 있으며 매월 點檢을 通하여 補完할 것이며 93年度 本豫算에 外部講師 招請을 反映, 內實을 기할것임.(總務局長) ○沐浴料를 無斷引上한 業所는 17個 業所이며 15個 業所는 自進措置를 通하여 是正하였음. 水質檢査및 衛生檢査는 年2回 實施하며 衛生檢査는 區廳, 水質檢査는 協會가 自律實施 (市民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의 作成 進度와 商業地域의 擴大方案및 對象地域現況과 議會와의 公聽會 開催用意	○都市基本計劃은 91.7.27 用役을 締結 基本資料調查중이며 新村, 모래내, 유진商街一帶의 商業地域을 擴大檢討中이며 基本計劃樹立 以前인 9月頃 區議員, 住民代表와 1次 公聽會를 開催할 計劃임.(都市整備局長)
○92年度 市民아파트 撤去對象棟數와 撤去希望에 따른 特別分讓希望者 接受現況	○92年度 撤去對象 市民아파트는 15個棟 575世帶로 特別供給申請 件數는 215世帶로 37%임.(都市整備局長)
○歩道整備工事を 爲하여 活用이 可能한 境界石을 많은 豫算을 들여 花崗岩 境界石으로 交替하는 理由및 忠正路로타리地域 工事遲延事由	○서울시 歩道整備指針에 依하여 施行되는 歩道整備工事は 歩道브럭外 花盆臺, 下水施設等 包括整備工事이며 境界石은 連接歩道와 統一되게 하기 爲하여 老朽된 것은 交替하고 있음. 忠正路地域의 工事は 資材納品이 늦어져 遲延된 바 있으나 6月末까지는 完了될 豫定임.(建設局長)
〈尹益洙 議員〉 ○北阿峴2洞 都市가스및 水道工事後 復舊遲延으로 住民不便을 招來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對策과 아스팔트 工사로 推進할 用意는	○今年度 北阿峴洞地域 掘鑿工事は 總 25個所로 24個는 完了되고 上水道工事 1個所만 復舊가 遲延되고 있으나 今週內 完了토록 措置할 것임. (建設局長)
○梨花女大 뒷산 奉元洞 뒷골목에 車輛通行이 많아 交通事故가 憂慮되므로 이를 解消하기 爲하여 反射鏡設置 必要	○現場調査를 實施하여 所管機關인 西大門警察署와 協議, 早期에 設置될 수 있도록 할것임.(都市整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屋上 물탱크設置에 따른 制度改善으로 民願素地를 解消할 方案講究	○屋上물탱크의 竣工檢査後 無斷用度變更 및 増築은 違法事項으로 徹底한 團束과 弘報로 發生을 防止할 것임. (都市整備局長)
○都市計劃事業內 撤去民들에 對한 移住方案으로 臨時 賃貸아파트로 移住한 후 다시 分讓아파트로 移住하는 不便이 있으며 市民아파트의 補償價가 現時價와 差異가 많아 移住率이 低調한바 現實補償이 될 수 있도록 上部機關에 報告 또는 建議할 用意	○分讓아파트 入住前 臨時로 賃貸아파트에 入住하는 것은 便宜提供 次元에서 希望에 따라 入住하는 것이며 撤去에 따른 補償金은 公認鑑定機關의 鑑定價格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며 補償金의 引上은 서울市 全體의 問題로서 市에서 檢討할 事案으로 思料됨. (都市整備局長)
〈鄭日出 議員〉 ○道路의 無斷占有에 依하여 交通滯症과 步行者 不便이 빈발하고 있는 實情인 바 無斷駐車는 徹底히 團束하여 過怠料를 賦課하고 있는 反面 道路占有은 徹底한 團束이 되지 않고 있음은 普遍性和 衡平性을 喪失했다고 보며 이에 對한 對策은 무엇인지	○裏面道路 無斷占有에 對한 團束根據는 道路法, 道路交通法, 食品衛生法에 依據 道路上의 無斷積置, 露店 營業行爲等を 團束, 快適한 都市環境 造成과 市民生活 不便을 解消하고 道路機能을 回復하고자 함이며 團束實績은 露店828件, 積置物1,146件, 不當利得金 90件 3,926,340원임.(建設局長)
○保健所의 藥品購入節次와 藥品의 無償供給對象, 뇌염백신200㎖ 1명은 成人몇명의 投藥分인지, 無料接種計劃은 제대로 施行되고 있는지, 夏節期防疫消毒對策은 樹立되어 있는지	○防疫消毒藥品은 全量 調達購入하고 있으며 뇌염백신200㎖ 은 20명 接種分임. 夏節期防疫對策은 5월-9월까지 保健所에 防疫對策本部를 設置하여 脆弱地, 高地帶防疫에 萬全을 기하고 있음.(保健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모래내 市場地域 一帶를 商業地區로 指定하여 줄것을 數次 建議한 바 있고 이를 肯定的으로 檢討하겠다는 答辯이 있었는데 推進이 되고 있는지	○ '90. 4. 7서울市에 商業地區指定을 建議한 바 平面的擴大에 따른 問題點(交通, 地價騰貴等)으로 不可能回信되었으며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樹立時 妥當性を 檢討 反映할 豫定임. (都市整備局長)
○쓰레기 分離收去의 定着을 爲하여 區廳에서 施行하고 있는 各種計劃이 長期的이고 持續的인 推進이 可能的인 事業인지, 計劃에는 統班長과 委員들의 奉仕活動參與를 前提하고 있는데 1年이고 10年이고 活動이 可能하다고 보는지, 收去된 再活用品의 賣却資金은 收去住民에게 支給이 되고 있는지	○7月1日부터 實施되는 分離收去의 定着을 爲하여 統長責任下에 保管容器의 設置를 推進하고 있으며 每週 水曜日을 再活用品 收集日로 定하여 別途 收集된 再活用品을 資源再生公社에 賣却함을 原則으로 하나 管内 古物商과 契約을 締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賣却資金은 推進委員會의 議決로 再活用品收集基金 또는 厚生福祉費로 自體使用이 可能함. 弘報對策으로는 TV자막, 弘報프랑카드게첨, pamphlet製作配付, 班常會 會報揭載等 持續的인 弘報를 實施할 計劃임. (市民局長)
○'92年度 主要道路鋪裝工事は 豫算編成內容대로 施行되고 있는지 與否와 南加佐1洞 152-25, 105-1區間 道路工事が 議會에서 議決한 豫算대로 推進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區廳의 意見은	○當初 9억8천만원이 補償費로 確保되어 있었으나 現場調査結果 再開發地域一部, 약45m가 抵觸되어 있어 關係部署와 協議하여 이를 除外 또는 包含하여 補償할 것인지를 檢討하고 있음. 住宅課와 協議를 통해 正確한 判斷을 하도록 措置할 것임. (建設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南加佐洞 155-264, 250, 285, 251一帶 72年度 區劃整理地區는 公簿整理가 되어 있지 않아 道路가 私有地로 되어 있으므로 下水道工事を 하려면 土地使用承諾을 받아야 可能하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바 豫算을 反映하여서라도 整理가 될 수 있도록 措置바라며 그 可能時期는 언제인지.	○同 地域의 下水道工事は 5箇年中期 財政計劃에 依하여 '93年度에 一部 包含되어 있고 '97年度에도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中期計劃에 依據 下水道工事を 實施할 計劃임. (建設局長)
〈金永一 議員〉 ○유진商街와 仁旺市場 中間에 設置된 有料駐車場の 駐車區劃은 몇 개이며 仁旺市場地域은 既存 用達業者等이 있어 管理하여 왔는데 이들에게 既得權을 認定하여 分離 또는 共同管理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合理的이라고 生覺하는데 區廳長의 意見은 ○長期 未竣工建築物에 對한 救濟 方案과 監理士 監理 怠慢으로 違法建築物이 많이 發生하는데 이에 對한 行政 監督 및 對策과 完工된 未竣工建築物의 管理 處理 內譯은 ○弘濟3洞 工夫房과 삼지마당 造成工事의 推進이 未洽하다고 보는데 早期 施工 對策과 現況은	○駐車區劃線은 150개이며 仁旺市場地域 零細駐車場の 被害防止를 爲하여 管理委託入札에 參加를 積極勸告할 것이며 隨意계약으로 委託될 境遇에도 隣近零細駐車장이 被害가 없도록 措置할 것임. (都市整備局長) ○完工이 되었다 해도 竣工檢査가 나지 않은 建物은 建築法上 違法建物로 救濟方案은 없으며 監理士의 違反事項은 徹底한 監督과 行政措置를 確行하여 團束할 豫定임. (都市整備局長) ○弘濟3洞工夫房은 設計가 完了되어 建築審議中이며 審議가 完了되면 11월까지 竣工될 豫定이며 삼지마당도 7월에 着工하여 10月末 竣工할 것임. (市民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弘濟3洞 電鐵驛 中小企業銀行앞 버스停留場은 모든 路線버스가 停車하여야 함에도 一部 버스는 未停車通過事例 頻發	○公務員으로 하여금 團束을 하고 未停車 車輛이 發生치 않도록 運輸業體에 履行을 促求할 것임. (都市整備局長)
○保安燈의 迅速한 修理補修를 爲하여 現行 代行業者 修理方法을 改善, 機能職 公務員을 採用, 運營할 計劃은 없는지	○保安燈의 修理를 專擔할 機能職公務員의 所要는 11名(2個洞當 1名)으로 機能職公務員의 採用問題를 關係部署와 協議하여 檢討할 것임. (建設局長)
○弘恩洞 유진商街 左回轉車道가 좁아 交通滯症과 交通事故要因이 되고 있는 實情인바 넓은 歩道를 利用 街角을 緩慢히 하여 整備할 用意는	○유진商街 街角地는 橋梁構造物로 이를 活用하려면 橋梁構造全體를 改造해야 함으로 約4億 程度의 豫算이 所要됨. 投資의 必要性은 '93豫算審議時 檢討될 것으로 思料됨. (建設局長)
○새마을所得事業融資金의 受惠對象者 選定과 融資方法, 融資後 管理對策, '92年 5月 現在 融資內譯과 未償還金 現況, 未償還 理由	○所得水準이 낮은 家口로서 生活能力이 健全하고 自立性이 強하며 서울市 3年 以上, 當該 地域2年以上 居住者이며 償還金 回收가 可能하다고 認定되는 家口主가 申請을 하면 洞推進委員會에서 審議하여 對象者를 區廳에 推薦하면 區推進委員會에서 審議後 決定하고 있으며 償還金回收 狀況은 總 1,197件 597,900천원中 回收 1,124件 565,680천원, 未回收 73件 32,220천원으로 未償還 管理對策은 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納 當事者 및 保證人에게 納付를 勸誘하고 督促狀을 발부하고 있으며 長期 滯納者에게는 滯納處分 措置를 할 豫定임. (市民局長)
〈全在煥 議員〉 ○既存建築物의 駐車場保有未備點이 發見되면 一旦 建築主에게 登記郵便 또는 洞事務所職員을 通해 是正命令後 過怠料를 賦課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되는데 區廳長의 意見과 '91年 6月부터 '92年 6月까지의 措置現況은 몇 件인지 ○有關團體의 各種行事가 너무 잦아 豫算의 浪費事例가 되고 있다는 輿論이 있는데 行事內容과 所要經費 內譯은 ○每年 開催되는 各洞別 敬老行事에 支援되는 補助金의 規模는 ○冷泉洞 79-10호 區有地 약 30坪 程度의 空地를 어린이놀이터로 造成하여 주기를 바라는 住民의 輿論에 對한 推進方案 樹立用意는	○既存建築物의 駐車場保有未備事項은 建築法 違反事項으로 2次의 是正指示와 告發 및 過怠料賦課 處分을 하고 있고 建築主에게 通報하는 事項은 洞職員으로 하여금 正確한 住所를 把握토록 하여 施行하고 있으며 行政措置件數는 總 71件으로 現在 22件이 未履行되어 過怠料賦課 處分을 하였음. (都市整備局長) ○有關團體의 行事는 本廳計劃에 依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類似하거나 重複될 境遇는 最大限 統·廢合하여 推進할 것임. (總務局長) ○區 敬老잔치는 年1回 700萬원內에서 實施되며 洞實施 敬老잔치는 豫算支援이 없음. (市民局長) ○冷泉洞 地域에 都市計劃決定된 公園用地가 없어 現在로는 公園造成이 不可하나 西大門都市基本計劃에 反映, 確保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임. (建設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西大門~獨立門間 人道の 歩道브럭 交替工事が 遅延되고 있어 住民通行에 不便이 많은 바 早速히 完工될 수 있도록 措置를 바라며, 歩車道 境界石을 다른 地域은 交替하여 美觀을 살리면서 同區域에는 既存 境界石을 使用하는 理由는 무엇이며, 追加豫算을 確保하여 同時に 工事할 수 있는 方案은 없는지	○資材納品 遅延으로 工事が 늦어진 바 있으며 6月末까지 完了할 것이며 同地域의 境界石은 狀態가 良好하여 再活用하고 있으나 一部 破損된 곳은 交替하고 있고 全量交替는 어려운 實情으로 追後 豫算이 確保되면 交替할 機會가 있을 것으로 思料됨. (建設局長)
〈左斗行 議員〉 ○老人亭에 對한 運營方針과 指導監督, 區廳長 訪問實績 및 敬老乘車券 配付 現況 ○우리區는 他區에 比하여 文化行事に 準하는 行事가 많다는 輿論이 있는바 '92上半期中 實施된 文化行事의 內容과 所要經費	○老人亭의 運營方針은 老人會自體規定에 依據 運營토록 하고 있으며 運營費는 老人亭坪數를 基準 分期 最低 12萬원에서 最高 27萬원까지 補助되고 있으며 區廳長이 訪問한 實績은 14回임. 敬老乘車券은 '92年 上半期 總1,303,272매로 환가액은 249,380,000원 相當임.(市民局長) ○文化行事 內容은 正月대보름 연날리기, 詩朗誦會, 新村祝祭가 있으며 總豫算 所要額은 33,490,000원임.(總務局長)
〈鄭赫柱 議員〉 ○區, 洞職員の 人事移動에 對한 不滿과 理由 및 洞事務所職員 上氣昂揚 對策은 무엇인지.	○公務員人事는 苦衷과 個人能力의 發展, 適在適所の 人力配置를 爲하여 公正하고 適切한 人事가 되도록 努力하고 있으며 洞職員은 手當, 人事考價等에서 區職員보다 優待하고 있음. (總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鞍山에 體育施設 亂立으로 自然毀損이 憂慮되는데 이에 對한 團束과 整備對策	○鞍山에는 22個의 藥水터와 31個所의 運動場, 運動기구 207점이 있으며 비록 運動施設이 未備해도 施設의 擴充은 自然을 毀損할 憂慮가 있어 同好人들로 하여금 現狀態를 維持토록 하였음. (建設局長)
○區有財産의 現況 및 管理對策은 무엇인지	○區有財産은 總385筆地 19,136㎡이며 管理對策은 增減現況의 正確한 臺帳整備, 巡察強化로 新發生無斷占有防止, 保存價値가 없는 財産은 買收 및 貸付事用을 積極 勸獎하고 있으며 占用料 收入은 總31筆地 36,770,000원임. 9月末傾이면 全 區有財産이 測量完了되며 4/4分期中 全 占有者에게 占用料를 賦課措置할 豫定임. (財務局長)
○電話民願을 申請하면 通話중으로 오래 걸리는 바 이를 解消하기 爲하여 回線増設을 講究할 것	○電話民願은 6臺의 電話와 3名の 人力으로 處理하고 있으나 處理期間이 오래 걸리는 不便이 있음. 이를 解消하기 爲하여 暴走時間帶에는 人力을 補強하고 있고 '92. 10. 1부터 設置되는 自動프린터시스템으로 처리 시간이 大幅 短縮됨에 따라 不便事項이 解消될 것임. (總務局長)
○100萬원 以上 高額滯納者의 現況과 滯納事由, 徵收對策은	○100萬원 以上 高額滯納者는 總 16件 46,945,000원으로서 滯納事由는 所在不明 10件, 競賣中 7件, 滯納者間 紛爭 1件, 財産無 1件, 資金事情惡化 1件이며 徵收對策으로 11件을 登記押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財政自立을 爲한 稅收増大方案은 ○無許可衛生業所의 現況과 措置計劃 ○管内 老人亭 現況 및 支援內容 ○모래내 地域 環境汚染이 全國에서 第一 심하다는 新聞報道가 있는데 公害 防止對策은	留하였고 5件은 繼續 財産追跡을 하고 있음.(財務局長) ○區民福祉事業 増大에 따른 歲入의 確保를 爲하여 新規收入源을 確保하고 既 設置된 歲入増大對策委員會를 活性化하여 每 分期 歲入評價를 實施 歲入 目標達成과 脫漏稅源索出等 徹底的 賦課徵收를 遂行하여 稅入 및 稅外收入 増大에 萬全을 기할 것임.(財務局長) ○'92. 5. 30 現在 無許可衛生業所는 大衆飲食店 34個所, 理容業所 1個所, 美容業所 1個所 總 36個所이며 措置計劃은 許可申請을 誘導한 後 繼續 不應時는 告發後 強制措置로 業所를 閉鎖할 計劃임.(市民局長) ○管内 老人亭은 區立 17個所, 市立 30個所 總47個所이며 支援內容은 運營費 補助金으로 分期 12萬원에서 27萬원까지 補助하고 있음.(市民局長) ○모래내地域의 環境汚染 要因은 各 家庭의 生活下水, 많은 交通量에 따른 車輛排出가스, 地形與件에 따른 蘭芝島 및 水色煉炭工場의 粉塵等으로 보며 이 地域 大氣汚染度 測定을 爲하여 南加佐1洞事務所 屋上에 測定裝置를 設置하여 測定하고 있고, 路線버스의 煤煙團束強化, 北部幹線道路工事場等 먼지管理, 都市가스供給擴大, 麻浦,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恩平區廳과 有關協調로 污染源을 索出하고 地域住民弘報를 強化하기 爲한 方案을 推進할 것임.(市民局長)
〈鄭日洙 議員〉 ○最近 新聞報道에 依하면 서울시 大部分의 藥水터가 食水로 利用하기에는 不適合하다고 하는데 우리區內 藥水터는 食飲用에 問題가 없는지 水質檢査結果와 補完對策은 ○都市가스施設資金融資對象 및 支給順位와 金額 ○北加佐2洞 道路掘鑿後 復舊工事 遲延에 對한 對策	○藥水터의 水質檢査는 '92年度에 保健環境研究院 1回, 保健所 2回 總3回를 實施하였으며 檢査結果 2個 藥水터가 食飲用 不適格判定되어 2回の 再檢査를 實施, 不適格일때는 藥水터에 檢査結果를 揭示 使用치 않도록 할것임.(建設局長) ○都市가스事業資金融資順位는 ①地下室을 除外한 延面積 35坪 未滿의 既存 單獨住宅의 新規 가스 需要者 ②區自體 優先供給地域 및 計劃配管地域內 新規 가스需要者 ③他工事 並行區間 地域의 新規 가스 需要者 ④其他住宅의 新規가스需要者로서 炊事 및 煖房을 爲한 配管使用施設費의 50%以內에서 家口당 50萬원 以內 融資(市民局長) ○現在 未復舊된 道路掘鑿地域은 北加佐洞 75番地外 5個所로 有關機關 並行 工事區間으로 該當機關에 早速工事を 促求하여 雨期前에 完了할 수 있도록 措置에 萬全을 기할 것임.(建設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新村文化祝祭가 地域一部 사람의 잔치로 判斷되는데 繼續 豫算事業으로 推進할 計劃인지	○新村地域은 大學街 및 西部서울의 中心圈으로 西大門區의 發展에 密接한 關聯이 있고 大學文化의 社會參與를 通하여 西大門區 發展에 寄與하는 바 클것으로 豫想되어 長期的인 眼目에서 行政支援이 必要하다고 思料됨. (總務局長)
〈金源珠 議員〉 ○輸出不振 및 全般的인 景氣惡化등 歲入의 鈍化傾向에 따라 緊縮豫算編成이 要求되는 時點에서 우리區도 向後 追更 또는 本豫算編成時 이를 充分히 考慮할 수 있는 財政計劃이나 方案이 樹立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財政計劃 審議委員會 議決事項과 實踐計劃은 무엇인지 ○國家的인 次元의 에너지 消費節約을 爲한 住民弘報方案과 行政機關의 實踐事項, 街路燈 隔燈制 實施內容	○現 國內經濟實情은 매우 重要的 時期로 安定基盤의 造成을 爲하여 區財政역시 緊縮運營이 要求되는 時點이며 '93年度 豫算編成도 政府의 財政運營基調를 受容, 經常費를 最少化하고 効果を 極大化하는 緊縮豫算이 될것이며 '92豫算執行도 節約과 消費抑制를 通하여 豫算을 2%~10% 까지 節減할 計劃임.(總務局長) ○政府의 에너지消費節約 綜合對策에 따라 우리區 에너지 消費節約 推進對象을 產業部門, 住宅部門, 運輸部門, 公共에너지部門等 5個分野로 區分 消費節約 10% 節減을 目標로 推進中이며 行政機關은 部署別 推進委員會를 構成 每週 火曜日을 에너지 點檢의날로 指定하여 運營하고 있으며 班常會會報, 地域新聞掲載, 傳單配布, 職能團體參與等 弘報를 推進하고 있음.(市民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低所得層密集地域, 高地帶, 市場, 遊水池, 河川等 脆弱地域과 社會福祉施設에 對한 防疫對策 및 防疫從事 公務員現況	○夏節期 防疫을 迅速히 推進할 수 있도록 保健行政課에 對策本部를 設置 5. 1~9. 30까지 5個月間 機動非常勤務를 實施하고 있으며 非常勤務人員은 醫師 1, 看護士 1, 臨床病理士 1, 行政要員 1, 衛生員 1, 連轉員 1 總 6名 1組로 編成되어 있고 地域特性에 맞추어 車輛噴霧消毒機, 煙幕機, 人力噴霧器등을 確保하고 있으며 週, 月間 消毒計劃을 樹立 區管内 全地域에 對하여 豫防消毒을 推進하고 있음.(保健所長)
○新村文化祝祭가 名實相符한 市民과 學生들이 同參할 수 있는 祝祭가 될 수 있는 效果的인 改善對策 樹立	○祝祭期間中 雰圍氣造成 行事を 地域別로 分散實施하고 많은 區民이 參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大學生들의 參與를 爲한 住民, 學生으로 構成된 企劃팀을 運營토록하며 2 回부터는 民間主導 主管토록 改善方案을 樹立할 것임. (總務局長)
○布帳馬車一齊整備에 따른 問題點과 救濟對策 및 管理方案	○問題點으로는 限時的인 團束期待感, 收入의 減少憂慮, 女子가 生計와 家事를 並行할 수 있는 業種不足, 新村地域 大學生(西總聯)과 連帶 抵抗等이 있으며 救濟對策과 管理對策은 生計支援과 就業斡旋으로 業種을 轉換토록 誘導하고 있고 生業資金을 融資해 주며 管内企業體와 協議 就業을 斡旋하고 있음. '92. 7月中 布帳馬車를 一齊整備하고 8月以後는 發生치 않도록 管理에 徹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無住宅貫入者에 對한 專貫保證金融資 節次 및 基準	底를 기할 豫定임.(建設局長) ○融資節次는 融資申請者가 居住地 洞 事務所에 申請期間內 融資申請書를 提出하면 洞事務所에서 審査調査後 區廳에 推薦하고 區廳은 對象者를 決 定하여 洞事務所 및 管轄 住宅銀行 支店에 通報하여 契約書를 作成交付 하고 融資申請者는 管轄住宅銀行支店 에 貸出申請하며 融資對象基準은 無 住宅 低所得貫入者로서 700萬원以下 의 傳貫 및 月貫入者로 300萬원 限 度 融資가 되고 있음.(都市整備局長)
〈鄭炳八 議員〉 ○弘恩洞8番地 一帶는 1963年 住宅公 社에서 建築分讓된 約 120棟의 住宅 이 密集된 地域으로 1971年 開發制 限區域指定後 다시 1982年度에 公園 用地로 指定되어 財産權行事 계약과 建物 老朽로 住民環境이 劣惡한 바 集團民願으로 數次建議된 바 있으며 早速한 改善措置를 바람. ○弘恩2洞 再開發事業場인 公益建設, 極東 建設 위의 藥水터 및 體育施設 利用小 路가 아파트工事完了時는 없어질 憂慮 가 있어 住民과 아파트入住者間 紛爭의 素地가 있으므로 現地確認 措置바람.	○同地域 住民들의 財産權行事에 不合 理한 점이 있다고 判斷되어 '90. 4. 7 서울市都市基本計劃에 檢討하여 줄것 을 要請하였으나 '91. 5月 再調整結 果 反映되지 않고 終結되었음. 住民 들의 建議內容이 反映될 必要가 있다 고 보아 現在 施行中인 西大門區都市 基本計劃 樹立時 妥當性 有無를 檢討 하여 再檢討 處理할 豫定임.(都市整 備局長) ○弘恩2洞 國立公園散策路 開設要求에 對하여는 北漢山國立公園管理事務所와 協議 出入을 統制하지 않는다면 事業 施行者와 協議 團地境界點에 散策路를 開設토록 할 것임.(都市整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弘恩 5-3 住宅改良再開發組合과 隣近 유원아파트 住民간의 紛爭을 解決하기 爲하여 現地踏査한 事實有無 및 紛爭解決對策의 推進現況은	○유원아파트 住民들이 提起한 民願에 對하여는 施工會社 및 組合에 積極 解決토록 數次에 걸쳐 指示한 바 있으며 當事者間 圓滿히 解決될 수 있도록 指導와 現場點檢을 繼續 遂行하고 있음. 유원아파트 龜裂에 따른 被害補償 및 要求事項에 對하여 벽山建設에서 大韓建築士協會에 安全診斷을 依頼하였으며 그 結果에 따라 當事者間 解決이 될 수 있도록 推進할 것임.(都市整備局長)
○弘恩2洞 산 1-45의 弘恩洞 聯合住宅組合 工事場 쪽 옹벽設置時 隣近住民과의 紛爭解決과 옹벽設置 角度를 90°에서 70°도 以下로 낮추는 方案을 講究할 用意는	○옹벽角度를 90°에서 70°도로 낮출 境遇 옹벽上端 道路폭이 6m 確保되어야 하나 4.5m 程度로 줄어들어 調整施行이 不可하며 垓地境界線에서 1~2m 離隔하여 施工토록하고 옹벽 높이를 下向調整하는 方案等を 檢討中임. (都市整備局長)
○弘恩2洞의 河川敷地를 20年 以上 長期占有하고 있는 住民의 財産權行事を 爲하여 用度廢止 拂下할 用意는 없는지	○弘恩2洞 弘濟川隣接 住民들이 占有하고 있는 河川敷地는 河川計劃線(治水計劃線)에 抵觸되어 用度廢止 制限事由에 該當되어 廢止가 不可하므로 河川整備基本計劃의 治水計劃線을 變更 河川流水疏通과 支障與否를 서울 市에서 綜合的으로 檢討가 先行된 以後 用度廢止가 檢討될 수 있도록 積極 努力할 것임.(財務局長)

2. 議案處理

가. 條例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公務員任用에 關한 法令의 改正에 依據 別定職公務員의 勤務 上限年齡 新設과 一部 不合理한 內容을 改正하기 爲하여 1992年 4月 30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었으며 1992年 6月 22日 總務委員會에 回附되어 委員會의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總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內務部長官이 地方自治團體의 物品管理實態를 把握, 不合理한 事項을 改善하여 示達한 基準에 맞추어 整備하기 爲하여 1992年 6月 8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었으며 1992年 6月 22日 總務委員會에 回附되어 委員會의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條例의 母法인 醫療保護法의 改正과 區職制 變更에 따라 醫療保護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福祉係長의 名稱이 保險年金係長으로 變更된 事項과 一部條文을 改正하기 爲하여 1992年 5月 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었으며 1992年 6月 22日 總務委員會에 回附되어 委員會의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

決,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社會福祉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條例案

이 條例案은 持續적으로 增加하고 있는 交通事故를 줄이고 交通環境造成 및 交通安全意識의 活性化 方案으로 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 爲하여 1992年 4月 2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었으며, 1992年 6月 22日 都市建設委員會에 回附, 委員會의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都市建設委員會 李鳳洙 委員長의 審査 報告와 地域交通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하고 質疑答辯을 實施한 後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 및 答辯要旨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交通安全對策의 綜合計劃中 信號燈設置計劃이 있는지의 與否와 安全事故防止를 爲한 信號燈設置規定이 條例制定에 包含되어 있는지	現在 信號燈 設置業務는 警察部署, 道路建設은 土木課等 關聯業務가 分散되어 있으나 條例는 이를 綜合적으로 檢討하자는 趣旨이므로 信號燈 問題도 함께 檢討될 것임.

나. 承認案

1) 1992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修正案

이 承認案은 1992年 5月 19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1992年度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에 對하여 追加 取得·處分事由가 發生, 이를 包含하기 爲하여

1992年 6月 4日 提出되었으며 1992年 6月 22日 總務委員會에 回附되어 委員會의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26名 中 18名の 贊成으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① 區廳長의 大型乘用車를 購入한지 1년도 못되어 賣却處分함으로써 發生하는 損失에 對한 責任은 누군가가 져야할 事項이며 기왕 購入한 것을 賣却處分치 말고 民選 自治團體長이 活用할 수 있도록 賣却을 留保함이 合理的임.
- ② 清掃車輛中에 老朽하여 運行을 못하는 車輛이 耐久年數가 經過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廢車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行政矛盾이 아닌지, 代廢車 方案을 講究하거나 管理에 萬全을 기하여야 할 것임.
- ③ 區廳長의 乘用車를 大型乘用車로 購入하게 된 것은 서울市및 地方 全體가 地方自治團體長 選舉가 바로 있을것으로 봐서 購入된 것이며 地方은 大型乘用車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서울만 中央部處의 指示事項으로 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비록 大型乘用車의 賣却에 따른 損失은 있지만 早期에 賣却하는 것이 損失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區廳長의 公務遂行 便宜를 爲하여 他區와 衡平을 맞추어 中型車를 購入하는 方案이 合理的이라고 判斷됨.

2) 1992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

이 承認案은 保存價値가 없는 區有雜種財産의 賣却과 新規 區有財産의 取得承認을 爲하여 1992年 4月 3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었으며 1992年 6月 22日 總務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2件의 區有財産의 賣却을 留保토록하는 修正案이 可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委員會修正에 對한 審査報告가 있었으며 委員會 修正案에 對한 金廷炫 議員의 修正動議案이 發議되어 이에 對한 提案說明과 質問答辯 및 討論이 있는 後 金廷炫 議員의 修正動議案 撤回로 委員會 修正案을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 議決로 委員會 修正案을 可決하여 1992年度 區有財産 管理計劃承認案은 修正可決되었다. 主要 質問答辯, 討論要旨와 修正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委員會 修正案要旨】

1992年度 區有財産管理計劃 承認案中 紛爭의 素地가 있는 延禧洞 519-53, 62 2筆地의 財産의 賣却留保

【修正動議案 要旨】

延禧洞 519-53, 62 2筆地의 財産賣却是 留保事由인 紛爭이 解消된 狀態로서 生活便宜增進과 歲入增大次元에서 賣却을 承認함이 妥當함.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紛爭當事者間 合意된 補償에 따른 撤去 內容을 議會의 審議에 參考할 必要가 있는지, 이 部門에 瑕疵는 없는지 與否	○ 區有財産을 가지고 紛爭當事者間 金錢的인 合議는 文書上으로 絶對 認定될 수 없는 事項임.

【討論要旨】

區有財産의 賣却에 關聯된 買收申請人과 利害關係者の 紛爭에 따른 合議內容은 法的으로 認定할 수 없는 事項으로 審議時 參考의 必要性이 없음.

다. 建議案

1) 露店布帳馬車整備改善에따른建議案

이 建議案은 1992年 6月 30日부터 一齊 整備되는 露店및 布帳馬車의 撤去過程에서 摩擦이 憂慮되며 이에 따른 社會的 問題와 零細商人의 生計對策 樹立을 爲

한 案으로 1992年 6月 19日 鄭日出, 朴正來 議員外 8人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2年 6月 22日 都市建設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建議文을 採擇, 區廳長에게 移送하여 處理토록 議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都市建設委員會 李鳳洙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提案者인 鄭日出 議員과 朴正來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討論結果 委員會에서 採擇한 建議文을 本會議에서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區廳長에게 移送토록 하였다. 主要 討論要旨와 採擇된 建議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① 布帳馬車의 整備는 零細商人의 生計保護와 法秩序確立및 住居環境保護라는 兩面性이 있는 바 撤去留豫期間을 두어 區廳長과 布帳馬車組合간 合議點이 導出될 수 있도록 建議하여 模範的이고 合理的인 對策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함.
- ② 방배동의 布帳馬車 集團地域처럼 零細商人의 生計保護를 위한 行政的인 配慮가 講究되어야 함.

【建 議 文】

서울시 건행303-1060(92. 5. 14)호에 의거 整備코자 하는 신촌시장주변, 신촌역, 홍제, 홍은, 모래내, 영천 등 6개 지역의 포장마차로 생계를 維持해온 住民들은 生存權과 直結된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社會的인 是非가 비등하여 反撥이 誘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關係 當局은 물리력 撤去方式을 지양하고 先對策, 後整備의 방식을 模索하여 포장마차의 運營實態 및 陽性化에 따른 調查를 聯合會側과 공동으로 實施하여 사진(별첨)과 같이 방배동, 신도림, 의정부의 地域처럼 地域特性과 與件에 따라 포장마차촌을 造成할 수 있는 方案과 市民의 通行과 步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 또는 國·公有地를 指定하여 衛生的으로 營業을 할 수 있게 하여 수년동안 營業과 團束의 惡循環을 해결해 줌으로써 行政의 信賴를 믿고 零細民들에게 矜持와 希望을 갖게하여 社會的 和合의 길에 같이 同參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代案을 造成하고 計劃을 세워 整理하는 동안 區廳長은 포장마차 撤去日을 일시 延長하여 주시기를 建議합니다.

다. 請 願

1) 風致地區解除에關한請願

이 請願은 鄭田村 議長의 紹介로 西大門區 滄川洞 100番地 95號에 居住하는 남준호外 77名이 滄川洞 100番地 一帶에 指定된 風致地區를 解除하여 建築行爲와 財産權行事を 할 수 있기를 願하는 請願으로 1992年 3月 18日 議會에 接受되어 1992年 6月 15日 都市建設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風致地區解除를 위하여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樹立時 積極反映 檢討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採擇, 區廳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請願으로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 (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都市建設委員會 李鳳洙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聽取한 後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意見書를 採擇, 地方自治法 第68條의 規定에 依하여 區廳長이 處理토록 이를 移送하였다. 本會議에서 採擇된 意見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意 見 書 】

가. 都市計劃法 第18條 第1項1號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風致地區가 그 機能을 喪失하여 都市의 自然風致維持 機能을 遂行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100番地 일대의 風致地區는 西大門區의 均衡發展과 同地區의 指定으로 인한 建築과 財産權行事に 制限을 받는 市民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解除가 積極 考慮되어야 할 것임.

나.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에 同 地域의 風致地區解除를 반드시 包含하여 서울特別市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解除가 檢討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其他案

1) 條例審査特別委員會運營에關한件

이 案件은 地方自治法の 改正에 따라 構成된 常任委員會의 活性化를 爲하여

第6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의 議決로 設置運營되고 있는 條例審查特別委員會의 存續與否를 檢討하기 爲한 案으로 第10回 臨時會 閉會中 開會된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6. 15)에서 審查結果, 本會議의 議決로 設置된 特別委員會 性格上 그 存續與否는 本會議에 上程되어 決定될 事案으로 議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議會運營委員會 鄭炳八 委員長의 審查報告를 聽取한 後 討論結果 鄭赫柱 議員의 當初 任期까지 運營하자는 動議가 滿場 一致로 可決됨에 따라 條例審查特別委員會는 任期인 1992年 11月 15日까지 運營토록 하였다.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概 況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開會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7. 8)는 所管部署인 議會事務局의 業務現況報告를 들은 後 質問答辯을 實施하였으며 本會議에서 同附된 議會召集의 地域新聞公告에 關한 件과 傍聽席의 開放을 爲한 유리벽除去件, 議會訪問記念品製作에關한件 및 金永一 議員外 20人이 發議한 洞政現況現地聽取의件을 審查하였으나 傍聽席의 유리벽除去의件만 否決處理하였고 議會召集 地域新聞公告의件과 議會訪問記念品製作의 件은 次期 委員會에서 다시 다루기로 議決하였으며 洞政現況現地聽取의件은 發議議員인 金永一議員의 심사보류요청을 받아들여 차기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議會運營委員會는 第2次 委員會를 1992年 7月 20日 開會하여 第12回 臨時會의 會期를 7月 20日부터 7月 22日까지 3日間으로 議決하였다.

1. 業務報告 및 質問答辯

議會運營委員會는 全萬鎭 事務局長으로부터 事務局의 業務現況을 報告 받은 後 能率的인 議會運營方案에 對한 質問答辯을 實施하였으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圓滑한 議政活動의 支援은 事務局職員의 士氣와 많은 關係가 있다고 보며 制度的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方案과 勤務環境改善對策은 무엇인지	○ 事務局을 勤務加點部署로 指定하는것은 地方公務員法의 規定 改正이 隨伴되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實情이며 議會勤務者에 對한 議會手當이 新設되어 비록 적지만 도움이 되고 있고 執務環境을 最大限 改善하여 執務雰圍氣가 向上되도록 할것임.
○ 職員活動 支援費用이 年100萬원 範圍로 策定된 바 있는데 이를 地域活動에 補助할 수 있는 方法은 없는지	○ 議會의 活動인 세미나, 懇談會, 公聽會等에 使用되는 經費로서 個人的인 地域議員活動費로 補助할 수 있는 經費는 아님.
○ 請願, 陳情等 議會民願處理의 能率的인 遂行을 爲하여 事務局職員을 現地訪問토록하여 資料收集等 積極的인 處理에 臨할수 있도록 하는 方案講究	○ 請願의 現場確認은 接受過程에서 必要한 境遇 現地確認을 하고 있으며 委員會 審査時도 委員들께서 現場踏査를 하고 있고 陳情은 向後 現場을 確認 區廳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는 事實을 判斷해서 必要에 따라 區廳에 移送할 것임.
○ 現行 專門委員의 定員은 2名으로 29名의 議員들을 補佐하며 專門委員으로서의 條例案 檢討等 機能을 원활히 遂行할 수 없다고 判斷되는데 增員할 方法은 없는 것인지	○ 充分히 檢討하여 두사람의 專門委員으로 不足하다고 判斷될 境遇 서울市 市政開發擔當官室과 相議하여 建議토록 할 것임.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懇談會 形式等の 對外行事費用의 支出은 運營委員會에서 檢討되어야 할 事項으로 思料되는데 이에 對한 見解는	○ 向後 懇談會等の 行事는 運營委員會 委員들의 意見을 忠實히 물어서 實行할 豫定임.

2.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 地域新聞社에의한集會公告掲載에關한件

가. 提 案

이 案件은 區議會의 集會公告를 地域新聞에 公告하여 議會의 集會狀況을 널리 알림으로써 區民의 傍聽을 擴大하고 議會活動과 役割을 積極 弘報하기 爲한 制度 改善方案으로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에(1992. 7. 8) 上程하였으며 그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主要骨子】

- 臨時會 및 定期會의 召集公告事項을 管內 3個 地域新聞에 掲載한다.
- '92年度 後半期에 5회에 걸쳐 3段의 公告(가로23cm, 세로11cm)를 掲載하며 所要豫算은 375萬원 程度임.

나. 審査 結果

議政係長으로부터 議會召集狀況 地域新聞公告에 對한 事務局의 立場을 聽取한 후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充分한 資料의 確保와 深度있는 審査를 爲하여 次期 委員會에서 다시 審査할 것을 議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地域新聞의 活性化를 爲한 側面은 認定되나 弘報效果의 提高를 爲한 發行時期, 購讀現況등 實質的인 面이 把握돼야하며 條例나 規則等의 規定으로 定하여야 할 必要가 있지 않은지	○ 地域新聞公告의 效果性을 確保하기 爲하여는 新聞別 購讀者 現況, 發行時期等이 充分히 檢討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으며 住民弘報가 極大化될 수 있는 方案을 推進할 豫定임.

【討論要旨】

- 議會의 活動을 昭祥히 알리는 地域新聞을 支援하는 次元에서 긍정적인 面은 있으나 豫算이 隨伴되는 公告依賴는 效果性을 無視할 수 없으므로 보다 具體的이고 充分한 資料를 確保하여 次期 委員會에서 深度있게 다루는 것이 合理的임.

◆ 傍聽席유리窓除去에關한件

가. 提 案

이 案件은 本會議場의 傍聽席을 유리창으로 격리하고 있어 이를 除去하여 議員들과 傍聽席에 있는 區民들의 一體感 造成을 爲한 改善方案의 決定을 爲하여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7. 8)에 上程하였으며 그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主要骨子】

- － 本會議場 傍聽席의 유리창을 除去하기 爲한 補修工事實施

나. 審查 結果

議政係長으로부터 本會議場 傍聽席의 유리창除去에 關한 長·短點을 報告 받은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查한 結果 傍聽席의 유리창除去는 本會議場이 狹小하고 傍聽席과 거리가 가까운 特性을 考慮할 때 議事進行上 問題點이 많다

는 多數意見이 있어 이를 表決한 結果 傍聽席 유리창除去의 件은 否決되었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유리창除去를 爲한 所要豫算의 規模는	○ 유리창 除去外 補充的인 補修工事로 所要豫算은 30~50萬원 程度 豫想됨.

【討論要旨】

- 傍聽席에 유리창이 設置되지 않은 議會는 傍聽席이 本會議場과는 最小限 2m以上 떨어져 있고 出入門도 달리 設置되어 있어 만약의 境遇에 對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議會는 本會議場이 狹小하고 傍聽席과 거리도 가까와 問題點이 있다는 特性을 充分히 考慮하여야 함.
- 區民과 議會와의 一體感 造成을 爲하여는 유리벽이 除去되어야 한다고 보며 議事進行을 妨害할 만한 特別한 騷擾는 없을 것으로 豫想됨.

◆ 議會訪問記念品製作에關한件

가. 提 案

이 案件은 西大門區 議會를 訪問하는 來訪客에게 議會에 對한 關心과 參與意識을 鼓吹하기 爲하여 傳達되는 記念品을 決定하기 爲한 案으로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7. 8)에 上程하였다.

나. 審査 結果

議政係長으로부터 記念品을 製作코자하는 趣旨說明과 記念品の 見本을 檢討한 後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記念品の 製作은 贊成하나 議會를 象徵할 수 있는 物件을 收集하여 充分한 檢討가 될 수 있도록 次期委員會에 上程 決定토록 議決하였다.

◆ 洞政現況現地聽取의件

가. 提 案

이 案件은 1992年 6月 25日 金永一 議員外 20人 發議로 提出되어 議會運營委員會에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11回 臨時會(閉會中)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7. 8)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提案理由】

地方議會 開院1週年이 넘도록 地域議員으로서 管內 洞事務所의 現況도 把握하지 못하고 있어 住民便益을 爲한 地域議員과 公務員間的 相互協助가 未洽한 實情이므로 地方自治法 第35條 第1項 10號 및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洞事務所를 現地訪問 洞政現況을 聽取하고 質問答辯을 通하여 地域發展과 隣近 洞과 連繫된 行政計劃의 相互協助가 可能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함.

【主要骨子】

區議員을 2個組로 編成, 1日 2個洞을 訪問하여 實施하고 組編成 및 日程은 議會運營委員會에 一任한다.

나. 審査 結果

發議者인 金永一 議員이 身上發言을 通하여 充分한 檢討를 爲하여 次期 委員會에서 審査하여 줄 것을 提議 이를 滿場一致로 議決함으로써 洞政現況 現地聽取의 件은 審査를 保留하였다.

總務委員會

概 況

第11回 臨時會 會期中 開會된 總務委員會는 1次 委員會(1992. 6. 22)를 開會하여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된 條例案 4件과 承認案 2件을 審査議決하여 第4次 本

會議에 上程하였으며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2, 3次委員會(1992. 7. 3~7. 4)를 開會하여 總務局長으로 부터 所管部署別 局·室·課長의 紹介가 있었으며 所管課長의 業務報告와 質問答辯을 實施함으로써 業務現況과 內容을 깊이 있게 把握하고 議政活動中 收斂된 民意를 區政에 反映하기 爲한 效果的인 委員會活動을 展開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4月 30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公務員의 任用關係 法令의 改正에 따른 一部 不合理한 內容을 整備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6級相當 以下 別定職公務員의 勤務上限年齡의 延長條項을 新設
- 別定職 任用資格基準을 一般職 昇進所要年數와 均衡을 維持하도록 調整
- 定員이 減縮된 電算職種의 任用資格基準을 削除

2) 審査 結果

總務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14名中 贊成 9名으로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西大門區廳의 技能職公務員缺員이 一般職公務員의 缺員數 보다 많은 데 이에 대한 充員對策은 무엇인지	○ 技能職은 技能資格證을 所持한 特殊職種에 勤務하는 公務員으로 現公務員 給與水準으로는 希望者가 없어 採用이 어려운 實情임.
○ 別定職과 一般職公務員의 勤務上限 年齡에 差等을 둔 理由는 무엇인지	○ 特殊職種 勤務者로서 一般職과 勤務特性이 달라 差等を 두어 昇進을 시키고 있음.
○ 別定職公務員은 어떤方法으로 採用하며 이를 審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 別定職公務員으로 資格이 있는者를 區廳長이 任用을 하며 特別한 審査委員會는 없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6月 8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되어 第1次 總務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 西大門區 所有物品의 效率的이고 適正한 管理로 區財政의 健全하고 能率的인 運營을 圖謀하기 爲하여 超過物品의 發生防止 對策및 重要物品의 範圍等を 內務部長官이 定한 基準에 맞도록 條例를 改正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超過物品의 發生防止를 爲하여 官署當經費에 依한 非消耗品購入을 禁하고 消耗品만 購入토록함.
- 重要物品의 範圍를 現行 單價 50萬원以上 物品에서 “定數物品”으로 限定토록 함.

- 不用品 賣却時 豫定價格을 決定하기 爲한 감정평가는 每 物品當帳簿上 取得價格이 現行 單價 300萬원에서 單價 500萬원 以上の 再活用 可能物 品으로 下限額을 調整토록 함.

2) 審査 結果

財務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後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및 答 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不用品賣却時 豫定價格을 決定하기 爲하여 鑑定評價는 現行 單價300萬 원以上 再活用可能物品에서 500萬 원以上 物品으로 改正코자 하는 理 由와 實益은 무엇인지	○ 300萬원以上の 物品을 賣却하기 爲 하여 鑑定院에 鑑定依頼할 境遇 基 本手數料가 5萬원이 들고 時間이 오래 걸림으로 500萬원以上 物品으 로 改正, 그 以下는 市場調査價格 으로 비싸게 賣却하는 것이 合理的 인.
○ 그동안 50萬원 以下の 物品은 定數 物品으로 보지 않고 包括的으로 管 理한 것인지와 鑑定依頼 物品豫定 價格을 500萬원으로 할 境遇 豫想 되는 豫算節約效果和 歲收增大에 對한 期待値는	○ 效果分析은 施行을 해보지 않아 正 確이 把握하지 못하였으나 鑑定手 數料의 節約과 業務가 迅速히 處理 될 것으로 豫想되며 向後 效果分析 을 推進할 것임.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5月 1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條例의 根據法令인 醫療保護法 全文改正에 따라 關係規定을 整備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條例의 目的 및 任命에 대한 根據法令의 改正에 따른 關聯條項 및 名稱變更
- 基金出納公務員을 福祉係長에서 保險年金係長으로 變更
- 診療內譯管理가 電算化됨에 따라 手作業에 依한 醫療保護對象者카드 記載事項을 削除하고 醫療保險管理工團에 調整內譯 通報規定 新設
- 貸拂金額에 따른 償還回數 調整 및 貸拂金 未償還者에 對한 醫療保護停止 緩和
- 貸拂金 償還期間內 未償還者에 對한 督促狀發付期間및 貸拂金缺損處分期間調整
- 決算報告및 決算剩餘金 返納規定 新設

2) 審査 結果

社會福祉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原案을 可決하여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하였다. 本會議의 主要 質問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醫療保護基金의 西大門區 出損金 現況과 醫療保護對象에 獨立有功者가 除外되어 있는데 그 理由는	○ 條例規定에는 西大門區에서 出損金을 出損토록 되어 있으나 出損하지 않고 있으며 獨立有功者는 指定 病院에서 無料로 治療하고 있으므로 醫療保護對象이 되지 않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年齡이 65才 以下로 生活能力이 전 혀없는 62才의 老人을 居宅保護者 로 保護를 하지 못하는 現行制度에 問題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救濟할 수 있는 方案은 무엇인지, 制度를 改善하기 爲하여 建議할 用意는 없 는지	○ 現行 生活保護法上 居宅保護者는 65才 以上の 者로 規定되어 있어 居宅保護者로 保護는 不可能하며 指摘한 바와 같이 特殊한 事例에 對하여는 研究하여 改善方案을 建 議할 것임.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5月 27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改正 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1991年 9月 9日 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處理에 關한 法律이 制定公布됨에 따라 從前 廢棄物管理法에 依하여 一般廢棄物과 함께 規定된 污水·糞尿및 畜産廢水 에 關한 規定을 別途의 條例로 制定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淨化槽 施設의 夜間清掃에 關한 規定
- 淨化槽清掃및 糞尿收集運搬手數料의 賦課基準과 徵收에 關한 規定
- 手數料의 加算金, 強制徵收, 納付義務承繼, 減免에 關한 規定
- 營業의 許可와 過怠料의 賦課徵收 規定

2) 審査 結果

清掃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結果 深度있는 審査를 爲하여 次期 委員會에 다시 上程하여 審査키로 議決하여 審査

를 保留하였다. 主要 討論要旨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條例案의 手數料金額은 現在보다 引上되어 住民들의 負擔만 커지고 있으며 清掃業者의 獨占的인 營業으로 民願을 惹起하는 事例가 많음.
- 便所改良을 爲한 補助金의 支給은 指定된 業者의 施工에만 限하여 支援되고 있어 追加되는 費用을 負擔하는 事例가 있고 複雜하여 補助事業이 圓滑히 推進되고 있지 않음.
- 夜間清掃에 따른 割増料는 季節에 따라 夜間의 概念이 달라지는 特性을 考慮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現實적으로 夜間清掃는 거의 없는바 規定 明示는 不合理한 點이 있음.

나. 承認案

◆ 1992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6月 4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95條및 同施行令 第113條 第2項의 規定과 地方自治法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1992年度 定數策定 主要物品의 新規取得과 處分에 對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기 爲함.

나) 主要骨子

- 定數物品의 新規取得: 컴퓨터 端末機外 2種 32件 49,000千원의 物品
- 定數物品의 對替取得: 中型 乘用車 1種 1臺 12,150千원의 物品購入
- 定數物品의 賣却處分: 使用期間이 經過하여 老朽된 大型貨物清掃車輛 2臺의 賣却處分과 大型乘用車 1臺 賣却

2) 審査 結果

財務課長の 提案説明과 専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後 質問答辯및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在席委員 10名中 8名の 賛成으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廢車對象 清掃車輛의 生産年度와 修理費用所要金額은 얼마인지	○ 購入年度는 85. 7. 24과 85. 10. 5이며 修理所要費用은 7,739,820원임.
○ 10月末이면 蘭芝島 埋立場이 閉鎖되는데 中間積換場은 確保되어 있는지	○ 水色 佛光川邊에 450坪의 中間積換場을 確保하였음.
○ 企劃豫算課에서 多機能事務機를 多量으로 購入하는 理由는	○ 行政電算化 趨勢에 따라 必要的인 端末機만을 購入 效率적이고 迅速한 業務處理를 기하기 爲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4月 3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地方財政法 第77條및 區有財産管理條例 第36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樹立된 1992年度 區有財産管理計劃을 地方自治法 第58條에 依據 議會의 承認을 얻기 爲함.

나) 主要骨子

- 區有財産의 賣却計劃：總 20筆地 996.3㎡(評價額：1,186,580千원)
- 區有財産의 新築取得：弘濟3洞 工夫房및 어린이의 집, 西北老人亭

2) 審査 結果

財務課長の 提案説明과 専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各 件別로 縮條審査한 結果 2件의 土地賣却을 保留하는 修正案을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要旨와 修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區有財産의 賣却時 鑑定價算定을 正確히 하여 財政에 損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管理官의 責任下에 徹底하게 賣却 價格을 算出하여 歲入에 損失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임.
○ 賣却對象 財産中 延禧洞 519-53, 62는 賣却時 紛爭의 素地가 있다고 보는데 財務課長の 意見은	○ 現在 駐車場으로 運營하고 있는 占有者가 있으나 占有使用料를 納付하지 않고 있어 辨償金을 賦課하였고 滯納에 따른 措置가 進行되고 있으며 賣却時 어로 인한 紛爭의 素地가 있다고 判斷됨.

【修正案의 要旨】

- 延禧洞 519-53, 62 2필지 85㎡의 土地는 占有者와의 紛爭이 豫想되므로 92年度 區有財産管理計劃中 賣却財産 對象에서 保留한다.

2. 區政報告및 質問答辯

總務委員會는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1992年 7月 3일부터 7月 4일까지 第2, 3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委員會所管部署의 幹部人事와 業務現況報告, 區政質問을 實施하여 業務現況을 把握하고 區政의 問題点과 議員活動에서 收斂된 民意를 區政에 反映하기 爲한 效果的인 委員會活動을 展開하였다. 主要 質問및 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藥局을 藥師가 아닌 一般人이 運營하고 있는 境遇가 있는데 이에 對한 對策은 무엇인지.	○ 藥師會에서 自律團束을 推進하고 있으며 保健所에서도 隨時團束을 實施하여 非藥師의 行爲가 根絶될 수 있도록 萬全을 기할 것임.
○ 不法音盤 및 비디오테이프에 對한 指導監督은 區廳에서 하고 있는바 嚴格한 指導團束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學校地域의 비디오가게에 對한 制限規定은 있는지	○ 警察, 映像協會職員, 公務員으로 團束班을 編成 不時團束을 實施하고 있고 不法비디오는 거의 根絶된 狀態이며 學校앞에는 近隣施設이 없어 비디오營業場이 없음.
○ 藥水터의 水質은 乾期와 雨期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 마다 水質檢査內容이 藥水터에 表示되는지	○ 雨期를 前後 1週日間은 水質檢査를 爲한 藥水採取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利用市民의 保健을 爲하여 月 1回 水質檢査를 實施하여 結果를 알리도록 積極 努力할 것임.
○ 覆蓋된 河川에 廢油를 放流하는 境遇 이를 團束할 수 있는 方案은 樹立되어 있는지	○ 廢油放流團束은 環境處 所管 業務이나 區廳에서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 主要工事場等에 對한 巡察을 強化 特別管理할 計劃임.
○ 財産關聯 稅金을 納付能力이 전혀 없어 滯納하는 境遇 이에 對한 措置事項은	○ 不動産이나 財産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滯納處分을 하여 徵收하고 있고 納付가 不可能한 特別한 境遇는 關聯證憑書類에 依하여 缺損處分하고 있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管內 4個洞의 T V 難視聽地域에 對한 統合公課金の 分離告知를 制度化할 計劃은	○ 難視聽地域의 T V 視聽料는 現在 分離告知하도록 制度化되어 있으며 洞事務所에 備置된 書類로 申請하면 됨.
○ 區廳에서 實施하는 各種캠페인등 行사가 많아 職能團體의 任員들의 參與가 많은데 이를 效果的으로 줄일수 있는 方案은 있는지	○ 重複되거나 不必要한 캠페인은 可及的 줄일 豫定이며 서울市에 이를 建議하여 改善할 計劃임.
○ 自動車稅의 非課稅 對象車輛은 무엇인지	○ 國防및 警護警備用 車輛과 外交使 節用, 地方自治團體의 水防等 公用에 利用하는 車輛은 非課稅됨.
○ 大岬洞 地域의 土地等級價가 골목 안이며 住居地域인데 梨大入口等 商業地域에 比하여 높게 策定된 理由는 무엇인지	○ 大岬洞의 土地等級 算定은 建設部에서 鑑定土의 鑑定價格을 告示하여 決定하는 地域이며 地域特性上 梨大入口等 中心街에 位置하고 있어 높이 策定된바 있으나 現制度가 日淺한 關係로 繼續 現實의인 調整을 推進해 나갈 計劃임.
○ 保健所의 位置가 交通便宜上 利用이 不便한 地域에 있어 效果的인 醫療支援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對策은	○ 6月 29日 부터 集中弘報期間을 定하여 弘報관플렛을 製作配布하고 있으며 住民利用度を 높이기 爲한 方案을 積極 推進할 計劃임.
○ 保健所의 專門職 公務員의 缺員에 對한 充員을 迅速히 하여 醫療支援이 忠實히 遂行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對策은	○ 專門職醫師等 缺員에 對한 充員을 推進하고 있으나 給與水準等 問題로 希望者 充員이 늦어지고 있는 實情이며 缺員業務를 全職員이 分擔 支障이 없도록 遂行하고 있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弘濟3洞 새마을共同作業場을 活用하여 障礙人들의 福祉와 住民所得 增大를 기할 方案을 檢討할 用意는	○ 弘濟3洞 새마을共同作業場 推進委員會와 協議하여 住民所得向上을 爲한 委託運營이 될수 있도록 積極的인 行政指導를 推進할 것임.

都市建設委員會

概 況

第11回 臨時會 會期中 開會된 都市建設委員會는 1次 委員會(1992. 6. 22)를 開會하여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된 條例案 1件과 鄭口出, 朴正來 議員外 8人이 發議한 建議案및 議員紹介로 提出된 請願 2件을 審査議決하여 第4次 本會議에 上程하였으며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第2, 3次 委員會(1992. 7. 10~7. 11)를 開會하여 都市整備局長으로 부터 所管部署別 局·室·課長 紹介가 있었으며 所管課長으로 부터 業務現況을 報告받은 後 質問答辯을 實施함으로써 業務現況과 內容을 깊이 있게 把握하고 議政活動中 收斂된 民意를 區政에 反映하기 爲한 效果的인 委員會活動을 展開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條例案

1) 提案

이 條例案은 1992年 4月24日 區廳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持續的으로 增加하고 있는 交通事故를 줄이기 爲하여 交通環境造成및 交通安全 活性化 方案의 一還으로 自治區 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構成運營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을 條例로 定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交通安全對策委員會는 交通事故를 줄이기 爲한 交通行政의 綜合計劃을 樹立하고 交通安全에 關한 案을 審議, 議決하며 推進實績을 評價하여 效率的인 方案을 講究토록 함.
-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包含하여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副區廳長, 副委員長은 都市整備局長이 되며 委員은 企劃豫算課長, 地域交通課長, 都市整備課長, 建設管理課長, 土木課長, 西大門·西部警察署 交通課長과 交通安全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및 交通有關團體의長 中에서 區廳長이 委囑한다.
- 委員會는 定期會및 臨時會로 區分하며 定期會는 年 1回, 臨時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隨時 召集한다.

2) 審査 結果

地域交通課長の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原案을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各種 委員會가 많으나 效果的인 活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며 交通安全對策委員會도 上部에서 設置하라는 指示에 依한 것으로 그 效果가 어느程度 있을지에 對한 課長の 見解는	○ 現在까지 交通問題는 主로 警察部署에서 다루어온 事項이나 道路施設, 地域交通問題等 行政所管事項과 分離되어 있어 效果的인 政策樹立과 執行에 問題点이 있었음. 이를 綜合的으로 檢討推進할 수 있도록 委員會를 設置運營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것임.

나. 建議案

◆ 露店布帳馬車整備改善에 따른 建議案

1) 提 案

이 建議案은 1992年 6月 19日 鄭日出, 朴正來 議員外 8人으로 부터 發議되어 第11回 臨時會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主文과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가) 主文

서울特別市 建行 30303-1060(1992. 5. 14)호로 示達된 露店(布帳馬車) 一齊整備指針에 依據 新村驛, 新村市場周邊, 弘濟洞, 靈泉, 南加佐洞等 6個地域의 布帳馬車를 撤去함에 있어 生計와 直結되는 生存權 存廢問題로 社會的인 問題가 되고 있는 바 地域與件에 따라 計劃을 세워 生計에 支障이 없도록 措置하여 줄 것을 建議한다.

나) 提案理由

1992年 6月 30日 부터 撤去되는 布帳馬車는 零細商人들의 生計와 直結되는 關係로 子女教育問題및 社會的 葛藤과 摩擦이 發生할 憂慮가 큰 深刻한 事案으로 먼저 先對策, 後撤去等 方案을 講究하여 物理力으로 인한 摩擦을 事前에 防止하고 一面 生存權을 保障해 주는 等の 細心한 配慮가 要望됨.

2) 審査 結果

鄭日出 議員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後 建設管理課長으로 부터 布帳馬車一齊整備計劃, 問題点, 對策等を 報告 받았으며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在席委員 8名中 5名の 贊成으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布帳馬車는 零細商人들의 生計手段으로 原則에 依한 整備도 좋지만 他區의 事例와 같이 布帳馬車村을 造成하여 陽性化할 수 있는 方案等 對策은 있는지	○ 一齊 整備計劃에 依한 布帳馬車整備는 生計維持型和 企業型等으로 區分하여 推進하고 있고 集團村等 陽性化方案은 서울市 方針과 現實性等的 問題로 전혀 考慮하고 있지 않음. 支援對策으로는 生業資金融資, 就業斡旋, 技術習得 등을 支援하고 있음.
○ 議會에서 建議文을 採擇하여 區廳長에게 建議할 境遇 國公有地等 活用할 수 있는 方案講究가 가능한지	○ 서울市 全域에 關한 事項으로 集團村 形成은 서울市서 考慮할 事項이며 議會의 建議가 있을 境遇 서울市에 進達할 것임.

【討論要旨】

- 布帳馬車가 零細商人들의 生計維持 手段이라 하여도 不法한 行爲에 對하여는 法秩序의 確行次元에서 整備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支援對策도 轉業, 就業斡旋等 生計手段이 確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內實있는 支援對策의 樹立과 이를 通하여 自律整備될 수 있도록 團束을 一定期限 延期함이 바람직 함.

다. 請 願

◆ 風致地區解除에關한請願

1) 提 案

이 請願은 1992年 3月 18日 西大門區 滄川洞 100番地 95號에 居住하는 남준

효外 77名이 鄭田村 議長の 紹介로 議會에 提出하여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同附된 案으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請願의 要旨와 紹介議員의 趣旨說明要旨는 다음과 같다.

가) 請願의 要旨

- 西大門區 滄川洞 一帶가 都市計劃法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風致地區로 指定되어 建築行爲및 財産權行事に 많은 制限을 받고 있음.
- 風致地區의 指定은 現在 住居地域이 形成되고 周邊與件과 環境의 많은 變化로 都市의 均衡發展과 都市機能 增進目的의 當爲性을 찾기 어려우므로 解除를 願함.

나) 紹介議員의 趣旨說明要旨(鄭田村 議長)

- 滄川洞 100番地 一帶 約 70餘 家口는 都市計劃에 依據 風致地區로 指定되어 있으나 오래전 부터 形成된 住宅地域으로 風致地區의 機能이 事實上 喪失되었다고 判斷되며 財産權行事및 建築制限으로 老朽한 建物を 改補修조차 못하는 등 生活에 不便이 極甚한 地域임.
- 特히 同地域은 延禧洞의 住居地域과 連繫되며 新村周邊의 商業地域, 延世大學校와 隣接하는 등 周邊環境의 많은 變化와 함께 確固한 住居空間으로 자리하고 있어 繼續 風致地區로 存置되는 것은 都市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都市計劃의 基本趣旨에도 符合되지 않는다고 보아 風致地區의 妥當性을 綿密히 檢討하여 解除될 수 있는 措置가 都市計劃立案에 反映될 수 있도록 措置 바람.

2) 審査 結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代表請願人의 意見을 聽取하고 都市整備課長의 補充說明과 質問答辯을 實施한 後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區廳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請願으로 委員會의 意見書를 採擇하여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1992. 6. 26)에 上程하였다.

同 請願에 對한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主要質問答辯 要旨는 다음과 같다.

【關係公務員의 參考意見】

- 滄川洞 100番地 一帶의 風致地區解除를 爲하여 수차례 서울市에 建議한 바 있으나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에서 同地域의 風致地區는 繼續存置되어 야 한다는 決定이 있어 解除되지 않고 있는 實情임.
- 西大門區에서도 이 地域의 風致地區는 解除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되며 都市基本計劃에 이를 包含 解除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임.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不合理한 都市計劃의 調整은 民願이 提起되었을 때만 檢討할 것이 아니라 管内 全地域의 都市計劃을 檢討하여 不合理한 것은 改善될 수 있도록 行政을 遂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擔當課長으로서의 見解는 무엇인지	○ 西大門區 管内 都市計劃中 그동안 民願이 되어온 事項이나 不合理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樹立時 全體的으로 反映하여 檢討整備할 計劃임.
○ 滄川洞 100番地 隣近地域의 風致地區가 解除될 때 同地域이 除外된 理由는	○ 滄川洞 100番地 一帶 地域은 筆地當 面積이 200㎡가 全部 초과되는 지역으로 綠地確保의 次元에서 解除되지 않음.
○ 西大門區管内 風致地區 13個所에 대한 全般的인 解除를 檢討할 用意는	○ 西大門區의 均衡發展과 住民生活의 增進을 爲하여 解除가 必要한 地域은 모두 서울市에 建議할 豫定임.

◆ 加佐마을버스地下鐵3號線延長認可에 따른 請願

1) 提 案

이 請願은 1992年 4月 24日 西大門區 北加佐洞 431番地에 居住하는 최순재外 1,137名이 金平洛, 鄭日洙 議員의 紹介로 議會에 提出하여 第1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되어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6. 22)에 上程하였으며 請願의 要旨와 紹介議員의 趣旨說明要旨는 다음과 같다.

가) 請願의 要旨

- 現在 運行中인 가좌마을버스의 路線이 北加佐洞 漢陽아파트를 出發하여 연가國校, 延禧1,2,3洞을 經由 西大門區廳을 回車 運行하고 있어 地域住民의 區廳往來는 用易하지만 大衆交通인 地下鐵驛과 連繫되지 않아 出退勤等에 對한 便宜는 圖謀되고 있지 않으므로
- 運行路線을 地下鐵3號線의 弘濟驛을 經由할 수 있도록 路線의 延長許可를 바라는 請願임.

나) 紹介議員의 趣旨說明要旨(金平洛 議員)

- 마을버스의 運行은 公共福利의 次元에서 既存交通路線이 不足한 地域住民의 交通便宜를 支援하기 爲한 것으로 地下鐵3號線과 連繫하여 運行할 수 있도록 하여 最大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고 此際에 南加佐1洞과 北加佐1,2洞 住民들이 모두 利用할 수 있도록 北加佐1洞事務所와 삼거리 50番 終點을 經由하여 運行되는 複數路線運營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됨.

2) 審査 結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地域交通課長의 請願現況 및 그동안 民願으로 處理한 經過報告를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同 請願은 이미 西大門區廳에서 地下鐵3號線까지 運行路線延長許可가 된 事項으로 請願目的이 達成되었다고 보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하였다. 同 請願에 對한 關係公務員의 參考意見과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關係公務員의 參考意見】

- 가좌마을버스의 運行路線延長許可申請은 議會에 請願이 提出되기 前에 區廳에 民願으로 提出되어 1992年 4月 9日 路線延長을 爲한 審査委員會를 開催, 弘濟전철역을 經由 回車할 수 있도록 議決하여 1992年 4月 28日 運行路線延長許可를 하였고 1992年 5月 10日부터 弘濟電鐵驛, 인왕아파트, 市立圖書館을 經由 運行되고 있음.
- 同 請願은 區廳에서 民願으로 이미 處理가 完了된 事項으로 請願目的이 達成된 것으로 思料됨.

【討論要旨】

- 請願目的이 이미 達成된 請願을 議會에서 다루는 것은 形式的인 面이 있으며 向後 區廳에 民願을 提出하고 이를 貫徹하기 爲한 手段으로 議會에 다시 請願을 提出하는 事例가 있을것으로 豫想됨으로 行政節次에 依하여 處理中인 事案은 可及的 處理結果를 보아 請願이 提出되어야 함.

2. 區政報告 및 質問答辯

都市建設委員會는 第11回 臨時會 閉會中 1992年 7月 10일부터 7月 11일까지 第2,3次委員會를 開會하여 委員會 所管部署의 幹部人事와 業務現況報告를 들은 後 深度있는 區政質問을 通하여 所管部署의 業務를 把握하고 理解를 增進함으로써 向後 委員會活動에 專門性確保를 圖謀하였으며 議員活動에서 收斂된 民願을 土臺로 再開發事業의 問題点, 駐車難解消方案, 均衡있는 西大門建設, 不合理한 都市計劃, 災害防止를 爲한 施設管理等 區民生活便益 增進에 焦點을 두어 能率的인 委員會 活動을 展開하였다. 主要 質問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建築現場의 資材等 積置物이 人道를 占有하고 있어 通行과 安全에 問題가 되고 있는데 이에 對한 團束對策	○ 洞事務所職員과 合同으로 建築工事場 周邊을 定期的으로 整備하고 있으며 案内標示, 安全網設置等 通行支障防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은 무엇인지	止와 安全對策을 講究하고 있음.
○ 新築의 境遇 設計의 水道管 口徑이 제대로 履行되지 않아 竣工後 民願이 惹起되는 事例가 있는데 이에 대한 方案은	○ 共同住宅의 建築에서 發生하는 事例이며 量水器를 하나만 設置토록 한 條例上 問題로서 水道事業所와 協議하여 條例를 改正토록 建議하였음.
○ 違法建築行爲에 對한 是正告知等 行政措置는 建築公務員 또는 洞事務所 職員이 正確히 通知하는 方案이 講究되어 區民이 通知內容을 몰라서 당하는 處罰을 防止할 수 있는 制度 改善의 用意는	○ 建築臺帳上 住所地가 變更申告되지 않아 正確히 通知되지 못하는 境遇가 있으나 向後 建物所在地 洞事務所에서 正確히 現住所地를 把握토록 하는 節次를 거쳐 行政措置를 알리는데 蹉跌이 없도록 할것임.
○ 國公有地와 私有地間에 있는 危險 築臺等 施設物의 補修를 爲하여 一方的으로 區民에게 補修命令을 하는 事例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改善할 수 있는 方案은	○ 危險施設物의 所有者 區分을 正確히 해야 할 問題로서 國公有施設을 個人에게 補修토록 命令하는 事例는 없으며, 國公有地의 築臺는 當然히 公共機關에서 補修할 責任이 있음.
○ 未竣工建物에 對한 斷電斷水等の 行政措置 現況과 監理士에 對한 教育 實績은	○ 斷電斷水는 區廳長이 依賴할 境遇에 該當機關인 韓電과 水道事業所에서 施行하고 있으며 監理士教育은 上・下半期로 나누어 全體教育을 實施함.
○ 영천아파트 再開發 推進에 따라 15 家口의 同意가 이루어지지 않아 遲延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再開發規定上의 同意만 있으면 推進되는 것이 아닌지	○ 再開發 關係規定上 法定同意率이 充足될 경우 少數反對에도 推進이 可能하나 組合員과의 利害關係를 解消하기 爲하여 遲延되는 事例는 있음. 同 地域의 再開發 促進을 爲하여 積極的인 行政指導를 推進할 計劃임.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再開發建築이 주로 15層以上 19層으로 高層化하는데 이로 인한 周邊景觀 沮害等 問題點에 對한 對策은	○ 日照權等 生活便益이 侵害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再建築 또는 再開發審議時 이웃과 調和있는 發展이 될 수 있도록 積極 檢討하여 處理할 方案임.
○ 아파트工事を 하면서 綠地毀損等 景觀毀損에 對한 效果的인 指導團束 實施與否	○ 綠地等の 毀損은 強力한 團束을 하고 있으며 自然景觀과의 不調和는 空間綠化, 塗色, 造景等으로 補完하고 있음.
○ 區廳 住宅課의 業務는 地域特性上 再開發, 市民아파트 管理等 業務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며 이를 效果的으로 處理하기 爲하여 住宅改良課形態의 課를 新設하는 問題를 檢討해 볼 用意는	○ 住宅課에 住宅改良係라는 職制가 新設되어 4名の 推進班이 構成되어 있으며 課職制新設은 서울市에서 任意로 할 수 있는 事項이 아니고 大統領令에 依하여 定해지는 事項임. 現實的으로 매우 어려움.
○ 北加佐洞186番地 예원建設이 施工하고 있는 再建築은 建築審議만하고 建築許可는 나지 않은 狀態에서 基礎工事を 爲한 土木工事を 몇달동안이나 하고 있는데 不法工事的 放置經緯와 措置事項은 무엇인지.	○ 同 建築行爲는 不法行爲로서 關係公務員을 懲戒處分하고 建築主를 告發措置하였음. 現在 工事は 하지 않고 있으며 再工事時는 再告發措置할 것이며 이러한 事例가 없도록 巡察을 強化하여 防止할 것임.
○ 洞事務所의 建設擔當은 建築課 및 住宅課의 所管業務를 遂行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들과 撤去員에 對한 教育과 管理는 잘되고 있는지	○ 洞事務所 建設擔當은 住宅 및 土木業務를 맡고 있어 上級部署가 二元化되어 있음. 指導監督 및 業務命令은 洞長이 하고 있으나 業務遂行能力의 提高를 爲한 教育은 區廳에서 隨時로 實施하고 있고 撤去員의 業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務 遂行時 衡平을 잃는 境遇는 主로 庶民들의 違法建築物撤去過程에서 人間的인 處理를 하는 事例가 있다 고 여겨지며 教育을 週3回 以上 實施하여 改善해 나가고 있음.
○ 모래내, 新村, 유진商街 周邊의 商業 地域 指定은 수차 建議된 바 있고 國會議員도 公約을 한 事項인데 전 혀 推進되지 않고 있는 理由는	○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樹立時 이를 反映할 計劃이고 議員들을 모시고 公聽 會를 實施할 豫定이며 都市計劃審議 委員會에 上程하여 西大門區의 均衡 發展이 이루어지도록 努力할 것임.
○ 民願用 地籍圖가 縮尺이 相異하여 不便한 事例가 많은데 이를 統一된 縮尺으로 整備改善할 用意는 없는지	○ 縮尺別로 對象地域을 選定하여 地域 住民 1/3 以上の 同意를 받아 所管 範圍內에서 措置가 될수 있도록 積極 推進할 것임.
○ 道路가 積置物과 車輛의 駐車로 占 用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道路占用 料 賦課에 對한 不分明한 立場으로 對處하기 때문에 團束도, 占用料收 入도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見解는	○ 每年 上·下半年로 나누어 一齊調査 를 實施하여 占用料 및 不當利得金 을 賦課徵收하고 있으나 積極的인 整備를 爲하여 分期1回 整備를 推進할 計劃임.
○ 街路樹等を 植栽할 때 꽃가루가 많 이 날리어 人體에 有害한 樹種을 植 栽하는 事例가 없도록 할 것과 이를 爲한 方案은 있는지	○ 主로 버짐나무와 현사시 樹種으로서 春期를 對備 剪枝作業을 하고 있으 며 新規植栽는 一切 하지 않고 있 음.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概 況

條例審查特別委員會는 第11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의 議決에 따라 1992年 11月 15日까지 效果的인 委員會活動을 爲한 方案을 樹立하기 위하여 第11回 臨時會 閉會中인 1992年 7月 13日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企劃豫算課長으로부터 區條例의 現況 報告와 幹事로 부터 委員會運營方案을 報告받고 檢討한 結果 滿場一致로 運營方案을 採擇하여 計劃性있고 能率的인 條例審查가 推進될 수 있도록 하였다. 條例審查特別委員會의 討論要旨와 採擇된 運營方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委員別로 擔當部署를 指定하여 審查實施
- 委員 個人別로 審查를 實施하면 正確性確保가 困難하여 非能率的으로 思料됨으로 組를 編成하여 審查에 着手
- 現行 條例中 住民의 生活과 直結된 分野만 集中審查
- 區條例中 不合理한 條文을 部署別로 區廳에서 把握하여 資料로 提出토록 要請

【條例審查特別委員會 運營方案】

現行 條例中 不合理한 規定의 整備를 爲하여 特別委員會 運營方案을 樹立 效果的이고 能率的인 特委活動을 圖謀하기 爲함.

1. 細部推進方案

가. 整備對象 條例 및 條文 把握

- － 區條例 全般에 關한 現況 聽取(企劃豫算課長 出席)
- － 特委 委員別 部署指定, 所管部署의 條例 全文檢討 實施

- 不合理하다고 判斷되는 條文과 整備理由 委員別 報告
- 討論을 通한 整備對象 案 確定

나. 特別委員會 改正案 提案

- 整備對象 案에 對한 字句體系 및 上位法 抵觸與否 檢討(專門委員)
- 委員會 議決 및 審査報告書 提出(委員會案 提案)

다. 特別委員會 運營

- 常任委員會 및 本會議 會期를 避하여 特委開會
- 11月 定期會 開會 以前 모든 活動 終了

2. 委員別 活動 日程

推 進 事 項	日 程	備 考
○ 特委 運營方案 檢討	'92. 7. 13 10:00	委員會會議
○ 擔當部署別 條例 研究 및 資料收集	'92. 7. 14~'92. 9. 9	議員個別活動
○ 改正對象 條例 條文審查	'92. 9. 14~9. 15 10:00	委員會會議
○ 改正對象條文 專門委員檢討	'92. 9. 17~9. 30	
○ 檢討結果報告 및 改正案討論 과 議決	'92. 10月中	委員會會議
○ 審査結果 報告	'92. 10月中	委員會會議

第 12 回 臨 時 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12回 臨時會

- 會 期：1992年 7月 20日 ~ 7月 22日(3日間)
- 集會要求者：西大門區廳長

概 況

第12回 臨時會는 西大門區廳長의 集會要求로 1992年 7月 20日 開會되어 1992年 7月 22日 閉會되었다. 第1次 本會議에서는 專門委員의 現況報告와 總務局長의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提案說明과 追更案의 審査를 爲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選任이 있었으며 第2次 本會議에서는 常任委員會에 回附된 條例案 1件과 承認案 1件, 追加更正豫算案의 審議議決이 있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委員長과 幹事を 選出하였으며 企劃豫算課長의 提案說明과 常任委員會의 豫算修正에 關聯된 部署課長의 參考意見を 聽取하였으며, 常任委員會 豫備審査結果를 바탕으로 削減의 妥當性和 事業遂行의 必要性을 檢討하고 討論을 거쳐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修正可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常任委員會는 第1次 本會議가 散會된 後 委員會別로 1, 2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所管部署의 追更案과 條例案 및 承認案을 審査하여 追加更正豫算案은 修正案을 議決,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으며 汚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 關한條例案 및 定數物品取得承認案을 議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本 會 議

概 況

第12回 臨時會 本會議는 1, 2차 本會議를 開會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과 定數物品取得承認案 및 서울特別市西大門區汚水

- 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 관한條例案을 審議議決하였다.

1. 議會活動

가. 豫算決算委員會 委員選任

第1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는 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議長이 推薦한 10名의 議員을 滿場一致로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審査를 爲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하였으며 選任된 議員은 다음과 같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

成明濟 議員, 崔容完 議員, 全聖章 議員, 金平洛 議員, 郭載滿 議員
金源珠 議員, 朴老鉉 議員, 金鍾彩 議員, 姜碩宗 議員, 鄭赫柱 議員

2. 議案處理

가. 條例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 관한條例案

이 條例案은 廢棄物管理法에서 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에 關한 規定이 別途의 法律로 制定됨에 따라 同法 施行을 爲한 條例를 制定하는 案으로서 1992年 5月 27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6月 22日 所管委員會인 總務委員會에 回附되어 第12回 臨時會 第1次 總務委員會에서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2次 本會議(1992. 7. 22)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清掃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21名中 11名의 贊成으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淨化槽清掃 代行業體의 獨占營業에 따른 手數料 過多徵收 民願이 자주 發生하는데 條例規定으로 收去手數料를 引上하게 되면 引上分은 人件費에 反映되어 向後 民願이 再發되는 事例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承認案

1) 1992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

이 承認案은 地方財政法 第95條 및 同施行令 第113條 第2項의 規定에 依據 定數物品의 新規取得에 對하여 議會의 承認을 받기 위한 案으로서 1992年 7月 10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7月 20日 所管委員會인 總務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12回 臨時會 第1次 總務委員會에서 審査結果 修正可決되어 第2次 本會議(1992. 7. 22)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滿場一致로 總務委員會에서 修正한대로 可決하였다.

다. 豫算案

1) 1992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이 追更豫算案은 1991年度 豫算純歲計剩餘金을 財源으로하여 人件費等 必須經費와 地域開發 및 民願解消豫算을 追加編成, 1992年度 既定豫算의 更正을 하기 爲하여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財政法 第36條의 規定에 依據 1992年 7月 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豫備審査를 마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査結果 修正案이 可決되어 第2次 本會議(1992. 7. 22)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成明濟 委員長의 審査經過와 委員會修正案에 對한 報告를 들은 後 討論을 거쳐 審議를 終結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修正案을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可決됨에 따라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修正可決되었다. 主要 討論要旨와 修正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① 西大門獨立公園과 金華터널의 管理運營費 自治區負擔은 向後 交付金이 補助될 것이나 脆弱한 西大門區의 財政에 影響을 미칠것으로 豫見됨.
- ② 體育團體나 同好會活動을 支援하는 것보다 時急한 道路補修等 生活不便解消를 爲한 事業에 追更豫算이 編成되어야 할것임.
- ③ 豫算案의 削減은 主要業務推進에 根源의인 支障을 招來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이루어져야 함.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要旨】

- 歲出豫算의 修正: 削減 149,147千원, 增額 149,147千원
- 一般會計 歲出修正內譯

削 減		增 額
一本會議場 出入門外 4個所 交替豫算	2,000千원	○ 豫備費 149,147千원
一 常任委員長室設置 텔레비전 購入豫算	1,350千원	
一 雇傭職 1種 防犯員 現員外 13名의 給與	55,943千원	
一 生活體育同好會 行事經費	15,000千원	
一 西大門獨立公園 開園準備費	2,000千원	
一 露店商團束業務遂行 活動費	6,600千원	
一 露店商團束業務推進費	36,245千원	
一 文型式標示板設置豫算	30,000千원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概 況

議會運營委員會는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議會事務局 所管 追更豫算案의 豫備審査를 爲하여 第12回 臨時會 會期中 第1次 委員會(1992. 7. 21)를 開會하였으며 審査結果를 豫算決算委員會에 回附하고 第12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第13回 臨時會 會期를 議決하고 委員會活動을 終了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豫算案

◆ 1992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案은 1992年 7月 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中 議會運營委員會 所管인 議會事務局의 追加更正豫算案으로 第1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豫備審査를 爲하여 回附되어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7. 21)에 上程하였으며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 議會運營委員會所管 追更豫算案 規模

가) 總 括 (單位：千원)

追加更正豫算案	'92 既定豫算額	增 減 額	增減 對比
1,106,776	1,059,800	46,976	4.4 %

나) 追更增加額 內譯 (單位：千원)

豫 算 日	追 更 豫算案	'92既定 豫算案	增 減	豫 算 日	追 更 豫算案	'92既定 豫算案	增 減
賞 與 金	66,514	65,019	1,495	資 產	11,200	5,660	5,540
定 額	95,561	75,242	20,319	取 得 費			
手 當				大修繕費	5,000	0	5,000
情 報 費	22,800	20,800	2,000	物 品	33,350	32,000	1,350
報 償 金	25,123	23,951	1,172	購 買 費			
施 設 費	15,100	5,000	10,100	計	274,648	227,672	46,976

2) 審査 結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議政係長의 追加更正豫算案에 對한 報告를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追加更正으로 增額된 歲出豫算中 3,350千원을 削減하는 修正內容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다. 主要 討論要旨와 修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議事堂 新築移轉을 持續적으로 講究하기 爲하여 可及的 不要不急한 施設物の 設置는 保留하는 것이 바람직함.
- 補修하여 活用할 수 있는 施設物を 交替하는 것은 豫算節減次元에서 再考되어 議會가 率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常任委員會室의 텔레비전 購入은 委員長이 常勤하고 있지 않은 關係로 削減하여 豫算節約을 실천하는 것이 合理的임.

【修正案要旨】

- 追加更正豫算案中 歲出豫算 3,350千원을 削減하여 全額 豫備費로 增額
 - └ 本會議場 出入門 4個所 交替豫算 2,000千원 削減
 - └ 常任委員長室 設置 텔레비전 3臺 購入費 1,350千원 全額 削減

나. 其他案

◆ 第13回臨時會會期決定의件

1) 提 案

이 案件은 第13回 臨時會 會期와 議事日程에 對한 協議事項을 處理하기 爲한 事項으로 第12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2. 8. 27)를 開會하여 審査結果 第13回 臨時會의 會期는 1992年 9月 3日부터 9月 7日까지 5日間으로하며 會期中 常任委員會를 開會하여 主要案件의 審査를 實施할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와 審査結果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第12回 臨時會에서 審査保留된 洞政現況 現地聽取의 件은 그 內容의 適否與

否를 떠나 一旦 次期臨時會의 案件으로 上程하여 所管委員會에서 檢討하는 것이 合理的인.

2) 審査 結果

第13回 臨時會 會 期	議 事 日 程				
	9. 3	9. 4	9. 5	9. 6	9. 7
1992. 9. 3~9. 7 (5日間)	第1次本會議 및 常任委員會	常任委員會	常任委員會	休 會	第2次 本會議

總務委員會

概 況

總務委員會는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總務委員會所管 追加豫算案의 豫備審査를 爲하여 第12回 臨時會 會期中 第1次 委員會(1992. 7. 20)를 開會하여 審査結果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함으로써 第12回 臨時會中 委員會活動을 終了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豫算案

◆ 1992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案은 1992年 7月 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中 總務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으로 第1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豫備審査를 爲하여 回附되어 第1次 總務委員會(1992. 7. 20)에 上程하였으며 總務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 總務委員會所管 追加豫算案 規模

【一般會計】

總 41,485,635 千圓(本豫算 對比 1,830,634千圓 增加)

○ 一般行政費 —— 26,949,009千圓(增 1,898,850千圓)

企劃行政費			內務行政費			財務行政費		
追更豫算	增	減	追更豫算	增	減	追更豫算	增	減
12,721,817	1,328,878		12,091,793	542,096		2,135,399	27,876	

○ 社會福祉費 —— 13,309,509千圓(減 82,957千圓)

福祉事業費			保健衛生費			環境綠地費		
追更豫算	增	減	追更豫算	增	減	追更豫算	增	減
3,672,683	- 397,764		1,793,936	48,137		7,842,890	266,670	

○ 産業經濟費 —— 1,037,944千圓(增 7,300千圓)

○ 民防衛費 —— 189,173千圓(增 7,441千圓)

【特別會計】

總 1,361,378千圓(本豫算 對比 172,394千圓 增加)

○ 醫療施惠事業費 —— 1,124,189千圓(增 51,480千圓)

○ 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費 —— 237,189千圓(增 120,914千圓)

2) 審査 結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所管課長의 追加更正豫算案에 對한 提案說明을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計數調整을 實施한 結果 追加更正으로 增額된 歲出 豫算中 總 70,943千圓을 削減하여 豫備費로 增額하는 修正內容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와 修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防犯員의 被服費에 計上된 人員 158名과 人件費에 計上된 171名과 의 差異內譯은 무엇인지	○ 當初 給與支給對象은 171名이었으나 缺員後 充員이 되지 않아 現在는 158名임.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地方自治團體가 豫算을 負擔하여 運營하고 있는 防犯員의 戰鬭警察 交替時期는	○ 防犯員은 停年까지 勤務토록 되어있어 全員交替計劃은 없고 缺員時 採用을 않고 不足人力은 戰警을 活用하겠다는 計劃임.
○ 금화터널의 管理維持를 爲하여 通行料를 自治區에서 徵收할 수 있는 方案은 없는지	○ 當初 터널을 建設할 때 15-20년 동안 有料로 運營한 後 無料化한다는 期間이 到來함으로써 無料化되어 移管된 事項이며 自治區條例等으로 有料化할 수 있는지는 檢討하여야 할 事項으로 確답이 어려운 事案임.
○ 保健所豫算에도 防疫費가 編成되어 있는데 洞事務所의 防疫消毒器 購入 支援은 重複되는 豫算執行이 아닌지	○ 保健所의 防疫은 區全體를 實施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새마을指導者等 自願奉仕活動을 支援하여 防疫에 萬全을 기하기 爲한 趣旨임.
○ 家庭福祉費의 '92年度 既定豫算中 報償金과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金이 削減된 理由는	○ 老齡手當支援費와 敬老乘車券支援費는 市豫算事業으로 豫算이 전도된 바 區豫算과 重複編成되어 市豫算을 活用하기 때문에 削減됨.

【討論要旨】

- 追加更正豫算案은 編成趣旨에 맞는 硬直性豫算의 確保를 爲한 方案으로 第1回 追更에 編成된 特別辦公費, 情報費等은 本豫算에서 編成되어야 할 事項임.
- 充員이 不可能한 防犯員의 給與性經費 算出基礎는 定員보다 現員을 基準으로 算出하는 것이 合當함.

【修正要旨】

- 歲出調整

削減：70,943千원
 増額：70,943千원(豫備費増額)

○ 削減內譯

(단위：千원)

計	雇傭職1種(防犯員)給與								生活 體育 特別 辦公費
	小計	給與	賞與金	手當	定額 手當	年金 支給金	報償金	福利 厚生費	
70,943	55,943	15,271	7,720	7,151	12,355	458	2,483	10,505	15,000

나. 承認案

◆ 1992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7月 10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第1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7. 20)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95條 및 同施行令 第113條 第2項의 規定과 地方自治法 第35條 第1項 第6號에 依하여 行政의 電算化 및 事務自動化 5個年 計劃의 推進을 뒷받침할 수 있는 電算裝備의 擴充과 自動車 登錄業務 區廳移管에 따른 電算裝備의 確保를 通하여 對民業務의 迅速하고 正確한 處理와 區政遂行을 爲하여 定數物品의 新規 및 對替取得을 爲한 議會의 承認을 얻기 爲함.

나) 主要骨子

- 新規取得：多機能事務器機(端末機) 등 8種 31件
- 對替取得：複寫機 1種 1件

2) 審査 結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在席委員 14名中 8名の 贊成으로 常任委員長室 設置 텔레비전 3

臺의 新規取得을 除外한 品目의 新規 및 對替取得을 承認可決하였다. 主要 質問 答辯 및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政府의 物資節約次元과 西大門區의 脆弱한 財政形便으로 볼때 不要不急한 物品의 購入은 抑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見解는	○ 各 室課에서 業務遂行上 만드시 必要하여 購入을 要求하는 物품이 많 이 있었으나 區 行政與件을 勘案하여 이를 調整하여 만드시 購入해야 할 品目만 承認을 要請한 事項임.
○ 駐停車違反 團束車輛은 小型車輛으로도 可能하다고 보는데 中型車輛을 購入코자 하는 理由는	○ 駐停車違反 團束을 爲하여 購入코자 하는 車輛은 內務部指針上의 中型車輛이며 逃走車輛의 團束을 爲하여는 同種의 車輛이 購入되어야 한다고 思料됨.

【討論要旨】

- 常勤하지 않는 議會 常任委員長室의 텔레비전 購入設置는 豫算節減 次元에서 購入하지 않는 것이 妥當함.
- 區職員의 休憩室 設置에 따른 冷·煖房機 設置는 에너지節約等の 次元에서 檢討되기 보다는 能率的인 事務處理를 爲한 勤務環境을 改善하는 側面에서 購入되어야 함.
- 行政電算化에 따른 有休人力이 發生할 境遇 洞事務所의 人力으로 補強하는 方案이 檢討가 必要함.

다.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污水·糞尿및畜產廢水處理에關한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第11回 臨時會 第1次 總務委員會(1992. 6. 22)에서 審査한 結果 深度있는 審査를 爲하여 次期委員會로 審査保留된 바 있어 第12回 臨時會 第1次 總務委員會(1992. 7. 21)에 다시 上程하였다.

2) 審査 結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提案說明은 省略하고 清掃課長으로부터 同條例案中 住民의 負擔이 되는 主要事項만 補充說明을 들은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在席委員 滿場一致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淨化槽清掃 및 汚物收去手數料를 7% 引上함에 따라 發生되는 效果는 무엇인지	○ 手數料의 7%引上은 引上分을 從事員 給與에 反映토록하여 區廳 環境美化員의 90% 水準으로 하기 爲한 事項으로 서울시淨化槽協會에서 建議한 25% 引上案을 物價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7%로 決定된 事項임.
○ 手數料 引上分이 從事者の 劣惡한 給與水準을 改善하기 爲한 事項이라면 區廳長이 단서를 달아 條件附로 할 用意는 없는지	○ 代行業體들에 對한 指示事項도 區廳 美化員 給與의 90% 支給을 勸獎하고 있으며 이를 積極 推進할 것임.
○ 代行業體들을 相互 競爭토록 하여 民願을 解消하고 서비스를 向上토록 할 用意는 없는지	○ 過當競爭을 일으켜 投資費에 對한 經常費의 補充을 爲하여 오히려 不條理가 發生될 素地가 있고 現行 制度上 서울시에서 地域의 特性 및 汚物排出量과 處理能力을 勘案하여 承認하고 있음.

【討論要旨】

- 代行業體의 獨占營業에 따른 民願의 發生防止를 爲하여 行政指導가 積極的으로 이루어져야 함.
- 手數料引上分은 반드시 從事員의 人件費로 充當되어 不條理事例가 發生치 않도록 履行與否에 對한 点檢 및 管理가 確行되어야 함.

都市建設委員會

概 況

都市建設委員會는 第1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委員會所管 追加豫算案의 豫備審査를 爲하여 臨時會 會期中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7. 20)를 開會하여 所管課長의 提案說明을 들은후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計數調整을 實施한 結果 歲出豫算을 削減하는 修正內容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한 後 委員會를 閉會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豫算案

◆ 1992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案은 1992年 7月 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中 都市建設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으로 第1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7. 20)에서 回附되어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7. 20)에 上程하였으며 都市建設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 追加豫算案 規模

- 環境綠地費中 公園綠地費 866,014千원(減 33,472千원)

－ 建設事業費 18,103,950千원(增 1,578,716千원)

建設管理費		住宅事業費		都市計劃費	
追更豫算	増減	追更豫算	増減	追更豫算	増減
17,129,046	1,419,444	382,744	89,370	592,160	69,902

2) 審査 結果

所管課長の 提案説明을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하고 計數調整을 通하여 委員會 審査對象歲出追更額 1,545,244千원中 461,010千원을 削減하여 豫備費로 増額하는 修正案을 滿場 一致로 可決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 및 修正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어린이公園의 施設補修費用을 洞事務所에 配定하여 實施하게 되면 工事が 不實할 憂慮가 있는바 이를 公園綠地課에서 總括하여 施行할 用意는 없는지	○ 公園別 工事單價가 少額이라 區廳에서 一括工事할 境遇 入札로 業者를 選定하여야 하는데 應札을 하지 않아 洞事務所로 配定, 少額工事로 施行하고 있으며 指導監督을 徹底히 하여 內實있는 補修가 되도록 할 것임.
○ 獨立公園에 植栽된 樹木中 枯死木에 對한 措置와 스프링클러施設을 設置하는 方案이 講究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見解는	○ 瑕疵補修期間이 竣工後 2年으로 되어 있어 枯死木은 全部 業者負擔으로 다시 植栽해야 할 事項이고 스프링클러 施設의 設置를 當初 建設本部에 要求하였으나 서울시 豫算事情上 不可하다 하여 反映되지 못하였음.
○ 交通案内를 爲하여 設置되는 文型式 標示板 밑에 廣告를 넣는 方法을 通하여 개당 3,000萬원씩 所要되는 工	○ 施設工事와 廣告收入은 別途로 施行되어야 할 事項으로 工事所要費 보다는 廣告契約을 통한 收入이 높을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事費를 節減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할 用意는	것으로 豫想되며 充分한 檢討를 通하여 施行해볼 價値가 있다고 思料됨.
○ 西大門區內 不良住宅 또는 無許可建物 密集地域에 對한 支援對策은 무엇인지	○ 高地帶의 無許可建物 및 不良住宅의 整備를 爲한 一齊整備事業은 撤去 및 移住對策과 補償等으로 區自體 推進이 어려운 實情이며 主로 再開發事業促進, 住宅改良事業方式으로 推進하고 있음.
○ 獨立公園의 管理에 따른 自治區의 負擔을 輕減하는 次元에서 賣店이나 駐車場을 有料化하여 收入을 確保할 수 있는 條例나 規則의 制定이 必要하다고 보는데 이를 檢討할 用意는	○ 充分한 檢討를 通하여 方案을 講究토록 할 것임.
○ 業務遂行을 爲하여 一部 職員들에게 支給되는 特別辦公費는 다른 部署職員과 衡平에 어긋나며 職員간 違和感을 造成할 憂慮가 있음.	○ 夜間團束等を 遂行하는 部署의 職員들의 士氣振作을 爲하여 支給하는 것으로 衛生業所의 團束等 夜間에 業務를 遂行하는 他部署에도 支給되고 있는 事項임.

【討論要旨】

- 西大門獨立公園, 금화터널等 管理維持에 所要되는 財政負擔 全額은 반드시 市費補助로 充當되어야 함.
- 追加更正豫算은 經常的 經費의 編成보다는 住民福祉를 爲한 建設事業豫算이 主로 編成되어야 함.
- 布帳馬車의 團束은 整備後 徹底한 事後管理를 通하여 再發을 防止함으로써 用役團束費等 消耗性豫算의 節減方案이 講究되어야 함.

【修正內容】

○ 歲出調整

┌ 削 減：461,010千원
└ 增 額：461,010千원(豫備費 增額)

○ 削減內容

削減總額	全 額 削 減					
	小 計	금 화 터 널 管 理 維 持 費	布帳馬車 團束業務 推 進 費	鞍山公園 展 望 臺 設 置	文 型 式 標 示 板 設 置	其他附帶 費吳鞍山 公園展望 臺用役費
461,010	421,910	50,266	136,254	184,450	30,000	20,940

部 削 減			
小 計	西大門獨 立公園開 園準備費	露店商團 束業務遂 行活動費	市民아 파 트殘餘地 整理工事
39,100	2,500	6,600	30,000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概 況

第1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의 議決로 構成된 豫算決算委員會는 1992年 7月 21日 第1次 特別委員會를 最年長者인 全聖章 委員長 職務代行的 司會로 開會하여 委員長과 幹事を 選任하고 第1回 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여 企劃豫算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各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查結果를 바탕으로 討論을 거쳐 審查를 終結하고 特別委員會의 修正案을 滿場 一致로 可決하여

第2次 本會議(1992. 9. 22)에 上程토록 한 後 特別委員會 活動을 終了하였다.

1. 委員會 活動

가. 委員長 및 幹事選任

全聖章 委員長職務代行的 司會로 進行된 委員長의 選任은 口頭互薦의 方式으로 實施되어 金平洛 委員이 全聖章 委員을, 金鍾彩 委員이 成明濟 委員을 推薦한 바 全聖章 委員의 讓步로 成明濟 委員을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 選任하였으며 成明濟 委員長의 司會로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하고 全聖章 委員이 推薦한 金平洛 委員을 滿場一致로 幹事に 選任하였다.

2.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豫算案

◆ 1992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豫算案은 1992年 7月 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第1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所管 常任委員會에 回附되어 豫備審査된 後 1992年 7月 21日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上程하였다.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提案理由와 豫算規模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92年度 自治區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人件費等 必須經費와 地域開發 및 住民不便解消等 事業豫算에 重點을 두어 既編成된 豫算中 不要經費와 '91年度 決算純歲計剩餘金을 追更財源으로 하여 서울市 施策方向의 具現과 自治區의 特殊性 및 自律性이 伸張될 수 있도록 編成
-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財政法 第36條의 規定에 依하여 1992年度 第

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提出하여 區議會의 議決을 얻기 위함.

나)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

○ 歲 入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追更豫算案	既定豫算	增 減
合 計	62,810,479	58,984,743	3,825,736
1. 地方稅 收入	9,798,542	9,798,542	
○ 普 通 稅	9,046,851	9,046,851	
○ 目 的 稅	671,272	671,272	
○ 過年度 收入	80,419	80,419	
2. 稅 外 收 入	16,087,181	11,737,211	4,349,970
○ 經常的稅外收入	4,417,297	4,374,520	42,777
○ 臨時的稅外收入	11,669,884	7,362,691	4,307,193
3. 補 助 金	1,595,752	2,119,986	△ 524,234
4. 調整 交付金	35,329,004	35,329,004	

○ 歲 出

區 分	豫 算 額		
	追更豫算案	既定豫算	增 減
合 計	62,810,479	58,984,743	3,825,736
1. 議 會 費	1,106,776	1,059,800	46,976
2. 一 般 行 政 費	26,949,009	25,050,159	1,898,850
3. 社 會 福 祉 費	13,309,509	13,392,466	△ 82,957
4. 產 業 經 濟 費	1,037,944	1,030,644	7,300
5. 地 域 開 發 費	18,991,074	17,412,358	1,578,716
6. 民 防 衛 費	189,173	181,732	7,441
7. 支 援 諸 費	0	0	0
8. 豫 備 費	1,226,994	857,584	369,410

2) 審査 結果

企劃豫算課長으로부터 追更案의 提案說明과 常任委員會 幹事로부터 豫備審査 結果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通하여 常任委員會의 修正內容을 檢討하였으며 豫算의 削減에 따른 事業遂行의 問題点, 不要不急한 事業의 施行, 豫算節減을 通한 彈力的 追更案執行 等 深度있는 豫算案審議에 臨하였다. 特別委員會는 豫算案을 逐條하여 件別로 修正 또는 原案可決하는 方式으로 審査하여 歲出豫算中 總 149,147千원을 削減하여 豫備費로 增額하는 修正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와 修正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市民아파트 殘餘地工事 所要豫算을 削減할 境遇 擡頭되는 問題点은 무엇인지	○ 市民아파트 殘餘地工事は 高地帶消防道路 및 車輛通行道路 確保에 따른 道路工事의 先行工事로서 工事地域은 急傾斜高地帶로 特殊車輛進入이 不可한 地域이며 豫算이 削減될 境遇 先行工事 및 後行 道路工事が 不可함.
○ 通行料가 免除된 금화터널의 管理維持費 自治區 負擔에 對한 對策은 무엇인지	○ 1993年度 豫算編成을 爲한 調整交付金 補助時 金화터널管理의 自治區 特性이 考慮되어 一括 包含될 것임.

【討論要旨】

- 금화터널의 管理維持費를 自治區 財源에서 負擔하는 것은 財政이 脆弱한 實情에 비추어 無理한 負擔이나 管理維持 責任이 있는한 豫算은 確保되어야 하며 施設管理에 차질이 發生되어서는 아니됨.
- 布帳馬車의 整備를 爲한 豫算을 確保하여 效果的인 整備가 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이번에 完全히 根絶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西大門獨立公園의 開園行事는 可及的 浪費性 行事を 줄여 豫算節減次元에서 實施되어야 함.
- 追更豫算에 反映된 事業推進 成果는 반드시 定期監査에서 點檢되어야 함.
- 追更豫算의 編成趣旨와 거리가 있는 經常事業費는 '93年度 本豫算에 編成하여 推進하는 것이 合理的임.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案要旨】

- 歳出豫算의 修正：削減 149,147 千원, 増額 149,147 千원
- 一般會計 歳出修正內譯

削	減	増	額
－ 本會議場 出入門外 4個所 交替豫算	2,000 千원	○ 豫備費 149,147 千원	
－ 常任委員長室設置 텔레비전 購入豫算	1,350 千원		
－ 雇傭職 1種 防犯員 現員外 13名의 給與	55,943 千원		
－ 生活體育同好會 行事經費	15,000 千원		
－ 西大門獨立公園 開園準備費	2,000 千원		
－ 露店商團束業務遂行 活動費	6,600 千원		
－ 露店商團束業務推進費	36,245 千원		
－ 文型式標示板設置豫算	30,000 千원		

第 13 回 臨 時 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第13回 臨時會

- 會 期 : 1992年 9月 3日~9月 7日(5日間)
- 集會要求者 : 朴老鉉 議員外 9人

概 況

第13回 臨時會는 請願과 條例案等の 案件處理를 위해 1992年 8月 27日 朴老鉉 議員外 9人の 集會要求에 의하여 5日間の 會期로 9月 3日 開會되었다.

本會議에서는 이번 會期中 다루게 될 案件을 所管 常任委員會에 回附하였으며 各 常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上程된 案件을 1992年 9月 7日 第2次 本會議에서 審議議決하였다.

議會運營委員會는 1992年 9月 4日 委員會를 開會하여 金永一 議員外 20인이 發議한 洞政現況現地聽取의 件을 審査하였으며, 總務委員會에서는 1992年 9月 3日 委員會를 開會하여 區廳長 提出 承認案과 改正條例案 各 1件을 審査하였으며 都市建設委員會도 1992年 9月 3日 委員會를 開會하여 區廳長 提出 條例案 1件과 2件의 請願을 審査하였다.

本 會 議

概 況

第1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는 專門委員의 臨時會 開會經過, 審議對象 案件및 民願處理 結果 報告를 들은 後 會期 決定의 件을 上程하여 原案 可決하였으며, 第2次 本會議에서는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審査議決하여 本會議에 上程한 案件別로 常任委員長의 審査報告와 該當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5個 案件을 審議議決하였다.

1. 議案處理

가. 條例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이 條例案은 都市計劃法 및 同法施行令이 改正되어 自治區에서도 都市計劃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는 根據規定이 制定됨에 따라 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를 設置하고 이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코자 하며 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 設置와 同時에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에 의해 運營되는 西大門區都市整備諮問委員會는 廢止하고자 1992年 7月 9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所管 常任委員會인 都市建設委員會에 回附, 審查議決을 거쳐 第13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都市建設委員會 李鳳洙 委員長의 審查報告와 都市整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左斗行 議員으로부터 本 案件의 審議를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어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23名中 6名の 贊成으로 否決되었으며, 區廳長 提出 原案을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23名中 13名の 贊成으로 可決하였다.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① 좀 더 深度있고 關係法規에 抵觸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制定하되 우리 區의 特性에 맞는 條例制定을 위하여 審議를 保留함이 妥當함.
- ② 所管委員會의 充分한 審查와 議決을 거쳤으므로 保留는 困難함.
- ③ 都市計劃委員會의 委員構成에 있어 區議員 委囑 2名을 3名으로 修正하여야 함.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保健所法 및 醫療保護法施行規則의 全文 改正에 따른 關聯條文 整備와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에서 實施하고 있는 各種 診療事業中 手數

料 및 診療費의 免除對象 基準 마련을 위하여 1992年 9月 3日 所管 常任委員會인 總務委員會에 回附, 委員會에서 審査議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保健行政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나. 承認案

1) 1992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에대한承認案

이 承認案은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同法施行令 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2年度 下半期에 追加 處分코자 하는 雜種財産과 地方財政法 第82條 및 同法施行令 第85條 第2項의 規定에 依據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特別法에서 規定한 公共團體에 대한 行政財産의 無償使用 貸付許可의 期間延長을 위하여 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 第36條 및 同施行 規則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1992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에대한承認案이 1992年 8月 2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所管委員會인 總務委員會에 審査回附되었으며 總務委員會의 審査議決을 거쳐 委員會 修正案이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總務委員會 修正案을 可決하였다.

다. 請願

1) 北阿峴3洞風致地區解除에관한請願

이 請願은 全聖章 議員의 紹介로 西大門區 北阿峴3洞 1番地 1153號 송재정外 134名이 北阿峴3洞 1番地 一帶에 指定된 風致地區를 解除하여 建築行爲 및 財産權行事を 할 수 있기를 원하는 請願으로 1992年 7月 7日 議會에 接受하여 1992年 9月 3日 所管 委員會인 都市建設委員會에 回附, 審査한 結果 風致地區 解除를

위하여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樹立에 反映하여 檢討함이 妥當하다고 議決되어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都市建設委員會 李鳳洙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였으며 委員會에서 議決한대로 意見書を 採擇, 地方自治法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에게 移送하여 處理토록 議決하였다.

採擇된 意見書の 內容은 다음과 같다.

〔意 見 書〕

西大門區廳에서는 北阿峴3洞 1番地 一帶의 風致地區解除를 위하여 地域特性과 與件을 細密히 檢討하여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에 反映되어 檢討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弘恩2洞公園用地및開發制限區域解除에관한請願

이 請願은 成明濟 議員의 紹介로 西大門區 弘恩2洞 8番地 648號 한용희外 65名이 弘恩2洞 8番地 一帶 에 指定된 公園用地및 開發制限區域을 解除하여 建築行爲 및 財産權 行事を 할 수 있기를 원하는 請願으로 1992年 7月 18日 議會에 接受되어 1992年 9月 3日 所管 委員會인 都市建設委員會에 回附, 審査한 結果 公園用地및 開發制限區域의 解除를 위하여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樹立에 反映하여 檢討함이 妥當하다고 議決되어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都市建設委員會 李鳳洙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였으며 委員會에서 議決한대로 意見書を 採擇, 地方自治法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에게 移送하여 處理토록 議決하였다.

採擇된 意見書の 內容은 다음과 같다.

[意 見 書]

西大門區廳에서는 弘恩2洞 8番地 一帶의 開發制限區域과 公園用地 指定이 地域特性和 與件및 都市基本計劃과 符合된 合理的인 都市計劃인가를 細密히 檢討하여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에 反映될 수 있도록 積極 推進하여야 할 것임.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概 況

議會運營委員會는 第13回 臨時會 會期中 1992年 9月 4日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洞政現況現地聽取의 件을 上程, 審査議決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其他案

◆ 洞政現況現地聽取의件

1) 提 案

이 案은 1992年 6月 25日 金永一議員外 20人으로 부터 發議되어 1992年 6月 26日 議會運營委員會에 審査回附되었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議會 開院 1周年이 넘도록 地域議員으로서 管內 洞事務所의 現況도 把握하지 못하고 있어 住民便益을 위한 地域議員과 公務員間의 相互協助가 未洽한 實情이므로 地方自治法 第35條 第1項 第10號 및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洞事務所를 現地訪問, 洞政現況을 聽取하고 質問과 答辯을 통하여 地域發展과 隣近 洞과 連繫된 行政計劃을 相互協助가 可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區議員 29名을 2個組로 編成, 1日 2個洞을 訪問 實施
- 組編成 및 訪問日程은 議會運營委員會에 一任

2) 審査 結果

發議者の 提案說明은 省略하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聽取한 後 討論한 結果 심도있는 연구견토를 위하여 93年度 議會運營委員會 會議時 再審査할 것을 滿場 一致로 可決하였으며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洞政現況의 現地聽取, 質問, 答辯은 關係規定에 抵觸되므로 否決함이 妥當
- 93年度 以後에 字句修正이나 提案修正等 研究檢討하여 再審査
- 93年度에 關聯條例 改正을 통하여 洞政現況 現地聽取 實施

總務委員會

概 況

總務委員會는 第1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1992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에대한承認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을 1992年 9月 3日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議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2年 7月 25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第1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9. 3)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保健所法(法律 第4355號, 1991. 3. 8) 및 醫療保護法施行規則(保健社會部 令 第883號, 1991. 10. 10)의 全文 改正에 따른 關聯條文 整備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에서 實施하고 있는 各種 診療事業中 手數料 및 診療費의 免除對象 基準 마련

나) 主要骨子

- 手數料 및 診療費의 免除 對象
 - ① 應急患者의 移送 및 診療
 - ② 傳染病 發生地域 住民診療 및 豫防接種
 - ③ 訪問診療 및 移動診療
 - ④ 後天性免疫缺乏症에 感染된 者の 檢査 및 診療
 - ⑤ 無依託者의 診療
 - ⑥ 國家, 서울特別市 또는 西大門區가 開催하는 各種 行事時 診療支援
 - ⑦ 其他 區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保健醫療事業(案 第3條 第2項)

2) 審査 結果

保健行政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時期上 條例의 改正理由를 理解하기 어려운데	○ 91. 10. 10. 醫療法 施行規則이 이미 制定되었으나 區 條例를 미처 制定하지 못하여 이번에 改正케 되었음.
○ 條例改正案을 保健社會部나 서울市에서 指示가 되어야 改正案을 만드는지	○ 母法の 改正에 따라 關係條文을 改正하는 것임.

【討論要旨】

- 保健所의 診療手數料도 條例改正의 必要性이 있다고 보며 母法에만 依存하지 말고 實務陣에서 檢討할 필요가 있음.

가. 承認案

◆ 1992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에 대한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8月 2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第1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9. 3)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77條(公有財産의管理計劃) 및 同法施行令 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2年度 下半期에 追加 處分코자 하는 雜種財産과 地方財政法 第82條 同施行令 第85條, 第88條의 第2項의 規定에 의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特別法에서 規定한 公共團體에 대한 行政財産의 無償使用 貸付許可의 期間延長을 위하여 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 第36條 및 同施行規則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1992年度

區有財産 管理計劃을 變更하기 爲함.

나) 主要骨子

○ 區有財産 賣却

總財産現況		當初管理計劃承認			追加管理計劃承認			總 計		
筆地 數	面 積 (㎡)	件數	筆地 數	面 積 (㎡)	件數	筆地 數	面 積 (㎡)	件數	筆地 數	面 積 (㎡)
462	25,054	9	20	996.3	6	16	1,359.2	15	36	2,355.5

○ 區有財産 無償使用(行政財産)現況

物 件 地	面 積		名 稱	代 表 者	貸 付 條 件
	堡 地	建 物			
延禧洞 86-12 號	411.2㎡		연궁派出所	西大門警察署長	無償使用 (延 長)
滄川洞 31-14 號	80.55㎡ (國有地)	80.55㎡	韓國自由總聯盟 西大門支部	西大門支部長 김남일	無償使用 (新 規)

▶ 財産使用期間 및 貸付期間

使 用 者	貸 付 申 請 期 間	面 積		備 考
		土 地	建 物	
西大門警察署長	'92. 1. 1~'94. 12. 31	411.2㎡		使用延長
韓國自由總聯盟 西大門區支部	'92. 7. 15~'95. 7. 14		80.55㎡ (2層)	新規使用

2) 審査 結果

財務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聽取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한 結果 賣却 및 貸付對象 財産에 대하여 件別로 表決키로 可決되어

○ 區有雜種財産 賣却對象中

－ 梨花學堂側이 申請한 賣却財産目錄 第1號 大峴洞 31-4外 1 所在 127㎡

財産은 賣却對象에서 除外키로 滿場一致 議決

○ 行政財産의 無償貸付中

- － 無償貸付 및 使用許可 對象目錄 1號 財産의 無償貸付期間을 3年에서 1年으로 滿場一致 修正可決하고
- － 無償貸付 및 使用許可 對象目錄 2號의 財産은 貸付期間을 3年에서 1年으로 하되 無償으로 하자는 動議案과 貸付期間을 3年에서 1年으로 하되 有償으로 하자는 動議案이 있어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10名中 6名の 贊成으로 貸付期間을 3年에서 1年으로 하되 無償으로 하자는 動議案이 可決되었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와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先進國에서는 行政需要의 對備를 위하여 많은 國・公有地를 取得하는 事例가 있어 區廳도 檢討할 必要가 있음.	○ 財務部 指針에도 可及的 賣却치 말고 貸付를 하라는 指示가 있어 坪數가 큰 筆地는 賣却을 自制하고 있음.
○ 區有財産의 無償貸付에 있어 期間이 지난 後에야 承認要請을 하는 等 順序와 節次를 無視하고 있는데	○ 此後에는 事前承認을 받도록 할것임.
○ 北加佐洞 再開發地區의 筆地를 公示地價로 再開發組合에만 賣却하는 理由는	○ 再開發地域內 行政財産은 다시 環境改善이 必要한 地域이므로 組合側에 賣却토록 되어 있는 事項임.

【討論要旨】

- 梨花女大에서 占有하고 있는 區有地(大峴洞 31-4外 1)127㎡는 賣却보다는 代土 等이 可能하다고 判斷되어 再檢討할 必要가 있음.

【修正案】

〔1992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에 대한承認案修正案〕

1992年度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에 대한 承認案 中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 承認案 別紙 賣却對象財産目錄中 第1號 大峴洞 31-4외 1 垡地127㎡의 賣却은 管理計劃에서 除外한다.
- 無償貸付 및 使用許可 對象行政財産의 貸付期間을 3年에서 1年으로 한다.

修 正 案 對 比 表

1. 賣却對象財産

承 認 案				修 正 案			
一連 番號	財 産 表 示			一連 番號	財 産 表 示		
	地目	所 在 地	面積㎡		地目	所 在 地	面積㎡
1	垡	대현동 31-4외 1	127		－ 매 각 제 외 －		
2	垡	영천동 65-27	16.1	1	垡	영천동 65-27	16.1
3	垡	홍제동 156-156	23	2	垡	홍제동 156-156	23
4	垡	홍제동 156-251	7	3	垡	홍제동 156-251	7
5	垡	영천동 7-15	1.1	4	垡	영천동 7-15	1.1
6	垡	북가좌동 424-7외9	1,185	5	垡	북가좌동 424-7외9	1,185

2. 無償貸付使用

承 認 案					修 正 案				
一連 番號	種別	所 在 地	數 量	許可 條件	一連 番號	種別	所 在 地	數 量	許可 條件
1	無償 貸付	서대문구 연희동 86 번지 12호 (연국파출소)	411.2	無償 貸付 期間： 3년 (更新)	1		同一합		無償 貸付 期間： 1年 (更新)
2	無償 貸付	서대문구 창천동 31 번지 14호 (구 창천동 청사 2층)	80.55	無償 貸付 期間： 3년 (新規)	2		同一합		無償 貸付 期間： 1年 (新規)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1992년도 관리계획총괄표(6-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9	996.3	1,186,580	5 2	1,232.2 293.2	1,617,269 253,549	14 2	2,228.5 293.2	2,803,849 253,549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2	293.2	253,549	2	293.2	253,549
	4. 매	가 토지 건물 기타	9	996.3	1,186,580	5	1,232.2	1,617,269	14	2,228.5	2,803,849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계				2	491.75	1,350	2	491.75	1,350
		토 지				1	411.2	1,250	1	411.2	1,250
		건 물 기 타				1	80.55	100	1	80.55	100

19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면적 (㎡)	공시지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1	대	영천동 65-27	16.1	16.1	789	"	건 물 로 점유재산	영천동 83번지	노애미	
2	대	홍제동 156-156	23	23	635	"	잔 여 지	홍제동 156-157	윤두봉	도로개설 키워해협 의취득한 재산증잔 여재산
3	대	홍제동 156-251	7	7	736	"	건 물 로 점유재산	홍제동 156-266	김병태	
4	대	영천동 7-15	1.1	1.1	750	"	재 개 발 사업지구 내의 재산	영천구역 재개발조합		'90. 4. 30. 사업인가
5	대	북가좌동 424-7외9	1,185	1,185	8,850	"	재 개 발 사업지구 내의 재산	북가좌2구역 재개발조합		'91. 9. 30 사업인가

(무상)대부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6-6)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면적	재산가액	허가조건	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	비 고
	종별	소 재 지	지목·구조	수량					
1	무상 대부	서대문구 연희동 86-12호 (연공 파출소)	대 지	411.2		142,750	무상대부 기간 : 1년 (경신)	○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제82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 8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희2동 연공파출소
2	무상 대부	서대문구 창천동 31-14호 (구 창천동 청사 2층)	건 물	80.55		8,055	무상대부 기간 : 1년 (신규)	○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 지방재정법 제88조2항 및 82조 ○ 사유총연맹육성법 제2조 1, 2항 (법률 제4107호)	창천동 마 을금고 2층 (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 부)

都市建設委員會

概 況

都市建設委員會는 第1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北阿峴3洞風致地區解除에 관한請願, 弘恩2洞公園用地 및 開發制限區域解除에 관한請願과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을 1992年 9月 3日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議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7月 9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第1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9. 3)에 上程하였으며 制定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 都市計劃法 및 同法施行令이 改正됨으로 自治區에 都市計劃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는 根據基準이 마련되어 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를 設置하고 이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條例로 規定하기 위함.
- 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 設置와 同時에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에 의해 運營되는 西大門區都市整備諮問委員會는 廢止코자 함.

나) 主要骨子

- 委員會의 機能은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 所管事項中 委任된 事項의 審議와 關係法令에서 審議 및 諮問을 받도록 定한 事項의 審議・諮問, 區

廳長이 立案한 都市計劃 및 其他 都市計劃에 關하여 附議한 事項에 대하여 諮問함.(案 第2條)

- 委員會의 委員數는 17人 以內로, 委員長은 區廳長, 副委員長은 副區廳長으로 하고 委員은 區議會議員과 公務員 및 都市計劃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中에서 區廳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되 區議會議員과 公務員이 아닌 委員數는 全體 委員數의 2/3이상으로 함.(案 第3條)
- 會議召集은 委員長이 必要時 召集하며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함.(案 第5條)

2) 審査 結果

都市整備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9名中 6名の 贊成으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區議員과 公務員의 委員數를 5名으로 하여 區議員이 2名 委囑되는데 6名으로 하여 區議員 1名을 追加하는 方案의 檢討用意는	○ 現在 條例案上으로 2名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建議, 檢討하겠음.
○ 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이 議決도 되지 않은 狀態에서 會議가 開催된 적이 있는지	○ 都市計劃委員會는 開催될 수가 없으며 既存 都市整備諮問委員會가 있으나 條例가 公布되면 解體될 것임.

【討論要旨】

- 都市計劃委員會 委員中 區議員 및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委囑은 都市計劃을 專攻한 專門家로 委囑되어야 함.

나. 請 願

◆ 北阿峴3洞風致地區解除에關한請願

1) 提 案

이 請願은 全聖章 議員의 紹介로 西大門區 北阿峴3洞 1番地 1153號 송재정外 134名이 提出, 請願審査規則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1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都市建設委員會에 審査回附되어 1993年 9月 3日 第1次 委員會에 上程하였으며 請願要旨는 다음과 같다.

가. 請願要旨

- 西大門區 北阿峴3洞 1番地一帶(約 150筆地, 500餘 住民)가 “都市計劃法에 의한 風致地區”로 指定되어 建築行爲 및 財產權行事等 많은 制限을 받고 있는 바,
- 이 地域은 典型的인 住居地域으로 諸般 都市施設과 宅地整備가 比較的良好한 狀態로 風致地區로서의 基本要件인 綠地空間과 公園조차 없는 이 地域이 梨大 뒷산과 鞍山一部와 接해 있다는 理由만으로 風致地區로 繼續 存置됨은 都市의 均衡發展과 都市機能의 增進이 基本目的인 都市計劃法の 妥當性を 찾기 어려움.
- 이에 따라 現 與件에 符合될 수 있도록 北阿峴3洞의 風致地區를 解除하는등 善處하여 줄 것을 바라는 請願임.

2) 審査 結果

紹介議員인 全聖章 議員의 趣旨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및 關係公務員의 參考意見を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西大門區議會請願審査規則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本 請願은 “區廳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請願”으로 委員會의 意見を 採擇하여 本會議에 上程할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 및 委員會 意見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北阿峴3洞 風致地區 解除가 妥當性 이 있는지, 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 에서 議決될 수 있는지	○ 妥當性與否를 檢討하도록 남광엔지 니어링에 用役을 주었으며 그 結果 가 提出되어야 알 수 있고 都市基本 計劃에도 反映될 수 있음.
○ 風致地區를 解除할 境遇와 存置시킬 境遇 各各의 長短點은	○ 存置時의 長點은 綠地, 公園確保로 좋은 環境 維持 및 都市의 均衡發展 期待, 短點은 건폐율 30% 適用, 高 度 및 層數制限等 私有財産權行事에 制限을 받으며 解除時의 長短點은 그 反對의 效果가 있음.
○ 風致地區는 어떠한 境遇에 解除가 possible한지	○ 風致地區가 住居地域 가운데 位置하 여 事實上 그 目的達成이 不可能한 境遇가 該當되며 그 實例로 滄川洞 100番地 風致地區가 檢討되고 있음.

【討論要旨】

-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 樹立時 管内 모든 風致地區를 再檢討하여 反映, 不合理한 都市計劃은 解除 또는 整備되어야 할 것임.
- 管内 都市計劃의 立案時는 徹底한 現場爲主로 檢討되어 地域與件 및 特性이 反映되어야 할 것임.

【委員會意見】

- 西大門區廳에서는 北阿峴3洞 1番地 一帶의 風致地區 解除를 위하여 地域特性과 與件을 細密히 檢討하여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 및 再整備計劃에 反映되어 檢討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弘恩2洞公園用地및開發制限區域解除에關한請願

1) 提 案

이 請願은 成明濟 議員의 紹介로 西大門區 弘恩2洞 8番地 한용희外 65名이 提出, 請願審査規則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1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都市建設委員會에 審査回附되어 1993年 9月 3日 第1次 委員會에 上程하였으며 請願要旨는 다음과 같다.

가. 請願要旨

- 西大門區 弘恩2洞 8番地 一帶는 1963年度에 住宅公社에서 住宅團地를 建設하여 國民住宅으로 分讓받았으나 1972년에 開發制限區域으로, 이어 1983년에 公園用地로 追加指定되어 既存建築物에 대한 增·改築과 改·補修는 勿論 財產權行事에도 制限을 받고 있어 住民生活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同 地域과 隣接한 鍾路區 평창동과 弘濟3洞(弘濟1地區 再開發區域)等 地域與件이 거의 같다고 여겨지는 地域의 新築과 開發現場의 例를 들어 同 地域의 居住住民들의 不利益과 衡平에 어긋나는 公園用地 및 開發制限區域의 解除를 懇切히 바라는 내용의 請願임.

2) 審査 結果

請願人과 紹介議員인 成明濟 議員의 趣旨說明,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및 關係公務員의 參考意見を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한 結果 西大門區議會請願審査規則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本 請願은 “區廳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請願”으로 委員會의 意見を 採擇하여 本會議에 上程할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 및 委員會 意見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에 反映되면 都市計劃이 즉시 解除 또는 調整될 수 있는지	○ 市議會의 議決後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와 建設部傘下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建設部에서 決定告示되어야 함.
○ 弘恩2洞의 國民住宅 分讓地에 都市計劃을 決定한 것이 合理的인지	○ 當時 都市計劃의 立案背景은 알 수 없으나 細密한 檢討가 있었어야 함.
○ 1963年度에 住宅公社가 分讓한 住宅數와 分讓面積 現況은	○ 住宅은 74棟, 垜地面積은 約 5,000 坪임.

【討論要旨】

- 住宅公社도 國家投資機關인데 國民住宅을 建築, 分讓時 向後 都市計劃을 豫測하였어야 함.
- 開發制限區域은 國家的 次元에서 檢討되어야 할 事項이므로 于先 公園의 解除가 檢討되어야 할 것임.

【委員會意見】

- 西大門區廳에서는 弘恩2洞 8番地 一帶의 開發制限區域과 公園用地 指定이 地域特性和 與件 및 都市基本計劃과 符合된 合理的인 都市計劃인가를 細密히 檢討하여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에 反映될 수 있도록 積極 推進하여야 할 것임.

第 14 回 臨 時 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 第14回 臨時會 —

- 會 期 : 1992年 10月 5日~10月 9日(5日間)
- 集會要求者 : 金鍾彩 議員外 10人

概 況

第14回 臨時會는 條例案等의 處理를 위해 1992年 9月 24日 金鍾彩 議員外 10人의 集會要求에 의하여 5日間の 會期로 10月 5日 開會되었다.

第1次 本會議에서는 이번 會期中 다루게 될 案件의 審査를 所管 常任委員會에 回附하였으며 各 常任委員會의 審査議決을 거쳐 上程한 案件을 1992年 10月 8日 第2次 本會議에서 審議議決하였다.

總務委員會와 都市建設委員會에서는 1992年 10月 5日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區廳長提出 條例案 5件의 審査議決로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으며, 議會運營委員會는 1992年 10月 6日 第1次 會議를 開會, 2件의 案件을 審査議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한 後, 第14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第15回 臨時會 議事日程協議의 件外 2件을 上程, 審査議決하였다.

本 會 議

概 況

本會議는 2次의 會議를 開會하였으며 92年 10月 5日 第1次 本會議에서 專門委員으로부터 臨時會 開會經過, 審議對象 案件및 民願處理 結果 報告를 聽取한 後 第14回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을 上程하여 原案 可決하였다. 92年 10月 8日 第2次 本會議에서는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審査議決하여 常任委員長의 審査報告와 該當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6個 案件을 審議議決

하였다.

1. 議案處理

가. 條例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 條例案

이 條例案은 大統領令 第13727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施行令의 規定에 의하여 同 施行令 第15條(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中 國內旅費 支給範圍의 改正에 따라 西大門區議會 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中 關聯 別表를 改正하기 위하여 1992年 10月 2日 具滋億 議員外 6人이 發議하여 1992年 10月 5日 第1次 本會議에서 議會運營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査議決을 거쳐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議會運營委員會 鄭炳八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具滋億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討論을 實施하여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原案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① 第13代 國會에서 日費에 대한 決議가 있는 후 撤回된 例를 보아 本 改正條例案은 撤回됨이 妥當함.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分娩介助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이 條例案은 醫療保險法 및 同施行令과 保社部 告示에 의하여 1989年 7月 1日 부터 서울特別市가 地域醫療保險地域으로 決定되어 低所得住民도 當然適用 被保險者가 되고 醫療保險法 規定에 의하여 分娩도 醫療保護對象이 되므로 서울特別市西大門區分娩介助費支給條例에 의하여 低所得層 妊産婦에게 支給되던 分娩介助費의 支給對象者가 없어짐에 따라 現行 條例를 폐지하기 위하여 1992年 8月 25日 區廳長이 提出하여 1992年 10月 5日 第1次 本會議에서 總務委員會에 回附,

審査議決을 거쳐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保健行政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教育施設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條例案은 現行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教育施設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관한 條例에 의거 區稅課稅 免除對象이 되고 있는 社會教育施設, 博物館 等 以外 圖書館進興法에 의한 私設 公共圖書館을 免除對象에 包含하여 社會教育의 機能遂行 支援을 위하여 條例를 改正코자 1992年 9月 2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0月 5日 第1次 本會議에서 總務委員會에 回附, 審査議決을 거쳐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稅務1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條例案은 1992年 6月 1日 建設部令 第507號에 의하여 制定된 “建築物臺帳의記載및管理等에관한規則”第10條 및 第11條에 建築物臺帳의 發給및 閱覽手數料 納付事項이 規定되어 있어 關係條項과 重複事項을 整備하기 위하여 1992年 9月 2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0月 5日 第1次 本會議에서 總務委員會에 回附, 審査議決을 거쳐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稅務1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1992年 9月 3日 國務會議에서 議決되어 1992年 9月 17日 大統領令 第13727號로 改正 公布된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5條의 「別表」國內旅費 支給範圍에 의하여 條例의 別表를 整備하고 議員의 旅費中 議會 出席旅費를 現行 會議出席에서 議會出席으로 改正하여 會期中 旅費를 支給할 수 있는 根據規定을 마련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第3條의 出席日數 計算規定을 第2條의 日費와 第4條의 旅費에 同一하게 適用
- 第4條의 議會出席 旅費를 會議出席에서 議會出席으로 改正
- 別表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出席時 食費 支給
 - ┌ 議長, 副議長 : 11,000원
 - └ 議 員 : 10,500원
- 國內旅費 支給範圍 改正(別表1)
 - 旅行地別 區分없이 同一 適用(特地, 甲地, 乙地 廢止)
 - 實費費用 引上(現地交通費, 宿泊費, 食費)

2) 審査 結果

發議者인 具滋億 議員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을 거쳐 滿場一致로 原案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및 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日費와 旅費支給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能力을 勘案하여 條例로 定할 수 있는지	○ 同 施行令 第15條의 別表範圍內에서 定하도록 되어 있어 例示된 金額을 超過하는 支給은 不可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閉會中 開催되는 常任委員會도 會議의 出席으로 보아 日費와 旅費等を 支給할 수 있는지	○ 地方自治法에 모든 日費와 出席旅費는 會期中의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明示되어 있어 現行規定上 不可함.

나. 豫算案

◆ 1992年度第2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豫算案은 1992年 10月 1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第2次 追加更正豫算案中 議會事務局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한 豫備審査를 위하여 議會運營委員會에 回附된 案으로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10. 26)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追更豫算案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1992年度 第2回 追更豫算案을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財政法 第36條의 規定에 의거 區議會의 承認을 얻기 위한 것임.

나) 議會事務局 所管 追更豫算案의 規模

【單位：千圓】

追更豫算案	既定豫算額	第1回追更額	今回追更額	備 考
801,901	746,435	43,628	11,840	第1回 追更對比 1.4%增加

2) 審査 結果

이 追更豫算案은 改正된 施行令과 條例에 의하여 追加로 確保되어야 할 議員의 旅費와 食費에 관한 事項으로 條例改正時 充分한 審議가 있었다고 보아 削減의 餘地가 없는 法定經費로서 議事進行의 圓滑을 위하여 提案說明과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15回 臨時會 第11次 本會議에서 構成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다.

다. 其他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長旗蹴球大會開催에關한件

1) 提 案

이 案은 1992年 5月 4日 尹益洙 議員外 20人으로 부터 發議되어 1992年 10月 5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10. 6)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生活體育에 대한 住民들의 關心이 擴散되면서 스포츠를 통한 健全한 餘暇生活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區民의 健康增進과 한가족 雰圍氣 造成을 위하여 每年 洞別 親善競技를 開催코자 함.

나) 主要骨子

- 生活體育 育成을 위하여 同好人團體의 自律的 開催 誘導
- 生活體育 西大門區 蹴球聯合會에서 主催토록 支援
- 모든 區民이 스포츠에 參與하는 雰圍氣 擴散
- 22個洞別로 選手를 選拔, 定期大會 開催

2) 審査 結果

發議者인 尹益洙議員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聽取한 後 討論結果 深度있는 研究檢討를 위하여 審査를 보류할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蹴球大會 開催에 따른 豫算이 많이 所要되므로 議會 自治豫算이 成熟된 後 實施
- 規模를 縮小하여서라도 蹴球大會를 開催하는 方向이 바람직함.
- 本 件은 內容上 補完点이 많으므로 좀더 研究檢討하여 次期 會議에 上程, 審査하는 것이 妥當함.

◆ 第15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1) 提 案

이 案은 李文馥 議員外 15人으로부터 集會要求된 第15回 臨時會 議事日程의 協議를 위해 第14回 臨時會 閉會中 1992年 10月 26日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第14回 臨時會 以後에 接受된 案件의 處理를 위하여 第15回 臨時會 集會를 要求하는 事項임.

나) 主要骨子

○ 第15回 臨時會는 1992年 10月 27일부터 31일까지 5日間으로 한다.

2) 審査 結果

議會事務局 議案係長으로부터 第14回 臨時會 以後에 接受된 議案에 대한 要旨를 聽取한 後 議事進行의 圓滑을 위하여 質問答辯과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1992年度監查資料提出要求의件

1) 提 案

이 案은 1992年度 行政事務監查 實施에 따른 監查資料를 區廳에 要求하기 위한 案으로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12. 26)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第36條와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查및調查에 관한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1992年度 行政事務監查에 必要한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議會事務局의 監查資料要求를 委員別로 提出받아 委員會 議決을 거쳐 本會議에 上程코자 함.

나) 主要骨子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議會事務局의 監査에 따른 資料 提出要求는 1992年 11月 20日까지 委員別로 監査資料 要求書를 委員會에 提出

2) 審査 結果

議會運營委員會 鄭炳八 委員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議事進行의 圓滑을 위하여 質問答辯과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總務委員會

概 況

總務委員會는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서울特別市西大門區分娩介助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教育施設에 대한區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및 서울特別市西大門區宗教團體醫療業에 대한條例案을 1992年 9月 3日 第1次 委員會를 開會, 審査議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分娩介助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8月 2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0月 5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10. 5)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醫療保護法 第7條 第2項, 同法 施行令 第4條 第3項 및 保社部 告示(第88

-69號, '88. 11. 10)에 의하여 1989年 7月 1日부터 서울特別市가 地域醫療保險地域으로 決定되어 서울特別市 低所得住民도 當然適用 被保險者가 되고,

- 醫療保險法(法 第4353號, 1991. 3. 1)第8條 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分娩도 醫療保護對象이 됨에 따라,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分娩介助費支給條例에 의하여 低所得層 妊産婦에게支給되던 分娩介助費의支給對象者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特別市西大門區分娩介助費支給條例를 廢止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分娩介助費支給條例(1988. 5. 1, 條例 第52號)廢止

2) 審査 結果

保健行政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聽取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이 條例案을 廢止하는 理由와 分娩介助費 支給에 대한 零細民 弘報與否는	○ 現在 全國民 醫療保險이 實施되어 充分한 治療가 可能하고 이 條例案은 全國적으로 廢止되고 있는 實情이며 零細民에게도 弘報를 實施하였음.
○ 低所得層 妊産婦에게 醫療保護惠澤이 주어지고 있는데 零細民이 手術을 要할 境遇 醫療保護惠澤 制度가 있는지	○ 低所得層 妊産婦는 助産院에서 分娩할 境遇 分娩介助費를 支給받으며 手術을 要하는 零細民에게는 醫療保護惠澤이 있음.
○ 지금까지의 分娩介助費 支給現況은	○ '89年 以前에 9名에게 支給되었으며 以後에는 支給實績 없음.

【討論要旨】

- 現在 助産員制度가 廢止되는 趨勢이며 看護士가 助産員의 役割을 代身하는 實情으로 條例로써의 存置 理由가 없음.
- 이 條例案을 지금 廢止하는 것보다 充分한 예고기간을 두는 의미에서 1年間 留保하는 方案이 合當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教育施設에대한區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9月 2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10. 5)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現行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教育施設에대한區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에 의거 區稅課稅 免除對象이 되고 있는 社會教育施設, 博物館 및 美術館 等 以外에 私設 公共圖書館을 免除對象에 包含하여 社會教育機能 遂行을 圓滑하게 하고자 條例를 改正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課稅 免除對象에 圖書館進興法の 適用을 받는 圖書館을 追加하기로 함. (案 第2條)
- 改正內容은 公布한 날부터 1994年 12月 31日까지 施行하기로 함.(案 附則 第1條, 第2項)

2) 審査 結果

稅務1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8名中 5名の 贊成으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私設公共圖書館의 設置基準은	○ 私設의 基準은 教育委員會 所管事項이며 단지 租稅的인 측면에서 稅制 惠澤을 주기 위함.
○ 管内에는 私設公共圖書館이 없고 財政自立이 脆弱한 狀態에서 區稅를 免除하는 理由	○ 私設公共圖書館이 없으므로 靑少年의 教育的인 면에서 私設 公共圖書館의 설립권장을 위하여 稅制上 지 원방안을 强구하기 위함.

【討論要旨】

- 私設公共圖書館의 管内 유치를 위하여 條例를 改正하여야 함.
- 私設公共圖書館이 없는 狀況에서 이 條例를 改正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9月 2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10. 5)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建設部令 第507號(1992. 6. 1)로 “建築物臺帳의記載및管理等에관한規則 第10條 및 第11條”에 建築物臺帳의 發給 및 閱覽手數料 納付事項이 規定되어 있기에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의 關係條項을 整備 및 重複規定을 削除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에 建築物管理臺帳 發給手數料가 350원으로 規定되어 있으나

- 建設部令 第507號(1992. 6. 1字 官報)로 “建築物臺帳의記載및管理等에 관한規則 第10條 및 第11條”에 建築物臺帳 謄·抄本發給 및 閱覽과 手數料 納付事項이 規定되었으므로 同條例의 重複되는 規定을 削除하고 “建築物 管理臺帳”을 “建築物臺帳”으로 改正코자 함.

2) 審査 結果

稅務1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聽取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하여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8名中 5名の 贊成으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建築物管理臺帳外 3件的 手數料를 引上하는 理由	○ 92. 6. 1 建設部令 第507號에 의하여 이미 效力이 發生되어 全國적으로 施行되고 있음.
○ 市民奉仕室에서 建築物管理臺帳外 3件的 手數料를 이미 引上하여 徵收하고 있는데	○ 이 條例案은 內務部에서 8月末 準則이 示達되어 條例改正이 늦어진 바 向後 措置를 迅速히 하겠음.

【討論要旨】

- 上位法에 의하여 改正된 手數料이며 이미 施行하고 있는 事項이므로 特別한 問題點이 없음.
- 條例의 改正은 適期에 推進하여 遲延되는 事例가 없어야 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宗教團體醫療業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9月 22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1992. 10. 5)에 上

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醫療法에 의하여 設立된 醫療法人, 또는 教育法에 의한 醫科大學附屬病院, 社會福祉法人의 病院等과 '73. 9. 20字 醫療法 施行令 改正 以前부터 設立, 運營中인 學校法人病院, 財團法人等の 醫療業用 不動産은 課稅免除對象이 되고 있으나, '73. 9. 20以後 設立된 財團法人中 宗教團體가 社會福祉事業의 一還으로 運營中인 醫療業用 土地, 建築物에 대하여는 財産稅, 綜合土地稅, 事業所稅가 課稅對象이므로 이를 免除해 줌으로써 社會福祉事業 遂行을 支援해 주기 위해 條例를 改正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民法 第32條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中 宗教團體가 醫療機關 開設許可를 받아 運營하는 醫療業에 대한 稅制支援을 하고자 함.(案 第1條)
- 醫療事業用 建築物 및 그 附屬土地에 대하여 財産稅를, 繼續 醫療事業에 供하는 境遇 綜合土地稅, 事業所稅를 免除하기로 함.(案 第2條)
- 免除 事務處理는 課稅客體를 管轄하는 區廳長에게 委任하기로 함.(案 第3條)
- 課稅免除는 申請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繼續 免除對象等 區廳長이 알 수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도 可能하게 함.(案 第4條)

2) 審査 結果

稅務1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聽取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한 바 管內에는 宗教團體에서 運營中인 病院이 없으며 宗教團體의 醫療業에 대한 區稅課稅免除는 歲入增大에 逆行되므로 否決하자는 案이 動議되어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8名中 7名の 贊成으로 區廳長 提出 原案을 否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이 條例案은 改正條例인지 아니면 制定條例인지, 또한 그 理由는	○ 制定條例案으로서 宗教團體가 運營하는 醫療業에 대하여 區稅의 課稅를 免除코자 하는 것임.
○ 管内 醫療業中 免稅를 받고 있는 病院들은 收益性이 높은데 그 收益을 어떤 方法으로 社會에 還元하고 있는지	○ 세브란스病院은 教育法에 의하여 學校法人인 延世大學校가 運營하고 있으며 教育施設과 醫療施惠로 收益을 社會에 還元하고 있음.

【討論要旨】

- 宗教團體의 醫療業에 대하여 區稅를 免除하면 自治區의 歲入增大에 逆行하는 것임.
- 宗教人들이 收益性이 높은 醫療業에 參與하며 區稅를 免除한다는 것은 合理的인 宗教活動이 아니라고 判斷됨.

都市建設委員會

概 況

都市建設委員會는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1992年 10月 5日 第1次 委員會를 開會, 審査議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9月 2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9月 3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10. 5)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自動車の 急増으로 深刻해지고 있는 駐車難 解消를 위하여 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를 設置하여 地域單位 駐車需要와 實情에 適合한 施設擴充과 效率的인 管理로 都市交通難 解消에 寄與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駐車場 特別會計 歲入(案 第3條)
 - ①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の 駐車料金
 - ② 道路交通法에 의한 不法駐・停車 過怠料
 - ③ 當該 自治區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④ 市の 補助金
 - ⑤ 駐車目的 道路占用料
- 駐車場 特別會計 歲出(案 第4條)
 - ① 駐車場 設置, 管理, 運營 費用
 - ② 不法駐・停車 團束에 따른 費用

2) 審査 結果

地域交通課長の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한 바 修正動議案이 提出되어 表決한 結果 滿場 一致로 修正案을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및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特別會計의 運營으로 區收入이 줄어들 境遇에는 條例制定이 意味가 없으며 駐車場設置에 관한 區條例가 優先 制定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特別會計를 設置하는 것은 特定歲入을 特定歲出에 支出토록 하는 것으로 歲入의 增大와는 關係가 없음.
○ 駐車場法과 서울市駐車場設置및 管理條例가 이미 制定되었는데 區條例가 制定되지 않은 理由	○ 서울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 第24條의 規定에 의해 業務가 區廳長에게 委任되어 別途 條例制定은 不必要함.
○ 路上駐車場の 駐車收入이 서울市 收入으로 計上되는 理由	○ 路上駐車場の 駐車料金を 22個區에 均分하여 補助하기 위해 모든 路上 停車場收入을 市收入으로 하고 있음.

【討論要旨】

- 駐車場 擴充을 위한 區收入 增大方案이 마련되어야 함.
- 路上駐車장을 設置할 수 있는 場所를 確保, 公共駐車장을 擴充하여야 함.
- 特別會計의 帳簿記帳 方式에 複式簿記를 導入, 細密한 檢證이 可能토록 하여야 함.

【修正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대한修正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中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案 第7條中 “一般會計”를 “複式簿記”로 한다.

第 15 回 臨 時 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條例審查特別委員會

第15回 臨時會

- 會 期：1992年 10月 27日 ~ 10月 31日(5日間)
- 集會要求者：李文馥 議員外 15人

概 況

第15回 臨時會는 李文馥 議員外 15人의 集會要求에 依하여 1992年 10月 27日 開會되어 1992年 10月 31日 閉會되었다. 第1次 本會議는 專門委員의 現況報告와 總務局長을 代理한 企劃豫算課長의 第2回 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對한 提案說明이 있었으며 追加更正豫算案의 審査를 爲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構成과 委員選任이 있었다.

第2次 本會議는 10月 30日 開會되어 常任委員會에서 審査上程한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年賀狀안보내기에關한決議案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議決後 本會議를 散會하였다.

常任委員會는 第15回 臨時會 會期中에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과 條例案, 承認案, 決議案을 審査하였으며 閉會中인 11月 16日 第2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1992년도 監査計劃에 對한 協議를 實施하였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0月 28日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委員長과 幹事를 選出한 後 企劃豫算課長의 提案說明과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結果에 對한 幹事들의 報告를 聽取하였으며 全體追更案을 審査하는 方式으로 所管課長에 對한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하였으며 計數調整을 通하여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修正可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고 特別委員會의 活動을 終了하였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는 第15回 臨時會 閉會中인 11月 4日 第1次 特別委員會를 開會하여 條例의 整備를 爲한 研究檢討 結果報告를 듣고 11月 13日 第2次 特別委員會를 開會하여 그동안 條例整備 및 研究事項을 總整理하여 制定條例案 2件과 改正條例案 1件을 委員會 提案으로 發議하여 議長에게 보고한 後 1年間の 特別委員會 任期를 終了하였다.

本 會 議

概 況

第15回 臨時會 本會議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과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年賀狀안보 내기에 關한 決議案을 審議議決하였다.

1. 議會活動

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選任

第15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는 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議長이 推薦한 9名의 議員을 滿場一致 可決로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의 審査를 爲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하였으며 選任된 議員은 다음과 같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

金永一 議員 宋榮于 議員 鄭赫柱 議員 姜碩宗 議員 丁和鎭 議員
左斗行 議員 具滋億 議員 朴正來 議員 鄭日洙 議員

2. 議案處理

가. 豫算案

1) 1992年度第2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이 追更豫算案은 서울特別市の 市費財政補助金과 '92歲入決算結果 自治區의 財源調整에 關한 條例에 依하여 追加交付된 調整交付金을 財源으로 하여 法令 및 指針變更에 따른 追加經費所要 및 財政與件上 受容하지 못한 住民宿願事業施行

을 爲하여 編成되어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財政法 第36條의 規定에 依據 1992年 10月 1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所管常任委員會別로 豫備審査를 마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審査結果 修正案이 可決되어 第2次 本會議(1992. 7. 30)에 上程하였다.

○ 審議經過 및 結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朴正來 委員長의 審査經過와 委員會修正案에 對한 報告를 들은後 討論을 거쳐 審議를 終結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修正案을 滿場一致 可決함에 따라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은 修正可決되었다. 追加更正案의 修正要旨는 다음과 같다.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要旨】

○ 歲出豫算案의 修正

- － 歲出調整規模：削減 120,875천원, 增額 120,875천원(他歲出科目 및 豫備費)
- － 削減 및 增額內譯

削 減		增 額	
○ 事務室 賃借料	23,000천원	○ 弘濟4洞 老人亭增築	60,000천원
○ 事務室賃借管理費	1,375천원	○ 豫備費增額	60,875천원
○ 道路環境整備車輛費	2,500천원		
○ 수색로步道整備工事費	10,000천원		
○ 道路欄干交替工事費	74,000천원		
(백련교, 홍연교)			
○ 下水道浚渫(代行事業分)	10,000천원		

나. 條例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이 條例案은 深刻한 駐車難의 解消를 爲하여 駐車施設擴充과 效率的인 管理方案의 一環으로 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를 設置하는 案으로서 1992年 9月 22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었으며 第14回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에서 特別會計의 運營을 一般會計에 依하지 말고 企業會計를 適用토록 하는 修正案이 可決되어 第1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으나 本會議에서 再審査 附되어 第15回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에서 再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 第2次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 審議經過 및 結果

都市建設委員會 李鳳洙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地域交通課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後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26名中 14名の 贊成으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區廳長 原案을 可決하였다. 主要討論要旨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上位법인 豫算會計法等에서 複式簿記를 適用할 수 있는 會計에 對한 範圍가 企業型會計로 規定되어 있고 이를 違反하여 條例를 改正하는 것은 地方自治法 第17條의 立法限界에 抵觸되는 關係로 區廳長 原案대로 一般會計를 適用토록하는 것이 合理的임.
- 特別會計를 企業會計의 例인 複式簿記方式을 適用함으로써 財務 및 財政構造가 正確히 把握되게 되며 이에 따라 地域住民에게 어떠한 利益이 될 수 있는가를 쉽게 把握할 수 있음으로 公聽會等 專門家の 意見を 聽取하여 再審査함이 바람직함.

다. 承認案

1) 1992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이 承認案은 定數物品의 新規取得과 不用品의 處分에 對한 議會의 承認을 얻기 爲하여 1992年 10月 20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案으로서 第15回 臨時會 第1次 總務委員會(1992. 10. 27)에서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後 滿場一致 議決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라. 決議案

1) 年賀狀안보내기에關한決議案

이 案은 西大門區議會가 虛禮虛飾의 排擊과 勤儉節約에 對한 率先垂範을 爲하여 年末年始年賀狀안보내기運動을 展開할 것을 決議하는 案으로서 1992年 10月 29日 全聖章 議員外 6人으로 부터 發議되어 第15回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10. 30)에서 審査結果 原案可決하여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議會運營委員會 鄭炳八 委員長의 審査報告와 全聖章 議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하고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決議文을 採擇함으로써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와 決議文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年賀狀 안보내기決議案이 可決될 境遇 모든 議員은 이를 遵守하여야 하며 出身地域은 물론 對外的인 年賀狀發送도 自制하여야만 決議案의 趣旨가 尊重될 수 있다고 思料됨.
- 年賀狀을 보내는 것은 住民들에 對한 議員의 人事로 이를 代替할 수 있는 懸垂募 設置等 補完策이 講究되어야 함.

【 決 議 文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議員一同은 社會 各界各層에 蔓延되고 있는 過消費와 虛禮虛飾에 依한 病弊를 憂慮하며 當面한 國家經濟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勤儉節約의 氣風을 振作하고자 뜻을 모아 國民啓導에 앞장서서 率先實踐함으로써 名譽로운 議政活動에 이바지하기 爲하여 議會의 議決로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 우리 議員은 年末年始 年賀狀안보내기를 實踐함으로써 虛禮虛飾의 排斥에 模範이 된다.
- 우리 議員은 勤儉節約을 率先實踐함으로써 儉素한 社會氣風造成에 앞장선다.
- 우리 議員은 西大門區廳 全職員과 有關團體에서도 積極 同參할 것을 勸告하며 持續的인 社會運動으로 推進한다.

1992年 10月 30日

西 大 門 區 議 會 議 員 一 同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概 況

議會運營委員會는 第15回 臨時會 會期中인 1992年 10月 30日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會하여 本會議에서 回附된 年賀狀안보내기決議案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上程하였으며 1992年 11月 16日 第2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第16回 定期會 議事日程과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을 檢討하여 處理하고 委員會活動을 終了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決議案

◆ 年賀狀안보내기에關한決議案

1) 提 案

이 決議案은 1992年 10月 29日 全聖章 議員外 6人이 發議하여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10. 30)에 上程하였으며 注文과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가) 主 文

- 儉素한 年末年始의 率先垂範과 形式的인 年賀狀 發送에 따른 虛禮虛飾의 排擊을 爲하여 우리 西大門區議會 議員은 年賀狀 發送을 一切 自制하며 西大門區廳 및 有關團體에서도 積極 同參할 것을 勸告하기로 決議한다.

나) 提案理由

- 形式的인 年賀狀 發送은 虛禮虛飾으로 勤儉節約하여야 할 現實情을 勸案하여 볼때 浪費 要因이 되고 있으며
- 西大門區議會의 議決로 모든 議員이 이를 率先 實踐함으로써 社會啓導의 役割을 遂行하고 바람직한 議政活動의 標本이 되기 爲함.
- 地域住民 以外는 除外하며 西大門區議會 議員一同으로 懸垂幕을 揭添하고(洞當4枚) 班常會報에 掲載한다.

2) 審査 結果

發議者인 全聖章 議員의 提案說明을 들은 後 討論을 거쳐 審査한 結果 滿場一致로 決議文을 採擇하고 洞別로 4枚의 프랑카드를 寄贈하여 新年人事를 代身하는 修正案을 可決하여 第2次 本會議(1992. 10. 30)에 上程하였다. 主要 檢討要旨와 採擇된 決議文은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根本적인 趣旨에서 同感하나 “決議文에 西大門區廳 및 有關機關의 同參을 勸告한다”는 文案은 強制性이 있다고 思料됨.
- 形式的인 年賀狀發送到 따른 浪費의 排擊과 勤儉節約의 率先實踐이라는 뜻에서 決議文을 採擇하여 推進하는 것은 바람직한 議政活動이라고 보며 新年人事를 簡素하게 代身할 方案을 檢討하는 것도 바람직함.
- 新年人事 프랑카드는 洞別로 4枚 程度는 揭添되어야 함.

【委員會 決議文】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議員一同은 社會 各界各層에 蔓延되고 있는 過消費와 虛禮虛飾에 依한 病弊를 憂慮하며 當面한 國家經濟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勤儉節約의 氣風을 振作하고자 뜻을 모아 國民啓導에 앞장서서 率先實踐함으로써 名譽로운 議政活動에 이바지하기 爲하여 議會의 議決로 다음과 같이 議決한다.

- 우리 議員은 年末年始 年賀狀 안보내기를 實踐함으로써 虛禮虛飾의 排斥에 模範이 된다.
- 우리 議員은 勤儉節約을 率先實踐함으로써 儉素한 社會氣風造成에 앞장선다.
- 우리 議員은 西大門區廳 全職員과 有關團體에서도 積極 同參할 것을 勸告하며 持續적인 社會運動으로 推進한다.

1992年 10月 30日

西 大 門 區 議 會 議 員 一 同

나. 其他案

◆ 第16回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이 案件은 第16回 定期會 會期와 議事日程에 對한 議長의 協議事項을 處理하

기 위한 事項으로 第15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2. 11. 16)를 開會하여 審査結果 第16回 定期會 會期는 1992年 11月 25일부터 1992年 12月 24일까지 30日間으로 하고 議事日程은 다음과 같이 할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議事日程】

第16回定期會 會 期	議 事 日 程				
	11. 25	11.26~11.27	11.28~11.29	11. 30	12. 1~12. 3
1992.11.25~ 1992.12.24 (30日間)	開 會 式 第 1 次 本 會 議	第 2,3 次 本 會 議 (區政質問)	休 會	第 4 次 本 會 議 (區政質問)	常任委員會 (區政監査)

議 事 日 程					備 考
12. 4~12. 6	12. 7~12.10	12.11~12.20	12. 21	12.22~12.24	
休 會	常任委員會	豫算決算特 別 委 員 會	第 5 次 本 會 議	休 會	

◆ 1992年度監査計劃書協議의件

이 案件은 第16回 定期會에서 實施되는 行政事務監査를 爲하여 樹立된 監査計劃과 日程에 對한 議長의 協議事項을 處理하기 爲한 案으로 第15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2. 11. 16)에 上程하여 審査한 結果 監査日程은 1992年 12月 1일부터 12月 3일까지 常任委員會別로 實施하며 監査方法等은 常任委員會에서 定하여 實施토록 하였으며 議會事務局의 監査는 議長의 方針에 따라 別途로 檢討할 것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였다.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常任委員會別로 實施되는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는 議會運營委員會에서 區政

監査日程만을 定하고 監査方法, 所管部署別 監査日程 등은 常任委員會의 自律的인 決定에 依하여 實施토록함.

- 議會事務局에 對한 監査日程은 常任委員會의 監査가 終了된 後 實施하기로 되어 있어 時間的으로 促迫하기 때문에 議長의 方針을 얻어 別途로 日程을 定하여 實施함이 바람직함.

總務委員會

概 況

總務委員會는 第15回 臨時會 會期中인 1992年 10月 27日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本會議에서 回附된 1992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과 1992年度 第2回 西大門區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中 委員會所管 豫算案을 審査하였으며 第16回 定期會에서 실시되는 區政監査를 爲한 監査資料目錄을 委員別로 11月 11日까지 提出토록 議決하고 委員會活動을 終了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承認案

◆ 1992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10月 20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第15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10. 27)에서 回附된 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2. 10. 27)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住民登錄의 電算網 擴充과 議會事務局業務의 電算化에 必要한 定數物品의 取得과 不用決定된 定數物品의 處分을 爲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기 爲함.

나) 主要骨子

- 新規取得(3種 25件) : 컴퓨터 23件, 프린터 1件, 印刷機 1件
- 處 分(9種 32件) : 에어컨外 8種 3件

2) 監査 結果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滿場 一致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現在 쓰고있는 AT286컴퓨터를 代替하기 爲하여 AT386DX 컴퓨터를 購入하면 既存 컴퓨터는 어떻게 處理할 것인지	○ AT386DX 컴퓨터는 住民登錄電算網을 充分히 堪當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購入하며 既存컴퓨터는 다른 部署에서 活用할 것임.
○ 不用賣却品中에서 TV는 다른 部署에서 活用하는 것이 豫算節減次元에서 合理的이라고 보는데 이에 對한 見解는	○ '80년도에 購入한 TV로 老朽하여 畫面狀態가 나쁘고 故障이 잦아 再活用할 수 없음.

【討論要旨】

- 定數物品中 住民登錄電算網의 擴充을 爲한 컴퓨터 購入은 調達價格이 市場價格보다 비싼 境遇가 있으므로 正確한 市場調査를 통하여 廉價로 購入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함.
- 不用處分코자 하는 定數物品의 現地踏査結果 處分하는 것이 管理維持 및 經濟的인 側面을 考慮할 때 合當하다고 判斷됨.

나. 豫算案

◆ 1992年度第2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案은 1992年 10月 1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中 總務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으로 第15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10. 27) 에서 豫備審査를 위하여 回附되었으며 總務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 追更豫算案 規模(今回追更額)

(單位：千원)

計	內 務 行政費	財 務 行政費	福 祉 事業費	保 健 衛生費	施設費	包 括 豫備費
967,258	360,690	110,000	23,322	6,600	234,308	232,338

2) 審査 結果

所管課長들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하였으며 修正 없이 區廳長原案대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자는 動議를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12名中 7名の 贊成으로 可決되어 總務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은 修正 없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廳舍가 不足하여 賃借使用하는데 區廳에 1個層을 増築하여 이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計劃은 갖고 있는지	○ 廳舍의 賃借는 一時的인 것으로 區廳內 假建物을 撤去하고 10억 程度의 豫算을 編成하여 5層 建物로 増築할 計劃을 세우고 있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區廳舍를 使用하고 있는 團體를 豫算으로 外部建物을 賃借하여 移轉토록 할 수 있는지 與否	○ 特別法에 依하여 廳舍를 使用토록 支援하는 것은 可能하나 有關團體를 移轉하기 위한 建物賃借豫算編成은 問題가 있음.
○ 居宅保護者の 越冬煉炭購入費支援額이 個當 235원으로 策定되어 있어 現實에 맞지 않는데 이를 改善할 容의는	○ 支援基準은 保社部에서 定하고 있어 區廳長이 引上할 수 없는 事項이며 建議를 할것임.
○ '91年度를 對比하여 '92年度에 保健所를 利用한 區民의 現況은	○ '91年度 總 投藥件數가 2만 3천건이며 '92年度 9月末 現在 3만2천5백건으로 약 180%정도 增加하였음.

【討論要旨】

- 福祉施設建築等の 豫算은 可及的 本豫算에 編成하여 早期發注및 施工으로 越冬期工事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廳舍의 不足을 一時的인 方便으로 處理하는 것보다 根本的인 廳舍増築等の 方案을 講究하여야 함.
- 有關團體의 廳舍利用으로 區廳의 部署가 外部廳舍를 賃借하여 使用한다는 것은 不當한 事項으로 有關團體의 移轉對策을 建議하여야 할 事項임.

다. 其他案

◆ 1992年度監査資料要求의件

이 案件은 第16回 定期會 會期中 委員會別로 實施되는 行政事務監査의 資料要求 및 質問事項을 委員會의 議決로 決定하여 該當機關에 移送하기 爲하여 委員別로 監査에 必要한 資料目錄을 提出토록하는 案으로 第15回 臨時會 第1次 總務委員會 (1992. 10. 27)에서 提出期限을 1992年 11月 11日까지로 할 것을 議決하였다.

都市建設委員會

概 況

都市建設委員會는 第15回 臨時會 會期中인 1992年 10月 27日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本會議에서 再審査回附된 條例案과 追更豫算案에 對한 豫備審査를 實施하여 審査結果를 本會議에 上程 및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으며 第16回 定期會에서 常任委員會別로 實施되는 行政事務監査를 爲한 監査資料目錄을 11月 10日까지 提出토록 議決하였으며 閉會中인 1992年 11月 16日 第2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第16回 定期會에서 實施되는 區政監査計劃協議와 細部推進日程을 確定하여 議決함으로써 委員會活動을 終了하였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豫算案

◆ 1992年度第2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案은 1992年 10月 1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第2回追加更正豫算案中 都市建設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으로 第15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10. 27)에서 豫備審査를 위해 回附되었다. 都市建設委員會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 追更豫算案 規模(今回追更額)

(單位：千圓)

計	建設管理事業費	地域開發事業費	下水事業費	全體追更額對比
1,829,902	24,032	1,617,868	188,000	65.1 %

2) 審査 結果

所管課長別로 提案說明을 들은 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하였으며 計數調整을 實施하여 總 追更額 1,829,902천원중 74,000천원을 削減한 審査結果를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와 修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街路環境整備車輛의 賃借使用處와 賃借必要性은 무엇인지	○ 整備收去된 布帳馬車を 運搬하기 爲한 2.5t 車輛의 賃借費用이며 區廳保有行政車輛으로는 運搬이 不可하여 賃借코자 함.
○ 布帳馬車團束用役業體의 物理的인 強制團束에 의해 不祥事가 發生할 憂慮가 있으며 이에 따라 行政機關인 區廳이 怨聲의 對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對策은	○ 用役團束員을 區廳에 出勤토록하여 公務員과 함께 敎育을 시키고 있으며 現場管理에 萬全을 기할 것임.
○ 布帳馬車의 團束을 警察部署로 移管하여 推進하면 效果的이고 豫算의 消耗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 上部에 建議를 하고 있지만 反映이 되지 않고 있음.
○ 은좌劇場뒤 모래내市場의 道路가 一部 未鋪裝되어 道路機能의 役割이 未洽하고 住民通行에 不便을 招來하고 있는데 이에 對한 對策은	○ '93년도 豫算에 반드시 計上하여 道路工事が 完決되도록 할 것임.

【討論要旨】

- 주로 地域開發費로 編成된 都市建設委員會所管 追更案은 財政支援金으로 編成된 豫算인 만큼 最大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豫算措置를 하여 주고 必要

한 境遇 行政監査에서 이를 確認하는 것이 바람직함.

【修正內容】

○ 歲出調整

- └ 歲出削減：74,000천 원
- └ 歲出增額：74,000천 원(豫備費增額)

○ 削減內譯：道路欄干交替工事費(地域開發費)中 74,000천 원 削減

나.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9月 22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第14回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10. 5)에 上程하여 審査結果 修正案이 可決되어 第2次 本會議에 上程되었으나 本會議 議決로 再審査回附되어 第15回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10. 27)에 上程하였다.

2) 審査 結果

第15回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10. 27)에서 修正案에 對한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8名中 6名の 贊成으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會計關係專門家の 諮問을 求하여 忠實한 審査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함.
- 豫算會計法上 複式簿記는 企業型會計에만 適用토록 되어있는 關係로 上位法規가 制度的으로 改正되어야 할 事項임.

다. 其他案

◆ 1992年度監査資料要求의件

이 案件은 第16回 定期會 會期中 委員會別로 實施되는 行政事務監査의 資料要求事項을 委員會의 議決로 決定하여 該當機關에 移送하기 爲하여 委員別로 監査에 必要한 資料目錄을 提出토록하는 案으로 第15回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10. 27)에서 提出期限을 1992年 11月 10日까지로 할 것을 議決하였다.

◆ 1992年度監査計劃協議의件

이 案件은 第16回 定期會 會期中 實施되는 行政事務監査를 爲한 資料의 提出을 委員會의 議決로 要求하기 爲한 案件으로 第15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2. 11. 16)에 上程하였으며 委員會에서 審査議決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審査結果】

監査資料 提出期限	資料配付方法	監 査 時 間
1992年 11月 23日까지	都市建設委員 全員配付	監査開始 및 終了時間은 隨時調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概 況

第15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1992. 10. 27)의 議決로 構成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最年長者인 丁和鎭 委員의 司會로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委員長과 幹事を 選任하고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를 거쳐 回附된 第2回 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여 審査하고 修正案을 可決, 第2次 本會議(1992. 10. 30)에 上程함으로써 特別委員會 活動을 終了하였다.

1. 委員會 活動

가. 委員長 및 幹事選任

丁和鎭 委員長 職務代行的 司會로 進行된 委員長의 選出은 口頭互薦의 方式으로 實施되어 具滋億 委員이 互薦한 朴正來 委員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委員長으로 選任하였으며 朴正來 委員長의 司會로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하여 金永一 委員이 互薦한 具滋億 委員을 滿場一致 可決로 幹事に 選任하였다.

2.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 第2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 提 案

이 豫算案은 1992年 10月 1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常任委員會 所管別로 豫備審査한 後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1992. 10. 28)에 上程하였다.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의 提案理由와 豫算規模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1992年度 第2回 一般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은 '92年 9月 17日字로 서울特別市の 市費財政補助金 1,062,000千원이 내시되과 아울러 서울市の 1992年度 歲入決算 結果 서울市 自治區의 財源調整에關한條例에 依據 追加交付義務 事由가 發生하여 1992年 10月 8日 自治團體에 對한 調整交付金 1,747,000千원이 追加交付되어 總 2,809,000千원의 可用財源이 確保됨으로써 既定豫算編成 以後 法令改正 및 指針 變更等에 따른 必須經費의 追加所要分과 計劃變更에 따른 既定豫算增加分, 財政 與件上 受容하지 못한 住民建議 및 宿願事業 等 地域開發事業의 所要豫算을 可用財源內에서 編成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기 爲함.

나) 豫算規模

(單位：千圓)

會計區分	追更豫算案	既定豫算				今回追更
		計	當初豫算	간주處理	第1回 追更	
一般會計	65,657,091	62,848,091	58,976,985	45,370	3,825,736	2,809,000

2) 審査 結果

企劃豫算課長의 總括的인 提案說明과 各 常任委員會 幹事로 부터 豫備審査結果 報告를 들은 後 出席한 所管課長을 相對로 追更豫算의 編成理由와 編成額에 대한 細部的인 質問答辯을 實施하였으며 討論을 거쳐 導出된 調整內容을 가지고 計數調整을 通하여 歲出豫算中 總 120,875천圓을 削減하여 他歲出科目에 60,000천圓을 增額하고 豫備費로 60,875천圓을 增額하는 修正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第2次 本會議(1992. 10. 30)에 上程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廳舍賃借契約金額은 鑑定價를 基準으로 하나 建物主가 鑑定價 以下로 契約을 願할 境遇는 豫算의 編成도 契約額으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見解는	○ 賃借廳舍의 契約은 鑑定價 以上으로 契約을 할 수 없으나 鑑定價 以下の 境遇에는 現實에 맞게 契約을 할 수 있으므로 追更에 編成된 豫算은 鑑定價로 削減調整할 수 있는 金額임.
○ 廳舍가 부족하여 公務員이 外部廳舍를 賃借하여 使用하는 形便인데 各種職能團體나 外部機關이 廳舍를 使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對한 見解는	○ 選舉管理委員會와 職能團體는 憲法과 特別法에 依하여 育成支援토록 되어 있어 事務室活用을 制限할 수 없는 實情임.
○ 布帳馬車의 持續的인 團束으로 轉業을 하고 있는 事例가 많은데 1個所에 950만圓 程度의 用役整備豫算을	○ 新村地域의 布帳馬車는 學生圈과 連帶하여 團束에 不應하고 있는 實情으로 持續的인 整備가 推進되어야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編成하는것 보다는 이를 補助豫算으로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하며 1次 追更時 反映된 4個月分外 不足한 13日分을 追更에 編成하였으며 轉業에 對한 支援對策은 別途로 推進되고 있음.
○ 用役會社の 整備員들의 거친行動을 區廳의 行政執行으로 誤解하여 市民들이 認識을 나쁘게 할 憂慮가 있는데 이에 對한 對策은 무엇인지	○ 用役 整備員들에 對한 教育和 現場監督을 通하여 改善토록 할것임.
○ 백련교외 5개소의 欄干交替工事は 반드시 交替할 必要가 있는 欄干을 正確히 區分하여 施行함으로써 豫算을 節減하여 더 많은 事業에 使用하는 것이 效果의이라고 思料되는데 이에 對한 見解는	○ 유진商街앞과 백련교 欄干은 北部幹線道路工事 區間內로 此後 工事와 重複되어 追更에서 除外될 性質이며 그 以外 工事は 欄干의 安全度가 脆弱하고 塗色만으로는 不充分하여 欄干交替가 施行되어야 함.
○ 下水管의 容量이 작아 隨時로 浚渫하여 豫算浪費의 要因이 되고 있는바 向後 管徑이 큰것으로 施工하고 다음 世代에서도 問題가 없도록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함.	○ 300mm以下の 托관은 450mm로, 300mm以上 450mm以下の 托관은 600mm로 管徑을 擴大하고 있으며 生活水準의 向上에따라 下水量이 많아 지고 있어 向後를 充分히 勘案하여 施行中임.
○ 弘濟2洞의 保育施設이나 老人亭의 新築은 3월에 本豫算이 確保된 바 있는데 施工이 遲延되어 겨울工事を 하게된 理由는 무엇인지	○ 家庭福祉課에서 今年 한해동안 8個所의 老人亭 建築과 3個所의 改築工事を 하고 있어 業務가 폭주하고 있는 實情이며 設計와 敷地活用節次, 岩盤等 地質構造檢査와 地籍測量上의 問題点等 事由로 着工이 遲延되어 來年으로 事故移越하여 施工될 豫定임.

【討論要旨】

- 區廳舍 賃借使用은 全額 削減하고 廳內 職能團體가 建物を 賃借하여 移轉토록 하여야 함.
- 布帳馬車의 運搬用 賃借車輛은 布帳馬車가 안나와 團束을 할 必要가 없는 境遇도 있으므로 이를 反映하여 一部削減하는 것이 合理的임.
- 弘濟4洞 老人亭 增築豫算을 增額하여 1層을 더 增築, 多用度室로 活用할 수 있도록 歲出削減額을 活用하는 것이 效果的임.

【委員會 修正案】

- 歲出豫算의 修正

〔歲出豫算削減額：120,875천 원〕

〔歲入豫算 增額：120,875천 원(他歲出科目 60,000천 원, 豫備費 60,875천 원)〕

- 修正內譯(一般會計)

削 減		增 額	
○ 事務室 賃借料	23,000천 원	○ 弘濟4洞 老人亭增築	60,000천 원
○ 事務室賃借管理費	1,375천 원	○ 豫備費增額	60,875천 원
○ 道路環境整備車輛費	2,500천 원		
○ 수색로步道整備工事費	10,000천 원		
○ 道路欄干交替工事費	74,000천 원		
(백련교, 흥연교)			
○ 下水道浚渫(代行事業分)	10,000천 원		
計	120,875천 원	計	120,875천 원

條例審查特別委員會

概 況

條例審查特別委員會는 第15回 臨時會 閉會中인 1992年 11月 4日 1次 特別委員會를 開會하여 第11回 臨時會(閉會中) 第1次 特別委員會에서 議決된 바 있는 委員會運營方案에 依據 그동안 委員別로 研究檢討한 不合理한 條例의 內容과 改正方案等에 대한 報告를 들은 後 整備對象 條例案 指定과 草案作成을 爲하여 委員長을 包含한 3名의 委員으로 小委員會를 構成하였으며 1992年 11月 13日 第2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小委員會의 活動結果를 崔容完 委員으로부터 報告받은 後 討論을 거쳤으며 制定條例案은 서울特別市西大門區담배自動販賣機設置制限條例案과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情報公開條例案, 改正條例案으로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여 第16回 定期會 本會議에 上程함으로써 1年間の 任期를 마치고 特別委員會 活動을 終了하였다.

1. 委員會 活動

가. 條例審查小委員會 運營

第15回 臨時會 第1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는 效果的인 條例案의 檢討와 整備를 爲하여 委員會의 議決로 小委員會를 構成하였으며 小委員會는 1992年 12月 11日 專門委員과 企劃豫算課長, 議案係長, 法制係長이 參席한 가운데 懇談會를 開催하여 小委員會에 委任된 14件의 整備對象條例中 重複된 3件을 除外한 11件의 條例審查를 實施하여 2件의 制定條例와 1件의 廢止條例, 2件의 改正條例를 確定하고 이를 第2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報告하였다. 條例審查小委員會의 委員名單과 主要 審查內容은 다음과 같다.

【委員名單】

成明濟 委員長, 具滋億 委員, 金平洛 委員, 崔容完 委員

【審査結果】

○ 制定對象條例

條 例 名	制 定 理 由
서울特別市西大門區담배自動販賣機設置制限條例	담배事業法 施行規則 第11條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의 保護를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自動販賣機의 設置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한바 西大門區의 特性에 비추어 全 地域을 設置制限區域으로 定할 必要가 있음.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情報公開條例	民主的인 自治行政의 具現을 爲하여 公開行政을 遂行하고 區民에 對한 알 權利를 保障하며 情報化時代를 맞이하여 區民의 生活便益을 增進할 必要가 있음.

○ 廢止對象條例

條 例 名	廢 止 理 由
서울特別市西大門區새마을事業支援을爲한區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條例	同條例의 適用對象은 마을共同經營事業場과 農漁村住宅改良事業 및 聚落構造改善事業에 對한 財産稅와 事業所稅의 課稅免除規定으로 西大門區에는 該當되는 事項이 없어 條例의 實效가 없음.

○ 改正對象條例

條 例 名	改 正 理 由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 관한條例	洞長이 議會에 出席하여 業務報告와 質問答辯할 수 있도록 關係公務員의 範圍에 包含시키기 爲함.

條 例 名	改 正 理 由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	現行 條例中 1個統의 班數가 6-8個班으로 되어 있어 이를 6-11個班으로 現實性있게 調整하여야 할 需要가 있음.

○ 檢討除外

案 件	除 外 事 由
賭博에關한決議案	全聖章 議員이 國會請願으로 推進中이며 議會의 決議가 實效性이 없음.
特別會計를複式簿記로運營	上位法規에 抵觸되며, 既 駐車場特別會計條例案審議時 否決된 事項으로 時間을 두고 充分한 檢討가 必要함.
學校周邊便宜店酒類販賣時間制限條例制定	便宜店은 自由業으로 이를 條例로 制限할 수 있는 法的根據가 없음.
水道事業所를區廳傘下에두는建議案	水道事業所의 擴充과 區傘下 設置가 檢討되고 있는바 檢討不要.
決算檢査委員인議員에對한實費辨償을爲한條例改正	區豫算으로 實費支給이 되고 있는 바 地方自治法에 抵觸되는 條例改正은 不可함.
洞長任用範圍現實化建議	洞長任用은 區廳長의 固有權限으로 下位規則을 議會에서 改正建議하는 것은 不合理함.

2.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 서울特別市西大門區담배自動販賣機設置制限條例案

가. 提 案

이 條例案은 條例審査特別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草案하여 第15回 臨時會 第2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1992. 11. 13)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담배事業法 施行規則 第11條의 規定에 依하여 靑少年의 保護를 爲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담배自動販賣機 設置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한 바
- 多數의 各級學校가 所在하여 있는 우리 區의 特性上 靑少年 및 學生을 吸煙에서 保護할 수 있도록 담배를 손쉽게 購入할 수 있는 自動販賣機의 設置를 全面 制限하기 爲함.

2) 主要骨子

- 이 條例는 西大門區 全地域의 담배小賣人에게 適用한다.(案 第3條)
- 담배自動販賣機는 西大門區 全地域에 設置할 수 없다. 다만 成人이 出入하는 業所안에는 除外한다.(案 第4條)
- 條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 이 條例 施行前에 設置된 自販機는 施行日로부터 3月 以內에 撤去한다.(附則)

나. 審査 結果

專門委員의 檢討結果報告를 들은 後 討論을 거쳐 滿場一致로 可決되어 委員會案으로 第16回 臨時會 第5次 本會議(1992. 12. 21)에 上程하였다.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既 設置되어 있는 담배自動販賣機의 撤去는 3개월 以內로 하여야 한다는 附則規定을 1個月 以內로 修正하여 早期에 實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個月의 經過期間을 두는 것은 強制撤去 보다는 可及的 自進撤去를 誘導하여 行政指導가 容易하게 되도록 弘報期間을 두는 것이 合理的인 措置라고 思料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情報公開條例案

가. 提 案

이 條例案은 條例審査特別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草案하여 第15回 臨時會 第2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民主的인 自治行政의 具現을 爲하여 公開行政을 遂行하고 區民의 區政에 對한 알 權利를 保障하며 情報化時代를 맞이하여 區民의 便宜를 增進할 수 있는 行政情報를 積極 公開함으로써,
- 行政에 對한 理解와 參與를 높여 區政에 積極 同參할 수 있도록 行政情報 公開에 關한 條例를 制定하기 爲함.

2) 主要骨子

- 行政情報 公開에 對한 執行機關의 義務規定과 行政情報의 公開를 請求할 수 있는 請求權者 規定(案 第3,4條)
- 執行機關이 公開할 수 있는 對象情報와 公開請求方法, 請求人의 義務規定 (案 第5,6,7條)
- 行政情報의 公開方法과 費用負擔 및 行政情報 拒否決定에 따른 異議申請 (案 第9,10,11條)
- 行政情報公開審議委員會 組織－委員數 9人 以內(案 第13條)
- 對外漏泄禁止 및 情報公開目錄 作成, 다른法令과의 關係 및 施行規則 委任 (案 第14,15,17,18條)

나. 審査 結果

- － 專門委員의 檢討結果報告를 들은 後 討論을 거쳐 一部 條文을 削除하여 修正을 거친 다음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委員會案으로 第1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1992. 12. 21)에 上程하였다. 字句修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字句修正】

- 小委員會의 條例草案 第13條 第5項의 委員會 幹事を 行政情報公開 擔當部署의 課長인 公務員으로 한다는 條項 削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가. 提 案

이 條例案은 條例審査特別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草案하여 第15回 臨時會 第2次 條例審査特別委員會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現行 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에 1個統을 6個班 내지 8個班으로 構成토록 規定하고 있어 新規建築等 世帶增加로 統을 增設하여야 하나 特殊한 地域事情으로 分離할 수 없는 境遇 不可避하게 班을 超過構成하고 있는 實情으로
- 合理的인 統·班運營을 爲하여 1個統을 6個班 내지 11個班으로 構成할 수 있도록 條例를 改正하기 爲함.

2) 主要骨子

- 1個統은 6個班 내지 11個班으로 構成한다. (第2條 第2項)

나. 審査 結果

金平洛 委員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表決結果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委員會案으로 第1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1992. 12. 21)에 上程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 關係公務員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가. 提 案

이 條例案은 條例審査特別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草案하여 第15回 臨時會 第2次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地方自治를 맞이하여 基礎議會의 議員活動과 議政은 주로 出身地域의 民願과 開發을 바탕으로 하여 推進되고 있고 이에 따라 議會의 役割中 下部行政機關長인 洞長의 業務推進事項과 關聯된 事項이 다대함.
- 地方自治法 第37條에 依하여 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範圍는 條例로 定하게 되어 있으나 現行 條例에는 下部行政 기관의 장인 洞長을 出席토록 할 수 있는 規定이 없어 議員活動과 密接한 洞政에 對하여 質問과 答辯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洞長도 機關長으로서 權限行事を 하고 있고 別定5級 課長級の 職位로서 議會에 出席하여 答辯을 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함.

2) 主要骨子

- 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範圍에 地方自治法 第108條의 下部行政機關의 長인 洞長을 包含(第2條의 5號 新設).

나. 審查 結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企劃豫算課長의 意見을 들은 後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否決되어 同 條例案은 廢棄되었다. 主要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洞長은 下部行政機關의 長이나 區廳長이 指示한 業務를 處理하는 過程에서 權限의 行사와 決定權이 없어 責任있는 公務員으로 볼 수 없고 現行條例趣旨나 行政監查等 議會에 出席토록하여 質問答辯을 할 수 있는 관계로 條例의 改正은 不要한 事項임.
- 洞長을 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範圍에 明示하고자 하는 趣旨는 區廳長으로 부터 委任된 業務를 遂行하는 實質的인 下部機關長으로 小委員會에서 이를 다루어 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趣旨를 살려야 한다고 봄.

第 16 回 定 期 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16回 定期會

- 會 期：1992年 11月 25日 ~ 12月 24日(30日間)
- 集會根據：地方自治法 第38條

概 況

第16回 定期會는 地方自治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2年 11月 25일에 開會되었으며 會期는 30日로서 5次의 本會議와 各 常任委員會別로 行政事務監査 및 案件審議 活動을 벌였으며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設置運營하였다.

第1次 本會議에서 區廳長을 비롯한 各 局長과 關係公務員이 出席한 가운데 區廳長이 提出한 1993年度 豫算案과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聽取하고 豫算案外 15件의 案件을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하여 審議토록 하였으며 區政質問의 件과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의 件을 議決하였다.

1992年 11月 26일부터 11月 30일까지 3日간의 日程으로 第2~4次 本會議를 開議하여 區政全般에 걸친 質疑答辯을 實施하였으며 1992年 12月 21日 열린 第5次 本會議에서는 各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查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本會議에 上程한 1993年度 豫算案 修正案,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서 改正, 議決하여 本會議에 上程한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統·班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行政事務監査 結果 是正要求 및 建議事項 移送에 관한 件과 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都市가스事業 基金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等 11個 案件을 審議 議決하였다.

議會運營委員會는 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議會運營委員會所管 1993年度 豫算案과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을 審議議決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으며 議會事務局에 대한 業務報告를 聽取하였다.

總務委員會에서는 3日間 所管業務에 대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하고 第4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總務委員會所管 1993年度 豫算案과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을 審議, 議決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고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等 5個 案件을 審査하여 議決하였으며 그 中 4個案을 第5次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都市建設委員會도 3日間 所管業務에 대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하고 第4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1993年度 豫算案,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을 審議, 議決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다.

第4次 本會議의 議決로 設置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4次的 委員會를 開會하여 各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를 거쳐 回附된 1993年度 豫算案,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에 대한 審議를 實施하였으며 第1次 委員會에서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을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고 第4次 委員會에서는 1993年度 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을 통해 區廳長 提出 豫算案을 修正可決하여 第5次 本會議에 上程한 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活動을 終了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區政質問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1992年 11月 26일부터 1992年 11月 30일까지 3日間 第2~4次 本會議를 開議하여 區政質問을 實施하기로 議決하였으며 區廳 各 局長 및 關係公務員이 出席한 가운데 18名の 議員이 區政全般에 걸쳐 區行政事務監査와 1993年度 豫算案 審議에 對備한 質問을 實施하고, 특히 1992年 11月 30日에는 都明正 西大門區廳長이 出席하여 鄭日出 議員外 4名の 質問에 答辯하였다.

區政質問의 現況과 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 一般現況

質 問 議 員 數	質 問 件 數	質 問 所 管 別			備 考
		區 廳	西部水道事業所	恩平水道事業所	
20	147	145	1	1	

○ 所管部署別

總 計	區 廳 所 管 部 署								西 部 水 道 事 業 所	恩 平 水 道 事 業 所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都 市 整 備 局	建設局	保健所	文 化 公 報 室	監 查 室		
147	35	13	29	35	22	3	7	1	1	1

○ 質問 및 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李文馥 議員〉 ○地方自治의 時代를 맞이하여 行政을 推進하는 公務員들의 姿勢도 地方自治에 맞는 變化가 必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對策은 ○自治區 稅入을 擴充하여 區實情에 맞는 豫算事業이 推進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方案은 ○頽廢文化에 대한 우리 區實情에 맞는	○地方自治時代에 맞는 公務員의 役割을 誠實하게 遂行하고 姿勢의 確立을 위해서 制度的인 裝置나 形式的인 敎育보다 公務員 스스로의 變化努力이 必要함.(總務課長) ○財政擴充의 一還으로 今年度에 開發負擔金 및 宅地超過負擔金 約 20億 원이 새로운 稅入으로 策定되었음.(企劃豫算課長) ○衛生業所를 模範, 自律, 指導業所의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對策이 樹立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特別對策은	3個 類型으로 區分하여 集中管理하고 定期教育과 弘報 및 團束實施로 全業所의 水準向上을 기해 健全한 社會 雰圍氣를 造成할 計劃임.(市民局長)
〈趙敏行 議員〉 ○'92. 11月 現在 區에서 管理하고 있는 國·公有財産 現況과 現在 使用하고 있는 用度를 行政, 保存, 雜種財産으로 區分하여 答辯 要望 ○'88. 1. 1~'92. 11. 1現在 寄附滯納 받은 市·區有財産 內譯과 登記與否 및 未登記事由 ○西大門區는 財政自立도가 脆弱하여 補助金과 交付金에 依存하고 있는 形便인 바 '92年度에 서울市나 國家로	○所有別 現況은 國有財産이 土地 3,047筆地 3,002,853㎡이며 市有財産은 土地가 997筆地 672,114㎡, 建物이 1棟 3,547㎡, 區有財産은 土地 3,442筆地 1,054,132㎡, 建物 99棟 33,684㎡, 用度別 內譯은 行政財産 土地가 3,743筆地 1,672,030㎡, 建物이 99棟 33,684㎡이며, 保存財産은 土地가 997筆地 13,006㎡, 建物 1棟 3,547㎡, 雜種財産은 土地 1,317,817㎡임.(財務局長) ○'88, '89年度는 寄附滯納없음 '90年度에는 弘恩洞 11-238외 4筆地 461㎡이며, '91年度에는 弘恩洞 196-17외 8筆地 1,293㎡, '92年度에는 北加佐洞 377-36외 3筆地 277.9㎡의 土地와 建物은 弘濟2洞 老人亭 地下室 55.16㎡이며, 全體 登記 完了 되었음.(財務局長) ○'92年度 市의 補助金은 26億 2,900萬 원, 交付金은 371億, 1,400萬원으로 總 397億 4,400萬원이며 주로 社會福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부터 받은 補助金과 交付金 總豫算內譯과 支出內譯, 區廳長이 時急하거나 必要에 의해 別途要請, 確保한 交付金의 實績 ○生活保護對象者에게 糧穀支給時 洞職員들이 倉庫運搬과 家庭傳達를 함으로써 많은 人力所要와 民願處理에 支障을 招來하는바 區에서 運送業者와 運送契約時 家庭까지 配達이 될 수 있도록 改善하는 方案	社次元의 支援金임. 使用日의을 指定한 補助金은 15億 6,700萬원이며, 使用目的을 指定치 않은 補助金이 10億 6,200萬원임. 交付金은 1次가 333億 9,000萬원, 2次가 17億 4,700萬원 으로 本豫算과 追更에 編成使用하고 特別交付金은 體育센터建立, 就勞事業等에 使用(企劃豫算課長) ○糧穀運送契約은 3個月 單位로 하며 輸送車輛이 大型이어서 高地帶나 골목길에는 通過가 어렵고 生保者가 不在時에는 傳達이 不可能하므로 保社部에 建議하여 糧穀支給 대신 現金으로 支給토록 改善 計劃임.(市民局長)
〈金廷炫 議員〉 ○延禧1洞 地域의 風致地區 解除에 관한 事項 ○20年前에 都市計劃된 延禧洞 533番地 一帶 都市計劃 推進에 관한 事項	○延禧洞 187番地 一帶는 궁동 近隣公園과 隣接하여 風致地區에 適合한 地域이나 解除與否는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樹立에 反影, 檢討하고 있음.(都市整備課長: 書面答辯) ○延禧洞 533番地 一帶는 都市計劃施設(道路)을 地籍告示한 곳으로 現況道路가 4~5m 確保되어 있으며 住居環境 改善地區事業과 連繫하여 道路利用性과 連結性 檢討가 必要한 곳임. 年次의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施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區廳앞부터 사천고가까지 幹線道路邊의 駐車施設에 관한 事項 ○無許可建物 陽性化에 관한 事項	行토록 執行計劃을 檢討중임.(都市整備課長：書面答辯) ○弘濟川邊 幹線道路의 駐車施設現況은 6個所 322臺의 駐車面數가 있으며 50番 버스종점 路上 駐車場은 民間委託管理, 弘濟川邊의 延禧洞쪽은 일산 連結道路開通時까지 無料駐車場으로 活用하고 있으며 南加佐洞 新設道路에 路上 駐車場 100區劃을 追加 設置할 豫定임.(地域交通課長：書面答辯) ○既存無許可建物は '79年 全數調査時 11,815棟 이었으나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3,877棟이 陽性化 措置되었으나 '85. 6. 30일자로 同法이 失效되어 現在로는 陽性化가 不可함.(住宅課長：書面答辯)
〈全在煥 議員〉 ○老朽한 市民아파트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再建築時까지 建物内外의 塗色 및 補修가 必要한데 區廳에서 이를 支援하여 推進할 수 있는 方案	○地域別로 再建築, 再開發, 住居環境改善等の 現地開發을 推進中에 있고 市民아파트는 私有財産이므로 많은 豫算을 投入, 塗色은 어려워 建物 벽체나 난간, 골뚝등의 構造의 安全性을 一齊히 調査하여 '93年度에 補修하고, 塗色은 市와 協議를 거쳐 塗色을 實施할 수 있도록 推進하고 있음.(都市整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裏面道路와 뒷골목에 支障電柱(遞信柱)가 있어 再建築等으로 넓어진 道路를 效率的으로 利用하지 못하고 美觀上에도 沮害되는 바 整備方案에 관하여	○管内 支障電柱 64個中 '92年度에 32個를 移設完了 하였으며 未移設 支障電柱는 豫算確保 및 住民協助가 可能한 곳부터 年次的으로 移設하여 住民生活의 不便을 最少化하도록 措置하겠음(建設局長)
○道路掘鑿許可를 얻어 工事を 施行한 후 完工 即時 復舊가 施行되어 住民生活에 不便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復舊工事が 遲延되는 理由와 이에 대한 對策	○道路掘鑿에 대한 復舊는 主配管敷設後에 管路 安全檢査 및 家庭引入 配管工事が 完了되어야만 可能하며 2個機關 以上이 有關事業을 並行할 시 遲延되는 事例가 있음. 工事監督 強化 및 有關機關間 工事의 工程管理等 緊密한 連絡體系를 갖추어 最短時日內에 復舊토록하고 每年 關係機關會議를 통해 同時 掘鑿토록 措置하겠음.(建設局長)
○새마을金庫는 庶民들이 많이 利用하고 있는데 本來 目的에 맞지 않게 運營한다는 疑懼心이 있는바 區廳의 管理監督狀況과 事故發生時 被害에 대한 對策	○새마을金庫는 管内에 20個所가 있으며 每年 1回以上 定期檢査를 實施하게 되어 있고 現在 3個金庫에 대하여 定期檢査를 完了하였으며 事故發生時 會員들을 保護하기 위하여 安全資金이 새마을金庫聯合會에 設置되어 있음(國民運動支援課長)
○洞長이 執行하고 있는 小規模福祉事業의 '92年度 執行內譯에 대하여	○小規模地域便益事業 豫算은 洞當 2千萬원씩 總 4億 4千萬원을 策定하여 3億 475萬 8千원을 執行했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保健所에서 認許可된 醫療施設等에 대한 '92年度 執行內譯에 대하여	— 道路補修 73件 1億4,312萬8千원 — 下水道整備 48件 6,815萬8千원 — 어린이놀이터整備 6件 481萬6千원 — 保安燈修理 3,620件 5,306萬3千원 — 其他 42件 3,559萬8千원 (總務課長)
○保健所에서 購入하고 있는 醫藥品 및 醫療器機의 購入內譯과 管理方法	○'92年 醫療監視目標 724件中 666件 團束, 藥師監視目標 540件中 535件 團束 및 麻藥監視는 286件中 260件을 實施하였음. 違反事例 및 行政處分事項은 醫療機關의 境遇 是正指示 6件, 營業停止 2件, 告發 3件이며 藥局은 營業停止 1件, 告發 1件임. (保健所長) ○醫藥品購入은 豫防接種藥品 15回, 妊産婦 및 嬰幼兒 管理藥品 1回, 醫療保險 및 保護藥品, 無料診療와 訪問診療 藥品 4회가 있으며 醫療器機購入은 無菌函의 3臺가 있음. 一般醫藥品은 倉庫에, 백신은 冷藏庫에 保管管理하고 醫療器機는 各該當課에서 管理에 萬全을 기함. (保健所長)
○'92年度 區稅의 滯納額 및 缺損處分內譯	○'92. 7月末 現在 區稅의 滯納額은 總 4億 9,560萬 6千원이며 缺損處分은 總 2,241件에 2,218萬 1,000 원으로 全部가 免許稅임. (財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朴正來 議員〉 ○ 많은 豫算을 들여 製作하는 班常會報가 有效適切하게 活用될 수 있는 對策樹立 ○ 來年度 稅外收入의 稅入目標 및 確保方案과 區稅 滯納處理 및 稅務情報紙發行에 대하여 ○ 各室・課, 洞에서 管理하고 있는 主要行政裝備와 特殊裝備의 效率的인 管理方案	○ '92. 1~8月까지는 11萬 8千部로 各世帶當 1部씩 製作하였으나 9月부터 豫算節減 次元에서 59,000部만 製作配付하였으며, 2世帶當 1部씩 減量製作 配付하고 그림, 童話等を 活用하여 視覺的인 效果를 높이고 美談事例 積極發掘 提供과 住民이 參與하고 住民이 원하는, 읽을거리가 있는 班常會報 製作을 위해 努力하겠음.(文化公報室長) ○ '93年度 稅外收入 目標은 67億 8,200萬원이며 稅源確保 方案은 財産收入 14億 8,900萬원, 使用料收入 12億 3,400萬원, 手數料收入 20億 9,700萬원임. 區稅의 滯納處理는 4億 9,560萬 6千원의 滯納額中 2,218萬 1千원을 缺損處分하였으며, 稅務情報紙는 “알기쉬운 地方稅” 冊子 5千部를 製作하여 配付, 活用하고 있음.(財務局長) ○ 主要行政裝備와 特殊裝備는 定數物品으로서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關係規定에 의하여 管理官을 指定, 事務를 管掌하며 每2年마다 定期財物調査를 實施하고 있음. '92. 11. 2부터 物品管理電算化計劃을 樹立하여 品目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今年度 區政遂行에 있어 當初計劃대로 目的을 達成하여 最大の 行政效果를 거두었는지	別, 部署別 管理카드를 作成, 效率의인 物品管理에 最善을 다하고 있음. (財務局長)
○法令上 支出해서는 안될 豫算이 業務推進上 부득이한 境遇로 支出된 事例가 있는지	○各種 事業은 重點管理事業과 一般管理事業 總116個 事業에 대하여 分期別 審査分析을 實施하여 效果의인 目的의 達成을 위해 努力하며 今年度 事業中 補償 未協議 2件, 2次 追更事業 9件 및 事業計劃이 變更된 鞍山展望臺外 1件의 事業외에는 正常推進되고 있음.(企劃豫算課長)
○'91年度 歲入歲出決算檢査 結果 純歲計剩餘金이 많이 發生, 翌年度로 移越되고 있는바 歲出豫算이 適正하게 編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93年度 豫算 編成時 歲出은 歲入에 맞추어 編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方案은	○法的으로 轉用 가능한 行政科目에서 執行하였으며 大峴洞 工夫房外 1件 經常補助金 2千萬원, 環境美化員에 대한 補償金 1,278萬원, 清掃車輛保險料를 年金支給金으로 227萬9千원 轉用한 轉用內譯이 있음.(企劃豫算課長)
○越冬期를 對備하여 生活保護對象者, 少女家長 및 低所得零細民等에 대한 社會福祉 次元의 越冬對策 樹立與否	○歲計剩餘金의 發生事由는 當初 歲入目標의 超過達成, 平均 5%의 豫算節約과 特別한 境遇에 使用하는 豫備費의 未執行 및 豫定價보다 낮은 入札로 인한 差額發生等으로 剩餘金이 發生하는 것임.(企劃豫算課長)
	○居室保護者에게는 糧穀, 副食費 및 燃料費를 支給하고 生計가 극히 困難한 生保者에 越冬期 救護糧穀 支給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託兒所, 工夫房, 老人亭等 福祉施設의 越冬對備는 어떻게 推進되고 있는지	및 越冬期 就勞事業 實施. 越冬期 特別對策으로 生保者 家口當 25,000원 씩의 煖房費 및 김장費, 糧穀을 支給하며 環境美化員, 居宅保護者等에 대한 醫療支援과 區와 洞의 訪問行政 實施로 越冬支援에 萬全을 기하고 있음.(市民局長)
○뒷골목의 圓滑한 清掃業務遂行을 위하여 小形 行政車輛을 構入, 活用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對策은	○福祉施設에 대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結果 摘出된 어린이집 5個所에 2,950萬원을 支援하여 補修토록 하고 老人亭 5個所는 1,643萬원으로 補修하였으며 老人亭에는 10萬원씩의 煉炭購入費를 支給하였음. 工夫房, 幼兒園等の 施設은 安全點檢中에 있음.(市民局長)
○步道브럭, 境界石等 道路施設物의 未施行된 工事는 언제쯤 이루어 질 것 인지	○清掃作業에 投入하는 小形 清掃車輛은 48대이며 32대는 壓縮車輛으로 쓰레기를 收去, 壓縮하여 運搬하는 性能이 優秀하며, 小形 덤프트럭 16대는 연탄재만을 運搬하는데 投入하고 있으며, 뒷골목 및 裏面道路에 集中投入하고 있어 現在의 小形車輛만으로도 充分히 收去가 되고 있음.(市民局長)
	○道路施設物 整備工事 一部 未施行路線은 의주로와 수색로가 있으며 第2次 追更 計上事業은 來年度 解氷과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雜商人과 布帳馬車를 團束하고 있는 用役人夫의 橫暴가 많아 民願이 若起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區廳의 對策과 在來市場內 露店의 消防道路 占有에 따른 對策은 ○今年度は 集中豪雨가 없어 災害가 없었다고 보는데 來年을 對備하기 위한 水防對策과 治水, 下水事業은 어떻게 推進되고 있는지	同時 着工하여 5月中 完了豫定이며, 殘餘 路線은 事業順位를 정해 年次的으로 整備하겠음.(建設局長) ○用役人夫에 대한 勤務姿勢 確立 敎育과 指導監督을 持續的으로 實施하겠으며, 消防署等 關係部署와 緊密한 協助를 통해 消防道路를 確保하겠으며 관련 規定에 의하여 不當使用料 徵收를 並課하겠음.(建設局長) ○'93年度 治水 및 下水事業을 위하여 '92年 2次 追更豫算에 反映하여 下水道 浚渫 12.5km와 下水管改良 3.8km를 現在 施行中에 있으며 '93年 豫算事業으로 下水道 浚渫 80km, 下水管 4.5km를 改良하고 下水課 日用職 雇傭人員 23名을 活用하여 民願에 따른 下水道施設補修, 浚渫에 萬全을 기하고 있음.(建設局長)
〈崔容完 議員〉 ○弘恩1洞 유진아파트 B棟의 移住가 끝난 後 使用計劃에 대한 研究檢討 結果를 提示하여 주시고 A棟의 具體的 補償策과 民願解決 方案	○유진아파트 B棟 移住後 使用計劃은 現在 A棟 住民들과 協議, 檢討中이며 最終 決定은 市에서 하고 A棟은 都市計劃線에 抵觸되지 않아 法律 및 規程上 補償對象이 안되며 騒音, 粉塵等의 環境公害로 인한 住民 被害가 最小化될 수 있도록 主管部署와 施工會社에 通報하여 措置하겠음.(建設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92. 6. 27 區政質問時 管內 開發制限地域 및 公園綠地地域을 占有하여 不法耕作하고 있는 事項을 指摘한 바 이를 團束, 是正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以後 團束 및 措置實績과 向後 團束計劃	○總 耕作地 91個所 約 14,300㎡中 '92. 8月 4個所에 山林保護웁스 552m를 施設, 585㎡의 耕作을 禁止 시켰고 '92. 11月 400여㎡에 산벗나 무外 7種 476株를 심어 山林으로 復元시켰으며 殘餘 13,300㎡에 대해서는 '93년까지 山林으로 復元하고 不法行爲 및 不法耕作行爲가 없도록 監視團束을 強化하겠음.(建設局長)
○無許可 老人大學의 看板을 걸고 賭博이나 댄스敎習所로 둔갑하여 頽廢의 溫床이 되고 있는데 無許可 老人大學 및 댄스敎習所의 現況과 團束實績, 措置事項 및 向後 對策	○老人大學 名稱을 使用하여 不法營業하는 業體는 弘濟洞外 2個所가 있으며 수차례 老人大學名稱을 使用치 말 것을 行政指導하였으나 繼續 營業을 함으로서 管轄警察署에 措置 의뢰하였음. 老人大學 名稱使用 不法營業에 대한 處罰規定이 없어 指導團束에 限界가 있으나 持續的인 團束을 實施하겠음.(市民局長)
○環境分野 團束이 國家에서 地方自治團體로 移管되었으나 專門人力과 裝備의 脆弱性은 效率的인 團束을 沮害하는데 環境課 人力擴充과 勤務改善 對策, 裝備의 現代化 方案및 '92年度 裝備 購入內譯	○管內的 公害 排出業所는 87個所이며 이 中 環境處에서 移管된 業所는 세브란스病院을 비롯한 4個所로서 環境課에 係長 1名, 職員 4名을 增員하여 總 10名이 環境業務를 擔當하고 있으며 公害團束裝備로는 車輛 1대, 騒音測定器 2대外 3種의 測定器를 保有하고 있고 自動車 燃料測定器는 購買中에 있음. 來年度에 컴퓨터外 1種 購入 計劃으로 있음.(市民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舊 서울女商 位置에 建築中인 組合아파트와 弘恩2洞에 建築中인 極東建設의 아파트는 建築過程에서 綠地 毀損이 없었는지 点檢事項과 防止對策은	○아파트 建設現場 點檢結果 弘恩洞 極東아파트는 20㎡, 舊 서울女商敷地에 新築中인 청구아파트는 58㎡의 綠地 毀損 行爲가 摘出되었으며 '92. 12. 31까지 完全 復舊토록 措置하였고, 청구아파트의 毀損行爲는 '92. 11. 14日字로 청구住宅 代表를 關係規定에 依據 告發과 同時 毀損部分을 竣工前 原常復舊 또는 買入토록 措置했으며 向後 對策으로는 工事現場 指導監督에 徹底를 기하겠음.(都市整備局長)
○道路邊이나 뒷골목에서 古物商許可를 받아 카센타를 開業, 車輛을 整備함에 따라 周邊 環境汚染과 交通滯症의 原因이 되는데 對策과 團束整備事項	○整備業所는 有許可 10個所, 無許可 136個所가 있으며 35件을 摘發하여 告發措置하였음. 向後 對策은 團束班을 編成하여 카센타의 不法整備와 街路邊 無斷 積置行爲에 대한 強力한 團束을 實施하고 摘發時에는 告發措置를 強行하겠음.(都市整備局長)
○第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議決된 自動車稅 및 담배消費稅의 區稅轉換에 대하여 區廳 處理內容과 財政自立度를 위해 關係部處에서 研究檢討된 事項	○自治區 財政確保를 위하여 市稅인 自動車稅와 담배消費稅를 自治區稅로 移管해 주도록한 區議會의 建議에 대하여 서울市의 回示內容은 地方稅法의 改正이 必要하므로 財源 配分等 各 區의 稅入 展望을 勘案해 政府에서 地方稅法 改正建議時 參考 檢討할 計劃으로 있음.(財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尹益洙 議員〉 ○'91. 8. 16 臨時會議時 指摘한 下水道 빗물받이等 施設 管理 未洽과 整備에 대한 推進實績, '93年度 장마를 對備한 水防對策과 豫算事業으로 整備하고자 하는 下水道施設整備 豫算內譯 ○洞事務所의 保安燈修理가 未洽한바 區廳에 技能職 電工을 採用하여 洞別 巡廻 修理를 實施하는 改善方案 講究 ○公園用地로 指定된 地域中 小規模 자투리땅이 公園施設로 되어 公園施設設置가 不適合 곳은 民願解消 側面에서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에 反映하여 解除될 수 있도록 推進하여 土地利用度를 높이고 區民의 財産權 保護가	○今年度 下水構造物 整備實績은 道路上 不良面 整備 156個所와 排水不良 빗물받이 整備 576m이며, '93年度 水防對策으로 不良下水道改良, 맨홀, 빗물받이 整備 및 下水道 浚渫로 雨水疏通을 圓滑히 하고 '92年度 追更豫算 反映으로 下水道 浚渫 12.5km 약 22,000㎡와 下水管 改良 3.8km 施行中임.(建設局長) ○電工採用은 定員調整, 豫算 및 裝備等の 問題로 困難하며 修理業體의 收益率 改善을 위해 補修單價를 現實化하였으며 修理期間短縮을 위하여 修理體系를 強化해 保安燈 修理遲延 民願解消에 努力하고 保安燈 點消燈責任者를 指定하여 運營하고 있으나 施行이 不振하므로 弘報를 強化하여 點燈이 되어있는 狀態가 없도록 措置하겠음.(建設局長) ○管内 자투리땅 公園用地는 4個所 約 1,500坪이며 北阿峴2洞 210-23一帶 約 700坪은 市民아파트 團地內에 商街가 設置되어 있고, 北加佐 3-39는 約 400坪으로 派出所와 民防衛待避所 各 1棟이 있으며 弘恩 265-329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區廳의 意見은 ○西大門區內 替費地の 占有使用料를 分割하여 納付할 수 있는 方案 ○20年 以上된 老朽 市民아파트가 많은데 再建築이 圓滑히 推進될 수 있도록 行政支援을 하여 西大門區의 均衡있는 發展에 寄與하는 方案	約 170坪은 傾斜가 심한 林野이며 延禧洞 446-182도 約 200坪으로 傾斜가 심하여 公團造成은 어려우므로 基本計劃 樹立時 調査, 檢討하여 反映豫定임.(都市整備局長) ○替費地 賃貸料 賦課對象은 15筆地 約 30名中 賃付料 賦課는 10筆地이고 無斷占有 5筆地는 辨償金을 賦課하고 있음. 賃付料의 分割納付를 위해서는 市條例 改正이나 制度的인 改善이 必要하므로 市에 建議토록 하겠음.(都市整備局長) ○現在 市民아파트는 78棟이 있으며 崩壞危險이 있는 아파트와 住民 80%以上이 撤去를 원할 때에는 撤去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再建築, 再開發, 環境改善事業을 勸獎하고 있으며 9個地域으로 나누어 第1次로 推進委員會 構成을 完了하였고 開發方式을 決定해 區廳에 事業申請을 하도록 하고 있음. 申請이 完了되면 區에서 技術檢討와 現場調査로 地域與件에 맞는 開發方式을 確定, 細部計劃을 樹立推進토록 하겠음.(都市整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鄭日洙 議員〉 ○'92年度 主要豫算事業(消防道路開設等)의 推進實績과 執行內譯 및 未執行 豫算內譯에 관한 事項(北加佐2洞 包含) ○道路積置物에 대한 團束實績 및 特別 團束計劃 樹立 與否 ○南加佐1洞 所在 綜合社會福祉館의 具體的인 事業內容 및 弘報 方案에 대한 事項	○'92年度 消防道路 開設等 主要豫算事業은 總 20件에 68億 3,828萬 1千원을 投入하여 事業推進中이며 道路開設 9件 50億 1,400萬원, 步道整備 5件 10億 308萬원, 道路整備 3億 2,120萬 1千원임.(建設局長) ○路上積置物 團束實績은 總 18,363件으로서 商品積置 17,902件, 路上作業 89件, 許可施設物 違反 事項 141件 및 其他 241件이며 措置事項으로는 告發 4件, 不當利得金 賦課 321件 1,821萬원임. 脆弱地域이나 路上積置物 多發地域은 別途 重點計劃을 樹立하여 持續的인 團束을 實施하겠음.(建設局長) ○零細家庭을 위한 美容, 洋裁, 副業幹旋事業과 幼兒園運營, 一般主婦들을 위한 꽃꽂이, 한글 및 英語敎育과 컴퓨터敎室, 讀書室 및 工夫房運營이 있으며, 區民 弘報를 위해 中央日間紙와 地域新聞 및 班常會를 통한 弘報를 實施하였고, 많은 住民들이 利用할 수 있도록 持續的인 弘報와 努力을 하겠음.(市民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不法駐停車 및 無秩序한 駐車로 인하여 住民의 不便이 많은데 驛勢圈 駐車場의 早速한 完工과 個人 車庫地 義務化 施行等으로 都市機能을 되살리기 위한 方案 ○選舉와 關聯한 統·班長 辭退現況과 補充現況	○駐車場 擴充을 위하여 來年度에 建築物 敷設 駐車場 約 4,000餘臺가 늘어나고 弘濟川 一部를 覆蓋하여 駐車場으로 活用하는 方案을 講究中이며 遊休地를 一齊 調査해 駐車場으로 活用한 計劃임. 뒷골목 駐車는 골목單位로 自律協議會를 構成하여 駐車指導를 하며 電話連絡카드를 製作, 配付하여 車輛에 附着, 連絡이 可能토록 하고 警告狀을 活用, 啓導하고 駐車區劃線 設置를 擴充토록 하여 駐車秩序 確立을 위해 努力하겠음.(都市整備局長) ○選舉와 關聯한 統·班長 辭退는 總 31名이며 全員 班長으로서 全部 새로 任命하였으며 選舉와 關聯하여 辭職한 統·班長은 앞으로 再任命하지 않을 計劃임.(總務課長)
〈全聖章 議員：書面質問〉 ○新村 버스停留場의 區廳 團束 車輛 周邊에 布帳馬車와 雜商人들이 營業을 하고 있으나 團束을 앓고 있으며 창서國校 담장옆에 設置된 바리케이트는 住民 및 學生들에게 威壓感을 주므로 撤去바라며, 大路邊에도 大, 小形 바리케이트를 設置해 놓으면	○新村地域은 布帳馬車營業의 高收益과 地域的 特殊性으로 組織的이고 物理的으로 抵抗하여 團束에 어려움이 많으며, 창서國校 담장옆 바리케이트는 酒類販賣 布帳馬車 營業行爲와 路上 방뇨, 쓰레기放置等으로 住民의 不便과 民願若起로 設置한 바 完全整備時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豫算浪費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計劃은 ○公共用地 行政財産中 都市計劃線에 抵觸되지 않는 財産에 대하여 占有者 個人에게 用度廢止後 拂下할 用意 ○統長이 10年以上 長期勤續으로 地域 業務 遂行에 蹉跌이 있는데 2回以上 連任된 統長全員에 대한 交替用意는 없는지, 洞別統長 勤續期間(5年以上, 10年以上, 15年以上) 名單을 밝혀 주기 바람	까지 設置運營後 撤去豫定이며 大路 邊 바리케이트 設置는 通行不便과 都市美觀 沮害로 設置 不可함.(建設管理課長：書面答辯) ○管内 公共用地 行政財産은 用度廢止 制限事由에 該當되는 土地가 大部分으로 現在는 用度廢止 檢討가 어려우나 繼續 保存價値있는 財産은 現場調査 및 關聯部署 協議를 거쳐 關係規定에 依據 職權 用度廢止後 個人에게 拂下하여 公共用地의 效率的管理를 하겠음.(建設管理課長：書面答辯) ○一部 長期勤續 統長의 境遇 業務遂行을 疏忽히 하는 事例가 있으나 大部分의 統長들은 獻身的인 奉仕를 하고 있다고 判斷되며, 2回以上 連任된 統長을 一律적으로 全員交替하는 것은 業務遂行面이나 對象者選定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職務遂行能力이 없다고 判斷되는 統長은 漸進적으로 交替토록 하겠으며 勤續現況은 5年未滿이 42%, 10年未滿 34%, 15年未滿 17%, 15年以上 7% 임.(總務課長：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洞行政의 迅速處理를 위하여 50cc 오토바이 1대씩 '93豫算에 反映하여 出張業務에 活用할 計劃은 없는지, 아니면 區廳長 辦公費로 購入하여 配定할 用意는 없는지	○50cc以上 오토바이는 連轉免許를 所持하여야 連轉이 可能하며 管內에는 丘陸地 및 急傾斜地가 많아 職員 使用時 安全上의 問題가 있으므로 既確保되어 있는 洞巡察車輛을 各種業務時 效率的으로 活用함이 바람직 함. (總務課長: 書面答辯)
○所聞에 의하면 發令된 公務員이 西大門區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는데 그 理由는	○大部分의 職員들이 他區에 比하여 勤務與件(住民構成, 地域的 與件等)이 相對的으로 안 좋다고 보고있으며 再開發 및 街路整備業務等도 他區보다 많다고 생각해 忌避하는 現象과 江南, 上溪, 분당地區에 居住하는 職員들이 늘어남으로 交通事情으로 西大門區 勤務를 싫어하는 傾向이 있음. (總務課長: 書面答辯)
○'91, '92年度 서울市의 赤十字會費 配定金額 및 洞別 配定內譯과 赤十字會費 募金過程에서 말썽이 된적도 있는 줄 아는데 募金方法의 改善 用意는	○서울市 配定金額은 '91年 170,800千원, '92年 188,152千원이며 洞職員과 統班長의 自體教育을 實施하여 募金過程에서 물의가 發生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一般會費의 境遇는 會費納付者가 約定된 金額을 銀行에 納付토록 積極啓導하겠음.(總務課長: 書面答辯)
○區, 洞職員 및 區廳의 部署에 따라 各種 手當의 差異가 나는데 이에 대한 對策은 없는지	○區, 洞職員 및 區廳의 部署別로 支給되고 있는 特殊業務遂行 活動費 내지 處遇改善費 性格의 各種手當等이 差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北阿峴3洞 12~16統 350餘世帶는 難視聽地域으로 有線放送을 利用하므로 視聽料 負擔이 많은바 難視聽地域으로 指定하든지, 分離告知書를 해주지 말라는 公文이 發送되었는데 分離告知 指示할 計劃은 없는지 ○仲秋節 및 新正等에 各洞에 配定된 不遇이웃돕기 誠金募金の 經路와 目的, '91年 以後 各洞에서 區廳에 納付한 誠金の 年度別 金額과 使用目的 및 內譯, 誠金募金으로 民弊의 原因이 되고 있는데 是正 計劃과 繼續 募金時 募金全額을 洞에서 管理하며 수시로 불우이웃에게 使用토록 改善할 用意는	異가 있는 것은 區, 洞과 各 部署別 勤務與件과 業務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公務員 手當規定과 政府의 豫算編成 基準 및 執行指針에 依據 全國市, 道 公히 適用되고 있는 事項임. (企劃豫算課長: 書面答辯) ○難視聽地域 指定承認은 公報處의 承認 事項으로 首都圈地域에 대한 承認은 1件도 없으며 北阿峴3洞의 住民 建議에 의하여 放送技術陣이 2회에 걸쳐 UHF안테나 設置弘報 및 TV映像 實驗結果 畫面이 좋았다는 報告가 있었음. 視聽料 分離告知時 滯納하고 있고 滯納時 滯納處分過程에서 紛爭發生 素地가 있어 可及的 分離告知를 止揚토록 公文이 發送된 바 있음.(財務課長: 書面答辯) ○이웃돕기 誠金은 不遇環境에 처한 低所得階層에게 溫情을 베풀고 疎外感을 解消코자 所要金額을 算定하여 洞別로 目標를 設定, 自律的으로 募金하고 있으며, '91년부터 現在까지 各洞에서 募金하여 區廳에 入金한 金額은 總 76,145千-원이고 使用內譯은 總 54,397千-원으로서 설날, 보훈의 달, 仲秋節, 年末의 이웃돕기에 使用하였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車輛의 增加로 뒷골목 駐車難이 심각하므로 駐車難의 解決을 위하여 道路空間을 活用, 公開入札과 隨意契約에 의하여 有料駐車場 許可를 하는데 入札金額, 所在地面積, 入札者의 人的事項 및 許可期間과 隨意契約時 그 事由 및 駐車場 解消方案 ○冬節期 高地帶 庶民을 위한 煉炭 需給計劃과 油類 및 가스販賣業所에 대한 安全管理 및 指導團束 計劃	음. 民弊 및 強制性等은 募金趣旨의 積極的인 弘報와 自發的參與를 誘導하겠으나 洞別 募金管理는 地域別 生活水準의 格差로 困難함.(社會福祉課長：書面答辯) ○民間委託 有料駐車場은 9個所 436區劃 5,525.6㎡이며 總入札金額은 153,933千원으로 委託期間은 1年間임. 隨意契約은 市場 2件으로서 公開入札時 商人과의 摩擦豫防 및 市場機能活性化를 위한 것이며 뒷골목 駐車難 解消方案은 住民自律管理協議會의 活性化, 駐車連結카드 製作配布, 駐車區劃線 定期消防訓練 年2回 實施等임.(地域交通課長：書面答辯) ○區豫算 962萬원을 支援하여 12個所에 煉炭을 備蓄하여 洞長責任하에 降雪, 結빙等으로 煉炭供給이 困難한때 活用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스販賣業所에 대한 指導點檢은 年 2回 定期, 自體檢査와 特別指導點檢 年 3회를 實施하고 있으며, 安全管理을 위하여 教育 年 3回, 班常會 會報掲載 弘報 年 4回以上 弘報傳單 製作配付를 통한 汎市民的 弘報啓導를 實施하고 있음.(産業課長：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92. 11. 6日字 한국일보 報道에 의하면 新村을 知性的 거리로 造成키 위해서는 遊興業所의 規制와 享樂追放 및 文化施設의 留置, 環境改善等を 推進하여야 한데 이에 대한 推進 計劃	○新村地域은 3個 大學과 1,498個의 遊興業所가 있어 衛生業所와 露店商 團束, 不法看板整備, 呼客行爲團束等を 통해 利用客이 減少되고 業種轉換, 健全營業雰圍氣 造成等과 學生會幹部 懇談會, 大學總・處長會議을 開催했으며 違反業所團束을 위해 每日 確認 點檢과 業主의 自律淨化를 強力히 推進할 計劃임.(衛生課長: 書面答辯)
○'92. 11. 7日字 세계일보에 公害團束이 徹底히 遂行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區의 公害團束은 어떤 計劃에 의하여 實施하고 있으며 무악재와 아현고개의 車輛排出 煤煙의 基準値 超過 與否, 超過時의 對策 및 '93年度 公害團束 業務計劃	○大氣, 水質業所는 年2回, 騒音業所는 年1回 定期團束하며 廢水排出業所 9個所를 摘發, 措置하였고 大氣排出業所에 대한 監視哨所運營, 騒音業所 公翰文 發送, 班常會弘報等を 實施하며 基準値超過 煤煙車輛은 告發 86臺, 改善命令 281臺이고 '93年度 公害團束은 公害排出業所 定期・隨時團束, 비디오 및 最新 煤煙測定器 購入을 통해 煤煙車輛 團束計劃임.(環境課長: 書面答辯)
○再活用品 收去 總金額과 洞別賣却資金 現況, 分離收去 弘報不足으로 인해 分離收去容器를 利用한 分離收去不振의 對策, 分離收去弘報物 製作金額 및 '93年度 分離收去推進 計劃	○'92. 7. 1以後 再活用品 收去實績은 總 1,695t 6千萬원이며 每週 水曜日 班別로 分離收去容器에 再活用品을 收集토록 弘報를 強化하였으며 分離收去 弘報를 위해 리후렛 15萬枚 8,692千원, 案内文 2,448千원을 들여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保安燈 電氣料金は 韓電과 個所常 定額 單價契約을 締結하므로서 故障난 不點燈도 電氣料金を 支出하게 되어 豫算의 損失이 되는바 이에 대한 對策 및 保安燈 修理費 支出 內譯	製作 配付하였음. '93年度에는 分離收去 先進地見學, 垂範事例發表會等을 통하여 分離收去의 定着化를 기하고자 함.(清掃課長：書面答辯) ○各 燈別로 積算電力計를 設置할 수 없는 特性때문에 韓電과의 協約에 의하여 1個所 當 月 1,138원의 定額制料金으로 納付하며 燈別로 管理者指定, 夜間巡察強化等으로 不點燈 即時補修를 實施, 電力料金 損失을 最少化하겠으며 保安等 修理費는 '92. 9月 現在 48,382千원이 支出되었음.(土木課長：書面答辯)
〈金永一 議員：書面質問〉 ○西大門區의 特性에 맞는 區政遂行을 위한 方案에 대하여	○駐車空間 擴充, 裏面道路 整備, 交通疏通 促進을 통한 交通與件改善, 不良住宅 再開發, 市民아파트整備 및 住居環境改善으로 快適한 都市環境造成, 新村 大學文化 暢達과 文化行事 開催等を 통한 文化事業推進 및 地域特性에 맞는 地域開發事業을 推進 計劃임.(企劃豫算課長：書面答辯)
〈朴老鉉 議員〉 ○延禧洞 82-1블럭 施工業體 미 광공역의 水道工事 施行時 工事 案內板未設置, 關係公務員의 工事監督 疏忽,	○上水道關係 工事は 一般公開競爭入札方式에 依據 選定하며 工事監督은 事業所 洞擔當職員, 市友會職員 및 洞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工程未遵守로 住民不便 招來에 따른 施工業體 行政措置事項, 工事現況에 대한 住民弘報 未實施 및 工事完了後 道路邊에 資材와 備品을 오랜기간 放置하여 住民 不便招來	에서 推薦한 住民代表가 하고 있으나 事業所 職員의 業務負擔이 많아 工事 監督에 未洽한 事例가 있음. 都給業體의 事由로 工事期間內에 竣工치 못하면 關係規定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賦課하여 徵收하고 있음.(西部水道事業所 漏水防止課長)
〈鄭日出 議員〉 ○一線 洞行政을 改善할 수 있는 人力 支援, 人事交流, 施設補強等에 대한 方案 ○洞職員의 캠페인 및 行事參與가 많은 데 이를 줄일 수 있는 方案	○洞職員 缺員時 區廳에서 1年以上 勤務한 職員을 優先 充員시키고 있으며 區・洞間의 人事交流는 우리區에서는 洞事務所가 選好部署가 되어 있는 狀態이며 洞事務所의 施設과 環境을 區廳에 優先하여 改善토록 하겠음.(總務課長) ○洞職員이 住民을 위한 生活民願에만 專念할 수 있는 캠페인, 團束業務 減縮方案으로 새마을淸掃 參與人員 1/2減縮, 類似業務의 캠페인時 統合 實施, 自然保護 및 行樂秩序 캠페인等의 洞職員參與를 排除하여 當面 主要 施策 推進 業務에만 專念하도록 하고 있으며 繼續的인 減縮 方案을 마련, 推進하겠음.(總務課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區廳舍內的 駐車場 確保方案과 長期 駐車에 따른 問題가 많은 바 이에 대한 改善對策 講究	○區廳舍內的 廣場 및 駐車타워에 約 90臺의 車輛이 駐車可能하며 廣場에 는 區幹部를 除外하고는 民願人만 利用토록 하고 있으나 11時나 14時경에 民願人이 많아서 一時 亂비는 現象과 10部制 該當車輛 進入禁止에 따른 問題로서 現在로는 駐車에 큰 問題가 없다고 思料됨.(總務課長)
○有料 路上駐車場 設置에 따른 區財政 寄與度, 有料 路上駐車場 現況, 施設 管理工團에서 運營하고 있는 新村과 弘恩洞地域의 駐車場을 區에서 運營 可能 與否와 獨立公園 駐車場을 民營 化 또는 有料化 할 計劃에 대하여	○有料 路上駐車場은 區運營 9個所, 施設管理工團 運營 2個所로서 區運營 駐車場의 年間 收入額은 約 1億 5, 300萬원이고 施設管理工團收入은 各 區간 路上駐車場 運營 收入이 不均衡을 이루어 이를 調整하기 위하여 市에서 一部 收入을 各 區에 均等 配分하고 있어 그 收入은 많지 않은것으로 보며 無料駐車場은 檢討해서 점차 有料駐車場化 하겠음.(都市整備局長)
○南加佐1洞 백조아파트는 '80. 8月 再開發을 推進하여 '84. 1. 25 垡地를 除外한 建物登記를 完了하고 '85년에 殘金을 完拂하였으나 現在까지 公簿 未整理로 財產權行事に 支障을 招來하고 南加佐洞 141-8~151-12間的 消防道路 開設도 9億 8,000萬원中 4億 2,300萬만 執行하고 未執行된 理	○백조아파트는 區廳과 住民間에 換地 確定에 따른 補償協議 問題로 解決이 未되었으나 賣買契約上의 土地價格으로 清算토록 規定되어 있어 어느정도 合議를 보았으며 市에서 5,700萬원 相當의 豫算을 確保하여 '93年度에 豫算이 配定되면 '93年度에 補償 및 管理處分할 計劃이며, 백조아파트 間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由 및 백조아파트 問題 解決方案 ○쓰레기 分離收去를 통한 資源再活用の 方案으로 設置한 쓰레기 分離收去 函의 活用 및 保存狀態, 定口收去 履行與否와 再活用品 洞別 賣却貸金 額數, 分離收去의 推進實績 ○南加佐1洞 懇談會時 區廳長이 南加佐洞 291-41號 모래내市場道路 事業을 推進토록 하겠다고 約束하였는데 '93年度 豫算事業에 計上되지 않은 理由 ○管内 어린이놀이터 現況과 未設置된 洞에 대한 解決對策	題가 解決된 後 消防道路 開設을 推進토록 할 計劃임.(都市整備局長) ○每週 水曜日에 班別 指定場所에 分離收去函을 設置하여 再活用品 種類別로 收去하고 있으나 再活用品 容器 保管管理者 指定 未洽과 保管管理者의 無誠意 및 住民의 參與意識 不足, 環境美化員의 教育未備와 認識不足으로 分離收去가 다소 未洽한 實情이며 11. 20日 現在 2,072t의 再活用品을 收去하여 8,630萬원의 賣却貸金實績이 있음.(市民局長) ○南加佐洞 291-41號 모래내市場 消防道路 開設 連結事業은 豫算編成過程에서 除外가 되었으나 追更, 또는 中長期計劃에 包含시켜 開設될 수 있도록 積極 努力하겠음.(建設局長) ○管内 어린이놀이터는 33個所이며 未設置 洞은 8個洞으로서 어린이公園 確保에 따른 많은 豫算所要, 敷地 未保有에 基困하고 있으나 再開發事業 및 住宅事業 推進時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充分한 公園敷地를 確保토록 努力하겠음.(建設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92年度 우리區 公務員의 昇進現況에 대하여	○'92年度 우리區 公務員의 昇進은 行政職 1回 37名, 技術職 1回 31名, 技能職 1回 77名이 있었음.(總務課長 : 書面答辯)
○新村地域의 頽廢를 助長하고 있는 遊技場現況과 大學街周邊道路上 立看板 團束 整備 方案	○新村地域 電子遊技場은 靑少年用 17個所, 成人用 10個所로서 11月 現在 33件을 團束, 摘發하여 行政措置하였으며 團束에 어려움이 있으나 特別團束班을 活用하여 射倖行爲 및 不法技球 設置, 時間外 營業行爲等を 根絶토록 團束에 徹底를 기하겠음.(衛生課長 : 書面答辯)
○新村地域의 頽廢文化를 大學街에 건맞는 文化地域으로 整備하여 發展시키기 위한 區廳의 腹案과 推進事項	○新村地域의 整備를 위해 區職員과 警察人力으로 衛生業所 團束을 實施 476件을 摘發하여 行政措置하고 露店商團束, 네온 및 不法간판整備, 深夜 駐車團束과 呼客行爲防止를 實施하였으며 頽廢, 變態業所를 重點團束할 計劃임.(衛生課長 : 書面答辯)
○區廳 各種 工事 및 物品購入의 入札 方法別로 區分하여 施行現況 答辯 要望	○各種 人事에 있어서의 入札, 契約方法은 一般競爭, 制限競爭, 指名競爭, 隨意契約이 있으며 入札方法이 決定되면 一定期間 公告를 거쳐 現場說明 및 登錄實施後 入札을 實施하여 관련規定에 의한 落札者를 決定하며, 物品購買 入札의 境遇에도 豫算會計法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의 適用과 工事의 境遇와 비슷하나 隨意契約은 500萬원 以下로 하고 落札者 決定은 無限定 最低價를 適用하나 豫定價 85%未滿 落札은 豫定價와 落札價 差額을 差額保證金으로 納付함.(財務課長：書面答辯)
〈鄭赫柱 議員〉 ○'93年 서울新聞의 購讀豫算額이 우리 區 4個 地域新聞 購讀에 該當된 金額보다 많은 理由 및 서울新聞 購讀豫算額을 削減하여 實質적으로 區政弘報와 區議會 消息을 區民에게 傳達할 수 있는 地域新聞 育成發展에 積極 活用할 用意는 ○區廳뒤 골프練習場 敷地에 아파트를 建築한다고 하는데 現在까지의 推進 狀況과 許可與否 ○區稅의 總 滯納額과 向後 徵收可能 額數, 未徵收 額數 및 事由, 公務員의 怠慢이나 職務遺棄에 基困된 것이 아닌지	○서울新聞은 純粹 商業紙가 아닌 綜合 日刊紙의 機能을 하고 있으나 地域新聞은 아직 財政狀態나 專門人力 確保 등의 問題가 있음. 서울新聞의 特性과 地域新聞의 特性을 살려서 購讀을 支援하기 위하여 서울新聞은 每年 같은 水準을 維持하고 地域新聞에 대해서는 每年 購讀部數를 增加시킬 計劃임.(文化公報室長) ○'92. 10. 30日자로 골프練習場 敷地에 建築規模 3層~18層까지 22棟 840世帶를 建築하기 위하여 申請하였으나 '92. 11. 14日子로 自進 取下하였고 이곳에 建築許可를 申請하면 景觀審議委員會와 立地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하겠음.(都市整備局長) ○區稅의 總 滯納額은 4億 8,234萬원으로서 徵收對策으로는 滯納地方稅 電算化 計劃에 의거 滯納資料를 個人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監査室 職員은 他部署의 職員보다 手當이 더 많다고 하는데 手當支給 基準은 무엇이며 이는 公務員의 違和感造成 및 衡平의 原則에 어긋하는 처사가 아닌지 ○布帳馬車 團束에 따른 豫算執行의 內容別 內譯과 完全根絶與否 및 撤去된 布帳馬車 業主의 實態, 收去된 布帳馬車의 保管管理 事項	別, 稅日別로 電算人力中이며 人力이 完了되면 來年度에는 劃期的인 滯納整理가 豫想되고 今年 10. 20~12. 31까지 滯納整理 期間을 設定하여 滯納一掃에 積極努力하고 있으며 職務遺棄 및 怠慢에 의해 未徵收한 事例은 없음.(財務局長) ○監査室 職員의 手當總額은 20만 6,000원이며 他部署는 65,000~18萬원으로 조금 더 많으나 監査業務에 따른 情報收集, 公正監査, 品位維持를 위한 情報費와 特別辦公費의 差異이며 監査業務從事 職員은 全國的으로 一律的인 額數임.(監査室長) ○布帳馬車 整備에 따른 豫算支出은 警備警察 激勵 및 職員活動 特別辦公費 1,990萬 1千원, 整備 및 事後管理 用役費 및 人的, 物的被害 補償에 따른 補償金 8,303萬원, 職員 負傷治療費 75萬 7千원과 賃借料 729萬 8千원이며, 新村地域을 除外한 모든 地域은 完全히 整備 完了되었고, 整備된 布帳馬車業主들은 轉業中으로 把握되었음. 收去된 布帳馬車는 冷泉洞에 保管中이며 14日間の 公告後 本人으로부터 返還要求가 있을 때에는 覺書徵取後 返還을 하고 있음.(建設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金平洛 議員〉 ○西大門區廳의 公務員에 대한 人事行政에 관하여 ○區廳內 各種 委員會의 運營에 대한 事項 ○새마을指導者, 統·班長 子女獎學金 支給에 관한 사항 ○北加佐1洞과 南加佐1洞에는 한집이 2個洞에 同時 位置하여 住民不便이 많은데 合理的인 洞境界 調整에 관한	○人事行政은 區政全般의 圓滑한 業務處理 遂行과 公務員 個個人の 能力發展과 業務能率 向上에 기할 수 있도록 運營되고 있으나 1,500餘 公務員에 대한 人事行政上 滿足스럽지 못한 事項도 있어 漸次 改善하고 個人の 意見을 最大한 收斂하고 反映하여 人事不滿을 解消하여 發展的 人事行政 具現에 努力하겠음.(總務課長) ○우리區 所管 委員會는 14個 部署에서 22個의 委員會를 運營하고 있음.(總務課長) ○새마을指導者 子女에 대한 獎學金은 學業成績과 才能이 優秀하나 生活이 困難한 學生에게 支給하며 現在 2회에 나누어 中·高生 77名에 대하여 總 3,781萬 2千원을 支給하였고, 統長子女 獎學金은 1年以上 統長으로 勤務하고 生活이 困難한 統長, 善行模範 統長, 長期勤績 統長에게 支給하며 現在 2회에 나누어 296名에 대하여 3,563萬 9千원을 支給하였음.(總務課長) ○南加佐洞 248番地 一帶의 洞境界 調整關係에 대하여 '92. 4. 30日字로 서울市에 調整을 진달하였으나 10. 13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方案 ○每年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計量器 檢査가 特定業體를 위해 한다는 住民의 輿論이 있는데 이에 대한 見解 및 計量器檢査의 現況 ○零細民 救護糧穀에 대한 洞事務所에서의 管理 ○衛生業所의 業態別 指導團束 措置狀況 및 事後 計劃을 包含한 改善方案	日字 再檢討 指示가 있어 住民이 원하는 方向으로 境界調整이 되도록 再次 진달을 한 바 現在 서울市에서 檢討中임.(總務課長) ○今年度 計量器檢査는 5. 1~7. 31까지 實施한 바 總 4,313個中 91個가 不合格되있으며 不合格 計量器 大部分이 접시저울로서 再檢査時에 手數料가 6~7,000원이 所要되어 個人이 15,000원을 주고 새로 購入해 使用하므로 廢棄處分을 하여 우리區는 特定業體에 再檢査하는 事項은 없음.(市民局長) ○洞事務所에서 管理하고 있는 糧穀은 居宅保護者糧穀과 低所得 住民을 위한 緊急救護 糧穀이 있으며 糧穀의 腐敗變質 防止를 위하여 保管倉庫에 換風施設을 하고 바닥에는 나무板子를 設置하였으며 擔當者가 定期點檢을 實施하고 있음. 換風施設이 未備한 4個洞은 早速 設置토록 하겠음.(市民局長) ○延人員 85,035名을 投入하여 120,885業所를 點檢實施, 1,390業所를 摘發許可取消 158, 營業停止 268, 課徵金賦課 6,100萬원, 告發 114個 業所 및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西大門區 管內 市場에 대한 行政指導 事項(消防道路確保, 露店商, 賃賃料 等) ○北加佐洞 135-4호 一帶 消防道路 開設에 따른 豫算 7億 9千萬원 策定 後 補償 不振理由 ○廣告物許可는 業者가 代行接受하지 않고 民願人이 直接 接受할 수 있도록 改善하는 方案	是正措置 571個 業所를 行政措置한 바 있으며 向後 推進計劃으로는 衛生 營業主 教育, 좋은 食糧制 實施, 一回 用品 안쓰기 및 個人서비스料金 引上 抑制等 行政指導코자 함.(衛生課長: 書面答辯) ○消防道路 確保를 위하여 '92. 1. 25日 모래내市場과 서중市場에 대한 一齊 整備 實施로 遮光幕은 125個를 開閉 式으로 整備하고, 固定자판 및 突出 販賣臺는 移動이 可能토록 措置하였 으며 市場에 대한 過多한 賃賃料 引上의 調整을 위해 賃賃契約 更新時 調整上限率 超過로 인한 紛爭 發生의 境遇 1次로 당사자間에 協議토록 行政指導하고 不應時에는 國稅廳 通報 等の 行政措置를 하고 있음.(産業課 長: 書面答辯) ○北加佐洞 135-4~144-368間 消防 道路 開設工事は 當初 過多한 評價額 算定으로 補償費가 남았으며 殘餘補 償費로 10월에 實施計劃 認可 追加 로 現在 補償協議中임.(建設局長) ○現在 廣告物 業者을 통하지 않고 民 願人이 直接 接受할 수 있도록 市民 奉仕室에 窓口를 設置, 接受處理토록 措置하였음.(都市整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버스停留場 設置가 不適正하게 된 곳 이 있는데 이에 대한 改善 方案 및 停留場 現況	○管内 버스停留場은 약 150個이며 停 留所中 500m 間隔 以內에 있는 곳이 31個 程度임. 그곳에 대하여 現場檢 討를 實施하여 不合理한 곳은 住民의 意見을 收斂, 是正措置토록 하겠음. (都市整備局長)
○北加佐洞 마을버스의 路線이 不合理 한 바 이에 대한 路線 變更 方案 講 究	○거북골길의 마을버스 連行關係는 12 月中에 버스路線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可否를 決定할 豫定임.(都市整 備局長)
○都市計劃確認願에 添附되는 地籍圖의 縮尺과 測量圖의 縮尺이 同一하지 않 아 民願發生이 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改善方案과 最小誤差 方案	○地籍圖 縮尺의 改善을 위하여 內務部 에 建議하여 地籍公簿의 統一된 縮尺 을 위해 再調査事業으로 研究中에 있 으며 地籍測量의 誤差를 最小化하도 록 行政指導 하겠음.(都市整備局長)
○建築에 따른 建築資材의 道路積置로 住民의 道路利用에 不便을 招來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	○建築主로 하여금 路上이나 周邊에 建 築資材를 積置하지 않도록 行政指導 를 하고 積置에 대하여는 一齊整備期 間을 設定하여 徹底히 整理를 하겠 음.(都市整備局長)
○再開發事業 推進에 관한 全般的인 問 題點	○管内 再開發地區 24個所중 施行中이 13, 事業完了 8, 施行豫定이 3個所이 며 大峴1地區는 組合員의 棟號數 抽 籤遲延, 替費施設 一般分讓遲延 및 建築工程 75%로 期間內 事業完了가 不可能하며, 延禧1地區는 建築物1棟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建築許可後 竣工檢査에 따른 諸般 問題點에 관한 事項	存置로 竣工 및 入住遲延, 弘濟 9-1 地區는 늦게 발주한 水泳場工事 遲延으로 期間內 事業完了 不可能, 靈泉 地區는 未編入 12家口 工事로 인한 民願과 區域內 4家口 天幕居住, 弘濟 1地區는 施設綠地 所有權 未確保로 管理處分計劃 遲延, 弘濟3, 4地區는 主 進入路 住民의 再開發 反對等이 있으나 行政指導를 통하여 事業推進에 萬全을 기하겠음.(住宅課長:書面答辯) ○今年度 建築許可 956件중 竣工은 281件이고 違反建築物은 168件임. 違反內容으로는 面積增加, 地層露出, 所定距離 未確保等이 있으며 그 중 自進是正 100件, 是正措置中 39件 및 設計變更 23件, 行政措置 8件으로서 建築主는 建築關係法規 最大利用 施工 및 經濟的 利益을 위한 違法施工, 民願人은 自己 財產保護 側面에서의 問題點이 있어 向後對策으로는 建築士, 建築主, 施工者 및 監理者 教育實施, 民願調整委員會 活性化, 不合理한 關係規定의 改正建議, 強力한 團束 및 行政措置를 하겠음.(建築課長: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不動產 公認仲介士 制度의 效率性 및 定着發展 狀況, 仲介士 組合의 運營, 管內 仲介業所 現況 및 官認契約書 使用關係, 벼룩시장等 各種 弘報紙의 不動產 仲介行爲에 대한 行政指導 事項	○管內 仲介業所는 公認仲介士 92個所, 仲介人 572個所가 있으며 新規許可는 法人이나 公認仲介士에 한해 可能하므로 仲介秩序確立과 資質向上이 되고 있으며 業所의 團束을 實施하여 196件을 摘發措置하였고, 協會費는 月 4,000원씩 年 48,000원을 徵收하여 中央會에 納付한 後 支會運營費를 支援받아 運營하며 벼룩시장 등에서 不動產 仲介 行爲가 있을시 適法措置함.(財務局長)
○有線放送의 徹底한 管理로 低質映畫 再放映 團束 및 區政弘報 實施, 갖은 故障과 職員의 不親切등의 改善 方案	○有線放送의 許可, 指導監督은 서울市의 所管이나 管內에 所在한 有線放送에 대하여는 行政力이 미치는 한 積極的인 指導를 하여 視聽者의 不便이 없도록 措置하겠음.(文化公報室長)
○官報를 區議員에게 配布하여 購讀토록 할 方案	○區議會 議員 自宅으로 郵送을 하여 購讀토록 措置하겠음.(文化公報室長)
○비디오테이프 貸與業에 대한 點檢方法, 許可內譯, 措置와 違反店鋪에 대한 指導團束計劃	○28회에 걸쳐 指導點檢을 實施하였으며 指導點檢內容은 不法製作 複製, 淫亂頹廢物 販賣, 無登錄業者 秘密製作, 複製行爲이며 그 中 不法複製 6個業所를 摘發, 營業停止 10日의 行政措置를 하였음.(文化公報室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91年度 追更豫算 執行內譯中 土木工 事の 執行에 관한 事項	○土木工事 執行은 7件 3,942,517千원 이며 補償事業 5件 3,522,517千원, 道路開設工事 2件 320,000千원으로 工事施行 事業中 1件은 完了 되었으 며 1件은 工事만 進行中으로 '92年度 12月末 完工豫定으로 있음.(土木課長 : 書面答辯)
○西大門區의 特別會計 運營에 관한 事 項	○'92年度 새마을所得支援金 豫算額 237,189千원을 上・下半期로 나누어 새마을所得支援金 支援基準 및 申請 節次를 거쳐 31家口에 대하여 172, 000千원을 融資實施 하였으며 그 中 '92. 10. 31 現在 滯納現況은 71家口 40,250千원으로서 區・洞督勵班을 編 成運營하여 督促狀 發送 및 滯納事故 者에 대한 保證人 財産調査, 債權確 保를 하고 期限 6個月 經過者에 대 한 滯納處分, 本人 및 保證人에 持續 的인 督勵實施(國民運動支援課長: 書 面答辯) ○서울特別市에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를 設置運用하고 있어 區廳의 豫算은 市에서 一括編成하며 每月 區廳의 醫療 保護 事業에 必要한 醫療保護費를 市에 補助金 交付申請하여 充當 支出하고 있 으며 우리區의 補助金運營 事項은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91年度 補助金申請額 886,807千원 中 支出額 873,050千원, '92. 11月 現在 申請額 794,000千원 中 支出額은 722,665千원임. (社會福祉課長: 書面答辯) ○駐車場 特別會計는 歲入 및 歲出로 區分되어 '93年度 歲入·歲出 規模는 898,482千원으로 歲入은 駐車違反過怠料이며 歲出은 交通施設費 289,244千원, 交通管理 207,650千원 및 豫備費 401,588千원임.(地域交通課長: 書面答辯)
○保健所の 醫藥品 및 醫療器機購入과 醫療診療, 區民 保健衛生의 保護를 위한 推進事項	○'92年度 醫藥品購入은 豫防接種藥品, 妊産婦 및 嬰幼兒 管理藥品, 醫療保險(1次) 및 保護 診療 藥品 購入 20回, 醫療器機는 無菌函 1臺, 유닛 체어 1세트, 콤퓨레샤 1臺 및 超音波 診斷機 1臺 購入이 있음. 外來患者 診療는 10,862名을 實施하였고 訪問 診療는 診療對象人員 25名을 250回 訪問 延人員 5,072名 實施, 巡廻診療는 89回 9,481名을 實施하였으며, 醫療保護患者는 延 12,207名, 醫療保險 患者 43,226名, 性病患者 2,529名の 診療實績이 있고 區民 保健衛生의 保護를 위해 母性室 運營, 嬰幼兒 基礎 健康診斷 및 基本 豫防接種 實施, 訪問看護 및 巡廻診療, 결핵管理事業,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性病管理事業, 豫防接種事業 및 AIDS 관리와 檢査室運營이 있음.(保健所長 : 書面答辯)
〈曹甲鉉 議員 : 書面質問〉 ○區民會館에 有關機關의 入住로비說과 入住許容 與否에 대한 確實한 區廳長 의 答辯 ○區政 運營에 관한 事項 ○親切奉仕에 관한 教育實施現況과 教 育方法, 教育後 改善與否	○都市公園에는 都市公園法에 의거 教育 施設과 休養施設 및 運動施設에 한하 여 施設할 수 있어 現在로는 文化會館 運營에 直接 必要한 組織以外 各種 社 會團體, 職能團體에 대한 常住는 不許 方針이고, 入住對象機關 選定을 考慮 한 바 없음.(文化公報室長 : 書面答辯) ○區政 運營方向으로는 快適한 都市環 境造成, 區民福祉 및 生活便益의 增 進, 鄉土文化 意識 高揚, 새秩序·새 生活運動 實踐 및 區政參與와 奉仕行 政具現에 두고 行政豫告制 實施, 班 常會나 地域新聞을 통한 生活情報 弘 報, 地域訪問 및 班常會를 통한 住民 意見 收斂, 名譽行政官制를 통한 住 民行政參與等を 推進하고자 함.(企劃 豫算課長 : 書面答辯) ○親切奉仕教育은 54回 10,720名을 實 施하고 親切奉仕 教育教材 製作 1, 300부와 親切事例集 發刊 300部가 있으며 區政의 最優先 課題를 對民行 政 서비스의 根源的 改善에 두고 親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下位職 公務員에 대한 人事基準과 區 · 洞職員 現況 ○ 有關機關 및 團體의 廳舍利用에 따라 廳舍가 不足한 實情인 바 移住對策은	切奉仕運動을 認許可部署까지 擴大推進한 結果 職員들의 親切奉仕姿勢 生活化는 勿論, 民願室 環境改善과 部署別 住民便益事業開發等 市民의 要求에 副應하는 行政實施 成果를 거두었음.(總務課長 : 書面答辯) ○ 圓滑한 區政 및 洞行政 遂行을 위한 適材適所 人員配置, 職員 個人的 昇進, 勤務與件 및 苦衷事項을 最大한 反映, 現部署 長期勤務者의 循環移動 配置로 勤務意慾 鼓吹等を 人事基準으로 삼아 運營하고 있으며 現在 區職員은 796名이며 洞職員은 570名임.(總務課長 : 書面答辯) ○ 現 區廳舍는 狹小하여 業務遂行에 많은 支障을 招來하여 오던중 一部 職制의 新設로 業務 遂行이 不可能하여 부득이 事務室을 賃借해 使用하게 되었고 現在 入住하고 있는 外部團體는 5個團體로 入住當時에는 廳舍形便이 多少 餘裕가 있어 區廳과의 協力關係의 圓滑을 위해 入住하게 된 것이며, 有關團體 入住는 全 區廳이 同一한 形便으로 無對策 移住措置는 困難함.(總務課長 : 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高位職 公務員의 辦公費 節減으로 豫算節減에 率先할 方案	○機關長 情報費, 辦公費는 地方行政의 圓滑한 推進을 위한 對民活動等 職責 遂行에 所要되는 經費와 事業推進에 特別히 所要되는 激勵費, 接待費, 行 事經費等으로서 '92年 豫算編成 內譯은 月定額 및 職務遂行 情報費 43,200千원, 機關運營 辦公費 15,460千원, 機關運營特別辦公費 31,200千원 임.(企劃豫算課長: 書面答辯)
○區有財産의 評價額과 管理方法 및 裸 垠地의 無斷占有로 인한 財産價値 減少에 따른 對策	○行政財産은 總 1,047,960.3㎡로서 評價額이 1,010,084,443千원이며 雜種 財産은 土地로 40,025㎡이고 評價額이 39,884,205千원임. 占有財産中 支 障物整理가 容易한 財産은 住居用 轉 換以前에 整理하여 無斷占有의 長期 化, 土着化를 防止하고, 住居用으로 長期占有한 財産은 占有者에게 賣却 또는 賃貸契約 誘導 및 不應時 辨償 金賦課徵收하며, 無斷占有 事前豫防을 위해 地域巡察 實施 및 既占有者에 대한 時効中斷措置, 垠地以外의 財産은 垠地로 地目變更, 管理하여 賣却時 財産價値 上昇效果 期待(財務課長: 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91~'92 各種 公開競爭入札契約 件數 및 落札金額의 豫定價 平均 比率과 1個業體 最多落札 件數	○'91年度 競爭入札 件數는 單一工事 都給額 1,000萬圓 以上으로서 79件이며 豫定價格은 4,824,026千圓 契約金額은 4,526,722千圓으로 豫定價格 對比 契約金額은 93.83%로 6,003,897千圓, 契約金額은 5,436,791千圓으로 90.55%임. 1個業體 最多契約 件數는 '91年度 11件, '92年度 5件的 落札이 있음.(財務課長: 書面答辯)
○老人亭, 養老院, 保育院等 社會福祉 施設에 대한 越冬對策과 問題施設에 대한 對策	○'92. 11. 9~11. 25日까지 77個所를 對象으로 越冬對備 施設安全 點檢을 實施하여 暖房施設 未備 5件, 지붕漏水等 施設老朽 4件을 摘出하여 施設 補修를 위해 45,940千圓으로 어린이 집 5個所에 대해 補修推進 및 補修費 支援과 老人亭 4個所中 3個所는 補修完了하고 1個所는 補修推進中임. (家庭福祉課長: 書面答辯)
○西大門區 老人會長 辭退理由	○前老人會長은 '92. 9. 16日 本人事情으로 辭任書를 提出하였고 '92. 9. 30代議員 臨時總會에서 會長團을 새로 選出한 것으로 알고 있음.(家庭福祉課長: 書面答辯)
○都市計劃 再整備方案(公園地區, 消防 道路로 인한 財産權制限의 解消)	○남광엔지니어링(주)에 用役費 197,000千圓을 들여 '91. 12. 27~'93. 12. 31까지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을 樹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北部 都市高速化道路 開設에 따른 騒音, 粉塵等 民願對策, 財産價値 減少에 따른 對策 ○管内 再開發 施行에 따른 方案	立하고 있으며, 公園用地 및 15年 以上된 道路計劃 解消方案으로는 現在 施行中인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樹立 用役社로 하여금 不合理한 公園用地 및 15年 以上 未開設된 道路를 都市基本計劃에 反映, 檢討 豫定임.(都市整備課長：書面答辯) ○우리區의 北部 都市高速化道路 延長은 3.2km로서 이 道路가 完工되면 交通 混雜의 緩和와 都心 交通通行量의 減少가 있으나 通行車輛에서 發生되는 騒音과 먼지로 近隣住民의 被害가 豫想되어 서울시 綜合建設本部에서는 被害를 最小化하기 위하여 道路 兩面에 防音壁을 全 區間에 設置豫定임.(環境課長：書面答辯) ○再開發事業은 區域內 不良住宅 및 土地所有者가 再開發組合을 設立하여 組合이 主體가 되어 推進하므로 組合이 主가 되고 區에서는 行政支援과 指導監督을 하는 事項으로 앞으로는 住民의 自律的인 事業推進이 되도록 誘導하겠음.(住宅課長：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航空撮影으로 摘發된 屋塔 無斷 用度變更 및 不法建築物 摘發 內譯과 屋塔 無斷 用度變更者들에 대한 陽性化 計劃 ○'91~'92年度 所要豫算과 向後 3年間의 計劃에 대하여, 管内豫算中 歩道 整備部分과 道路整備에 관한 總豫算은 ○高地帶 給水脆弱地域 現況 및 對策	○不法建築物 摘發內譯은 총 251件을 摘出하여 그 中 195件을 整備하였으며 殘餘 不法建築物은 56件이 있음. (住宅課長: 書面答辯) ○屋塔 無斷 用度變更者들에 대한 陽性化는 現行 建築法 關係 規定上 不可하며 關係 規定이 先行되어야 陽性化가 可能함.(建築課長: 書面答辯) ○道路開設 및 整備에 대한 投資事業費는 '91年度에 道路整備 12件 787,795千원, 歩道整備 1件 250,000千원이며 '92年度는 歩道整備 8件 855,409千원, 歩道整備 5件 1,616,000千원이 되겠으며 向後 3年間도 歩道整備 5個年計劃 및 中長期地方財政計劃에 의거 樹立하여 事業費를 投資計劃하고 있으며 道路開設 및 整備에 總 42件 33,539,000千원과 歩道整備에 6件 5,407,000千원의 推進計劃이 있음. (土木課長: 書面答辯) ○高地帶 地域에는 加壓場을 設置하여 給水하고 있으며 既存管 老朽, 新規住宅 建立等으로 給水供給이 不足한 高地帶에 '91~'92年度 5件的 改良工事を 施行하였고 '93年度 7件的 工事計劃이 있음.(恩平水道事業所長: 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鄭炳八 議員：書面質問〉 ○藥水터의 現況 및 水質檢査 實施結果 合格, 不合格 藥水터 現況, 水質檢査는 年 몇回 實施하고 있는지 ○藥水터나 쉼터에 設置된 體育施設과 椅子等の 老朽 施設의 交替 및 增設과 弘恩 2洞 國立公園管理公園 地域內 體育施設 및 便宜施設의 設置 用意 ○再開發아파트 新築工事現場 現況 및 再開發事業에 따른 集團民願 發生件數, 解決 및 未解決件數, 未解決된 民願의 內容과 措置事項 ○再開發地域과 住宅組合이 建築中인	○藥水터는 35個所이며 '92. 9. 14日 實施한 水質檢査結果 8個所에서 大腸菌群 및 PH未達 判定되었으나 '92. 10. 21日 再檢査結果 不適合은 북수천 1個所이고 水質檢査는 保健環境研究院에서 年 2回, 保健所에서 年 4回 實施함.(生活體育課長：書面答辯) ○隨時 巡察을 통하여 狀態를 把握하고 補修, 補強 및 增設했으며 弘恩2洞 國立公園內 體育施設 및 便宜 施設의 設置는 管理主體가 달라 우리區 豫算으로는 困難하나 住民便宜를 위해 肯定 檢討하겠음.(生活體育課長：書面答辯) ○再開發地區는 24個所이며 施行中이 13個所, 事業完了 8個所, 施行豫定 3個所로서 集團民願은 6件이 發生되어 5件 解決, 1件 未解決이 있고, 未解決 民願은 靈泉地區로 區域內 殘在建物 8棟의 行政代執行에 따른 對策을 要求하며 訪問抗議 9回와 集團籠城 1회가 있어 區職員과 警察兵力 364名을 投入해 鎮壓하고 補償對策은 組合과 協議토록 措置하였음.(住宅課長：書面答辯) ○組合아파트 建立에 따른 綠地毀損이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아파트 新築工事 現場에 公園綠地나 自然景觀 毀損이 많은데 區廳의 確認 與否, 毀損된 곳의 措置事項 및 原常 復舊 可能與否 ○今年度 都市가스 管理計劃과 都市가스事業 推進時 民願苦起地域, 都市가스施設現況과 10億원의 施設費融資金 支出 및 殘額現況, 都市가스會社의 橫暴로 인한 民願發生의 措置 ○交通信號燈과 건널목이 不合理하게 設置되어 있는 곳을 該當 警察署와 協議하여 改善할 用意(例: 弘濟3洞 看護專門大 入口 左回轉 信號와 건널목)	2個所로서 극동建設 毀損部分 20㎡는 '92. 12. 31까지 完全復舊토록 하였고 청구住宅 毀損部分 58㎡는 '92. 11. 14日字로 代表者 告發措置 同時 竣工前까지 原常復舊, 또는 買入토록 措置하였음.(住宅課長: 書面答辯) ○今年度 供給計劃은 8,500家口이며 施設費融資는 基金 10億원中 現在 92家口에 4,200萬원을 實施하였고 都市가스의 供給에 比하여 需要家の 過多와 5個 圈域間에 都市가스의 供給 節次, 方法 및 工事費等이 同一 適用되지 못해 民願이 苦起되고 있으므로 都市가스 普及擴大와 더불어 民願解決에 努力하겠음.(産業課長: 書面答辯) ○交通信號燈과 건널목이 不合理하게 設置된 곳이 있으면 管轄 警察署와 協議하여 改善하겠으며 弘濟3洞 看護專門大 入口 左回轉 信號와 건널목은 現場 確認하여 是正措置 하겠음.
〈郭載滿 議員: 書面質問〉 ○증산 第2橋위에 恒常 清掃積載函, 덤프트럭, 버스等の 駐車로 區廳長이 團束토록 指示한 바 있는데 繼續 駐車하는 理由 및 整備方案, 夜間 및 公休日 團束方案	○夜間團束을 實施, 過怠料를 賦課하고 있으나 이를 無視하고 繼續 不法駐車하고 있으며 深夜 駐車는 團束이 困難하고 15t重機車輛은 牽引하지 못함을 惡用하여 繼續 駐車하므로 不時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民間委託 公營駐車場の 駐車料가 비싸 이를 利用치 않고 뒷골목等 道路에 駐車하는 事例가 많은바 區廳에서 無料駐車場으로 改善, 利用度を 높일 用意는 ○北加佐洞 298番地에서 15m 道路가 끊기고 北加佐洞 100番地로 넘어가는 道路는 3m로서 大形火災等に 극히 脆弱한 實情이고 道路事情上 15m 道路로 擴張連結할 必要가 있다고 보는데 擴張開設할 用意는	夜間駐車 團束을 繼續實施하고 大型車輛 牽引方案을 講究하겠으며 清掃積載 函은 12月中 清掃 中間集荷場 完工時 移轉 豫定임.(地域交通課長：書面答辯) ○民間委託 路上駐車場の 駐車料金은 1級地가 30分當 1,200원, 2級地가 500원이며 골목길 無斷駐車에 對해서는 持續的인 行政指導 및 團束을 實施하겠으나 無料化는 困難함.(地域交通課長：書面答辯) ○本 道路는 70年度에 土地 區劃整理 事業으로 開設된 곳으로 都市計劃施設이 未決定된 地域이나 裏面道路 確保次元에서 關係部署와 都市計劃施設 決定 可能與否를 協議, 施設決定後 開設토록 努力하겠음.(土木課長：書面答辯)
〈具滋億 議員：書面質問〉 ○住民登錄番號의 二重賦與로 인한 民願發生 事例가 많은데 이에 對한 整備對策	○誤謬住民登錄番號가 確認되면 他業務에 優先하여 最初賦與地에 依賴, 正確한 住民登錄番號를 賦與받아 整理하고 關係機關에도 通報하여 住民의 不便을 迅速히 解消하고 있으며 3,427件의 誤謬住民登錄番號 整理를 하였고 內務部 指示로 一齊整理 推進中임.(總務課長：書面答辯)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무악재 巖壁 切開地擴張工事의 規模와 工事施行目的 및 道路交通障礙에 대한 對策	○工事名은 무악재 危險切開地 整備工事로 '91. 12. 31~'93. 6. 25日까지 19億 8千萬원의 工事費를 들여 綜合建設本部에서 施行하며 既存 암반의 老朽로 落石危險과 急傾斜地로 都市景觀을 沮害하고 있어 切開地 斜面安定 및 都市景觀 造成이 目的이며 可變車線 7個線을 確保하여 車輛疏通에 支障없게 하고 步行者는 迂廻 通行토록 措置했음.(土木課長：書面答辯)

【'92. 11. 30 區廳長 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鄭日出 議員〉 ○6號線 地下鐵 工事區間에 加佐驛이 包含되었다가 2次 修正發表時 다른 곳으로 變更되었는데 우리區에 協議가 있었는지, 變更된 理由에 대한 通報與否와 內容, 本來의 計劃대로 加佐驛을 留置할 方案, 모래내 周邊地域과 都市循環鐵道와의 連繫로 住民에게 어떤 便益이 있는지 ○頽廢를 助長하고 있는 新村地域 享樂 文化의 整備方案	○6號線 地下鐵計劃은 서울市에서 우리區에 路線變更에 따른 意見收斂이 없었고 96年度에 完工할 目標로 計劃이 確定되어 있어 路線變更은 不可能할 것으로 思料되며 京義線 國鐵의 電鐵化 事業이 計劃樹立 段階에 있는 바 鐵道廳과 協議해서 國鐵 電鐵化計劃이 加佐地域에 크게 寄與할 수 있도록 이 計劃에 包含되는 問題를 建議하고 協議를 繼續하겠음. ○新村地域의 衛生業所團束, 深夜 네온싸인 團束, 不法看板整備 및 駐車團束, 警察의 飲酒測定強化등으로 淨化活動에 努力하고, 록카페 集中團束으로 인한 業種轉換, 大學生과 業主 合同 캠페인 展開等에 의한 自律淨化推進과 文化空間 擴充을 위하여 창서 어린이놀이터를 活用한 놀이마당 設置, 體育施設 建立計劃等이 있음.
〈金平洛 議員〉 ○北加佐洞 쓰레기積換場 設置에 따른 住民 被害對策과 小公園이나 어린이 놀이터 施設 設置方案	○쓰레기積換場的 位置가 住宅地域과 많이 떨어져 있으며 積換場을 地下에 施設하고 담장을 높이 쌓아 住民의 被害가 없는 方向으로 設計하여 工事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清掃代行業 許可는 公開入札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隨意契約으로 하고 있는지, 隨意契約에 의한다면 그 理由 ○大峴洞 56-40號 1,000여坪을 公園으로 指定한 後 現在까지 放置하고 있는데 公園造成計劃과 再開發推進에 따른 全般的인 地區別 問題點 및 對策 ○서울新聞 購讀豫算이 過多하게 編成되어 있는바 區政을 區民에게 弘報하고 啓導하기 위해서는 西大門區 地域新聞을 配布, 購讀케 할 用意는	를 하고 있음. 北加佐洞 地域에 대한 놀이터等 福祉施設은 適切한 敷地를 確保하지 못하여 施設되지 못하였으나 現地 與件을 檢討하여 推進토록 하겠음. ○清掃代行業은 서울시 清掃條例에 의한 施設基準에 맞춰 서울시長의 認可를 받아 現在까지 事業을 하고 있으며 區廳에서 許可한 事實은 없음. ○大峴1地區에 一部分 公園과 再開發區域으로 指定된 後 事業이 遲延 되었으나 再開發事業時 公園包含 與否로 住民間의 意見이 相衝해 住民들이 市議會에 請願을 提起하여 이를 檢討中이며 請願審査 結果에 의하여 市에서 適切な 指針이 決定될 것으로 생각함. ○서울新聞은 內務部 豫算編成 指針에 따라 各 區가 共同으로 編成하고 統班長에게 配付하여 政府와 市政의 施策에 대해 폭넓은 理解를 하고 住民에게 奉仕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一環으로 編成된 것으로 알고 있음.
〈金源珠 議員〉 ○西大門區의 發展을 위한 長期的인 方案이나 特殊事業 計劃與否, 向後 自治行政의 推進方向은 어느 分野에 重	○新村地域의 商業地域 再開發, 보래내 市場 周邊과 弘恩洞 네거리 周邊에 商業機能 賦與等으로 地域發展을 기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點을 두고 遂行할 것인지 ○西大門區 自主財源 確保方案 및 地方 財政의 計劃的 運營方案이 講究되어야 하는데 中長期的인 計劃이나 財政 擴充 實踐方案과 財政能力 不足으로 인해 地域開發이 어렵고 公共서비스 等 地域間 不均衡 發展의 原因이 되는데 區의 發展을 위해 地方債를 發行하여 積極 活用할 用意는 ○注油所 新設許可에 따른 行政의 잘못으로 訴訟을 提起해 西大門區廳長이 高等法院에서 敗訴하였는데 이에 대	하는 方法을 研究하여 區 都市基本計劃을 樹立中에 있으며 地域間의 道路 網을 整備해서 交通疏通의 圓滑을 기함으로써 地域間 均衡發展을 圖謀하고자 消防道路 開設이 他地域에 비해 늦은 北加佐洞과 南加佐洞의 道路開設을 위해 投資하고 來年度에도 消防道路 開設, 裏面道路 整備를 하겠으며 西大門가꾸기 運動을 展開하고 自治行政을 住民生活의 不便事項과 生活周邊의 사소한 不便事項 解決로 生活의 質을 높이고 公開行政, 對話行政을 繼續 推進하며 郷土文化의 振作과 住民들이 地域意識을 갖고 地域發展에 參與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음. ○5個年 計劃에 의하여 財政計劃을 樹立하여 向後 歲出執行도 不要不急한 것은 抑制해서 財政의 執行效率化를 기하고 財政擴充 方案을 마련하여 稅源發掘에 最善을 다하겠으며, 地方債의 發行 問題에 대하여는 研究토록 하겠음. ○注油所 許可는 市の 指針에 都心半徑 5km以內에는 許可가 不可하도록 되어있어 5km 半徑에 該當되는 許可申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한 主務部署의 責任이 있다고 보는데	請은 全部 返戻하였으며 그 中에 異議를 提起, 訴訟하여 勝訴하였으나 區에서는 市의 指針에 따라 訴訟遂行을 繼束할 豫定으로 있고 市의 方針에 의하여 執行하는 立場에 있으므로 指針에 抵觸되는 注油所 許可는 繼續해서 不許할 수 밖에 없음.
〈宋榮于 議員〉 ○區議會 議事堂 確保 方案에 대하여 －弘恩3洞에 建立中인 文化會館을 公園用地 解題後 確保하는 方案 －恩平水道事業所와 現議事堂을 交換하는 方案 －區廳舍를 增築하여 議事堂을 確保하는 方案 －其他 다른 方案은 무엇인지 ○忠正路洞 157-10 舊 專賣廳 倉庫敷地를 市·區有地와 交換하여 議事堂 建立과 洞事務所, 工夫房 施設을 誘置하는 方案	○文化會館 建立工程이 80% 以上 進捗되어 있고 公園用地 解除도 建設部의 審議가 있어야 되나 매우 어렵다고 보며 恩平水道事業所와 折衝을 하였으나 裝備와 人員이 많아 다른곳으로의 移轉이 不可하다는 立場이고 區廳舍의 增築使用에는 5層 以上이 되면 엘리베이터 設置와 機械室 設置의 必要와 駐車問題 등이 陪伴되므로 綜合的인 檢討가 必要하다고 思料됨. ○담배人蔘公社와 實務的으로 協議를 하였으나 賣渡意思가 없으며 財産을 交換할 땅이 市에 없으므로 買入하여야 하나 그 面積이 1,855坪으로서 公示地價로 計算해도 330億원이 所要되어 어려우며 洞廳舍, 어린이놀이터 및 工夫房 등의 施設은 每年 與件이 許諾하는대로 擴充토록 努力하겠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鄭日洙 議員〉 ○舊 서울女商 敷地 청구住宅의 再開發 推進工程 및 垡地 總面積과 建築延面積, 交通影響評價 未實施 事由 ○134番 버스終點은 人道, 車道 區分없이 駐車場으로 使用하고 있어 夜間에는 車輛通過가 어려운 實情인데 이에 대한 放置理由와 團束怠慢에 基困한 것이 아닌지	○舊 서울女商 敷地內 아파트는 14~17層까지 14棟 862世帶를 建築中이며 現在 工程은 20%程度임. 交通影響評價는 延面積 15萬㎡ 以上인 境遇에 實施토록 되어 있으나 이 事業은 延面積이 10萬 6千㎡이기 때문에 對象이 되지 않음. ○市內버스의 交通分擔率이 約 42%程度이고 急激한 交通需要 增加에 따른 車庫地 施設을 갖추지 못해 泊車에 隘路가 있어 政府에서도 그린벨트 地域 活用方案等을 講究하고 있으며 住民의 不便이 없도록 駐車 및 監督을 徹底히 하겠음.

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選任

第16回 定期會 第4次 本會議에서 1991年度 歲入歲出承認의 件과 1991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 件 및 1993年度 豫算案의 審査를 위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을 上程하여 議長이 推薦한 11名の 議員을 滿場一致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하였다. 選任된 議員은 다음과 같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

朴老鉉 議員	金鍾彩 議員	崔容完 議員	宋榮于 議員
全聖章 議員	金廷炫 議員	曹甲鉉 議員	李文馥 議員
金永一 議員	金源珠 議員	郭載滿 議員	

다. 1992年度行政事務監査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2年度 西大門區行政事務監査計劃을 議決하였으며 區廳으로부터 常任委員會別로 監査資料를 提出받아 3日間 區政監査를 實施하고 監査結果를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報告한 後 是正要求 및 建議事項을 區廳에 移送하여 處理토록 滿場一致로 議決하였다.

本會議의 議決로 承認된 監査計劃은 다음과 같다.

1992年度 區政監査 計劃

1. 目 的

地方自治法 第36條 規定에 의하여 區政監査를 實施함으로써 區政全般의 運營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不合理한 事項을 是正하고 議政活動과 1992年度 豫算案 審査에 必要한 基本資料 및 情報를 獲得하며 區政이 效率的으로 遂行될 수 있도록 誘導하기 위함.

2. 監査期間：1992年 12月 1日(火)～12月 3日(木) - 3日間

3. 監査實施對象

- 對象機關：區廳 5局 1所 3室 27課
- 對象業務：地方自治法 第9條 第2項 第1號내지 第6號에 規定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監査對象事務의 範圍：1992年度에 處理된 業務

4. 監査委員의 編成

- 常任委員會 全 委員을 監査委員으로 構成

委員會別	監査班長	幹 事	監 査 委 員	事務補助職員
總 務 委 員 會	林 在 鮮	金 鍾 彩	宋榮于, 全在煥, 趙敏行, 尹益洙 全聖章, 姜碩宗, 朴老鉉, 李文馥 金永一, 鄭日出, 金源珠, 鄭赫柱	專門委員外 關係職員 3名
都市建設 委 員 會	李 鳳 洙	崔 容 完	金廷炫, 左斗行, 曹甲鉉, 丁和鎮 成明濟, 具滋億, 朴正來, 金平洛 鄭日洙, 郭載滿	專門委員外 關係職員 3名

5. 監査場所

監 査 場 所		備 考
委 員 會 別	場 所	
總 務 委 員 會	區廳 企劃狀況室	
都市建設委員會	區廳 地下狀況室	

6. 監査方法 및 節次

- 方法：業務報告聽取, 書類提出, 關係公務員 意見 陳述, 現地確認
- 監査進行節次
 - 監査實施 宣言 및 委員長 人事
 - 委員會別 該當局長 人事 및 幹部 紹介
 - 業務報告聽取 및 質疑・答辯

- 關係公務員 意見 陳述
- 現地 確認 實施
- 監查 終了 宣言

※ 特定分野에 對한 重點監查가 必要할 때에는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實施한다.

○ 監查報告書 作成 및 報告

- 監查 終了後 常任委員會別로 監查報告書を 作成, 採擇하여 委員長이 本會議에 報告

委員會別 監查日程 및 場所

委員會別	監 查 日 程		對 象 機 關	監查場所
	月 日	時 間		
總 務 委 員 會	12.1(火)	10 : 00	• 總務課, 企劃豫算課, 國民運動支援課, 生活體育課, 民防衛課, 保健所	企 劃 狀 況 室
	12.2(水)	10 : 00	• 文化公報室, 監查室, 市民奉仕室, 財務課, 稅務1課, 稅務2課, 土地管理課	
	12.3(木)	10 : 00	• 社會福祉課, 家庭福祉課, 衛生課, 產業課, 環境課, 清掃課	
都市建設 委 員 會	12.1(火)	10 : 00	• 住宅課, 都市整備課, 地籍課	地 下 狀 況 室
	12.2(水)	10 : 00	• 地域交通課, 建築課, 建設管理課	
	12.3(木)	10 : 00	• 土木課, 下水課, 公園綠地課	

2. 議案 處理

가. 條例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條例案은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事務分掌規則의 改正에 따라 都市가스基金管理公務員과 條文의 變更을 위하여 1992年 10月 30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2月 8日 總務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條例案은 雇傭職 公務員인 防犯員이 公務員으로 任用되기 以前의 自律防犯經歷은 不認定함으로 인한 不合理을 改正하기 위해 1992年 10月 3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2月 8日 總務委員會에 回附, 委員會 審査結果 區廳長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委員會에서 議決한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담배自動販賣機設置制限條例案

이 條例制定案은 담배事業法 第16條 및 同法施行規則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의 保護를 위하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에서 담배自動販賣機 設置를 制限하고자 1992年 11月 13日 條例審査特別委員會에서 制定, 議決하여 第16回 定期

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崔容完 幹事の 審査 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全國 담배小賣人 西部組合代表 나기주外 149人으로부터 零細 담배小賣人의 生活對策을 保護해주는 次元에서 再檢討, 留保措置를 바라는 陳情書가 接受되어 이 條例案을 좀더 深度있게 處理하기 위하여 會議規則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依據해서 業務所管 委員會인 總務委員會에 再回附키로 滿場 一致로 可決하였다.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改正條例案은 合理的인 統·班運營을 위하여 1個統을 5個班 내지 11個班으로 構成할 수 있도록 條例를 改正하기 위하여 1992年 11月 13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서 改正, 議決하여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崔容完 幹事の 審査 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 一致로 委員會에서 改正, 議決한 委員會案대로 可決하였다.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情報公開條例案

이 條例制定案은 行政에 대한 理解와 參與를 높혀 區政에 積極 同參할 수 있도록 條例를 制定하기 위하여 1992年 11月 13日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서 制定, 議決하여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條例審查特別委員會 崔容完 幹事の 審査 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였으려 政府 次元에서 關係法이 制定中이므로 條例가 施行되고 난 後 母法이 制定되면 上位法과 相衝되어 市民에게 不便을 招來할 憂慮가 있으므로 深度있는 審議를 위해 業務所管인 總務委員會에 再回附하기로 滿場 一致로 議決하였다.

나. 承認案

1) 1993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

이 承認案은 行政事務의 電算化 및 事務白動化와 急増하는 行政需要에 迅速히 對處하고 對民行政 서비스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93年度에 必要한 定數物品을 購入코자 1992年 11月 1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2月 8日 總務委員會에 回附, 審査한 結果 總務委員會 修正案을 可決하여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修正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委員會 修正案대로 可決 하였다.

2) 1993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이 承認案은 1993年度 우리區 區有財產의 處分 및 無償貸付에 관한 管理計劃의 議會承認을 위하여 1992年 11月 13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2月 8日 所管 常任委員會인 總務委員會에 回附, 審査한 結果 總務委員會 修正案이 議決되었으며, 1992年 12月 16日 姜碩宗 議員外 8人으로부터 委員會 修正案에 대한 修正案이 提出되어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한 案件으로서 姜碩宗 議員外 8人이 提出한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 1993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修正案에대한修正案

【注 文】

1993年度 區有財產管理計劃 承認案에 대한 委員會 修正案中 梨花學堂이 買收申請한 大峴洞 31-4外 1筆地 垆地의 賣却不承認에 대하여 區廳長 原案대로 賣却을 承認할 것을 西大門區議會 會議規則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動議한다.

【修正理由】

- 1993年度 區有財產管理計劃 承認案의 賣却財產目錄 第1號의 財産은 溝渠敷地로 그 土地特性上 一般人이 通行할 수 있는 道路나 區有財産으로 向後 活用할 수 있는 保存價値가 없는 貸地로서 '93年度의 歲入 減少等 區 財政與件을 考慮할 때 이를 賣却하여 歲入의 增大를 기하는 것이 合理的인 措置로 判斷되며,
- 一般人에 대한 區有地 賣却은 土地利用度 側面과 財産權 保護等の 次元에서 承認을 하면서 特別히 保存價値나 理由가 없는 土地의 賣却承認을 不承認하는 것은 衡平에 맞지 않는다고 思料됨.

○ 審議經過 및 結果

總務委員會 林在鮮 委員長의 修正案에 대한 審査報告와 姜碩宗 議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姜碩宗 議員이 提出한 修正案대로 可決하였다.

다. 豫算案

1)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

이 豫算案은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財政法施行令 第30條 2의 規定에 의하여 1993年度 西大門區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議會의 承認을 위하여 1992年 11月 2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 報告된 後 審議를 위해 1992年 12月 8日 各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各 常任委員會의 修正議決을 土臺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議 및 計數調整을 實施하고 1993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修正 議決하여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源珠 委員長의 修正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聽取한 後 質

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委員會 修正案대로 可決하였다.

2) 1991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이 案은 地方自治法 第125條 및 地方財政法施行令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1年度 歲入·歲出豫算에 대한 區議會의 承認을 위하여 1992年 11月 16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 報告된 後 審議를 위해 1992年 12月 8日 各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 各 常任委員會의 審查結果 原案可決되었으며 1992年 12月 11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議하여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議決하였으며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에 上程되었다.

○ 審議經過 및 結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源珠 委員長의 審查結果 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概 況

議會運營委員會는 第16回 定期會 期間中 1992年 12月 10日 第1次 會議를 開議하여 本會議에서 審查回附된 議會運營委員會所管 1991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1993年度 豫算案에 대한 豫備審查와 1992年度 議會事務局 業務報告 聽取가 있었다.

1.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豫算案

◆ 1991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11月 1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議會運營委員會所管 事項에 대하여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1992. 12. 10)에 一括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이 案은 地方自治法 第120條 및 第125條와 地方財政法施行令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기 위함.

나) 主要骨子

【決算 및 豫備費 規模】

① 議會運營委員會所管 歲出決算 (單位：千원)

豫 算 現 額 (876,159)			支 出 額	事故移越額	豫算殘額
豫 算 額	豫 備 費	前年度移越金			
723,027	153,132	0	564,058	0	312,101

② 豫備費 (單位：원)

支出決定額	支出原因行爲額	支 出 額	移 越 額	不 用 額
153,132,000	127,440,430	127,440,430	0	25,691,570

2) 審査 結果

財務課長の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決算檢査委員들이 徹底한 決算檢査를 遂行한 것으로 思料되어 質問答辯 및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

1) 提 案

1992年 11月 2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自治區 歲入歲出豫算案 中 議會運營

委員會所管 豫算案을 委員會 會議에 上程하였으며 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豫算案의 規模】

- 歲 出：總 876,407千원(前年對比 9.3% 增額)
- 歲出內譯
 - └ 議政活動費：303,540千원
 - └ 議會運營費：572,867千원

2) 審查 結果

議會事務局 姜成煥 議政係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聽取하고 質問答辯과 討論 및 計數調整을 거쳐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議政管理 및 議會行事推進費 各 1千萬원의 內譯 및 議長이 執行할 수 있는 特別辦公費 豫算科目은	○ 議政管理 및 議會行事推進費 各 1千萬원은 事務局 業務推進費이며 議長執行 特別辦公費는 弘報活動費에 計上되어 있음.
○ '93年度 세미나實施計劃에 대하여	○ '93年度 세미나實施計劃은 '93年初 運營委員會 會議에서 決定計劃임.
○ 議會機關運營 公的經費 1,560萬원의 內譯 및 議員議政活動費의 使用方法에 대하여	○ 議會機關運營 公的經費는 議長團 및 常任委員長團이 議會를 代表해 各種 行事 參席, 住民意見收斂等 機關長으로서의 役割 遂行에 必要한 豫算이며 議員議政活動費는 議員 1人當 168萬원으로 地域區 懇談會, 議政報告會等에 使用할 수 있음.

【討論要旨】

- 議會事務局의 豫算中 議員議政活動 支援經費는 그 用度와 節次等を 充分히 弘報하여 未執行되는 事例가 없도록 措置
- '93年度 豫算의 執行은 細部的인 運營計劃을 樹立하여 全額 執行함으로서 議政活動支援에 充分히 活用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議會事務局業務報告

第16회 定期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 會議에서 議會事務局 姜成煥 議政係長으로부터 1992年度 議會事務局에 대한 主要業務 推進實績과 豫算執行事項報告를 聽取한 後 質問答辯이 있었으며 業務報告 및 主要 質問答辯,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1) 業務報告 要旨

- 臨時會議는 年 8회 30日을 運營하였으며, 議會運營委員會와 總務委員會는 各 年 5회 7日, 都市建設委員會는 年 4회 5日을 運營하였음.
- 豫算決算委員會는 2회에 걸쳐 追更豫算案을 審議하였으며, 1회에 39億 9,813萬원, 2회에 28億 900萬원으로 總計 68億 700萬원 規模의 追更豫算案을 다루었으며, 條例審查特別委員會에서는 4회 4日間 3件의 議案을 發議, 提出하였고 決算檢查委員會는 5月中에 24日間 '91年度 總 歲入 558億 3,900萬원, 歲出 421億 2,500萬원의 歲入歲出決算檢查를 實施하였음.
- 議案處理는 總 53件이 提出되어 可決 38件, 否決 2件으로 40件이 處理되었고 未處理 13件은 今回 定期會에서 上程處理 豫定이고, 請願은 4件, 陳情書는 13件을 接受處理하였음.
- 豫算執行 現況은 議會運營 總豫算이 8億 190萬 1千원이며 그 中 '92年 11月 30日 現在 5億 645萬 6千원을 執行하였으며 豫算科目別로는 議政活動費 1億 6千 40萬원 中 9千 445萬 7千원 執行, 區議會運營費 9千 508萬 3千원 中 3千 937萬 5千원 執行, 事務局運營費 5億 4千 641萬 8千원 中 3億 7千 262萬 4千원을 執行하였음.

○ '92年度 議會 主要活動으로는 '92年 2月 13日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區議員과 管内機關長의 新年交禮會를 開催하였고, '92年 2月 15日에는 傳統文化的 繼承과 住民和合을 위한 연날리기大會에 參與하였으며, '92年 2月 24日~25日까지 全聖章 議員外 4人이 새마을中央研修院에서 實施한 社會指導者 過程을 研修하였음.

'92年 2月 28日에는 大學에 進學한 李鳳洙 議員外 5名の 議員子女에 대한 招請激勵을 實施하였으며, '92年 4月 15日~17日까지 巨濟郡議會와 姉妹結緣을 하여 議會間 理解增進과 議政活動 活性化에 寄與하였고, '92年 4月 27日에는 議會開會 1周年을 紀念하는 祝賀宴을 가졌으며, '92年 5月 9日 日本 스미다區 議員 13名이 本 議會를 訪問하여 招請宴을 가졌음.

'92年 9月 25日에는 청평 양수發電所 施設을 視察하였으며, '92年 10月 15日~16日 兩日間 姉妹結緣地인 巨濟郡議會 議員을 招請하여 親善交流事業을 하였고, '92年 10月 20日~22日까지 뉴설악호텔에서 議員세미나를 開催하였음.

2) 質問答辯 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豫算의 未執行이 많은데 이는 豫算 編成의 不適正에 基困한 것이 아닌지	○ 大修繕費等이 아직 執行되지 못하였으나 今年度에 大部分 執行이 可能的인 豫算임.
○ 特別辦公費와 報償金의 未執行事由와 向後 計劃	○ 現在 定期會가 30日로 進行中이므로 議員의 旅費와 會議에 따른 費用으로 使用豫定이며 向後 送年會 및 終務式 行事 計劃中임.

3) 討論 要旨

○ 豫算編成時 細密한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議員세미나等に 必要的인 豫算을 適切히 執行함으로써 議員의 資質向上과 議會運營에 萬全을 기하여야 함.

總務委員會

概 況

總務委員會는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承認된 監査計劃에 의거 委員會所管 部署에 대한 區 行政事務監査를 常任委員會 構成以後 처음 實施하였으며, 第4次 委員會 會議를 開議하여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1993年度 豫算案,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에 대한 豫備審査를 거쳐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고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993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 1993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서울特別市西大門區象徴物및區民의 날制定案을 審議, 可決하였다.

1. 1992年度行政事務監査

가. 概 要

1992年度 12月 1日 第1次 委員會를 開議하여 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保健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하고 局·室·課長의 인사와 幹部紹介, 所管業務報告를 聽取한 後 提出된 資料와 議政活動中 收斂된 資料를 바탕으로 監査를 實施하였고 12月 3日까지 3日間の 監査結果를 土臺로 是正要求事項과 建議事項을 議決하여 監査結果報告書를 作成,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1992. 12. 21)에 報告하였다.

나. 監査經過

總務委員會의 監査方法은 監査 첫째날과 둘째날에는 委員會會議 形態로 區政現案과 問題點에 대한 質問과 答辯, 現地確認, 未洽한 答辯에 대하여는 關係書類의 提出과 擔當公務員의 解明順으로 3室 2局의 監査를 實施하였으며, 셋째날의

市民局과 保健所 監査는 監査班을 監査委員 2人 1組 5個班으로 構成하고 班別로 擔當課를 指定하여 質問答辯과 現地確認을 實施하고 그 結果를 監査班別로 委員會에 報告하는 方法으로 運營하였다. 3日間の 짧은 日程에도 不拘하고 所管業務 全般에 걸친 監査를 效果的으로 遂行하였으며 監査結果 是正을 要하는 事項과 建議事項 및 現地確認事項은 다음과 같다.

監 査 結 果 報 告 書

1. 監査期間：1992. 12. 1~12. 3(3日間)

2. 監査對象部署：3室, 3局 15個課, 保健所 3個課

室	總 務 局	財 務 局	市 民 局	保 健 所
文化公報室	總 務 課	財 務 課	社 會 福 祉 課	保 健 行 政 課
	企 劃 豫 算 課	稅 務 1 課	家 庭 福 祉 課	
監 査 室	國 民 運 動 支 援 課	稅 務 2 課	衛 生 課	保 健 指 導 課
	生 活 體 育 課	土 地 管 理 課	產 業 課	
市 民 奉 仕 室	民 防 衛 課		環 境 課	醫 藥 課
			清 掃 課	

3. 監査場所：西大門區廳 企劃狀況室(3層)

4. 部署別 重點監査事項

部 署 別	監 査 事 項	備 考
總 務 課	○ 防犯員의 技能職 轉職關係 및 技能職 過不足關係 ○ 公明選舉를 위한 統・班長 敎育關係 ○ 區民會館 竣工에 따른 豫算 및 工程關係 ○ 小規模 便益事業에 따른 豫算支援事項 및 豫算執行關係 ○ 功績審査委員會 審議關係	

部 署 別	監 查 事 項	備 考
企 劃 豫 算 課	○ '92年度 豫備費 執行 內譯中 延禧靑少年 讀書室에 補修費 및 設計費를 使用한 關係 ○ '92年度現在 계류중인 訴訟, 行政審判關係 ○ 鞍山展望臺의 事業費 增額關係 ○ 鞍山獎學會 募金額과 管理關係	
國民運動支援課	○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活動實績 및 弘報關係 ○ 새마을金庫 管理實態 및 指導監督關係 ○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會員加入資格關係 및 婦女會員에 대한 士氣振作關係 ○ 새마을所得支援金 洞別 支援關係 및 融資金 年度別 回收實績關係	
生 活 體 育 課	○ 生活體育同好人 團體에 대한 支援金 支援關係 ○ 洞別 體育大會時 洞事務所에 豫算支援 및 執行關係 ○ 管内 약수터 水質檢査 및 事後管理關係	
民 防 衛 課	○ 民防衛教育 不參者에 대한 事後處理關係 ○ 民防衛 教育時 特定人들이 民防衛 教育을 받지 않는 關係 ○ 民防衛 統隊長中 高齡者 交替關係 ○ 民防衛施設物 管理實態 關係	
文 化 公 報 室	○ 管内 有線放送 許可 登錄業體現況과 모니터실 補強關係 ○ 新村文化祝祭와 유사한 다른地域의 文化祝祭 計劃關係 ○ 有線放送의 視聽料 關係 ○ 統・班長에게 서울新聞 無償 配付에 따른 配達謝禮費 徵收關係	

部 署 別	監 査 事 項	備 考
監 査 室	○ '92年度 公務員 非違關係 處理關係 ○ 洞事務所 勤務狀態 불시點檢計劃 關係 ○ 裏面道路 駐車違反 團束關係	
市 民 奉 仕 室	○ 洞事務所의 民願窓口 親切奉仕關係 ○ 市民奉仕室을 除外한 各・室課 民願親切奉仕關係 ○ 電話申請 民願書類 發給關係 및 찾아가지 않는 民願書類 處理關係	
財 務 課	○ 無主不動産所有權 權利保存 推進關係 및 未登記 件에 대한 事後處理關係 ○ 國・公有財産 占有現況 및 公簿管理關係 ○ '92年度 主要工事 事業費 執行內譯關係 ○ 區金庫 預金口座 및 一般定期預金 內譯關係	
土 地 管 理 課	○ 不動産仲介人 行政措置 및 指導團束關係 ○ 地價上昇으로 인한 税金追徵關係 ○ 地價決定關係 ○ 大峴洞 梨大앞 地價算定에 있어 住居地域이 商業 地域보다 높게 策定된 關係	
稅 務 1 課	○ 滯納地方稅의 整理方案關係 ○ '92年度 再開發 施行地域 取得稅, 登錄稅徵收關係	
稅 務 2 課	○ 税金滯納者에 대한 督促狀 發給關係	
社 會 福 祉 課	○ 行旅死亡者 處理結果 關係 ○ 報勳團體運營 支援內譯關係 ○ 職業案内所 業務指導 監督關係 ○ '92年度 就勞事業關係	
家 庭 福 祉 課	○ 福祉施設關聯 各種 工事關係 ○ 市民알뜰장 運營關係 및 改善方案 關係	

部 署 別	監 查 事 項	備 考
	○ 北加佐2洞 마을 1大房 運營實態關係 ○ 青少年施設 運營 및 擴充 推進關係 ○ 禮式場 및 葬儀業所 團束關係	
衛 生 課	○ 類廢業所, 嫌惡食品 團束實績關係 ○ 食品衛生係 全般的 業務處理關係 ○ 行政處分業所 事後管理 및 團束活動費 使用關係	
產 業 課	○ 市場施設 消防道路關係 ○ 農產物直販場 洞別 運營實績關係 ○ 物價 모니터要員 運營實態 ○ 消費者 保護센터 住民利用 實績關係 ○ 注油所許可 關係 ○ 都市가스 事業基金 融資實績關係	
環 境 課	○ 西大門區 公害對策과 廢棄物 處理計劃 關係 ○ 廢水 排出業所 運營管理實態와 現場確認	
清 掃 課	○ 北加佐1洞 中間集荷場 建設現場 實態點檢 ○ 車輛整備事業소의 故障車輛 修理關係 ○ 쓰레기 代行業所 契約關係 ○ 化粧室新築時 정화조 下水道 直結與否關係 ○ 신성정화(주) 現場確認 및 糞尿收去車輛 容量 標示關係	
保 健 行 政 課	○ 에이즈患者의 管理狀態 및 豫防關係 ○ 衛生業所 從事者에 대한 保健證發給關係	
保 健 指 導 課	○ 低所得 住民에 대한 診療推進關係 ○ 結核患者 管理 및 治療關係 ○ 母子保健關係 ○ 家族計劃 事業中 日時避妊實績 및 弘報關係	
醫 藥 課	○ 無免許 醫療行爲者에 대한 團束關係 ○ 醫藥業所 監視活動關係	

5.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總 務 課	1. 小規模便益事業에 있어 ○ 事業資金에 대한 執行과 精算處理가 不明確한 마 正確性を 기하여야 할 것임. 2. 文化會館 建立에 있어 ○ 當初에 計劃된 設計를 變更하여 每年 追加豫算 이 策定되는데 事業費策定에 正確性を 기하여 야 할 것임. 3. 功績審査委員會 審議內容中 區廳長表彰에 있어 ○ 區廳·室課는 對象者 36名중 24名(72%) 表彰, 洞은 對象者 105名중 48名(45%)를 表彰하였 고 그중 模範公務員 表彰은 對象者 5名 全員 을 表彰하였는데, 형평에 맞는 對象者를 嚴選 하여야 할 것임.	
企 劃 豫 算 課	1. '92年度 工事中 過多 豫算 策定 및 豫備費 執行 內譯에 있어 ○ 延禧靑少年독서실 보수에 따른 設計費를 豫備 費로 使用하였으며 ○ 성산로 步道工事外 2個所의 豫算을 過多 編成 한 事例가 있어 豫算編成에 正確性を 기하여야 할것임. 2. '92年度 11月現在 계류중인 訴訟, 行政審判에 있 어 ○ 現在계류중인 訴訟, 行政審判은 44件으로 아직 도 行政이 權威的인 姿勢로 住民의 權益保障에 消極的인마 是正되어야 할것임.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國民運動支援課	1.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運營實績 弘報低調 2. 새마을所得事業支援金 對象者選定 疏忽 및 年度別 回收金 實績低調	
生 活 體 育 課	1. 體育同好人 團體支援金 未執行 ○ '92年度 追更時 3,200萬원의 豫算을 體育同好人 支援金으로 豫算反映하였으나 支援實績이 없는바 豫算編成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것임.	
文 化 公 報 室	1. 서울新聞 統班長 無料 配付에 있어 ○ 統班長에게 서울新聞이 配達되지도 않았는데 購讀料를 支給하는 事例가 있고, 配達된 新聞에 대하여는 配達謝禮費를 받아가는 事例가 있어 是正措置되어야 할 것임.	
財 務 課	1. 無主不動產 國・公有財産 管理에 있어 ○ 未登記된 無主不動產에 대하여 分筆(면적의 차이) 및 土地管理臺帳을 철저히 調査하여 權利保存에 萬全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 國・公有財産 2,223筆地중 1,820筆地の 無主不動產을 제외한 殘與筆地에 대하여 早速한 시일내에 保存登記를 하여야 할 것임. 2. 區 預金잔고 및 一般定期預金 內譯중 一般預金을 定期預金으로 轉換可能部分은 區 收入増大를 위하여 적절한 計座를 選定하여야 할것임.	
稅 務 1 課	1. '92年度 再開發施行地域 登録稅徵收에 있어 ○ 弘濟11地域 現代아파트 634世帶의 登録稅를 市指針에 의거 30/1,000을 적용 納付고지하였으나, 法院行政處의 問議回信에 의거 8/1,000을 納付하였음. - 올바른 稅法적용으로 住民의 被害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家 庭 福 祉 課	1. 福祉施設建立에 있어 ○ '92年度 老人亭 및 어린이집 福祉施設을 5개소를 짓고 있는데 겨울철工事로 不實工事が 우려되므로 年初에 事業을 確定 推進하여야 할것임. 2. 禮式場의 管理運營實態 指導團束 ○ 禮式場의 運營實態가 規定된 料금이와의 料金を 強要하는 事例가 있으므로 根本對策 및 指導監督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임.	
産 業 課	1. 都市가스事業基金融資 ○ 事業基金 10億원중 貸出金이 4,000萬원으로 實績이 低調한 바 住民弘報 및 시공자敎育에 철저를 기하고 融資 貸付 規定에 의하여 貸付토록하여 住民福祉에 萬全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物價 모니터要員 活動實績과 消費者保護센터 運營實績低調	
清 掃 課	1. 신성정화(주) 糞尿車 요금계량기 點檢 ○ 신성정화(주) 糞尿收去車輛의 容量標示 계기판의 눈금이 不確實하고 料金虛偽標示로 住民에게 被害를 주고있으므로 代行業所에 대한 指導監督에 徹底를 기하여야 할것임.	
保 健 指 導 課	1. 家族計劃 事業中 ○ 一般避妊에 대하여 弘報를 철저히 하여야 할것임.	
醫 藥 課	1. 保健證 發給에 있어 ○ 保健證發給을 원하는 모든 衛生業所從事員에게 査 査, 에이즈檢査를 實施하여 에이즈 擴散 防止에 徹底를 기하여야 할것임.	

6. 建議事項

部 署 別	建 議 事 項	備 考
文 化 公 報 室	○ 서울新聞購讀料 豫算을 地域新聞에도 均等하게 割愛要望	
市 民 奉 仕 室	○ 無知로 인하여 호적과태료를 무는 住民이 없도록 班會報등을 통한 弘報질저와 市民奉仕室의 親切奉仕 姿勢를 區廳 各課 및 洞事務所까지 擴大要望	
總 務 課	○ 60歲이상 統長을 젊고 有能한 사람으로 交替要望	
國民運動支援課	○ 새마을金庫 管理實態 및 指導監督徹底要望	
生 活 體 育 課	○ 洞體育大會時 區 支援金 支給에 있어 事前에 豫算編成된 金額 全額을 各洞에 내려보내 行事を 效率的으로 할 수 있도록 要望	
家 庭 福 祉 課	○ 市民알뜰장 分期別, 季節別開催要望 ○ 女性團體聯合會 情報交換 및 事業擴大 交流要望	
產 業 課	○ 都·農間 姉妹結緣事業을 擴大하여 住民에게 싼 값의 農產物 供給要望	

【現地確認事項】

確認日時	確 認 場 所	確認委員	確 認 事 項
'92. 12. 1	北阿峴1洞事務所 弘恩3洞事務所	鄭 赫 柱 全 聖 章 金 永 一	○ 洞 小規模地域便益事業推 進 實態 點檢
'92. 12. 3	北加佐2洞 工夫房	全 聖 章 姜 碩 宗	○ 工夫房 運營實態 點檢
	延世牛乳外 5個所	金 永 一 趙 敏 行	○ 廢水處理施設業所 點檢
	쓰레기積換場施設 신성淨化槽 車庫地	鄭 日 出 朴 老 鉉	○ 쓰레기積換場施設 運營實 態 糞尿收去車輛 點檢

2.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10月 30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1992. 12. 8)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事務分掌規則 改正에 따른 職制改編에 의거 產業課에 가스係가 新設됨으로써 그동안 연료계에서 管理하던 都市가스事業基金管理가 가스係로 移管됨에 따라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 關聯 規定을 整備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① 基金管理公務員 中 基金出納公務員의 變更(案 第5條)

(現行) 基金出納公務員: 연료係長

(改正) 基金出納公務員: 가스係長

② 條文變更: 第9條 第1項中 “第5條”를 “第6條”로 變更

다) 改正根據

○ 關聯法規: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事務分掌規則 第18條

2) 審査結果

產業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聽取後 質問答辯을 實施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 및 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職制가 改編되어 가스계가 設置된 後 條例改正이 늦어진 理由	○ 今年 6월에 職制가 改正되었으나 가스係長이 10월에 任命되어 實務 推進이 늦어졌음.
○ 가스계의 新設로 가스業者의 橫暴團 束이 效率的으로 遂行될 수 있는지	○ 行政指導를 하고 있으나 明確한 規 定이 없어 市에서 立法化 推進中임.
○ 가스工事로 많은 民願이 發生하고 있으므로 向後 工事時는 地域議員과 事前 協議할 用意는	○ 每年 初 各 洞別로 工事說明會를 하 고 있으며 向後 事前에 通報토록 할 것임.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2年 10月 3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1992. 12. 8)에 上程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公務員으로 任用되기 以前의 自律防犯 經歷의 不認定으로 인한 不合理함을 改正하기 위한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 第3條 新設

－雇傭職 公務員인 防犯員에게 支給하는 防犯手當의 支給額은 月 40,000원
으로 한다.

－公務員으로 任用되기 以前의 自律防犯 經歷 年數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金額을 加算 支給할 수 있다.

다) 改正根據

- 關聯法規：地方公務員 報酬規程「별표 9」第20號

2) 審査 結果

總務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聽取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하고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11名 中 贊成 6名, 審査保留 4名, 棄權 1名으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防犯員들의 給與水準 向上을 通한 士氣振作을 위하여 우리區만 引上하는 것인지	○ 大統領令의 改正에 따라 全國적으로 統一되게 引上하는 것임.
○ 防犯員의 月給與 水準은	○ 平均 40~60萬원 程度 支給되고 있음.

【討論要旨】

- 公務員으로 任用되기 以前 自律防犯員으로 勤務한 經歷을 不認定한 것은 不合理한 事項으로 이를 認定하여 給與引上을 기하는 것이 妥當한 措置임.
- 條例案의 隨時 改正은 行政의 一貫性을 喪失하는 것으로 再檢討를 위하여 審査를 留保하여야 함.

나. 承認案

◆ 1993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10月 31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1992. 12.

8)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77條(共有財産의 管理計劃) 및 區有財産 管理條例 第36條, 地方自治法 第58條 1項과 地方財政法 第82條 및 同法施行令 第85條, 第8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1993年度 우리區 區有財産의 處分 및 無償貸付에 관한 管理計劃의 承認을 위함.

나) 主要骨子

○ 區有財産 賣却

總 財 產 現 況		賣 却 對 象		賣却對象 財産의 個別地價 總額(千圓)
筆地數	面積(m ²)	筆地數	面積(m ²)	
674	40,025.04	9	337.8中325.3	297,663.5

○ 區有財産(行政財産) 無償貸付

物件地	面積(m ²)	物件種類	無償貸付 申 請 人	物件名稱	貸付期間	備 考
延禧洞 86-12	411.2	土 地	西 大 門 警察署長	연 궁 派 出 所	2年	繼續貸付

2) 審査 結果

財務課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聽取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하고 表決한 結果

- 1993年度 區有財産管理計劃中 賣却財産目錄 1號를 除外한 7件의 賣却是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
- 賣却財産目錄 1號는 在席委員 10名中 保留 4名, 原案承認 3名으로 否決
- 연궁派出所의 區有財産 無償貸付期間을 1年으로 하여 承認하자는 鄭日出委員의 修正案을 在席委員 10名中 8名の 贊成으로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와 修正案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大峴洞 31-4外 垡地는 第13回 臨時會議時 否決된 事項인데 다시 提出한 事由	○ 區有財産 買收申請이 提出된 境遇 關聯規定에 合當할 時 制限할 根據가 없음.
○ 연궁派出所 敷地의 無償貸付는 區財産의 損害로 보아 이를 賣却할 수 있는 方案의 檢討는	○ 向後 檢討할 豫定임.

【討論要旨】

- 연궁派出所 敷地의 無償貸付는 賣却 可能與否를 檢討하기 위하여 審査 保留
- 無償貸付期間을 1年으로 修正하여 承認
- 賣却財産目錄 1號(大峴洞 31-4外 1)를 除外한 區有財産管理計劃은 原案承認

【1993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에대한修正案要旨】

- 1993年度 區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中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 1. 1993年度 區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中 賣却財産目錄(書式 6-4)中 一連番號 1의 大峴洞 31-4外 1筆地의 土地는 賣却에서 이를 除外한다.
- 2. 1993年度 區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中 無償貸付 使用許可 財産目錄(書式 6-6)의 一連番號 1 연궁派出所 敷地의 貸付期間을 1年으로 한다.

◆ 1993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11月 1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1992. 12. 8)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날로 發展하는 行政事務의 電算化 및 事務自動化와 急増하는 行政需要에 迅速히 對處하고 對民行政의 서비스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우리區에서 '93年度에 必要한 定數物品을 購入하여 民願處理에 徹底를 기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新規取得: 打字機等 19種 279件 443,392,000원
- 對替取得: 複寫機等 5種 16件 369,417,000원

2) 審査 結果

財務課長の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聽取後 質問答辯과 討論을 實施한 바 1993年度 豫算에 編成되지 않은 定數物品의 取得은 不承認하자는 金源珠議員의 修正案이 提出되어 表決한 結果 在席委員 10名中 6名の 贊成으로 修正案을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와 修正案要旨는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93年度 歲出豫算에 編成된 品目の 取得承認만 받고 編成되지 않은 品目は 다음에 承認받는 것이 合理的인 方案이 아닌지	○ 各 室課에서 만드시 必要하여 提出된 事項임.
○ 各 課別 컴퓨터現況과 컴퓨터 使用教育 現況은	○ 現況은 書面提出할 것이며 教育은 企劃豫算課 電算係에서 實施中임.
○ 總務課 車輛中에 耐久年限이 經過되지 않은 車輛을 對替取得코자 하는 事由	○ '93年度에 耐久年限이 到來함으로 對替取得코자 함.

【討論要旨】

- '93年度 歲出豫算에 編成되지 않은 定數物品의 取得承認은 다음 追更에 豫算措置하여 承認하는 것이 妥當함.

【1993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에대한修正案要旨】

○ 1993年度 定數物品取得承認案中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993年度 定數物品取得承認案中 1993年度 歲出豫算에 編成되지 않은 定數物
品の 取得은 이를 不承認한다.

1993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內譯

1. 總括 內譯

(單位：千圓)

區 分	承認要請			不 承 認			不承認 理由
	品目	數量	金額	品目	數量	金額	
新規取得	19	279	443,392	7	45	46,885	'93年度 歲出豫算 未編成(追更時 承認 對象)

2. 品目 및 部署別 取得 不承認內譯

區分 品目別	部署名	不 承 認		備 考
		數 量	金 額	
打字機	市 民 奉 仕 室	1	730	
複 寫 機	〃	1	5,280	
컴 퓨 터	地 籍 課	2	1,800	
프 린 터	區 議 會	1	3,245	
	地 籍 課	2	1,100	
文 書 細 斷 機	總 務 課	22	17,380	
	企 劃	13	13,000	
	豫 算 課			
冷 房 機	保 健 所	1	2,000	
	企 劃	1	1,350	
	豫 算 課			
모 델	地 籍 課	1	1,000	

다. 豫算案

◆ 1991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11月 1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總務委員會所管 事項에 대하여 審査同附된 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1992. 12. 8)에 一括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 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이 案은 地方自治法 第120條와 地方財政法施行令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區 議會의 承認을 얻기 위함.

나) 主要骨子

【一般會計決算規模】

① 區 全體 歲入決算

(單位：원)

豫 算 額	收 納 額		
	計	地 方 稅	稅外收入
50,632,564,000	54,401,139,787	8,582,111,223	17,459,117,614

		歲 入 區 分		財 政 自立度
地方交付稅	補 助 金	自體收入	依存收入	
24,844,239,000	3,515,671,950	26,041,228,837	28,359,910,950	47.8%

② 總務委員會所管 歲出豫算

(單位：千원)

豫算現額(35,745,614)		支 出 額	事故移越額	豫算殘額	備 考
豫 算 額	前年度事故移越				
35,521,707	223,907	29,219,661	1,566,299	6,525,953	

【特別會計決算規模】

①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單位：원)

豫算現額	支出原因行爲額	支 出 額	不 用 額	豫算殘額
959,995,000	873,050,780	873,050,780	79,944,220	79,944,220

② 새마을所得支援事業特別會計

(單位：원)

豫算現額	支出原因行爲額	支 出 額	不 用 額	豫算殘額
397,914,000	303,000,000	303,000,000	94,914,000	94,914,000

2) 審查 結果

財務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決算檢査委員들이 徹底한 決算檢査를 遂行한 것으로 思料되어 質問答辯 및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

1) 提 案

1992年 11月 2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自治區 歲入歲出豫算中 總務委員會所管 豫算案을 1992年 12月 8日 第16回 定期會 第4次 總務委員會(1992. 12. 8)에 上程하였으며 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豫算案의 規模】

○ 一般會計

① 區 全體 歲入豫算

(單位：千원)

總歲入豫算額	地 方 稅	經常的稅外收入	臨時的稅外收入	國庫補助金
62,957,681	12,316,018	6,091,122	11,013,749	753,208

市費補助金	財政補助金	調整交付金	'92年度最終豫算	增 減
930,584	0	31,853,000	65,629,962	△2,672,281

② 總務委員會所管 歲出豫算

總歲出豫算	企劃行政費	內部行政費	財務行政費	福祉事業費	保健衛生費
46,394,503	15,018,895	14,312,619	1,204,303	4,418,792	1,998,907

環境綠地費	產業經濟費	民防衛費	豫 備 費	'92歲出豫算	增 減
8,615,998	30,838	131,664	662,487	48,354,536	△1,960,033

○ 特別會計

① 새마을所得支援事業特別會計

(單位：千圓)

'93年度 歲入				歲 出	前年度對比	
計	前年移越	融資金回收	雜收入	融資金	豫算額	%
134,685	65,150	67,035	2,500	134,685	△102,504	43.3

②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單位：千圓)

'93年度 歲入			歲 出	前年度對比	
計	事業外收入	補 助 金	醫療保護運營	豫 算 額	%
1,045,257	12,873	1,032,384	1,045,257	△ 78,932	7

2) 審查 結果

企劃豫算課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 및 計數調整을 거쳐 表決한 結果 滿場 一致 議決로 總務委員會 所管 豫算案中 歲出豫算 1億 1,684萬圓을 削減하여 豫備費로 增額하기로 區廳長提出 原案을 修正議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 및 修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서울新聞 購讀豫算의 編成은 반드시 必要한 豫算인지	○ 豫算編成指針에 住民用 新聞購讀料가 있으며 全國的인 統一을 위하여 計上되어야 할 事項임.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新村文化祝祭 支援豫算 3,000萬원을 22個洞에 配定할 用意는 없는지	○ 新村地域 5個 大學校 密集地域의 淨化와 새로운 文化 創出을 위하여 必要한 豫算임.
○ 監査室, 國民運動支援課의 새秩序, 새生活實踐 事業推進費의 用度는	○ 無秩序, 頽廢, 不法防止等에 必要한 經費임.

【討論要旨】

- 洞事務所의 無人警備電子機器運營費(42,240千원), 금화어린이집 再建立施設費(70,000千원)에 대한 審査結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深度있는 檢討要望

【修正內容】

- 歲出調整
 - └ 削減：116,840千원
 - └ 增額：116,840千원(豫備費로 增額)
- 修正要旨

削 減	增 額
○ 住民用 新聞購讀料 66,840千원 ○ 新村文化祝祭支援金 ○ 새秩序, 새生活實踐運動事務推進費 (監査室) 10,000千원 ○ 새秩序, 새生活實踐運動業務推進費 (國民運動支援課) 10,000千원	○ 豫備費 116,840千원
計 116,840千원	計 116,840千원

라. 其他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象徵物및區民의날制定(案)

1) 提 案

이 制定案은 1992年 11月 20日 宋榮于 議員外 13人이 發議하여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 (1992. 12. 8)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區民의 和合과 愛鄉心의 鼓吹를 위하여 우리區의 特性에 맞는 象徵物을 制定, 普及함으로써 愛鄉心과 主人意識을 涵養,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 運動에 全 區民이 同參토록 하고, 年中 하루를 區民의 날로 定하여 行事を 開催함으로써 區民의 鄉土愛를 鼓吹하여 西大門區의 發展에 寄與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區象徵物 - 4種

- └ 區 木 : 느티나무
- └ 區 花 : 장미
- └ 區 鳥 : 집비둘기
- └ 區 色 : 초록

○ 區民의 날 : 5月 9日

2) 審査 結果

區民의 날 行事 날짜를 定하는 것은 좀더 檢討가 必要하므로 다음 會期에 充分한 時間을 갖고 審査하자는 滿場一致 議決로 審査保留하였다.

都市建設委員會

概 況

都市建設委員會는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承認된 監査計劃에 의거 都市建設委員會 所管 部署에 대한 區 行政事務監査를 常任委員會 構成以後 처음 實施하였으며, 第4次 委員會 會議를 開議하여 本會議에서 審査回附된 1993年度 豫算案, 1991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한 豫備審査를 거쳐 豫算 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였다.

1.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가. 概 要

1992年度 12月 1日 第1次 委員會를 開議하여 都市整備局, 建設局에 대한 行政 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하고 局·課長의 인사와 幹部紹介, 所管業務報告를 聽取한 後 提出된 資料와 議政活動中 收斂된 資料를 바탕으로 監査를 實施하였고 12月 3일까지 3日間の 監査結果를 土臺로 是正要求事項과 建議事項을 議決하여 監査 結果報告書를 作成,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1992. 12. 21)에 報告하였다.

나. 監査經過

都市建設委員會의 監査方法은 委員會 會議 形態로 區政現案과 問題點에 대한 質問과 答辯을 실시하고 答辯이 未洽한 事項에 대하여는 關係書類의 提出과 現地確認 등을 並行함으로써 深度있는 監査活動을 展開하여 3日間の 監査日程을 効果的으로 遂行하였다. 審査結果 是正을 要하는 事項과 建議事項 및 現地確認事項은 다음과 같다.

監 查 結 果 報 告 書

1. 監查期間：1992. 12. 1～12. 3(3日間)

2. 監查對象部署

都 市 整 備 局	建 設 局
住宅課, 都市整備課, 地域交通課, 地籍課, 建築課	建設管理課, 土木課, 下水課, 公園綠地課

3. 監查場所：西大門區廳 地下狀況室

4. 監查日程

'92. 12. 1(火)	'92. 12. 2(水)	'92. 12. 3(木)
住宅課, 都市整備課, 地籍課	地域交通課, 建築課, 建設管理課	土木課, 下水課, 公園綠地課

5. 部署別 重点監查事項

部 署 別	監 查 內 容	備 考
住 宅 課	○ 大峴1地區 再開發推進에 관한 事項 ○ 不法建築物의 團束 및 陽性化 方案 ○ 住宅課 所管 許可, 立地 및 景觀審議, 集團民願 등에 對한 措置內譯 ○ 漢陽住宅의 立地審議 推進經過 ○ 再開發管理處分에 다른 問題點과 貰入者問題	
都 市 整 備 課	○ 都市整備課 所管豫算 執行內譯 ○ 管內 風致地區, 公園地區, 高度制限地區 解除에 관한 事項 ○ 突出廣告物許可 및 團束에 관한 事項 ○ 廣告物許可에 따른 民願 및 過怠料 賦課徵收 ○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 用役 및 推進事項과 議	

部 署 別	監 査 內 容	備 考
	會의 意見 反映에 對한 事項 ○ 무악제의 巖壁工事 施行에 關한 事項	
地 籍 課	○ 地籍測量에서 發生하는 各種民願의 措置 ○ 地籍公社에 對한 行政指導 및 監督 (議員質問에 對하여 書面答辯으로 가름)	
地 域 交 通 課	○ 路上駐車場의 管理委託契約에 따른 問題點 ○ 노선버스의 道路上 無斷駐車와 道路施設破損實態 ○ 駐停車違反 車輛團束의 問題點 ○ 뒷골목 夜間駐車에 따른 消防道路 確保對策 ○ 마을버스運行에 따른 實態 ○ 無許可 整備業所의 指導團束 ○ 過怠料 徵收實績 및 滯納徵收方案 ○ '92年度 歲出豫算의 執行 및 事業推進 成果	
建 築 課	○ 세림看護病院 未竣工 入住實態 ○ 建築工事場 無斷道路占用 및 超過占用에 對한 對策 ○ 長期 未竣工建物에 對한 行政措置 및 陽性化方案 ○ 指定監理土의 監理잘못에 對한 行政措置內譯 ○ 建築許可에 따른 複合民願處理의 問題點	
建 設 管 理 課	○ 國・公有地占用料 早期徵收 및 完徵方案 ○ 道路上 積置物 整備을 爲한 效果的인 對策 ○ 市帳馬車 團束方案 改善 ○ 土木事業等에 對한 土地補償의 問題點 ○ 無斷道路占用料 缺損處分에 對한 對策 ○ 公共道路로 利用하는 私有財産에 對한 補償方案 ○ 常習道路占用者에 對한 行政措置 強化方案	

部 署 別	監 査 內 容	備 考
	○ 再開發區域內 國・公有地 占用使用料 徵收方法改善	
土 木 課	○ 道路掘鑿 및 復舊工事に 對한 問題點 ○ 消防道路開設에 따른 補償處理 ○ 越冬對策의 一還인 除雪車輛의 管理實態 ○ 道路開設에 따른 補償協議 過程과 問題點 ○ 保安燈 修理에 對한 實態 및 問題點 改善 ○ 重裝備 長期 無斷駐車로 인한 道路施設物 破損 實態와 補修責任 ○ 道路工事의 不實 施工에 따른 對策(現場確認)	
下 水 課	○ 弘濟川의 覆蓋活用 方案 ○ 下水道工事 關聯 豫算執行內譯과 主要 推進事業의 進行狀況 ○ 下水道關聯 民願實態와 措置現況 ○ 下水道浚渫工事의 都給工事 實態와 浚渫實施에 따른 問題點 ○ 分流下水管 및 河川管理實態(現場確認) ○ 各種 工事場의 土沙流出로 下水管埋立等 問題點 ○ 下水道 工事時 連結部分 施工에 對한 問題點	
公園綠地課	○ 鞍山公園의 造林狀態와 樹種選擇의 問題點(現場確認) ○ 어린이公園 未設置洞에 對한 對策 ○ 切開地崩壞時 被害에 對한 補償對策과 訴訟繫留中인 業務 檢討 ○ 再開發 및 住宅組合施工 아파트 建築時 綠地毀損 實態 및 行政措置事項 ○ 公園地域에 對한 公園造成事業 計劃	

6.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住 宅 課	1. 違法建築 移行強制金 徵收實績 未洽 ○ 違法建築 行爲者에 대한 移行強制金 豫告通知 29件 中 2件만 賦課徵收하여 徵收實績이 未洽한 바 早期 徵收 方案 講究 2. 職員의 長期 補職人事 ○ 撤去員 박중훈 外 2名の 職員은 補職人事가 長期化(5年以上)되어 있으며 無許可建物團束에 있어 住民과의 摩擦의 素地가 있음. 3. 審査對象 貫入者에 대한 補償費返還時 利子計上 ○ 大峴1地區 再開發事業에 따른 審査對象 貫入者에 대하여 房 1칸 入住權賦與者로 決定通報하면서 既 支給한 補償費에 利子까지 計算하여 返還토록한 것은 不當함. 4. 同一世帶를 入住權 賦與 ○ 大峴1地區 再開發事業에 따른 審査對象中 監查資料 P.83 10번 서상대는 組合員 서택구의 子로서 같은 建物에 居住하였는데 貫入者로 審査決定하여 房 1칸 入住權을 賦與한 것은 不當함. 5. 再開發地域의 土地平價額 相異 ○ 大峴1地區 再開發地域의 境遇 供覽實施期間中 土地平價額보다 管理處分時의 土地平價額이 높게 策定되어 있음. 6. 有許可建物이 無許可建物臺帳에 登載 ○ 大峴1地區 再開發地域內 有許可建物이 無許可建物로 登載되어 있음.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都 市 整 備 課	1. 屋外廣告物 過怠料 賦課에 따른 徵收實績 未洽 및 團束 不振 ○ 區財政擴充을 위해 過怠料徵收에 萬全을 기 하여야하나 屋外廣告物等 管理法 第10條 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違反으로 16件 8,000천 원의 賦課中 6件 3,000천원을 徵收하였으며 屋外廣告物 團束도 2回만을 實施하였음. 2. 固定廣告物 團束實績 不振 ○ 不法廣告物 中 流動廣告物의 團束은 잘하고 있으나 固定廣告物에 대한 團束은 매우 不振 하며 區財政擴充의 一還으로도 過怠料 賦課 等の 措置가 必要함. — 整備對象 2,846件 中 243件 團束(8.5%) 3. '92年度 豫算執行 實績 未洽 ○ '92年度 豫算額 109,791천원 中 29,500천원을 執行하였고 需用費 및 手數料, 賃借料 및 補償金 等 62,503천원은 未執行된 바 豫算編成의 不適正에 基因 — 適正한 豫算編成으로 效率的인 執行 必要 4. 廣告物許可臺帳 記錄管理 疏忽 ○ 各種 廣告物 許可에 따른 臺帳의 記錄管理에 萬全을 기하여야 하나 記載漏落 및 管理者의 決裁漏落 事項이 있음. 5. 各種 委員會의 會議錄 記錄管理 不實 ○ 廣告物審議委員會 및 都市計劃委員會의 會議時 會議事項을 記錄하여 管理하여야 하나 會議에 따른 手當等を 支給하면서도 會議錄 未作成等 記錄管理가 不實함.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地 域 交 通 課	1. '92年度 豫算中 需用費 및 手數料 過多 策定 ○ 모든 豫算은 徹底한 執行計劃 樹立으로 適正 編成하여 運用하여야 하나 需用費 및 手數料 是 60,948천원의 豫算을 編成하여 38,123천원 을 執行함으로써 豫算過多 策定에 基困하였 음.(執行率 62.5%) 2. '92年度 豫算中 情報費(特殊業務活動費) 過多策定 ○ 不法駐停車團束職員 活動費와 不法運行車輛 團束活動費로 策定한 情報費는 豫算額 26, 400천원으로서 18,840천원이 執行되고 7,560 천원이 未執行으로 過多 策定되었음.(執行率 71.3%) 3. 車庫없는 마을버스에 對한 措置 疏忽 ○ 管內 마을버스 11個 業體 中 弘恩 3洞 경노 복지회外 5個 마을버스는 許可時부터 現在까 지 車庫가 없어 路上泊車하고 있으며 특히 加佐開發委員會 마을버스는 車庫가 없는 狀 態에서 '92. 3. 20日字로 許可를 하였음. — 車庫없는 마을버스는 早速한 期日內에 確保 토록 措置 — 加佐開發委員會 마을버스의 許可經緯 및 關 係者 措置事項 4. 시내버스 無斷 駐車行爲 團束 疏忽 ○ 市內버스는 車庫에 駐車토록 하여야 하나 134番 市內버스의 境遇 車庫周邊 人道 및 車 道를 恒時 占有, 駐車場으로 使用하고 있으나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이에 대한 團束이 疏忽하며 車輛通過 및 住民通行에 支障을 주고 交通事故의 原因이 되고 있음. 5. 區廳內 駐車타워 運用 實態 未洽 ○ 區廳內 駐車타워는 來訪區民의 便宜를 위하여 많은 豫算을 들여 設置하였으나 運用 實態가 未洽하여 區民들이 區廳來訪時 駐車空間이 不足함으로써 不便이 많음. －駐車타워의 運用 極大화를 위한 方案 講究 6. 各種 委員會 會議錄 記錄管理 不實 ○ 交通不便申告審議委員會, 交通安全對策委員會 및 시내버스路線調整委員會 會議時 會議事項을 記錄管理하여야 하나 會議에 따른 手當을 支給하면서도 會議錄 未作成等 記錄管理 不實 7. 駐停車團束員 懇談會 會議錄 未作成 ○ 駐停車團束員에 대한 慰勞懇談會를 開催하면서 會議에 따른 懇談會費用 3,300천원이 執行되었으나 會議錄 作成이 되어 있지 않음.	
地 籍 課	1. 地籍測量公社 指導監督 및 不條理 豫防策 未洽 ○ 區民이 地籍測量 申請時 處理期間이 길고 測量職員의 不親切, 測量誤差로 因한 理解 當事者間의 不和發生, 不條理 發生等の 素地에 대한 區의 指導監督 및 不條理 豫防策이 未洽함.(民願解決方案 講究) 2. 給糧費 執行 不適正 ○ 豫算은 適正하게 執行되어야 하나 給糧費의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境遇 豫算額 2,300천원 中 1,950천원을 配定받아 '92. 7月 以後에 1,675천원을 集中的으로 執行하여 豫算執行에 不適正을 招來하였음. 3. 委員會 會議錄 記錄管理 不實 ○ 共有土地分割委員會 會議時 會議事項을 會議錄에 記錄管理하여야 하나 會議錄 未作成등 記錄管理가 不實함.	
建 築 課	1. 建築物 竣工前 事前入住 使用行爲 放置 ○ 弘恩3洞 所在 세림看護病院은 既存 4層을 5層으로 1個層 增築하면서 建築物 竣工 許可도 받지 않은채 5個月 程度 事前入住 使用토록 放置한 後 是正指示에 의하여 原常回復하였는데 事前入住 使用에 따른 告發等 行政措置가 未洽함. 2. 委員會 會議錄 記錄管理 不實 ○ 建築審議委員會 會議開催時 會議事項을 會議錄에 記錄管理하여야 하나 會議錄 未作成等 記錄管理가 不實함.	
建設管理課	1. 歲出豫算 策定の 不適正 ○ 各種 豫算은 適正한 執行計劃을 樹立策定하여 效率的인 執行이 되어야 하나 豫算을 過多 策定함으로써 未執行이 많은바 豫算策定の 不適正에 基因하였음. 2. 委員會 會議錄 記錄管理 不實 ○ 補償審議委員會 會議開催時 會議事項을 會議錄에 記錄管理하여야 하나 會議錄 未作成等 記錄管理가 不實함.	

部 署 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 考
土 木 課	1. 步道整備工事時 境界石의 規格外 施工 默認 ○ 의주로 및 성산로 步道整備工事時 境界石의 높이를 20cm로 施工하여야 하나 15~17cm로 施工하여 3~5cm의 差異가 있으며 豫算의 浪費 및 交通事故의 要因이 되고 있음. 2. 消防道路 開設에 따른 補償金 支給 遲延 ○ 北加佐洞 135-4~144-368號間 消防道路 開設工事に 따른 豫算을 7억9천만원 策定하여 住民에게는 受領通知하고 그 中 2억3백만원만 執行(執行率 26%)함으로써 補償金遲延 및 工事遲延 若起	
公 園 綠 地 課	1. 어린이놀이터施設 不足에 대한 對策 未洽 ○ 管内에는 小公園 및 어린이놀이터 施設이 전혀 없는 洞이 8個所가 있어 어린이들의 休息空間 및 놀이施設이 不足하나 이에 따른 公園用地確保等의 對策이 未洽함. 2. 公園綠地 指定後 公園造成 放置 ○ 大峴洞 56-40號의 1,004坪은 都市計劃上 公園地域으로 指定하였으나 公園造成을 放置함으로써 近隣 住民들이 買入하여 再開發을 推進하고자 努力하고 있음.	

7. 建議事項

部 署 別	建 議 事 項	備 考
各 課 共 通	1. 各 部署 公히 過多한 豫算을 策定하여 承認받아 未執行한 事例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豫算執行	

部 署 別	建 議 事 項	備 考
	基本計劃을 正確히 樹立하여 效率的인 執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條例나 規則의 制定없이 運營되고 있는 各種 委員會는 早速히 條例, 規則의 制定後 運營 要望	
住 宅 課 建 築 課	1. '80年代 初 特定建築物 陽性化 計劃에 따라 既存違法 無許可建物이 相當數 救濟되었으나 事情에 의하여 陽性化되지 못한 建築物도 많으므로 行政的 次元에서 救濟方法 講究 要望	
地 域 交 通 課	1. 不法 駐停車團束 業務는 團束任務를 賦與받은 要員(團束員)에 限하여 服裝, 帽子, 腕章, 身分證을 갖추고 團束토록 要望	

【現地確認事項】

確認日時	確 認 場 所	確認委員	確 認 事 項
'92. 12. 3	○ 의주로 步道工事 現場	丁和鎮 金平洛	○ 步車道 境界石의 規格이 契約書上의 規格과 相異함.
	○ 滄川洞 47 道路 開設 工事 現場	鄭日洙	○ 工事區間中 鋪裝狀態가 침하된 곳 數個所 確認
	○ 弘濟川 全 區間	崔容完 金廷炫	○ 分流下水管 및 家庭下水 管의 連結不良, 破損 發生
	○ 滄川洞事務所 앞 外 1個 下水道	朴正來	○ 指摘事項 없음
	○ 鞍山公園	具滋億 曹甲鉉 郭載滿	○ 公園內에 植栽하는 樹種 選擇時 專門家 諮問 必要

2.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가. 豫算案

◆ 1991年度歲入歲出및豫備費支出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11月 1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都市建設委員會所管 事項에 대하여 審査回附된 案으로 第4次 都市建設委員會(1992. 12. 8)에 一括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第120條 및 第125條와 地方財政法施行令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區議會의 承認을 얻기 위함.

나) 主要骨子

【決算 및 豫備費 規模】

① 歲出決算

(單位：千圓)

豫算現額(15,760,993)			支 出 額	事故移越	豫算殘額
豫 算 額	豫 備 費	前年度事故移越金			
13,422,010	132,000	2,206,983	11,116,195	2,830,733	4,644,798

② 豫備費

(單位：圓)

支出決定額	支出原因行爲額	支 出 額	移 越 額	不 用 額
132,000,000	132,000,000	126,906,070	5,093,930	0

2) 審査 結果

財政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決算檢查委員들이 徹底한 決算檢查를 遂行한 것으로 思料되어 質問答辯 및 討論은 省略하고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

1) 提 案

1992年 11月 24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自治區 歲入歲出豫算案 中 都市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을 1992年 12月 8日 第16回 定期會 第4次 都市建設委員會 會議에 上程하여 豫備審査를 實施하였으며 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豫算案의 規模】

○ 一般會計 歲出豫算

(單位：千원)

計	環境綠地費	建設事業費	治水下水事業費
15,686,771	1,028,931	12,223,629	2,434,211

○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

(單位：千원)

歲 入 豫 算	歲 出 豫 算			
駐車場特別會計	計	駐車場施設管理	交通管理	豫 備 費
898,482	898,482	289,244	207,680	401,558

2) 審査 結果

企劃豫算課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聽取한 後 質問答辯과 討論 및 計數調整을 거쳐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都市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中 歲出豫算 5,864萬원을 削減하여 他 歲出科目에 1,464萬원, 豫備費로 4,400萬원을 增額하기로 區廳長提出 原案을 修正議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과 討論要旨 및 修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質問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壁報除去機 購入豫算을 增額, 追加 구입하여 22個洞에 配置하면 效率的인 壁報除去와 洞事務所 職員의 人力을 補強하는 效果가 있다고 보는데	○ 그 必要性은 確定되나 豫算形便上 一括購入이 어려운 實情임.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露店商 整備가 거의 完了된 狀態에 서 事後管理 豫算이 團束時와 같은 水準의 豫算으로 編成된 理由	○ 新村周邊의 露店商들이 團束이 疏忽 한 틈을 타 營業을 再開할 可能性이 많아 이를 對備하기 위하여 策定한 것임.
○ 不法廣告物의 整備豫算이 過多策定 되어 있어 豫算節減이 可能하다고 보는데	○ 管内 不法廣告物 1,000餘個中 自進 撤去되는 500件外 強制撤去에 따른 代執行費用으로 回收possible한 豫算임.

【討論要旨】

- 壁報除去機를 追加 購入하여 全洞에 配置함으로써 廣告物整備를 效率的으로 遂行토록하고 整備人力の 最小化 圖謀가 必要함.
- 露店商 整備地域 事後管理費는 露店商이 거의 整備가 된 狀態로 豫防次元의 豫算으로는 過多하게 策定됨.
- 廣告物整備에 따른 代執行은 可及的 事前發生 防止와 自進撤去를 重點的으로 推進함으로서 行政의 強制執行을 最小化함이 바람직함.

【修正內容】

- 一般會計 歲出調整

① 削 減：58,640千원

② 增 額：58,640千원

— 壁報除去機 維持費	1,440千원
— 壁報除去機追加購入	13,200千원
— 豫 備 費	44,000千원

- 修正要旨

削 減	增 額
○ 露店商 整備地域 事後管理費 44,000千원	○ 壁報除去機 購入費 13,200千원 ○ 壁報除去機施設維持費 1,440千원
○ 不法廣告物整備費 14,640千원	○ 豫 備 費 44,000千원
計 58,640千원	計 58,640千원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概 況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1次 委員會를 開會하여 委員長 및 幹事を 選出하고 本會議에서 回附된 豫算關聯 議案의 審査를 위하여 1992年 12月 11일부터 1992年 12月 19일까지 4次의 委員會를 開會하여 豫算編成의 背景과 事業別 推進效果, 區民福祉增進, 豫算浪費要因排除等 深度있는 審査活動을 展開함으로써 1991年度 歲入歲出決算案 및 豫備費 支出承認案을 承認議決하고 1993年度 豫算案에 대한 削減 및 增額調整을 거쳐 豫算案 修正案과 審査報告書를 議決, 採擇하여 第16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1992. 12. 21)에 報告하였다.

1. 委員長・幹事 選任

第1次 委員會(92. 12. 11)에서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中 最年長者인 全聖章 委員의 司會로 委員長 選出의 件을 上程하고 李文馥 委員의 動議로 無記名 投票를 實施한 結果 委員長에 金源珠 委員이 選任하였으며 幹事選出은 宋榮于 委員의 動議로 委員長의 口頭互薦에 의하여 朴老鉉 委員을 幹事로 選任하였다.
委員長 選任 得票狀況은 다음과 같다.

在 席 委 員 : 11名	總 投 票 數 : 11票
金源珠 委員 : 6票	金廷炫 委員 : 5票

2. 案件 處理經過 및 結果

◆ 1991年度歲入歲出豫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2年 11月 16日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各 常任委員會로 回附되어 所管 事項에 대한 豫備審査와 議決거쳐 第1次 豫算決算委員會(1992. 12. 11)에 一括 上程하였으며 그 規模는 다음과 같다.

【歲入歲出 決算規模】

○總 括

(單位:百萬元)

歲 入		歲 出			移越金(13,713)		
豫算額	受納額	豫算額	豫算現額	支出額	事故移越	返還金	歲計剩餘金
51,983	55,839	51,983	54,414	42,126	4,397	72	9,244

① 一般會計

歲 入		歲 出			移越金(13,451)		
豫算額	受納額	豫算額	豫算現額	支出額	事故移越	返還金	歲計剩餘金
50,632	54,401	50,632	53,063	40,950	4,397	72	8,982

② 特別會計

歲 入		歲 出			移越金(262)		
豫算額	受納額	豫算額	豫算現額	支出額	事故移越	返還金	歲計剩餘金
1,351	1,438	1,351	1,351	1,176	0	0	262

③ 環境美化員 子女 學資金貸與基金

基 金 收 入			歲出	執行殘額 (移越額)	備 考
計	一般會計出涓金	利子收入			
42,954	42,460	494	28,440	14,514	出涓金은 一般會計 歲出에 既 包含

【豫備費 支出規模】

(單位:百萬元)

支出決定額	支出原因行爲額	支出額	移越支出額	豫算殘額(不用額)
285	259	254	5	26

2) 審査 結果

財務課長の 提案説明과 決算檢查 業務를 遂行한 金廷炫 委員으로부터 決算檢查結果報告를 聽取한 後 討論을 거쳐 表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區廳長 提出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主要 討論要旨는 다음과 같다.

【討論要旨】

- 豫算執行 過程에서 支出必要가 있음에도 未執行된 사례가 있는 바 正確한 判斷으로 適期에 執行이 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함.

◆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

1) 提 案

1992年 11月 24日 區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11月 25日 第16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各 常任委員會로 回附하였으며 所管 事項에 대한 豫備審査와 議決거쳐 第1次 豫算決算委員會(1992. 12. 11)에 上程하였다.

豫算案의 規模는 다음과 같다.

【豫算案의 規模】

- 一般會計

- ① 歲入 …… 總 62,957,681 千원

(單位:千원)

地方稅	經常的稅外收入	臨時的稅外收入	國庫補助金	市費補助金
12,316,018	6,091,122	11,013,749	753,208	930,584

財政補助金	調整交付金	92年度最終豫算	增減	增減率	自立度
0	31,853,000	65,629,962	△2,672,281	△4.1%	48%

② 歲 出 …… 總 62,957,681千원

議會運營	企劃管理	內部行政	洞行政指導	地方收入管理	社會福祉
876,407	15,018,895	4,023,797	10,288,822	1,204,303	4,418,792
保健管理	衛生管理	清掃環境	公園綠地	產業經濟	建設事業
1,918,254	80,653	8,615,998	1,028,931	30,838	9,864,196
施設管理	住宅行政	都市計劃	治水下水事業	民防衛管理	豫備費
1,653,529	214,578	491,326	2,434,211	131,664	662,487

○ 特別會計

醫療保護特別會計

① 歲入 …… 1,045,257千원(前年度 對比 -78,932)

事業外收入				市費補助金
計	移越金	融資金回收收入	雜收入	
12,873	1	12,870	2	1,032,384

② 歲出 …… 1,045,257千원

醫療保護費			基金運營費			
計	醫療費	返還金	計	手當	需用費吳手數料	特辦費
1,041,317	1,039,817	1,500	3,940	1,440	100	2,400

새마을 所得支援事業特別會計

① 歲入 …… 134,685千원(前年度 對比 -102,504)

事業外收入				市費補助金
計	移越金	融資金回收收入	雜收入	
134,685	65,150	67,035	2,500	0

② 歲出 …… 134,685千원(一般融資金)

駐車場特別會計

① 歲入 …… 898,482千원(事業外收入 : 過懲金및 過怠料)

② 歲出

計	駐車場施設管理	交通管理	豫備費
898,482	289,244	207,680	401,558

2) 審議經過 및 結果

- 第1次 委員會(92. 12. 11)에서 議會運營委員會는 所管 豫算案에 대한 修正이 없으므로 議事進行의 圓滑을 기하기 위해 豫備審査報告를 省略하고 總務委員會와 都市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修正案에 대한 豫備審査結果를 總務委員會 幹事 金鍾彩 委員과 都市建設委員會 幹事 崔容完 委員으로부터 報告받은 後 企劃豫算課長의 提案說明을 聽取하였다.
- 第2次 委員會부터 第3次 委員會까지 各 室·課長이 出席한 가운데 部署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問答辯과 討論을 통하여 細部的인 事項까지 細密히 把握, 檢討하므로써 不要不急한 分野의 豫算은 削減하고 만드시 必要한 事業의 豫算은 增額하여 事業의 效果를 極大化하는데 主力하였다.
- 第4次 委員會(92. 12. 19)를 開會하여 計數調整小委員會를 構成, 豫算審査 過程中 問題된 內容을 重點的으로 審査키로 하자는 委員長의 動議에 따라 計數調整小委員會의 構成이 滿場一致로 議決되었다.
計數調整小委員會의 構成은 委員長에게 委任, 口頭互薦에 의하여 朴老鉉 幹事, 全聖章 委員, 曹甲鉉 委員, 李文馥 委員으로 構成하였다.
計數調整小委員會는 豫算의 削減 및 增額範圍를 最終 確定하여 委員會에 報告하고 이를 委員會에 上程하여 表決한 바 滿場一致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豫算案 修正案을 可決하였다.
主要 質問答辯 및 討論要旨와 修正案은 다음과 같다.

【質疑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新村 文化施設費中 落書와 漫畫의 거 리 造成은 學校에서 教育的인 次元에 서 檢討되어야 할것이며 豫算事業의 效果性은 없다고 보는데	○大學街의 特性을 살리는 浪漫的인 雰 圍氣 造成을 爲하여 推進하고자 하는 事業임
○購讀料를 支援하고 있는 서울新聞의 配達率이 前年度에는 30%도 不되어 問題가 된 바 있는데 現在의 配達率 은 正確히 把握되어 있는지	○洞別로 正確히 配達確認을 하여 購讀 料를 請求토록 하였음
○資産取得費中 圖書購入豫算의 用度和 區가 備置하고 있는 圖書의 數量은	○5층 行政資料室의 設置로 參考用 圖 書類 購入用이며 圖書의 保有量은 3, 500餘卷임
○새마을指導者協議會와 바르게살기 推 進協議會의 補助金 支援額이 差異가 있는 理由는	○새마을指導者에게는 男,女 指導者 區 分하여 各各 支援되나 바르게 살기 推進協議會는 男, 女 共히 한組織으 로 支援됨.
○再活用品 收集競進大會가 競爭을 誘 發, 趣旨와 어긋나게 推進되고 있어 參與하는 職能團體任員들에게 어려움 을 주고 있는바 이를 改善할 方案이 있는지	○實質的인 行事が 될 수 있도록 改善 方案을 積極 檢討할 것임
○금화어린이집의 改補修工事 實施는 同地域이 95년까지 再建築으로 撤去 될 豫定인바 豫算의 浪費가 아닌지	○同 地域은 '98년에 撤去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린이 保護次元에서 반 드시 推進하여야 할 事業임
○衛生業所 團束을 爲한 特命機動班에 參與하는 警察, 消防公務員等에 대한	○特命機動班은 公務員, 警察, 消防 公 務員이 合同構成되며 團束에 따른 經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手當도 區豫算에 包含되는지	費負擔은 區廳에서 負擔하고 있어 區豫算에 計上하고 있음
○環境業務의 重要性에 비추어 所管部署의 豫算은 극히 적은 것으로 思料되는데 業務遂行에 支障이 없는지	○現在 地方自治團體에 移管된 業務遂行에 蹉跌이 없는 程度의 豫算을 編成하였음.
○清掃車整備施設分擔金 4억원의 用度는	○서울市에 清掃車輛을 整備하는 施設이 1開所로 向後 金浦埋立地往來에 따른 車輛增加와 整備需要가 있는바 이에 대한 各 區廳의 施設分擔金임

【討論要旨】

- 洞單位 體育大會는 根本趣旨인 洞民和合에 寄與하지 못하고 있고 充分한 豫算支援이 없어 不足經費를 洞民들에게 負擔시키는 傾向이 있어 物議를 若起할 素地가 있으므로 區民體育大會로 實施하는 것이 合理的임.
- 老人福祉를 爲한 實質的인 豫算支援을 위하여 老人亭의 管理는 老人亭을 利用하는 老人의 子女들로 後援會를 構成토록하는 方案 講究

【豫算案 修正】

1) 歲出調整

(一般會計)

- 削減 236,762千원
- 增額 236,762千원
- ┌ 他歲出科目 187,756千원
- └ 豫 備 費 49,006千원

2) 修正要旨

- 住民用 新聞購讀料 222,840千원中 11,142千원 削減
- 監査室 法秩序 確立 業務推進費 50,400千원中 10,000千원 削減

- 第1回 區民 書藝大展 特別辦公費 5,000千원 全額 削減
- 落書, 漫畫의 거리 造成 施設 縮小 設置를 위해 40,000千원中 20,000千원 削減
- 文化會館 施設管理 用役에 따른 豫算 225,897千원中 2個月分 74,500千원 削減
- 議政活動의 活性化에 따라 상응한 支援必要로 議政活動推進費 18,000千원을 12,000千원 增額하여 30,000千원으로 修正
- 狀況室 會議用 卓子 購入을 위해 必要豫算 13,800千원 計上
- 새마을 防疫活動 強化로 住民 健康增進을 위해 防疫裝備 購入豫算 2,000千원 計上
- 豫算節減 次元에서 社會團體 任意補助金 220,000千원中 20,000千원 削減
- 地價調査의 圓滑한 遂行을 위하여 必要豫算 8,316千원 計上
- 골목 할아버지, 할머니 奉仕活動에 必要한 服裝, 帽子, 완장은 既存 裝備를 再活用토록 하고 5,380千원 全額 削減
- 街路休紙桶은 既設置分에 대한 徹底한 管理를 하도록 하고 30個만 設置 5,000千원中 2,000千원 削減
- 어린이公園 그림展示板은 3個所에서 1個所만 設置토록 하고 45,000千원中 30,000千원 削減
- 區 特殊事業인 新村大學街의 水準向上을 위하여 新村文化거리造成計劃 公募에 必要한 豫算 10,000千원 計上
- 露店商 整備地域 事後管理는 8個月間 于先 實施後 追更에서 審査키로 하고 132,000千원中 44,000千원 削減
- 壁報除去機는 當初 11個 購入 計劃을 8臺 追加 購入하여 22個洞에 1臺씩 配定하여 運用토록 18,150千원을 14,640千원 增額하여 32,790千원으로 修正
- 不法廣告物 整備는 豫算節減 次元에서 500個所를 353個所로 縮小하기로 하고 50,000千원中 14,640千원 削減
- 迅速한 道路小破의 補修로 住民 不便解消를 위하여 道路施設物 小破補修豫算 56,150千원에 127,000千원 增額하여 183,150千원으로 修正

◆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修正案

I. 歲出豫算 修正

1. 調整 規模 236,762千圓

○ 削 減 236,762千圓

○ 增 額 236,762千圓

┌ 歲出豫算 : 187,756千圓

└ 豫 備 費 : 49,006千圓

2. 修正 內譯

○ 一般會計歲出

(單位:千圓)

減 額		增 額	
住民用 新聞購讀料	11,142	議政活動推進費	12,000
法秩序確立 業務 推進費	10,000	會議用 卓子 購入	13,800
第1回 區民 書藝大典	5,000	새마을防疫裝備 購入	2,000
落書, 漫畫의 거리 造成	20,000	地價調查	8,316
文化會館 施設管理 用役	74,500	新村 文化의 거리	10,000
		造成計劃 公募	
社會團體 任意 補助	20,000	壁報除去機	14,640
골목할아버지, 할머니 奉	5,480	道路施設物小破補修	127,000
仕活動			
街路休紙桶 設置	2,000	豫備費	49,006
어린이公園 그림展示板	30,000		
設置			
露店商 整備地域 事後管理	44,000		
不法廣告物 整備	14,640		
計	236,762	計	236,762

II. 豫算總則 修正事項

— 該當없음 —

III. 豫算案修正調書

(單位：千圓)

豫 算 科 目		修正豫算	豫算案 (當 初)	修正額 (增・減)	修 正 內 容
項	事 業 名				
企劃管理	住民用 新聞 購讀	211,698	222,840	△11,142	弘報物中 住民用 新聞購讀料 5% 削減
	法疾序 確立 業務 推進費	40,400	50,400	△10,000	豫算節減 次元에서 一部 削減
	第1回 區民 書藝 大展	0	5,000	△ 5,000	區民 揮毫大會와 統合하여 開催 토록 하고 全額 削減
	落書, 漫畫의 거리 造成	20,000	40,000	△20,000	4個所를 2個所로 縮小 設置토록 하고 削減
	文化會館 施設 管 理用役	151,397	225,897	△74,500	用役期間을 6個月에서 4個月로 하고 2個月分 削減
內務行政	議政活動推進費	30,000	18,000	12,000	議政活動 生活化에 따른 支援次 元에서 增額
	會議用 卓子 購入	13,800	0	13,800	狀況室 會議用卓子 購入위해 豫 算 計上
	새마을 防疫裝備 購入(쌍발연막기)	2,000	0	2,000	防疫活動 強化로 住民 健康 增進 을 위해 豫算 計上
	社會團體 任意 補助	200,000	220,000	△20,000	豫算節減 次元에서 '92年度 水準 維持를 위해 一部 削減

(單位：千 元)

像 算 科 目		修正豫算	豫算案 (當 初)	修正額 (增・減)	修 正 內 容
項	事 業 名				
地 方 收入管理	地價調查	8,316	0	8,316	地價調查의 圓滑한 遂行을 위해 計上
一 般 社會福祉	골목 할아버지, 할 머니 奉仕活動	0	5,480	△ 5,480	服裝, 帽子, 완장等 既存 裝備를 再活用토록 하고 全額 削減
清掃環境	街路休紙桶 設置	3,000	5,000	△ 2,000	既設置된 街路休紙桶의 管理에 徹 底를 기하고 30個만 設置토록 削減
公園綠地	어린이公園 그림 展示板 設置	15,000	45,000	△30,000	3個所를 1個所로 縮小 設置토록 하고 削減
住宅行政	新村 文化의 거리 造成計劃 公募	10,000	0	10,000	區 特殊事業인 新村大學街의 水 準向上을 기하기 위하여 計上
建設事業	露店商 整備地域 事後管理	88,000	132,000	△44,000	8個月間 于先 實施後 追更에서 審査코자 一部 削減
都市計劃	壁報除去機	32,790	18,150	14,640	8臺를 追加 購入하여 各洞에 1 個씩 配定後 運用토록 增額
	不法廣告物 整備	35,360	50,000	△14,640	豫算節減 次元에서 500個所를 353個所로 減縮토록하고 削減
施設管理	道路施設物 小破 補修	183,150	56,150	127,000	迅速한 補修로 住民 不便解消 次 元에서 增額

第 2 篇

221-23

議政活動 및 行事

2126 議政活動

- 1992年度 新年交禮會
- 區議會 開院 1週年 記念行事
- 巨濟郡議會 姊妹結緣
- 巨濟郡議會 議員 親善訪問
- 韓國電力公社 招請 清平楊水發電所 視察
- 議員 세미나
- 1992年度 送年會
- 1992年度 終務式

1992年度 新年交禮會

1992年度 새해를 맞아 管内 機關長 및 區廳幹部들을 招請하여 新年交禮會를 開催하였다.

○ 日 時：1992年 2月 13日(木) 12:00

○ 場 所：스위스그랜드호텔

○ 行事內容

- 議長人事
- 來賓人事
- 懇談 및 午餐

○ 參席對象：55名

- 區 議 員：29名
- 區 廳 幹 部：區廳長 外 8名
- 國 會 議 員：2名(姜聖模, 林春元 議員)
- 市 議 員：6名
- 市教育委員：1名(李基亨 委員)
- 管内機關長：8名

區議會 開院 1週年 紀念行事

西大門區議會 開院 1週年을 맞이하여 地方自治 復活과 區議會開院을 慶祝하며, 關係公務員에 대한 勞苦를 激勵하였다.

○ 日時：1992年 4月 27日(木) 19:00

○ 場所：벽제 형제가든

○ 行事內容

- 表彰 및 感謝牌 授與
- 議長 記念辭
- 區廳長 祝辭
- 晚餐會

○ 參席對象：43名

- 區 議 員：29名
- 區 廳 幹 部：區廳長 外 8名
- 表彰對象者：5名

巨濟郡議會 姉妹結緣

地方議會와의 姉妹結緣으로 相互交流를 통한 理解增進 및 議政活動의 比較, 研究, 情報交換等 地方自治의 發展과 和合에 寄與코자 하였다.

【推進概要】

- 姉妹結緣式
- 議政活動 比較檢討
- 相互 親善交流

【親善訪問】

- 期 間：1992年 4月 15日(金)~4月 17日(日) …… 2泊 3日
- 訪問團：37名
 - 區 議 員：29名
 - 議會事務局職員：8名

【姉妹結緣約定式】

- 約定書 調印

- 記念品 傳達
- 『'91 議政』西大門區議會誌 傳達

【地域視察】

고현 - 학동 몽돌밭 - 해금강 - 한국석유개발공사 - 제5비축기지 - 대우
조선 - 삼성조선

巨濟郡議會 議員 親善訪問

'92年 4月 15日 巨濟郡議會와의 姉妹議會 結緣으로 巨濟郡議會를 親善訪問한 바 있으며 10月 15日 上京하는 巨濟郡議會 議員을 맞이하여 議會相互間의 交流로 議政活動과 地域文化事業等 圓滑한 議政發展에 寄與코자 하였다.

【行事概要】

- 訪問期間：1992年 10月 15日～10月 16日 …… 1泊 2日
- 訪問人員：31名
 - └ 巨濟郡議會 議長 金翰允(夫婦)外 21名
 - └ 巨濟郡議會事務局 職員 9名
- 訪問地：西大門區議會, 西大門區廳

【行事日程】

行 事 名	日 時	場 所	參席對象	行 事 內 容
歡迎行事	10. 15(木) 16:00	西大門區廳 企劃狀況室	57名	○ 議長 및 區廳長 歡迎辭 ○ 區廳幹部와의 相見禮 ○ 區政 現況 案內
歡迎晚餐會	19:00	스위스그랜드 호텔	95名	○ 西大門區議會 議長 主 管 歡迎晚餐
歡迎朝食會	10. 16(金) 08:00	스위스그랜드 호텔	60名	○ 西大門區廳長 主管 歡 迎朝食

行 事 名	日 時	場 所	參席對象	行 事 內 容
西大門區議會 訪問	09:00	西大門區議會	60名	○ 懇談會 ○ 記念撮影
獨立公園觀覽	10:30	獨立公園	60名	○ 展示館外 3個所
統一展望臺, 자유의다리 觀覽	11:00	烏頭山, 임진각	60名	○ 統一展望臺 觀覽 ○ 自由의다리 觀覽
午餐	12:30	벽제형제가든	60名	○ 午餐 및 作別人事

韓國電力公社招請清平楊水發電所視察

發電所 現場 視察을 통한 電力事業의 實態把握과 理解增進을 위하여 實施하였다.

- 日 時: 1992年 9月 25日
- 場 所: 清平 楊水發電所
- 參席對象: 40名

區 議 會: 29名
議會事務局職員: 11名

議員 세미나

地方議會의 運營方案, 會議進行, 議案處理, 民願解消와 議員婦人의 內助役割에 關하여 體系的이고 能動的인 運營을 위해 關係專門家를 招聘, 議員세미나를 開催하였다.

- 日 時: 1992年 10月 20日 ~ 10月 22日 2泊3日
- 場 所: 뉴설악호텔
- 參席對象: 60名
- 議 員 夫 婦: 52名
- 議會事務局職員: 8名
- 主 題: 地方議會 議員의 役割과 使命

- 講 師：關東大學 조성래 行政學 博士

1992年度 送年會

西大門區 議政과 地域發展을 위하여 獻身努力한 議員과 議會運營에 寄與한 關係公務員의 勞苦를 激勵하였다.

- 日 時：1992年 12月 28日(月) 18：00
- 場 所：스위스그랜드호텔
- 行事內容
 - 晚餐 및 懇談會
 - 有功公務員 感謝狀 授與
 - 區幹部 招請 宴會
- 參席對象：71名
 - 議員 夫婦：56名
 - 區廳幹部：11名
 - 有關機關長：2名
 - 受 賞 者：2名

1992年度 終務式

1992年度 西大門區議會의 業務를 終了하며 議會運營의 補佐를 위해 努力한 事務局職員의 勞苦를 激勵하였다.

- 日 時：1992年 12月 31日(木) 12：00
- 場 所：區議會 小會議室
- 行事內容
 - 議長人事
 - 有功公務員 表彰狀 授與
 - 懇談會
- 參席對象：51名
 - 區 議 員：28名
 - 議會事務局職員：23名

第 3 篇



現況 및 統計

■ 集 會 및 會 期

■ '92 議案處理狀況

■ 請 願 處 理

■ 陳 情 書 處 理

集會 ㄟ 會期

1. 集會狀況

會 期 別	集會 公告日	開 會 日	閉 會 日
第 8 回 (臨 時 會)	1992. 2. 7	1992. 2. 13	1992. 2. 13
第 9 回 (臨 時 會)	1992. 4. 1	1992. 4. 7	1992. 4. 9
第 10 回 (臨 時 會)	1992. 4. 20	1992. 4. 27	1992. 4. 29
第 11 回 (臨 時 會)	1992. 6. 15	1992. 6. 22	1992. 6. 26
第 12 回 (臨 時 會)	1992. 7. 14	1992. 7. 20	1992. 7. 22
第 13 回 (臨 時 會)	1992. 8. 27	1992. 9. 3	1992. 9. 7
第 14 回 (臨 時 會)	1992. 9. 26	1992. 10. 5	1992. 10. 9
第 15 回 (臨 時 會)	1992. 10. 19	1992. 10. 27	1992. 10. 31
第 16 回 (定 期 會)	1992. 11. 19	1992. 11. 25	1992. 12. 24

2. 會期別 開議日數와 會議時間

○ 本會議

會 期 別	會 期	開會日數	總會議時間	1日平均會議時間
第 8 回 (臨 時 會)	1 日	1 日	21分	21分
第 9 回 (臨 時 會)	3 日	1 日	2時間 27分	2時間 27分
第 10 回 (臨 時 會)	3 日	2 日	3時間 35分	1時間 48分
第 11 回 (臨 時 會)	5 日	4 日	14時間 41分	3時間 40分
第 12 回 (臨 時 會)	3 日	2 日	3時間 27分	1時間 44分
第 13 回 (臨 時 會)	5 日	2 日	3時間 05分	1時間 33分
第 14 回 (臨 時 會)	5 日	2 日	2時間 04分	1時間 02分
第 15 回 (臨 時 會)	5 日	2 日	2時間 15分	1時間 08分
第 16 回 (定 期 會)	30 日	5 日	10時間 16分	2時間 03分
計	60 日	21 日	42時間 11分	2時間 01分

○ 常任委員會

委員會 會期別	議會運營委員會		總務委員會		都市建設委員會		計	
	開議 日數	會 議 時 間	開議 日數	會 議 時 間	開議 日數	會 議 時 間	開議 日數	會 議 時 間
第10回(臨時會)	2	3時間14分	1	1時間06分	1	42分	4	5時間02分
第11回(臨時會)	2	3時間20分	3	17時間11分	3	15時間11分	8	35時間42分
第12回(臨時會)	2	3時間51分	1	7時間51分	1	7時間10分	4	18時間52分
第13回(臨時會)	1	29分	1	2時間12分	1	5時間15分	3	7時間56分
第14回(臨時會)	2	3時間14分	1	6時間40分	1	4時間02分	4	13時間56分
第15回(臨時會)	1	1時間04分	2	7時間09分	2	5時間47分	5	14時間00分
第16回(定期會)	1	1時間42分	4	32時間44分	4	29時間52分	9	64時間18分
計	11	16時間54分	13	74時間53分	13	67時間59分	37	159時間46分

○ 特別委員會

委員會 會期別	條例審查特別委員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計	
	開議 日數	會 議 時 間	開議 日數	會 議 時 間	開議 日數	會 議 時 間
第 08 回 (臨 時 會)	1	6時間40分			1	6時間40分
第 11 回 (臨 時 會)	1	1時間27分			1	1時間27分
第 12 回 (臨 時 會)			1	6時間34分	1	6時間34分
第 15 回 (臨 時 會)	2	3時間37分	1	6時間19分	3	9時間56分
第 16 回 (定 期 會)			4	18時間38分	4	18時間38分
計	4	11時間44分	6	31時間31分	10	43時間15分

3. 會期別 集會要求 一覽

會 期 別	集會公告日	集會要求者	集 會 要 求 理 由
第8回(臨時會)	1992. 2. 7	金廷炫 議員 外 20人	'92年度 業務報告聽取
第9回(臨時會)	1992. 4. 1	崔容完 議員 外 11人	區廳長提出吳 議員發議 議案 處理
第10回(臨時會)	1992. 4. 20	鄭赫柱 議員 外 9人	常任委員會委員 選任 吳 委員長 選任
第11回(臨時會)	1992. 6. 15	朴老鉉 議員 外 9人	區廳長提出 條例案 吳 承認案 處理
第12回(臨時會)	1992. 7. 14	區廳長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議
第13回(臨時會)	1992. 8. 27	朴老鉉 議員 外 9人	請願 吳 條例案 處理
第14回(臨時會)	1992. 9. 26	金鍾彩 議員 外 10人	各種 議案 處理
第15回(臨時會)	1992. 10. 19	李文馥 議員 外 15人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審議
第16回(定期會)	1992. 11. 19	地方自治法 第38條	定期會

4. 集會 要求者別 統計

要 求 者	回 數	備 考
議員의 集會要求	7回	臨 時 會
區 廳 長	1回	臨 時 會
定 期 會	1回	
計	9回	臨時會 8回, 定期會 1回

'92 議案處理 狀況

1. 種類別 議案處理 統計

議案別 區 分		提出	處 理 內 容					未處理
			可 決			否決	計	
			原案	修正	小計			
豫算案・決算案・豫備費		5	2	3	5		5	
條例案	議 員 發 議	8	7	1	8		8	
	委員會提案	3	1		1		1	2
	區廳長提出	21	19	1	20	1	21	
	小 計	32	27	2	29	1	30	2
建 議 案		1	1		1		1	
決 議 案		2	2		2		2	
承 認 案		7	1	6	7		7	
規 則 案		2	2		2		2	
其 他		4				1	1	3
計		53	35	11	46	2	48	5

2. 會期別 議案處理 統計

區分 會期別	豫算案		條例案		建議案		決議案		承認案		規則案		其他		計	
	提出	處理	提出	處理	提出	處理	提出	處理	提出	處理	提出	處理	提出	處理	提出	處理
第 9回			13	13			1	1			2	2			16	16
第10回			1	1											1	1
第11回			4	4	1	1			2	2			3	1	10	8
第12回	1	1	1	1					1	1					3	3
第13回			2	2					1	1					3	3
第14回			5	5											5	5
第15回	1	1	1	1			1	1	1	1					4	4
第16回	3	3	5	3					2	2			1		11	8
計	5	5	32	30	1	1	2	2	7	7	2	2	4	1	53	48

7/70 1-2 0
 7/71 1-2 X
 7/72 (7/71) 1-2
 7/73 1-2

3. 會期別 議案處理 一覽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9回 臨時 會議	1次	1992. 4.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家畜飼育制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家有功團體에對한區稅課稅免除에대한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區廳長	修正案 可決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崔容完 議員外 7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金平洛 議員外 7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日費와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郭載滿 議員外 7人	原案 可決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9回 臨時 會議	1次	1992. 4.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 中改正條例案	趙敏行 議員外 7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 수 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 條例案	鄭炳八 議員外 7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公印條例案	朴老鉉 議員外 7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 則案	李鳳洙 議員外 7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請願審查規則案	貝滋億 議員外 7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와慶尙南道巨濟郡 議會間姉妹結緣決議案	朴老鉉 金鍾彩 外 5人	原案 可決
10回 臨時 會議	1次	1992. 4.27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 條例案	金平洛 議員外 17人	原案 可決
11回 臨時 會議	4次	1992. 6.26	1992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區廳長	原案 可決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11回 臨時 會議	4次	1992. 6. 26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1992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	區廳長	修正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露店布帳馬車整備改善에 대한建議案	鄭日出 朴正來 外 8人	原案 可決
			議會增築에 관한件	議會 運營 委員長	否決
12回 臨時 會議	2次	1992. 7.22	1992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 △	區廳長	修正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污水・糞尿 및 畜産廢水處理에 관한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1992年度西大門區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區廳長	修正案 可決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13回 臨時 會議	2次	1992. 9. 7	1992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에 대한承認案	區廳長	修正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14回 臨時 會議	2次	1992. 10.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具滋億 議員外 6人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分娩介助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教育施設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修正案)	區廳長	委員會 再回附
15回 臨時 會議	2次	1992. 10.30	1992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1992年度第2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區廳長	修正 可決

會議別			議案名	提出者 發議者	結果
會期	次數	日字			
15回 臨時 會議	2次	1992. 10. 30	年賀狀안보내기에關한決議案	全聖章 議員外 6人	原案 可決
16回 定期 會議	5次	1992. 12.2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 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1993年度定數物品取得承認案	區廳長	修正 可決
			1993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區廳長	修正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西大門區담배自動販賣機設置制 限條例案	條例審 查特委	委員會 再回附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情報公開條例案	條例審 查特委	委員會 再回附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	條例審 查特委	原案 可決
			1991年度歲入·歲出決算案	區廳長	原案 可決
			199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區廳長	原案 可決
			1993年度豫算案	區廳長	修正 可決

請 願 處 理

1. 接受 및 處理

接受	處 理			審 查 除 外		
	計	議會處理	區廳移送	計	要件未備	請願目的達成
4	3		3	1		1

2. 請願件別一覽

○ 處理請願

連番	請 願 名	處 理 結 果
1	滄川洞 100番地 一帶 風致地區 解除	妥當性 與否를 檢討後 區都市基本計劃에 反映豫定
2	北阿峴3洞 風致地區 解除	妥當性 與否를 檢討後 區都市基本計劃에 反映豫定
3	弘恩2洞 8番地一帶 公園用地 및 開發 制限區域解除	妥當性 與否를 檢討後 區都市基本計劃에 反映豫定

○ 審査除外

連番	請 願 名	處 理 結 果
1	加佐마을버스 地下鐵 3號線 延長 認可	議會 提出 以前에 區廳의 民願處理로 請願目的이 達成되어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음

陳 情 書 處 理

1. 陳情書 處理

- └ 接受：15件
- └ 處理：15件(議會處理 1, 區廳移送處理 14)

2. 種類別 現況

計	道路	建築	安全對策	交通	都市計劃	再開發	清掃	條例檢討
15	3	1	1	2	4	2	1	1

3. 陳情件別一覽

連番	陳 情 內 容	處 理 結 果
1	北阿峴洞 176-7號 앞 清掃車輛 作業 現場 移動 要請	小形車輛을 民願現場一帶에 配置하 여 門前收去 實施, 移動式 積換場 閉鎖, 作業時間變更및 環境美化員 教育實施
2	弘濟洞 312-158 公園用地 解題要 請	不足한 綠地空間의 確保를 위하여 解除가 不合理하며 財産稅는 減額 措置
3	弘恩2洞 山1-80號 一帶 林野의 地 目變更要請	地目變更은 土地所有者의 全員申請 에 의하여 地目變更 可能
4	弘恩洞 398-13, 14, 15號 一帶 都 市計劃道路 早速開設要請	西大門區 中長期 地方財政計劃에 反 映, 檢討할 것임
5	忠正路3街 363番地 住宅의 地下鐵工 事로 인한 被害 措置要望	서울市 地下鐵建設本部에서 處理토 록 移送
6	보래내市場 周邊 布帳駐車 營業行爲 整理에 대한 歎願	布帳駐車 團束은 業種變更과 營業時 間을 遵守하여 開店토록 暫定留保, 生業資金融資와 生計支援對策等을 講究하여 整備

連番	陳 情 內 容	處 理 結 果
7	弘恩2洞 8番地 一帶 公園用地 解除 要請	서울市에 檢討 進達하였으나 未反 映, 區都市基本計劃樹立時 妥當性與 否 再檢討
8	弘恩1洞 71-428號 都市計劃區域內 撤去建物에 대한 還賣要求 歎願	土地收用에 의거 서울市로 所有權이 移轉되었으며 土地還賣期間의 經過 로 還賣不可
9	隣近 新築建物工사로 인한 被害對策 要求 (天然洞 100番地)	장독대 破損은 相互 合意토록 措置 하고 窓門은 遮面施設 設置 完了, 事前入住 關係는 建築主 告發措置
10	弘濟2洞 再開發아파트 工사로 인한 道路通行制限 對策要求	再開發組合및 施工會社에 指示하여 公共道路를 利用함에 不便없도록 措 置
11	弘恩2洞 111-45 一帶 共用道路 閉鎖 에 대한 是正 要求	事業主體와 協議하여 竣工前까지 산 책토록 利用할 수 있도록 措置
12	弘恩3洞 담동마을버스 許可 代表者 不法 名義變更 是正要求	代表者變更申請에 의해 代表者만 變 更하였으며 名義還元措置는 不可한 바 地域住民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行政 指導
13	北加佐1洞 성가病院앞 陸橋 移轉要 望	自治區 豫算形便上 未確定이며 早速 한 時日內에 施行되도록 努力하겠음
14	弘濟9-1地區 再開發事業에 따른 道 路確保要望	現況道路 開設하여 通行토록 措置, 無許可 建物 撤去는 組合과 協議事 項임
15	담배 自動販賣機 設置條例 制定案에 대한 再檢討 建議	第16回 定期會 本會議에서 制定案의 再審査를 위해 所管委員會로 再回附

第 4 篇

附 錄

▨ 歷代 地方自治法 改正要旨

▨ 法令上 地方議會의 權限事項

— 歷代 地方自治法 改正要旨 —

區 分	主 要 內 容
地方自治法制定 (1949. 7. 4) 法律 第32號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道, 서울特別市, 市·邑·面 ○地方自治團體의 機關構成 — 長과 議會間의 機關 分立主義를 採擇하여 市·邑·面長은 議會를 解散할 수 있고, 議會는 長에 대해서 不信任議決을 할 수 있도록 함. ○地方議會議員 — 住民이 直選(任期 4年)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은 任命制, 市·邑·面長은 議會에서 選出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固有事務, 團體委任事務, 機關委任事務
第1次 改正 (1949. 12. 15) 法律 第73號	○地方議會가 構成될 때까지 議會議決事項의 權限 代行에 관한 規定과 市·邑·面長의 選任規定 ○最初의 地方議會議員選舉 — 市·邑·面議員(1952. 4. 25) 道議員 (1952. 5. 10)
第2次 改正 (1956. 2. 13) 法律 第385號	○市·邑·面長의 間選制를 直選制로 改正(1955. 8. 直選實施) ○議會의 自治團體長에 대한 不信任 議決制度를 廢止 ○地方議員과 市·邑·面長의 任期를 4年에서 3年으로 短縮 ○議會議決에 대한 自治團體長의 拒否權을 規定
第3次 改正 (1956. 7. 8) 法律 第388號	○道議會議員의 定員設定基準을 民議院議員의 倍數로 했던 것을 入口比例에 의해 算出 ○地方議會議員과 市·邑·面長의 任期上의 既得權을 認定
第4次 改正 (1958. 12. 26) 法律 第510號	○市·邑·面長의 任期制 및 長에 대한 不信任制를 採擇 ○地方議會가 法定 會議日數를 超過한 경우에 監督機關의 閉會 命令權 認定

區 分	主 要 內 容
	○議會閉會中の 委員會 開會制度를 廢止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를 3年에서 4年으로 延長 ○洞·里長의 任命制를 採擇 ○議長團에 대한 不信任制度를 廢止
第5次 改正 (1960. 11. 1) 法律 第563號	○서울特別市長, 道知事, 市·邑·面長, 洞·里長을 任命制에서 直選制로 改正하고 그 任期를 4年으로 規定 (市·道知事 直選 - 1960. 12) ○選舉權 年齡을 21歲에서 20歲로 낮추고, 自治團體長의 被選舉權을 25歲로 規定 ○不在者 選舉制度를 採擇 ○地方議會議長과 副議長에 대한 不信任制度를 採擇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 (法律 第707號) ・制 定: 1961. 9. 1 ・同1次改正: 1962. 3. 21 ・同2次改正: 1963. 6. 18 ・同3次改正: 1963. 12. 14 ・同4次改正: 1973. 3. 12 ・同5次改正: 1975. 12. 31 ・同6次改正: 1981. 4. 4	○地方自治團體中 종전의 邑·面 대신 郡을 設置 ○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 市·邑·面長 및 洞·里長 任命制 ○地方議會議決權에 대한 監督廳의 代行(道와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에 있어서는 道知事의 承認 얻어 施行) ○行政機構는 道와 서울特別市는 閣令으로, 市·郡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當該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정함 ○市·郡에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음.
第6次 改正 (1973. 1. 15) 法律 第2437號	○警察署, 消防署의 設置 根據 廢止
第7次 改正 (1988. 4. 6) 法律 第4004號	○特別市와 直轄市의 區를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에 포함 ○市長, 道知事의 被選舉權者의 年齡을 30歲에서 35歲로 調整

區 分	主 要 內 容
(全文改正)	○地方議會의 自治團體 行政事務에 대한 監督權을 削除하고 行政事務 調査權을 新設함. ○地方議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한 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등에 관한 事項을 定함.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地方議會 議決事項에 대한 再議要求權 및 先決處分權을 賦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舉에 의하여 選出하되, 따로 法律로 정할때까지는 政府에서 任命 ○主務部長官이나 市·道知事の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監督權 行使 중 取消·停止權은 1次로 是正을 命한 후에 施行토록 정함. ○住民의 訴請權을 削除하였음. ○地方自治團體와 國家機關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가 있을때 大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도록 定함.
第8次 改正 (1989. 12. 30) 法律 第4162號	○地方議會의 兼職禁止範圍 擴大(農地改良組合, 山林組合 등 4個 組合任職員의 兼職制限 追加) ○地方議會의 執行機關에 대한 監督權限을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權으로 強化 ○市·道の 副團體長을 當該 市·道知事が 推薦한 者를 任命토록 함. － 최초로 選出된 市·道知事の 任期滿了까지는 從前대로 內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한 人事權 認定 ○地方議會의 議員選舉는 '90. 6. 30以內, 地方自治 團體長 選舉는 '91. 6. 30以內에 實施토록 規定
第9次 改正 (1990. 12. 31)	○地方議會議員 兼職禁止範圍 擴大(農業協同組合 등 7個 組合의 組合長과 그 常勤 任職員)

區 分	主 要 內 容
法律 第4310號	○地方議會議員選舉는 '91. 6. 30 以內,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舉는 '92. 6. 30 以內 實施토록 規定
第10次 改正 (1991. 5. 23) 法律 第4367號	○地方議會議員 兼職禁止 規定中 “組合長과 그”를 削除
第11次 改正 (1991. 12. 31) 法律 第4464號	○會期中 會議參席에 따른 議員의 旅費支給 ○地方議員 逮捕·拘禁時 事前 通報制의 新設 ○議案의 審議를 위한 議會의 資料要求權 新設 ○定期會 集會日 變更 • 廣域：12. 1 → 11. 20 • 基礎：12. 1 → 11. 25 ○廣域議會 定期會 會期延長：30日 → 35日 ○基礎議會에 常任委를 制限的으로 設置許容 ○閉會 中 議長의 常任委 召集要求權 認定 ○事務機構 名稱變更 • 廣域：事務局 → 事務處 • 基礎：幹 事 → 事務局(課)

— 法令上 地方議會의 權限事項 —

1. 地方自治法上 地方議會 議決事項 (34件)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①條例의 制定 및 改·廢	法 第35條	市 · 道 市·郡·區	
②豫算의 審議·確定	"	"	
③決算의 承認	"	"	
④法令에 規定한 것을 除外한 使用料, 手數料, 分擔金, 地方稅 또는 加入金의 賦課와 徵收	"	"	
⑤基本財産 또는 積立金의 設置·管理 및 處分	"	"	
⑥重要 財産의 取得·處分	"	"	
⑦公共施設의 設置·管理 및 處分	"	"	
⑧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除外한 豫算外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拋棄	"	"	
⑨請願의 受理와 處理	"	"	
⑩其他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	"	
⑪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事項	"	"	
⑫地方自治團體의 事務中 特定 事案의 調査	法第36條第1項	"	
⑬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의 議決	法第41條第1項	"	
⑭地方議會의 會期 議決	"	"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⑮地方議會 議長 및 副議長 不信任 決議	法第49條第1項	市 · 道 市 · 郡 · 區	
⑯閉會中 委員會의 開會	法 第53條	〃	
⑰地方議會 會議의 非公開 決定	法 第57條	〃	
⑱秘密을 요하는 地方議會 會議錄의 非公開 決定	法第64條第4項	〃	
⑲地方議會議員의 資格喪失 議決	法第72條第1項	〃	
⑳地方議會議員 懲戒議決	法 第78條	〃	
㉑地方自治團體長의 再議要求議決	法第19條第4項 第98條第2項 第99條 第159條第2項	〃	
㉒地方自治團體의 地方債 發行	法第115條第1項	〃	
㉓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歲入 · 歲出 豫算 外의 債務負擔 原因行爲	法第115條第2項	〃	
㉔地方自治團體의 保證債務負擔行爲	法第115條第3項	〃	
㉕地方自治團體의 債權에 관한 債務 의 免除 또는 效力의 變更	法第115條第5項	〃	
㉖會計年度 豫算案의 確定	法第118條第2項	〃	
㉗地方自治團體의 繼續費의 設置	法 第119條	〃	
㉘追加更正豫算案의 編成	法 第121條	〃	
㉙地方自治團體 所管事務 일부를 他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에게 委 託時 그 規約의 制定	法第141條第2項	〃	
㉚地方自治團體間의 行政協議會 構 成과 規約 制定	法第142條第2項	〃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㉑ 地方自治團體 行政協議會의 規約 變更, 行政協議會 廢止	法 第148條	市 · 道 市·郡·區	
㉒ 地方自治團體의 組合의 設立과 規約制定	法第149條第1項	"	
㉓ 地方自治團體組合의 規約 變更과 組合解散	法第154條第1項	"	
㉔ 教育·學藝事務의 特定事案에 對한 監査 또는 調査	令第17條의3第1項	"	

2. 他法令上 地方議會 議決事項(21件)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① 自治團體 歲入·歲出豫算의 繰上 充用	地方財政法 第3條第3項	市 · 道 市·郡·區	미리 地方議會 議決을 要함.
② 地方自治團體의 一時 借入金	" 第11條第1項	"	
③ 地方自治團體의 團體, 公社, 公團 또는 公益法人에 對한 出資	" 第15條第2項	"	
④ 地方自治團體 豫算의 移用	" 第38條第1項	"	
⑤ 地方自治團體 豫算의 明示移越	" 第40條第1項	"	
⑥ 公有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關한 計劃의 樹立	" 第77條第1項	"	
⑦ 公共施設의 設置에 關한 條例(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補助 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限함)	" 第109條第1項	"	事前 內務部長 官의 承認을 要함
⑧ 定數管理對象 物品의 取得·處分	地方財政法施行 法第113條第2項	"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⑨教育委員 候補者 推薦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5條第2項	市・郡・區	
⑩市・道 教育委員의 選出	” 第5條第4項	市・道	
⑪教育・學藝에 관한 條例案	” 第13條第2項	”	
⑫教育・學藝에 관한 豫算案	”	”	
⑬教育・學藝에 관한 決算	”	”	
⑭教育・學藝에 관한 特別賦課金, 使用料, 手數料, 分擔金 및 加入 金の 賦課와 徵收에 관한 事項	”	”	
⑮天災, 其他 특수한 事情이 있는 경우 取得稅의 減免	地方稅法 第123條	”	
⑯天災, 地變, 其他 특수한 事情이 있는 경우 住民稅의 減免	” 第179條의26	市(特別市,直 轄市包含),郡	
⑰天災, 其他 특수한 事情이 있는 경우 財産稅의 減免	” 第195條	市・郡・區	
⑱天災, 地變, 其他 大統領令이 정 하는 특수한 事情이 있는 경우 農地稅의 減免	地方稅法 第202條第1項	市(特別市,直 轄市包含),郡	
⑲天災, 其他 특수한 事情이 있는 경우 綜合土地稅의 減免	” 第234條의24	市・郡・區	
⑳都市計劃稅의 賦課對象地域의 指 定・告示	” 第238條第2項	市(特別市,直 轄市包含),郡	
㉑天災, 其他 특수한 事情이 있는 경우 事業所稅의 減免	” 第252條	市・郡・區	

3. 地方議會 報告事項(8件)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①請願의 處理結果 報告	地方自治法 第68條第2項	市 · 道 市 · 郡 · 區	處理結果를 지 체없이 報告
②教育委員會의 教育 · 學藝에 관한 事務의 監査 또는 調査 結果報告	地方自治法 施行令第17條의3	市 · 道	
③行政事務의 監査 또는 調査結果 是正要求事項에 대한 處理結果 報告	施行令第19條第 3項	市 · 道 市 · 郡 · 區	
④地方自治團體의 中 · 長期 地方財 政計劃樹立 報告	地方財務法 第16條第1項	〃	內務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樹立
⑤地方自治團體의 保證債務 管理事 項報告	地方財政法施行 令第21條第5項	〃	每年 歲入 · 歲 出 決算과 함 께 地方議會에 報告
⑥地方公企業의 缺損額 補填狀況報 告	地方公企業法施 行令 第37條第1項	〃	缺損의 內譯과 理由를 地方議 會에 報告
⑦地方公企業의 收入金 마련 支出	地方公企業法 第27條	〃	
⑧地方公企業豫算의 移越承認	地方公企業法 第30條第3項	〃	

4. 地方議會에 意見을 들어야 할 事項(4件)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①地方自治團體 廢置・分合, 名稱 ・區域變更	地方自治法 第4條第2項	市・道 市・郡・區	
②市의 設置	“ 第7條第3項	市・道	
③地方自治團體 相互間的 紛爭調整	“ 第140條 第3項	市・道 市・郡・區	
④都市計劃의 決定	都市計劃法 第12條第1項	“	

5. 地方議會 承認事項(5件)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①地方自治團體長의 先決處分	地方自治法 第100條第2項	市・道 市・郡・區	다음會期에 報 告承認要
②豫備費의 支出	“ 第120條 第2項	“	다음年度地方 議會承認要
③地方自治團體豫算의 決算	“ 第125條	“	“
④地方公企業의 缺損額을 資本剩餘 金으로 補填	地方公企業法 施行令 第37條第3項	“	
⑤市・道 教育監의 先決處分(市・ 道議員 議決事項에 限함)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39條第2項	市・道	

4. 地方議會 同意를 要하는 事項(6件)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①本人 또는 直系尊屬과 直接利害關係가 있는 案件에 관하여 出席發言	地方自治法 第62條	市 · 道 市·郡·區	
②他 地方自治團體가 自治團體區域內에 公共施設의 設置	“ 第135條 第3項	“	
③市·道가 施行하는 土木·建設事業에 대한 市郡區의 經費 負擔	地方財政法 第25條第2項	市·郡·區	
④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財産 또는 公共施設使用時 使用料의 免除	“ 第27條	市 · 道 市·郡·區	
⑤地方自治團體 會計間의 財産移管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無償 使用時)	“ 第81條	“	
⑥地方自治團體의 保證債務 負擔行爲에 대한 債權者 또는 債務者의 事業內容 또는 保證事項의 變更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21條第4項	“	

7. 其他 地方議會 權限事項(8件)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①地方議會 事務職員의 任命	地方自治法 第83條第2項	市 · 道 市·郡·區	協議事項
②地方自治團體 所管事務의 一部를 他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에게 委託處理하는 경우 事務委託의 變更 또는 解止	“ 第141條 第2項	“	“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③逮捕 또는 구금된 地方議員의 通知	地方自治法 第32條의2	市 · 道 市·郡·區	通知事項
④地方自治團體長의 辭任 通知	“ 第90條	“	“
⑤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補助機關의 出席·證言·意見陳述의 要求	“ 第36條第1項	“	要求事項
⑥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席·答辯 要求	“ 第37條第2項	“	“
⑦案件의 審議 또는 行政事務監査나 調査와 直接 關聯된 書類의 提出要求	“ 第37條의 2	“	“
⑧地方自治團體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 提出	地方財政法 第110條第3項	“	提出事項

8. 地方議會 自律權 (23件)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①臨時會議 召集權	地方自治法 第39條第2項	市 · 道 市·郡·區	
②定期會, 臨時會의 會期 決定	“ 第41條第1項	“	
③開會, 休會, 閉會의 議決	“ 第41條第1項	“	
④地方議會 議長, 副議長의 選出	“ 第42條	“	
⑤地方議會 臨時議長의 選出	“ 第46條	“	
⑥地方議會 議長, 副議長 不信任決議	“ 第49條	“	
⑦地方議會 委員會의 構成	“ 第50條第1項	“	
⑧委員會 委員의 選任	“ 第50條第3項	“	

題 目	根 據	實施機關	備 考
⑨委員會의 開會	地方自治法 第53條	市 · 道 市 · 郡 · 區	
⑩會議 非公開 議決	” 第57條	”	
⑪議案의 發議權	” 第58條	”	
⑫委員會에서 廢棄된 議案의 本會 議 附議要求	” 第61條第1項	”	
⑬會議規則의 制定權	” 第63條	”	
⑭秘密을 要하는 會議錄의 非公開	” 第64條第4項	”	
⑮請願의 受理 · 審議 · 處理	” 第67條第1項 ” 第68條	”	
⑯請願紹介議員에 대한 請願의 趣 旨說明 要求	” 第67條第2項	”	
⑰地方議會議員의 辭職許可	” 第69條	”	
⑱地方議會議員의 資格審查請求 및 議決	” 第71條	”	
⑲地方議會議員 資格喪失 議決	” 第72條第1項	”	
⑳傍聽人의 團束에 관한 會議規則 制定	” 第77條第4項		
㉑地方議會議員 懲戒議決權	” 第78條	”	
㉒他 議員을 모욕한 議員의 懲戒要 求	” 第79條第2項	”	
㉓懲戒에 관한 會議規則의 制定	” 第81條	”	

(資料：1992年度 江原道 市郡議會 議員 세미나)